

제6대 후반기

의 정 백 서

| 2012. 7. 1 ~ 2014. 6. 30 |

고흥군의회
GOHEUNG COUNTY COUNCIL

議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 고흥군의회

www.igoheung.com

議政白書
의정백서
GOHEUNG COUNTY COUNCIL

발 간 사



고흥군의회 의장 **장세선**

지난 2012년 7월 1일 출범한 제6대 고흥군의회 후반기 의정활동 기간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매진해온 2년간의 의정활동을 뒤돌아 볼 수 있는 의정백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흥군의회에서는 그동안의 지방자치 성과를 바탕으로 군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동반자로서 군정이 올바르게 운영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은 열악한 재정여건하에서도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의회』**구현을 위하여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만, 때로는 능동적이고 열정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들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간된 의정백서는 제6대 고흥군의회 후반기 2년 동안의 의정활동 사항을 군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의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은 물론, 고흥군의회의 의정활동을 다시 한번 성찰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향후 의정활동의 귀중한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고흥군의회는 군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감동의 생활정치를 구현해 나아가겠으며 소모적인 갈등보다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살기좋은 고흥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오니 군민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고흥군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고흥군의회 의장 **장 세 선**

고흥의회기



議政白書
의정백서
GOHEUNG COUNTY COUNCIL

고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우리 고흥군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지방자치 발전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도야 및 자질향상에 노력하여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한다.
- 우리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군민의 자유와 권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 도모, 지위남용, 타인을 위한 부당알선 등을 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
-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에 의정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정 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 우리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과 관련된 모든 공·사 행위에 대하여 군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군민헌장

우리는 팔영산의 정기를 이어받은 군민임을 자랑으로 삼는다.

기름진 땅과 넓은 개펄은 우리들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산과 황금의 바다는 고흥인의 요람이다.

나라에 충성하는 우리의 일념은 발포에 서린 충무공의 넋을 받음이요,

내일을 향한 드높은 이상은 봉황의 자태를 닮음이다.

우리는 고흥군민의 자랑스러운 긍지를 가슴속에 지니고

힘차게 오늘을 살고 있다.

번영을 향해 치닫는 굳센 의지는 후손에 길이 남을

귀감으로서 영원한 횃불이 되어 불타오르리라.





고흥의 상징물

議定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고흥군의 심볼은 3면이 바다인 고흥군의 지리적인 특성과 역사, 경제, 문화를 바탕으로 미래를 힘차게 전진하는 고흥군의 이미지와 우주센터를 모티브로 형상화하였다.

길게 꼬리를 물로 힘차게 솟구치는 이니셜G는 일등 고흥, 세계 최고의 고장 고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고흥의 번영과 군민정기의 원천임을 나타내며, 또한 힘차게 치솟은 형태는 고흥군의 진취적인 기상을 표현함과 동시에 우주로 발사되는 우주선의 역동적인 힘을 느끼게 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고흥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솟아오른 듯 봉긋한 세 개의 타원은 발전된 고흥군의 이미지와 풍요롭고 여유있는 삶을 위하는 공동체로서의 고흥군을 의미하며, 군과 군민들의 화합을 상징한다.

청색은 때묻지 않는 깨끗한 바다와 쾌적한 환경으로서의 자연의 고장임을 상징한다.

주황색은 진취적인 기상과 끊임없는 열정으로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군민을 상징하며, 빛과 생명을 의미한다.



고흥의 상징물

議定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군목(郡木) | 유자나무

발육성이 좋고 병충해에 강하여 군민에게 풍요와 복지를 약속해 주는 과수이다. 늦가을 고흥 들녘엔 그 풍성한 열매와 고운 향이 가득하여 다가올 겨울이 넉넉하기만 하다.



군화(郡花) | 동 백 꽃

용기와 승리 그리고 정열의 뜻을 담고 있어 홍색, 자색, 백색의 꽃이 우리 고을 곳곳에 피어나며 번영을 향한 군민의 기상과 정열이 푸르고도 붉다.



군조(郡鳥) | 비 둘 기

밝은 미래가 있어 희망이 있고 희망이 있기에 평화가 깃드는 고흥. 그래서 고흥 사람들은 비둘기를 좋아하고 비둘기처럼 살고 싶어한다.

고흥의 상징물
議定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Character | 외로 • 나로

외로와 나로는 외나로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건립된 우주센터의 우주선을 모티브로 디자인 하였다.
외로와 나로는 우주센터의 다양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안내하는 도우미로서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다정다감한 미소와 따스함을 가지고 있다. 외로와 나로는 고흥군의 모든 C.I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되며 그 상황에 맞추어 응용형을 이용한다.



Mascot | 별이 • 솔이 • 로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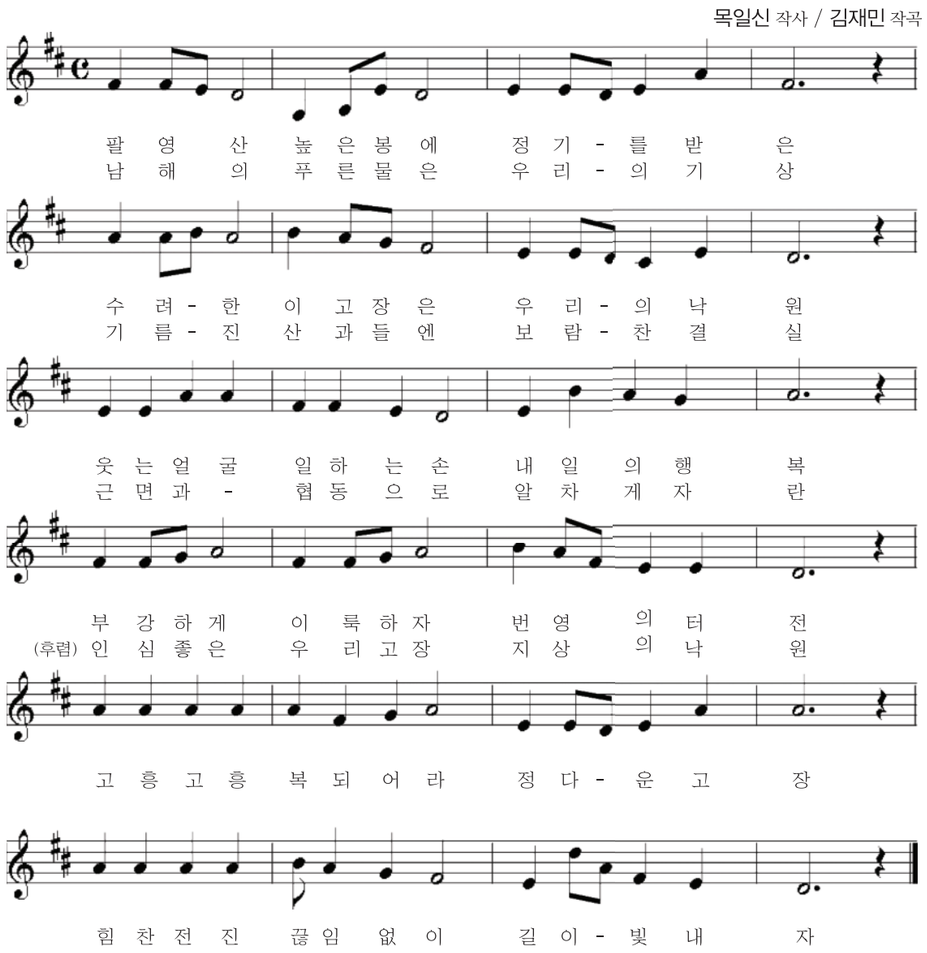
별이와 솔이는 요정 로브와 함께 지구와 우주를 다니며 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메신저로서 오랜 친구처럼 포근하고 친근감이 있으며 다가올 우주시대의 주인공으로 청정해역과 우주센터 그리고 풍요롭고 흥이 넘치는 살기좋은 일등 고흥건설에 앞장서는 고흥 군민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군민의 노래

議定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목일신 작사 / 김재민 작곡



議 政 目 標

議定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의 정 목 표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

의정운영 방침

- 확고한 자치기반 구축
- 현장 중심 의정활동 강화
- 민의수렴을 통한 열린의정 실현
- 견제와 균형의 내실의정 구현

제6대 후반기 원구성 현황

(2012. 7. 1 ~ 2014. 6. 30)

의 장 단



의장

박 금 래 (고흥다)



부의장

배 기 홍 (고흥가)

상임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송 우 섭 (고흥나)



총무위원회위원장

장 세 선 (고흥다)



산업 · 건설위원회위원장

송 경 양 (고흥라)

상임위원회

위원회별	위원장	간 사	위 원
의회운영위원회	송우섭	최설희	장세선, 송경양, 송인숙
총무위원회	장세선	송인숙	배기홍, 송경석, 김의규, 송우섭
산업건설위원회	송경양	최설희	김옥래, 신태균, 김주식

제6대 고흥군의회 의원 프로필

議定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성　　명 : 배기홍(裵基洪)
선 거 구 : 고흥가
선　　수 : 3선
생년월일 : 1952. 2. 4
주　　소 : 고흥읍 흥양길 23-17
주요경력 :
- 고흥군체육회상임부회장
- 고흥군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제4대 전반기 총무위원회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성　　명 : 김옥래(金玉來)
선 거 구 : 고흥가
선　　수 : 3선
생년월일 : 1948. 9. 27
주　　소 : 영남면 사도진해안길 129
주요경력 :
- 협동영어법인대표
-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이사
- 제4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후반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제6대 고흥군의회 의원 프로필

議定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성　　명 : 송경석(宋庚錫)
선 거 구 : 고흥가
선　　수 : 3선
생년월일 : 1954. 1. 24
주　　소 : • 점암면 여도진로 209
주요경력 : • 점암면체육회상임부회장
• 전라남도축구협회부회장
• 제4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제5대 전반기 의장



성　　명 : 신태균(申泰均)
선 거 구 : 고흥나
선　　수 : 3선
생년월일 : 1954. 2. 8
주　　소 : • 과역면 과역로 876-1
주요경력 : • 과역면체육회상임부회장
• 고흥군배구협회장
• 제5대 전반기 총무위원회위원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성　　명 : 송우섭(宋禹燮)
선 거 구 : 고흥나
선　　수 : 초선
생년월일 : 1960. 7. 7
주　　소 : • 동강면 쌍암길 49
주요경력 : • 농림수산식품산업비젼5000추진협의회부위원장
• 민주통합당고흥보성지역위원회사무국장
• 제6대전반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성　　명 : 박금래(朴今來)
선 거 구 : 고흥다
선　　수 : 3선
생년월일 : 1949. 9. 26
주　　소 : 도덕면 학동1길 28 우성빌라 302호
주요경력 : • 도양읍번영회부회장
• 제4대 후반기 총무위원회위원장
• 제5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의장



제6대 고흥군의회 의원 프로필

議定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성　　명 : 김주식(金鉒植)
선 거 구 : 고흥다
선　　수 : 2선
생년월일 : 1954. 10. 9
주　　소 : • 도양읍 북문길 5-1
주요경력 : • 고흥항운노동조합위원장
• 제5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총무위원회위원장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성　　명 : 김의규(金義珪)
선 거 구 : 고흥라
선　　수 : 2선
생년월일 : 1959. 7. 17
주　　소 : 도화면 당오천변1길19(태산빌라 A동 201호)
주요경력 : • 고흥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 도화면체육회상임부회장
• 제5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　　명 : 장세선(張世善)
선 거 구 : 고흥다
선　　수 : 초선
생년월일 : 1953. 12. 1
주　　소 : 금산면 상하촌길 14-1
주요경력 : • 거금도농협조합장(3선)
• 농협중앙회경제사업발전위원
• 법무부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 고흥군2011회계연도결산검사대표위원
• 제6대 후반기 총무위원회위원장



성　　명 : 송경양(宋景良)
선 거 구 : 고흥라
선　　수 : 2선
생년월일 : 1953. 7. 3
주　　소 : 포두면 봉덕길 68
주요경력 : • 포두면농업경영인회장
• 제4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제4대 후반기 의장
• 제6대 전반기 총무위원회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제6대 고흥군의회 의원 프로필

議定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성　　명 : 송인숙(宋仁淑)
선 거 구 : 비례대표
선　　수 : 초선
생년월일 : 1949. 5. 2
주　　소 : 대서면 개명안길 16
주요경력 :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고흥군새마을부녀회장
- 전남여성신지식인회장
- 학교법인아주학원이사
- 제6대 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



성　　명 : 최설희(崔雪姬)
선 거 구 : 비례대표
선　　수 : 초선
생년월일 : 1954. 11. 21
주　　소 : 고흥읍 고흥로 1766-1
주요경력 :
- 고흥군학교어머니연합회장
- 고흥군여성단체협의회장
- 한국걸스카웃고흥지회장
- 고흥군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위원
-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議定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제6대 고흥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선거



본회의 활동(고흥군수 시정연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議定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본회의 활동(군정질문 및 답변)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심사



2013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회



총무위원회 의안심사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議定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의원 협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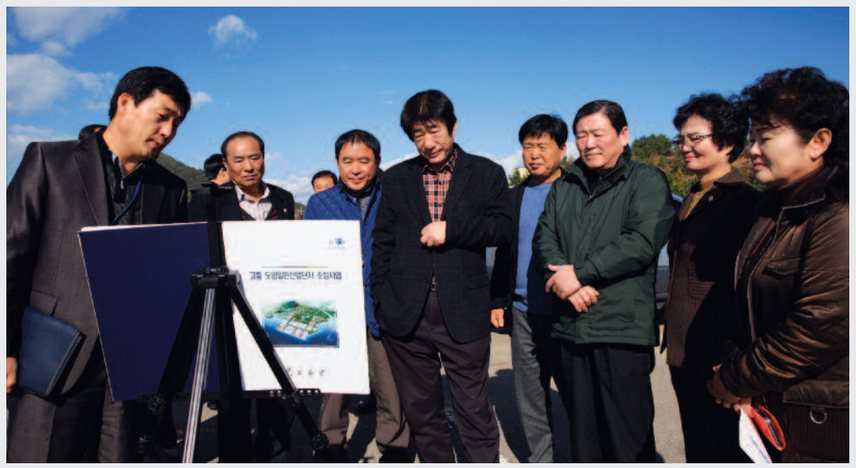
議定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議定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동강면 양계장 민원에 관한 의견청취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국민체육센터 관련 용역 보고청취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議定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고흥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촉구 성명서 채택



주택 민원관련 현지방문



의원 국외연수(대만)



의원 국외연수(대만)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議定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의원 및 의회 공무원 국내연수



순천정원박람회 고흥의날 행사참석



의원 및 의회 공무원 국내연수



2012년 여수엑스포 행사장방문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議定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서울 금천구의회 의원 방문



관내 초등학생 본회의장 견학



서울 은평구의회 의원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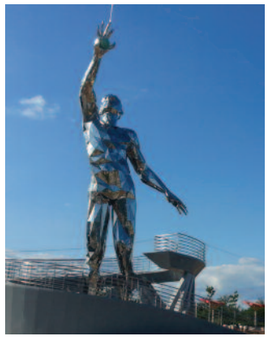


전남 동부권의회 의장회의 개최

Contents



- 발간사(의장)
- 고흥군의회 旗
- 고흥군의회의원 윤리강령
- 군민헌장
- 고흥의 상징물
- 군민의 노래
- 제6대 후반기 원구성 현황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제1장 일반현황

제1절 기본현황

1. 연혁 ····· 39
2. 지역특성 ····· 41
3. 일반행정 ····· 43

제2절 고흥군의회 현황

1. 연혁 ····· 51
2. 의회구성 현황 ····· 55

제2장 회의운영

제1절 기본 현황

1. 회기운영 현황 ····· 61
2. 의안처리 현황 ····· 62

제2절 제6대 후반기 본회의 운영

1. 제206회 제1차 정례회 ····· 65
2. 제207회 임시회 ····· 81
3. 제208회 임시회 ····· 85
4. 제209회 임시회 ····· 89
5. 제210회 제2차 정례회 ····· 94
6. 제211회 임시회 ····· 120
7. 제212회 임시회 ····· 131
8. 제213회 임시회 ····· 138
9. 제214회 임시회 ····· 146
10. 제215회 임시회 ····· 149
11. 제216회 임시회 ····· 152
12. 제217회 제1차 정례회 ····· 158
13. 제218회 임시회 ····· 173
14. 제219회 임시회 ····· 184
15. 제220회 제2차 정례회 ····· 197
16. 제221회 임시회 ····· 234
17. 제222회 임시회 ····· 249
18. 제223회 임시회 ····· 268
19. 제224회 임시회 ····· 272

제3장 행정사무감사 및 특별위원회 활동상황

제1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 7. 1 ~ 2014. 6. 30)

1. 제20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91
2. 제20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99
3. 제20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304
4.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307
5. 제21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317
6. 제21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320
7.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324
8. 제22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334
9. 제22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344

제2절 행정사무감사

1. 제210회 제2차 정례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349
2. 제220회 제2차 정례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359

Contents

제3절 행정사무조사

1. 제209회 임시회 2011년도 군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 381
2. 제213회 임시회 2012년도 읍면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 391
3. 제219회 임시회 2012년도 군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 397
4. 제223회 임시회 2013년도 군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 405

제4장 군정질문 및 답변

1. 제210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 ····· 415

제5장 부 록

제1절 의회에서 하는 일 ····· 477

제2절 역대 의회구성 현황 ····· 485

1. 의장단 ····· 485
2. 위원회 ····· 486
3.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 488

제3절 회의규칙 ····· 507

제4절 의회용어 ····· 533

의정백서
議政白書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 고흥군의회

제1장
일반현황

제1절 기본현황
제2절 고흥군의회 현황





GOHEUNG COUNTY COUNCIL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 고흥군의회



의정백서 議政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GOHEUNG COUNTY COUNCIL 의정백서



의정백서

議政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제1장

제1절 기본현황

1. 연혁
2. 지역특성
3. 일반행정



GOHEUNG COUNTY COUNCIL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 고흥군의회

의정백서 議政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제1절 기본현황

1. 연혁

가. 선주민의 정착

삼면이 바다인 고흥반도 안에 원주민 인종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설사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동진해 들어온 족속에게 정복당하여 융화되었거나 다른 지방으로 유산되어 더러는 바다를 건너 일본열도로 간 족속도 있었으리라 본다. 우리고장 고흥에 입주한 선주민은 원시인들이 동쪽으로 생활 조건이 적의한 곳을 찾아 정착하였으리라는 점에서 볼 때 서해안을 거쳐 남하하였거나 산동반도에서 진입한 족속임은 의심할 바 없다.

나. 석기시대와 고흥

본군 각처에 산재한 지석묘는 그 수가 5백여 개에 준하고 계문토기시대에 정착하여 살던 패총이 해안선주에서 그 흔적을 볼 수가 있고 또 각처에서 발굴된 석부 석도 석창 석기등과 철기시대의 유물도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고장 선주민들은 신석기시대부터 비로써 생활의 터전을 마련했고 그와 같은 유물 등을 용구로서 수렵을 하여 정원 정농과 어로로 생활한 것을 추정할 수가 있다.

다. 삼국시대까지

삼한(三韓)시대에는 마한(馬韓)의 영토였다가 근초고왕(近肖古王)때 백제의 땅이 되었으며, 백제가 사비로 도읍지를 옮긴 후에는 구지하성(久知下城)에 속하였다. 의자왕 20년(660) 5월 나·당 연합군에 의하여 백제가 망하고 그 옛 땅에 5개도독부를 두었다. 그 후 전라남도에는 사양(沙洋), 대방(帶方), 분차(分嵯)의 3주가 배치되었고, 고흥군은 분차군에 소속되었다. 분차군(낙안군)은 4개의 현을 거느렸는데 고흥군 지역에는 조조례현(助助禮縣, 남양면), 두힐현(豆힐縣, 두원면), 비사현(比史縣, 동강면)의 3개현을 두었다.

라. 통일신라시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함에 따라 고흥군 지역도 신라의 영토가 되었으며, 경덕왕(景德王) 16년(757)에 종래의 복잡한 군현지명을 순 한자화하여 분차군을 분령군(分嶺郡)으로 조조례현을 충렬현(忠烈縣)으로 두힐현을 강원현(薑原縣)으로 비사현을 백주현(栢舟縣)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으며 진성여왕 때 견훤이 무진주(武珍州, 광주)에 근거를 두고 부근일대를 정복하여 후백제를 세움에 따라 이 지역은 후백제의 땅이 되었다.

마. 고려시대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는 제6대 성종(成宗) 14년(995) 9월, 전국을 10도로 나누고 전남지방을 해양도(海洋島)라 하였으며, 고흥군은 해양도 14주 62현 중의 3현이 되었다. 제8대 현종(顯宗) 9년(1018)에는 해양도와 강남도(江南道, 전북)를 합하여 전주(全州)와 나주(羅州)의 이름을 따서 전라도(全羅道)로 개칭하고 그 치소(治所)를 전주에 두었다.

이보다 앞선 태조 23년(940)에는 충렬현을 남양현(南陽縣)으로, 강원현을 두원현(荳原縣)으로, 백주현을 태강현(泰江縣)으로 고쳐 나주목(羅州牧)에 딸린 보성군에 두었다. 고흥현(高興縣)은 본래 장흥부(長興府)에 딸린 고이부곡(高伊部曲)이었는데 고이(高伊)는 고양이의 속어(俗語)라고 하며 충렬왕(忠烈王) 11년(1285)에 이고을 사람인 유청신(柳淸臣), 처음이름은 庇(인명해설참조)인데 원나라의 사신으로 여러번 큰 공을 세웠으므로 고흥현으로 승격시키고 감무(監務)를 두었는데 고흥(高興)이라는데 지명은 고이(高伊)와 장흥(長興)의 합명(合名)으로서 조선조에 등장한 흥양(興陽)보다도 더 오래된 지명이다. 풍안현(豊安縣)은 보성군에 딸린 식촌부곡(食村部曲)이었는데 충선왕(忠宣王) 2년(1310)에 가서 공을 세운 이대순(李大順)의 청에 의하여 풍안현으로 승격되었으며, 도양현(道陽縣)은 본래 장흥부 도량도부곡(道良道部曲)이었는데 고려에 와서 도양현으로 승격되었고, 도화현(道化縣)은 보성군의 타주부곡(他州部曲)이었는데 명종(明宗) 27년(1197)에 도화현으로 승격되어 고흥지방에는 모두 7개의 현이 있었다.

바. 조선이후

태조(太祖) 4년(1395)에 왜란으로 인하여 보성군 조양현(兆陽縣)땅에 치소를 임시로 옮기고 같은 6년(1397)에 진(鎭)을 두어 병마사(兵馬使)가 현감의 일을 겸하게 하였다. 태종(太宗) 16년(1416) 전국을 8도로 할 때에 전라도의 좌도(左道)에 소속되었으며, 세종(世宗) 5년(1423)에는 이곳에 첨절제사(僉節制使)를 두었다가 같은 23년(1441)에는 보성군에 딸린 남양현, 두원현, 등 7개의 현을 합하여 고흥과 남양, 도양의 뒷글자를 따라 흥양현(興陽縣)으로 개칭하였다. 이곳은 또한 조선시대 전라좌수영(全羅左水營)에 속한 5관 5포(五官五浦)가운데 사도첨절제사(蛇渡僉節制使, 종3품, 점암면 금사리)를 비롯하여 발포(鉢浦, 도화면 내발리),

녹도(鹿島, 도양읍 녹동), 여도(呂島, 점암면 여호리)에 수군 만호의 주력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이 지방의 여러 장수가 국난극복에 모두 참여하여 많은 해전에서 큰 공을 세웠었다. 영조(英祖)때의 기록에 "고흥은 예부터 영주(瀛州山, 한라산)와 같은 이름으로 산과 바다가 맑고 아름다우며 기승(奇勝)이 많다" 고 하였다, 또한 예부터 등과자(登科者 : 과거에 급제한 사람)가 많을 뿐 아니라 용력(勇力)이 뛰어난 역사(力士)가 많으며 지금도 정계(政界), 학계(學界), 관계(官界), 체육계(體育界)등 각 분야에 진출한 고흥출신의 인물이 많다. 당시의 흥양현은 호수(戶數)가 9,977호로서 인구 41,996인이며, 남자가 18,559인, 여자가 23,437인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5,000여명이나 더 많았다. 고종(高宗) 26년(1895) 지방제도 개혁에 의하여 흥양현을 흥양군으로 바꾸고 13개면을 관할하다가 1914. 4. 1 군면 폐합에 따라 돌산군(突山郡)의 득량도 등을 합하여 고흥군으로 개칭하고 13개면을 관할하였으며, 1973. 7. 1 도양면이 도양읍으로, 1979. 5. 1 고흥면이 고흥읍으로 승격되어 현재 2읍 14면 2출장소 515개의 자연마을을 관할한다.

2. 지역특성

가. 위 치

고흥은 전남의 남해안 동남단데 돌출한 고흥반도와 169개의 도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쪽 보성군과 경계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남해에 개방되어 있어서 주민의 생활이나 교통면에 있어 해양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행정구역상으로 볼 때, 고흥군은 2개읍, 14개면, 2개 출장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가운데 포두면의 면적이 가장 넓다.

군의 4극단은 127° 05′ ~ 127° 40′ E와 34° 18′ ~ 34° 46′ N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서간 35′ , 남북간 28′ 의 범위에 걸쳐있다. 그러나 해양상의 극점이 아닌 육지나 도서상의 4극점을 보면, 극동은 봉래면 하반리 대항도 동단에 해당하고 극서는 금산면 연홍리 연홍도 서단에 해당하며 극남은 도양읍 시산리 무학도 남단에 해당하고 극북은 동강면 한천리 북단에 해당한다.

지협을 통해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북부를 제외한 군 전체가 남해에 둘러싸여 있는 고흥군은 동쪽에서 순천만과 여자만을 사이에 두고 여수시와 접해 있으며, 서부에서는 장흥군 관산읍 및 완도군과 접해 있다. 그리고 남부에서는 여천군 삼산면 손죽열도와 접해 있으며 북부와 북서부는 득량만을 사이에 두고 보성군과 접경하고 있다. 고흥군을 한반도와 연결하고 있는 군계의 길이는 겨우 20km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행정구역상으로도 고흥군 대서면과 동강면이 보성군 벌교읍 및 조성면과 각각 접경하고 있다. 그리고 고흥반도를 육지와 연결시키는 지협에는 남양면이 위치하며 육상교통에 있어서 일종의 관문적 역할을 한다.

나. 지형지세

고흥군의 지형지세는 해발 600m정도인 팔영산, 마복산, 적대봉, 천등산 등이 북동, 남서 방향으로 뻗어 있으며, 표고 0~50m미만이 전체 고흥면적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50~100m가 25%정도 차지하고 있다.

경사도를 살펴보면 0~5%미만이 전체면적의 30.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15~30%미만이 27%를 차지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경사 15%이상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고흥군의 하천은 총연장 106.12km로서 유연면적은 272.70㎢이며, 대부분의 하천은 빈약하며 단조롭고, 고흥천·녹동천 등 25개의 준용하천과 207개에 달하는 소하천이 있으며, 대부분의 하천들은 득량도와 포두면의 간척지를 통하여 남해로 유입되고 있다.

다. 기 후

고흥군의 기후는 여름에 고온다습, 겨울에 온난건조의 특성을 보인다. 고흥지방은 타지역에 비해 대륙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반면 연중 난류가 흐르는 남해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의 기온은 비교적 온화하며 눈보다 비가 많이 내리며, 여름철에는 습한기류의 지형적 수렴으로 비가 많은 기후를 이룬다. 따라서 비교적 연교차가 적고 온화하면서 강수량이 많은 해양성 기후의 특성을 강하게 나타낸다. 산간부, 평야부, 연안부에 따라서 기후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온화한 기후권에 들어 있어, 1월의 평균기온이 1.0℃이며 연평균 기온이 13.5℃로서 난대성 식물인 비자나무와 동백나무 등이 자생하고 있다.

라. 기상개황

제공 : 여수기상대

구분 / 월별	기 온(℃)			강수량(mm)	상대습도(%)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평균	평균 습도	최소 습도
1월	2.2	8.4	-2.8	13.6	63.5	43.9
2월	4.6	11.0	-2.2	37.4	64.4	39.5
3월	8.8	15.1	3.6	111.2	66.9	36.0
4월	13.8	17.0	8.2	35.5	63.6	42.8
5월	18.1	22.1	13.0	123.1	65.5	41.5
6월	21.5	24.1	18.6	185.5	78.6	68.3
7월	24.3	28.3	20.5	302.2	83.8	69.4
8월	24.3	26.8	22.1	655.7	83.7	68.5
9월	21.7	23.4	20.5	123.1	78.5	66.5
10월	16.2	20.9	12.7	111.5	76.7	56.0
11월	10.3	15.9	5.6	85.1	76.3	56.1
12월	2.6	5.9	-2.0	9.1	69.5	53.9

3. 일반행정

가. 행정구역

고흥군의 총면적은 807.3㎢(전81.4㎢, 답158.2㎢, 임야 454.3㎢, 기타 113.4㎢)로서 전라남도 면적의 6.6%를 차지하며 행정구역은 2읍 14면 2출장소이며, 하부조직으로 131법정리 1,392반이 있고 515개 행정리로 구성.

나. 기구 및 공무원 현황

1). 기구 및 공무원

가) 기구

2014년 6월말 현재 행정기구는 본청의 1실(기획실), 12과(주민복지과·행정과·재무과·투자정책과·경제유통과·문화관광과·환경산림과·농업축산과·해양수산과·건설과·안전총괄과·종합민원실), 2개 직속기관(농업기술센터·보건소), 4개 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우주항공사업소·평생학습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와 별도 의회사무과가 있으며, 16개 읍면으로 구성.

나) 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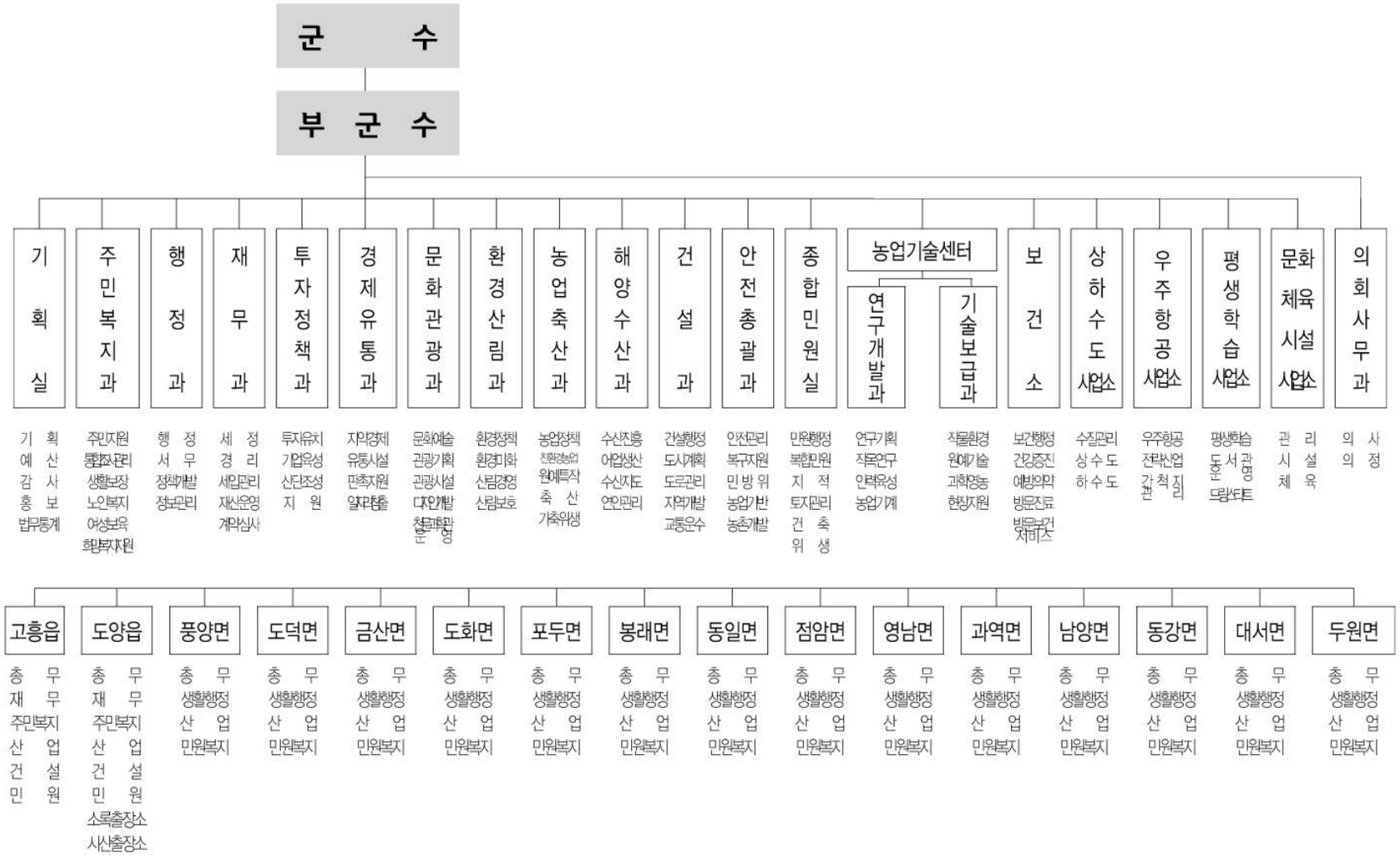
공무원의 정원은 767명으로 인구 70,183명과 비교해 볼 때 공무원 1인당 군민수는 91.5명임. 기관별로 본청이 291명, 직속기관이 127명, 사업소 56명, 읍면 279명, 의회사무과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종별로 분류하면 정무직 1명, 일반직 731명, 전문경력관 1명, 연구직 5명, 지도직 29명으로 일반직 공무원이 95.3%를 차지하고 있음.

【공무원 정원 현황】

(2014. 6. 30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무직	전문경력관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계	767	1	3	35	185	206	170	131	1	1	5	29	
본 청	291	1	1	12	72	100	59	43	1		2		
직속기관	127		1	1	28	14	33	17		1	3	29	
사 업 소	56			4	13	19	13	7					
의회사무과	14			3	3	4	3	1					
읍 면	279		1	15	69	69	62	63					

고흥군 기구표(2014. 6. 30 현재)



다. 인구 및 세대

2014. 6. 30 현재

구 분	면 적 (㎢)	세대수	인 구(명)			세 대 당 평균인구	행정구역		
			계	남	여		법정리	행정리	반
계	807.3	34,740	70,183	33,731	36,452	2.02	131	515	1,392
고흥읍	45.6	5,306	12,612	6,140	6,472	2.38	9	35	85
도양읍	33.6	5,451	11,450	5,611	5,839	2.10	7	38	147
풍양면	51.3	1,884	3,666	1,801	1,865	1.95	12	42	100
도덕면	49.5	1,749	3,325	1,560	1,765	1.90	6	31	71
금산면	65.7	2,495	4,941	2,449	2,492	1.98	7	35	135
도화면	66.2	2,311	4,453	2,118	2,335	1.93	10	37	116
포두면	112.3	2,916	5,552	2,627	2,925	1.90	12	46	128
봉래면	28.4	1,137	2,159	1,038	1,121	1.90	4	20	67
동일면	21.1	808	1,614	814	800	2.00	3	11	39
점암면	69.1	1,656	3,013	1,378	1,635	1.82	11	39	79
영남면	43.6	798	1,478	694	784	1.85	4	11	39
과역면	42.3	1,954	3,754	1,755	1,999	1.92	8	32	78
남양면	39.5	1,325	2,617	1,223	1,394	1.98	8	34	83
동강면	41.4	1,704	3,508	1,692	1,816	2.06	10	33	81
대서면	34.4	1,413	2,608	1,240	1,368	1.85	7	29	55
두원면	63.3	1,833	3,433	1,591	1,842	1.87	13	42	89

라. 재정현황 (2012~2014)

[2012년도 재정규모]

총 396,627백만원

○ 일반회계 ····· 376,691백만원
○ 특별회계 ····· 19,936백만원
※재정자립도 8.1%

☐ 일반회계 : 376,691백만원

세 입		세 출	
총 376,691백만원		총 376,691백만원	
지방세수입	15,100	일반공공행정	23,559(6.25%)
		공공질서및안전	2,986(0.79%)
세외수입	15,258	교육	2,965(0.79%)
		문화및관광	19,678(5.22%)
		환경보호	27,317(7.25%)
지방교부세	193,566	사회복지	65,932(17,50%)
		보건	6,769(1.80%)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	3,000	농림해양수산	111,501(29.60%)
		산업·중소기업	2,657(0.71%)
		수송및교통	10,890(2.89%)
보조금	149,767	국토및지역개발	38,667(10.26%)
		예비비및기타	63,770(16.93%)

☐ 특별회계 : 19,936백만원

사업구분	예산액 (백만원)	비 율 (%)	비 고
계	**19,936**	**100**	
상수도사업	4,342	21.8	
장기미집행도시계획	1,000	5.0	
기반시설부담금	35	0.2	
주택사업	27	0.1	
의료보호기금	1,924	9.6	
농어민소득지원기금	411	2.1	
발전소주변지역지원	4	0.02	
농공단지조성	565	2.8	
해창오마간척사업	11,155	56.0	
고흥지구간척사업	473	2.4	

[2013년도 재정규모]

총 415,628백만원

○ 일반회계 ····· 400,524백만원
○ 특별회계 ····· 15,104백만원
※재정자립도 10.19%

☐ 일반회계 : 400,524백만원

세 입		세 출	
총 400,524백만원		**총 400,524백만원**	
지 방 세	14,730	일반공공행정	18,990(4.74%)
		공공질서및안전	1,278(0.32%)
세 외 수 입	26,054	교 육	2,639(0.66%)
		문화및관광	20,954(5.23%)
지방교부세	196,285	환경보호	44,161(11.03%)
		사회복지	67,461(16.84%)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000	보 건	6,684(1.67%)
		농림해양수산	117,262(29.28%)
보 조 금	160,455	산업·중소기업	2,510(0.63)
		수송및교통	13,847(3.46%)
		국토및지역개발	39,684(9.91%)
		예비비및기타	65,054(16.24%)

☐ 특별회계 : 15,104백만원

사업구분	예산액	비 율(%)	비 고
계	**15,104**	**100**	
상수도사업	4,467	29.6	
장기미집행도시계획	1,000	6.6	
기반시설부담금	34	0.2	
의료보호기금	2,029	13.4	
농어민소득지원기금	392	2.6	
발전소주변지역지원	4	0.1	
농공단지조성	561	3.7	
해창오마간척사업	6,235	41.3	
고흥지구간척사업	382	2.5	

[2014년도 재정규모]

총 434,433백만원

○ 일반회계 ····· 423,473백만원
○ 특별회계 ····· 10,960백만원
※재정자립도 5.7%

☐ 일반회계 : 423,473백만원

세 입		세 출	
총 423,473백만원		**423,473백만원**	
지 방 세	15,180	일반공공행정	22,658(5.35%)
		공공질서및안전	1,566(0.37%)
세 외 수 입	9,095	교 육	2,874(0.68%)
		문 화 및 관 광	22,456(5.30%)
지 방 교 부 세	197,132	환 경 보 호	39,598(9.35%)
		사 회 복 지	85,629(20.22%)
재 정 보 전 금	3,000	보 건	7,387(1.74%)
		농림해양수산	113,678(26.84%)
보 조 금	177,045	산업·중소기업	4,011(0.95%)
		수 송 및 교 통	11,937(2.82%)
보전수입등 및 내 부 거 래	22,021	국토및지역개발	44,967(10.62%)
		예 비 비 및 기 타	66,712(15.75%)

☐ 특별회계 : 10,960백만원

사업구분	예산액	비 율(%)	비 고
계	**10,960**	**100**	
상 수 도 사 업	3,911	35.7	
장기미집행도시계획	1,000	9.1	
기 반 시 설 부 담 금	–	–	
의 료 보 호 기 금	1,828	16.7	
농어민소득지원기금	420	3.8	
발전소주변지역지원	34	0.3	
농 공 단 지 조 성	200	1.8	
해 창 오 마 간 척 사 업	3,172	29.0	
고 흥 지 구 간 척 사 업	395	3.6	

GOHEUNG COUNTY COUNCIL 의정백서



의정백서

議政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제1장

제2절 고흥군의회 현황

1. 연혁

2. 의회구성 현황



GOHEUNG COUNTY COUNCIL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 고흥군의회

의정백서 議政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제2절 고흥군의회 현황

1. 연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8년 7월 제헌헌법에 지방자치를 도입하여 1949년 7월 4일자로 지방자치법을 제정 공포 후 1952년 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1952년 4월 25일 최초의 면의원 선거 후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였으나 1961년 5월 군사혁명으로 중단되었다.

그 후 수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의 실시가 미루어져 오다가 1990년 12월 15일 동법의 제8차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실시가 결정되어 1991년 3월 26일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 16명 의원이 당선되어, 동년 4월 15일 역사적인 초대 고흥군의회를 개원하였다.

1995년 6월 27일 전국 4대 지방선거시 16명의 의원이 당선되어 제2대 군의회를 개원하였으며, 1998년 6월 4일 지방선거를 실시 16명의 의원이 당선되어 7월 10일 제3대 군의회를 개원하였고,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시 16명의 의원이 당선되어 동년 7월 10일 제4대 의회를 개원하였으나, 봉래, 동강면 지역구 의원 사퇴로 2003년 10월 30일 보궐선거를 실시하였다.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유급제가 실시되었고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의원 정수가 16명에서 12명으로 축소되었으며, 종전의 읍면단위 선거구가 가선거구(고흥, 점암, 영남, 두원), 나선거구(과역, 남양, 동강, 대서), 다선거구(도양, 풍양, 도덕, 금산), 라선거구(도화, 포두, 봉래, 동일)로 통합되었고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실시, 10명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2명의 의원이 당선됨으로써 제6대 의회가 구성되었으며,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실시하여 지역구의원 10명과 비례대표 여성의원 2명의 의원이 당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제1대

1991. 3. 26.	초대 고흥군의회 의원 선거 초대 고흥군의회 개원 – 의원정수 : 16명 – 임 기 : '91. 4. 15 ~' 95. 6. 30(4년 2개월)
1991. 4. 15.	초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 – 의 장 : 박채주(점암면) – 부 의 장 : 유택근(도양읍)
1992. 4. 27.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거 – 의회운영위원장 : 김동인(도화면) – 총 무 위 원 장 : 송기복(동강면) – 산업·건설위원장 : 김남규(금산면)
1993. 4. 7.	초대 후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 선거 – 의 장 : 박동래(풍양면) – 부 의 장 : 김동인(도화면) – 의회운영위원장 : 송기복(동강면) – 총 무 위 원 장 : 고임준(봉래면) – 산업·건설위원장 : 신윤식(도덕면)

제2대

1995. 6. 27.	제2대 고흥군의회 의원 선거
1995. 7. 10.	제2대 상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 선거 – 의 장 : 송복조(과역면) – 부의장 : 김동인(도화면) – 의회운영위원장 : 박채주(점암면) – 총 무 위 원 장 : 류준상(포두면) – 산업·건설위원장 : 장귀석(영남면)
1995. 7. 11.	제2대 고흥군의회 개원 – 의원정수 : 16명 – 임 기 : '95. 7. 1 ~ ' 98. 6. 30(3년)
1997. 1. 7.	제2대 후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 선거 – 의 장 : 김동인(도화면) – 부 의 장 : 고임준(봉래면) – 의회운영위원장 : 신광주(금산면) – 총 무 위 원 장 : 박창규(두원면) – 산업·건설위원장 : 김성철(도양읍)

제3대

1998. 6. 4.	제3대 고흥군의회 의원 선거
1998. 7. 10.	제3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 – 의 장 : 김동인(도화면) – 부의장 : 류준상(포두면)
1998. 7. 10.	제3대 고흥군의회 개원 – 의원정수 : 16명 – 임 기 : '98. 7. 1 ~ 2002. 6. 30(4년)
1998. 7. 11.	제3대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 – 의회운영위원장 : 장귀석(영남면) – 총 무 위 원 장 : 박동래(대서면) – 산업·건설위원장 : 박채주(점암면)
2000. 6. 27.	제3대 후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 선거 – 의 장 : 장귀석(영남면) – 부의장 : 송대석(대서면) – 의회운영위원장 : 윤경식(봉래면) – 총 무 위 원 장 : 박채주(점암면) – 산업·건설위원장 : 박동래(풍양면)
2000. 12. 11.	제3대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 – 의 장 : 류준상(포두면)

제4대

2002. 6. 13.	제4대 고흥군의회 의원 선거
2002. 7. 10.	제4대 전반기 의장단·총무 및 산업건설위원장 선거 – 의 장 : 김성철(도양읍) – 부의장 : 신광주(금산면) – 총 무 위 원 장 : 배기홍(고흥읍) – 산업·건설위원장 : 송경량(포두면)
2002. 7. 11.	제4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선거 – 위원장 : 신태균(과역면)
2002. 7. 11.	제4대 고흥군의회 개원 – 의원정수 : 16명 – 임 기 : 2002. 7. 1 ~ 2006. 6. 30(4년)
2003. 10. 30.	보궐선거(봉래면, 동강면)
2004. 7. 19.	제4대 후반기 의장단 · 상임위원장 선거 – 의 장 : 신광주(금산면) – 부의장 : 곽상률(동일면) – 의회운영위원장 : 김옥래(영남면) – 총무위원장 : 박금래(도덕면) – 산업 · 건설위원회위원장 : 송경석(점암면)
2006. 1. 19.	제4대 후반기 의장단 보궐선거 – 의 장 : 송경양(포두면) – 부의장 : 송재효(동강면)

제5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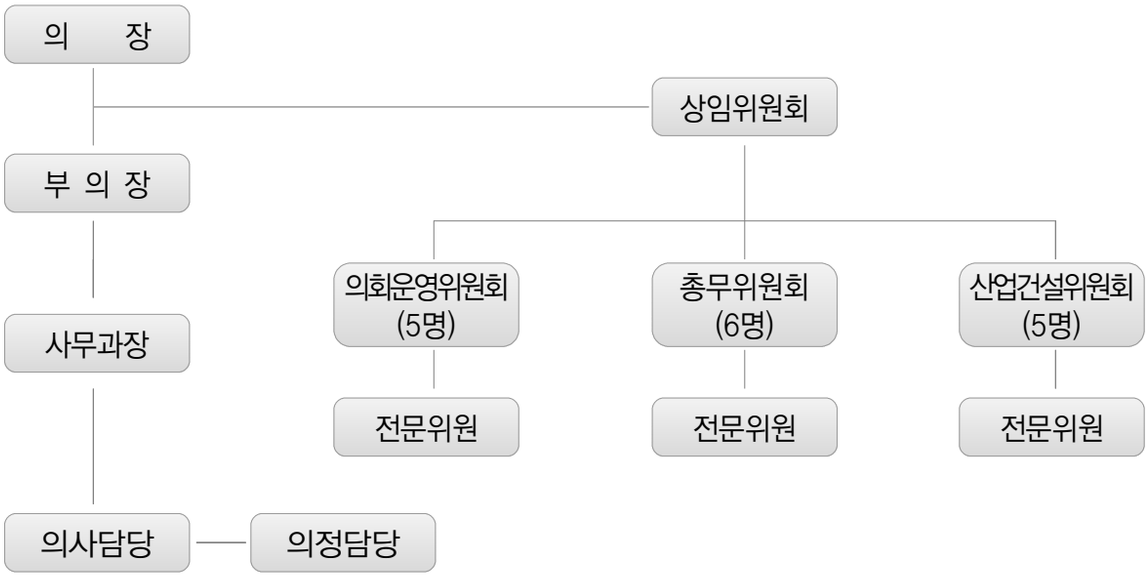
2006. 5. 31.	제5대 고흥군의회 의원 선거
2006. 7. 5.	제5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 – 의 장 : 송경석(고흥가) – 부의장 : 이재후(고흥나)
2006. 7. 6.	제5대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 – 총무위원장 : 신태균(고흥나) – 산업건설위원장 : 김주식(고흥다) – 의회운영위원장 : 김영길(고흥다)
2006. 7. 12.	제5대 고흥군의회 개원 – 의원정수 : 12명 – 임 기 : 2006. 7. 1 ~ 2010. 6. 30(4년)
2008. 6. 24.	제5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 의 장 : 함채규(고흥라) – 부의장 : 김옥래(고흥가)
2008. 6. 25.	제5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 – 총무위원장 : 김주식(고흥다) – 산업건설위원장 : 김의규(고흥라) – 의회운영위원장 : 김영길(고흥다)

제6대

2010. 6. 2.	제6대 고흥군의회 의원 선거
2010. 7. 7.	제6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 – 의 장 : 신태균(고흥나) – 부의장 : 박금래(고흥다)
2010. 7. 7.	제5대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 – 총무위원장 : 신태균(고흥나) – 산업건설위원장 : 김주식(고흥다) – 의회운영위원장 : 김영길(고흥다)
2010. 7. 7.	제6대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 – 총무위원장 : 송경양(고흥라) – 산업건설위원장 : 김의규(고흥라) – 의회운영위원장 : 김주식(고흥다)
2012. 6. 21.	제6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 의 장 : 박금래(고흥다) – 부의장 : 배기홍(고흥가)
2012. 6. 21.	제6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 – 총무위원장 : 장세선(고흥다) – 산업건설위원장 : 송경양(고흥라) – 의회운영위원장 : 송우섭(고흥나)

2. 의회 구성 현황

○ **의회기구표**



○ **의회사무과 정 · 현원 현황**

구분	합계	일반직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행정농업시설	행정별정	소계	행정	행정시설	행정농업시설	통신운영	소계	행정	행정농업	시설	통신운영	사무운영시설관리	운전	소계	행정	행정농업	사무운영시설관리	운전	소계	운전
정원	14	3	1	2	3	1	1	1	–	4	1	1	–	1	1	–	3	1	1	–	1	1	1
현원	14	3	1	2	5	2	1	1	1	4	1	1	1	–	–	1	2	–	–	1	1	–	–

○ **상임위원회 소관 실과소**

위원회	정수	소 관 실 과 소
의회운영 위 원 회	5명	1과
		• 의회사무과(의사, 의정)
총 무 위 원 회	6명	10 실과소
		• 기획실 (기획, 예산, 감사, 홍보, 법무통계) • 주민복지과 (주민지원,통합조사관리,생활보장,노인복지,여성보육,희망복지지원) • 행정과 (행정, 서무, 정책개발, 정보관리) • 재무과 (세정, 경리, 세입관리, 재산운영, 계약심사) • 투자정책과 (투자유치, 기업육성, 산단조성지원)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관광기획,관광시설, 디자인개발, 천문과학관운영) • 종합민원실 (민원행정, 복합민원, 지적, 토지관리, 건축, 위생) • 보 건 소 (보건행정,건강증진, 예방의약, 방문진료, 방문보건서비스) • 평생학습사업소 (평생학습, 도서관운영, 드림스타트)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관리, 시설, 체육)
산업건설 위 원 회	5명	9 실과소
		• 경제유통과 (지역경제, 유통시설, 판촉지원, 일자리창출) • 환경산림과 (환경정책, 환경미화, 산림경영, 산림보호) • 농업축산과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원예특작, 축산, 가축위생) • 해양수산과 (수산진흥, 어업생산, 수산지도, 연안관리) • 건설과 (건설행정, 도시계획, 도로관리, 지역개발, 교통운수) • 안전총괄과 (안전관리, 복구지원, 민방위, 농업기반, 농촌개발) • 농업기술센터 (연구기획,작목연구,인력육성,농업기계,작물환경,원예기술,과학영농,현장지원) •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관리, 상수도, 하수도) • 우주항공사업소 (우주항공, 전략산업, 간척지관리)

의정백서
議政白書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 고흥군의회

제2장
회의운영

제1절 기본현황
제2절 제6대 후반기 본회의 운영





GOHEUNG COUNTY COUNCIL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 고흥군의회



의정백서 議政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GOHEUNG COUNTY COUNCIL 의정백서



의정백서

議政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제2장

제1절 기본 현황

1. 회기운영 현황
2. 의안처리 현황



GOHEUNG COUNTY COUNCIL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 고흥군의회

의정백서 議政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제1절 기본현황

1. 회기운영 현황

구 분	회 기	일 수	본회의 차수
계		161	57
제206회 제1차 정례회	2012. 7. 2 ~ 7. 13	12	6
제207회 임시회	2012. 8. 1 ~ 8. 3	3	2
제208회 임시회	2012. 9. 18 ~ 9. 19	2	2
제209회 임시회	2012. 10. 22 ~ 10. 31	10	3
제210회 제2차 정례회	2012. 11. 12 ~ 12. 14	33	8
제211회 임시회	2012. 12. 20 ~ 12. 24	5	2
제212회 임시회	2013. 2. 5	1	1
제213회 임시회	2013. 3. 11 ~ 3. 19	9	2
제214회 임시회	2013. 4. 16 ~ 4. 17	2	2
제215회 임시회	2013. 5. 21 ~ 5. 22	2	2
제216회 임시회	2013. 6. 25 ~ 6. 27	3	2
제217회 제1차 정례회	2013. 7. 1 ~ 7. 12	12	6
제218회 임시회	2013. 9. 23 ~ 9. 24	2	2
제219회 임시회	2013. 10. 14 ~ 10. 25	12	2
제220회 제2차 정례회	2013. 11. 11 ~ 12. 17	37	8
제221회 임시회	2013. 12. 18 ~ 12. 20	3	2
제222회 임시회	2014. 2. 12	1	1
제223회 임시회	2014. 3. 10 ~ 3. 19	10	2
제224회 임시회	2014. 4. 22 ~ 4. 23	2	2

2. 의안처리 현황

구 분	계	조례안	예산·결산안	계획안	승인안	건 의 결의안	기 타
계	144	88	8	14	2	3	29
제206회 제1차 정례회	6	5			1		
제207회 임시회	5	3	1	1			
제208회 임시회	5	2		2			1
제209회 임시회	4		1	1			2
제210회 제2차 정례회	9	6	1	1			1
제211회 임시회	10	8	1	1			
제212회 임시회	4			1		1	2
제213회 임시회	8	3					5
제214회 임시회	4	3		1			
제215회 임시회	3	3					
제216회 임시회	7	6	1				
제217회 제1차 정례회	6	3	1	1			1
제218회 임시회	7	6					1
제219회 임시회	7	4		1			2
제220회 제2차 정례회	26	16	1	3		1	5
제221회 임시회	9	7	1				1
제222회 임시회	4				1		3
제223회 임시회	3	2					1
제224회 임시회	17	11		1		1	4



의정백서

議政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제2장

제2절 제6대 후반기 본회의 운영

1. 제206회 제1차 정례회
2. 제207회 임시회
3. 제208회 임시회
4. 제209회 임시회
5. 제210회 제2차 정례회
6. 제211회 임시회
7. 제212회 임시회
8. 제213회 임시회
9. 제214회 임시회
10. 제215회 임시회
11. 제216회 임시회
12. 제217회 제1차 정례회
13. 제218회 임시회
14. 제219회 임시회
15. 제220회 제2차 정례회
16. 제221회 임시회
17. 제222회 임시회
18. 제223회 임시회
19. 제224회 임시회



GOHEUNG COUNTY COUNCIL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 고흥군의회

의정백서 議政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제2절 제6대 후반기 본회의 운영

1. 제206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가. 집회공고 및 의사일정

1) 집회공고

제206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2012년 6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7월 2일 오전 10시에 집회함.

2) 의사일정 : 2012년 7. 2. ~ 7. 13. 〈12일간〉

<table>
<tr><th>일 시</th><th>차수</th><th>안 건</th><th>비 고</th></tr>
<tr><td>7. 2(월)
10:00</td><td>제1차
본회의</td><td>▶ 개회식
• 개 식
•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개회사
• 폐 식
▶ 의사일정
1. 제206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td><td>본회의장</td></tr>
<tr><td>13:30</td><td></td><td>◎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table><tr><th>위원회별</th><th>건수</th><th>해당실과소</th></tr><tr><td>계</td><td>7</td><td></td></tr><tr><td>총무위원회</td><td>3</td><td>주민복지과1, 재무과2</td></tr><tr><td>산건위원회</td><td>3</td><td>건설과3</td></tr><tr><td>예결위원회</td><td>1</td><td></td></tr></table></td><td>상 임
위원회실</td></tr>
</table>

일 시	차수	안 건	비 고
7. 3(화) 10:00	제2차 본회의	▶ 의사일정 1. 201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질의)의 건 •기획실 •행정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회의실
7. 4(수) 10:00	제3차 본회의	▶ 의사일정 1. 201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질의)의 건 •주민복지과 •재무과 •투자정책과 •경제유통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소회의실
7. 5(목) 10:00	제4차 본회의	▶ 의사일정 1. 201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질의)의 건 •농업축산과 •방재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종합민원실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
7. 6(금) 10:00	제5차 본회의	▶ 의사일정 1. 201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질의)의 건 •평생학습사업소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우주항공사업소	소회의실
7. 7(토) ~7. 8(일)	휴회	◉ 공휴일	
7. 9(월) ~7. 10(화)	휴회	◉ 201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상임위 심사 •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	상 임 위원회실
7. 11(월) ~7. 12(화)	휴회	◉ 201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결위 심사 •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	소회의실
7. 13(수) 10:00	제6차 본회의	▶ 의사일정 1. 201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고흥군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5. 고흥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흥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장

나. 제1차 본회의

2012년 7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5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0시 25분에 산회함.

1) 제206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06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 주요내용 : 2012. 7. 2(월) ~ 7. 13(금)【12일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201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 보 고 자 : 재무과장
- 주요내용

가) 세입 · 세출결산

(1) 일반회계

- 세입결산액 459,747백만원
- 세출결산액 381,096백만원
- 세계잉여금 78,651백만원
  - 세계잉여금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57,245백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2,275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131백만원임.

(2)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

- 세입결산액 23,332백만원
- 세출결산액 19,172백만원
- 세계잉여금 4,160백만원
  - 세계잉여금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82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53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87백만원임.

나) 기금결산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등 6종 기금의 2011년말 현재총액은 7,509백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음.

- 사회복지기금 3,110백만원
- 신청사건립기금 1,000백만원
-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 165백만원

- 재난관리기금 1,568백만원
- 식품진흥기금 63백만원
- 체육진흥기금 1,603백만원

다) 채권·채무의 결산

- 채 권
  - 2011년말 현재 채권총액은 5,512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회계 3,420백만원
  - 특별회계 2,092백만원
- 채 무
  - 2011년말 현재 채무총액은 21,558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회계 19,458백만원
  - 특별회계 2,100백만원

라) 공유재산 결산

2011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728,698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행정재산 600,693백만원
- 일반재산 128,005백만원

마) 물품결산

2011년말 현재 물품보유 총수는 533개이며 4,947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전년도말 현재액 487개 4,728백만원
- 신규취득 70개 509백만원
- 매각·폐기 24개 290백만원

바) 예 비 비

2011년 예비비 지출액은 1,122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소송 사건 관리 배상금 163백만원
- 구제역 차단 방역추진 471백만원
- 집중호우 피해응급복구 지원 209백만원
- 도양읍 축구장 조성 279백만원

사) 2011 회계연도말 재정상태(이하 재무보고서)

(1) 2011년말 우리군의 재정상태는 다음과 같음(일반 · 특별 · 기금회계 총괄)

- 총 자 산 2,040,715백만원
- 총 부 채 35,681백만원
- 순 자 산 2,005,034백만원

(2) 2011년말 총자산은 2,040,715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유 동 자 산 89,503백만원(4.39%)
- 투 자 자 산 14,563백만원(0.71%)
- 일반유형자산 135,638백만원(6.65%)
- 주민편의시설자산 175,268백만원(8.59%)
- 사회기반시설자산 1,618,928백만원(79.33%)
- 기타비유동자산 6,816백만원(0.33%)

(3) 2011년말 총부채는 35,681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유 동 부 채 5,144백만원(14.42%)
- 장기차입부채 19,646백만원(55.06%)
- 기타비유동부채 10,891백만원(30.52%)

아. 2011 회계연도말 재정운영 결과

(1) 2011년말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총 수 익 399,995백만원
- 총 비 용 292,874백만원
- 운영차액 107,121백만원

(2) 2011년말 총 수익은 399,995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자체조달수익 29,516백만원(7.38%)
- 정부간이전수익 368,536백만원(92.24%)
- 기 타 수 익 1,943백만원(0.49%)

(3) 2011년말 총 비용은 292,874백만원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공공행정 16,567백만원(5.67%)
- 공공질서및안전 2,788백만원(0.95%)
- 교 육 4,932백만원(1.69%)
- 문화및관광 8,911백만원(3.05%)
- 환경보호 18,832백만원(6.44%)
- 사회복지 65,210백만원(22.30%)

- 보　　건　　5,140백만원(1.76%)
- 농림해양수산　　76,263백만원(26.08%)
- 산업.중소기업　　1,558백만원(0.53%)
- 수송및교통　　5,757백만원(1.97%)
- 국토및지역개발　　6,272백만원(2.15%)
- 과학기술　　597백만원(0.20%)
- 기　　타　　80,046백만원(27.33%)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고흥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0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201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보고 청취 및 질의를 실시함에 따라

○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사무 처리 전반에 대한 보고와 의문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함.

■ **주요내용**

○ 출석요구기간 : 2012. 7. 3 ~ 7. 6(4일간)

○ 출 석 범 위

• 군수

• 고흥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제 안 자** : 의 장

■ **제안이유** : 201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 **주요내용** : 김옥래의원, 송경석의원, 신태균의원, 김주식의원, 송경양의원, 송인숙의원 선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06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주요내용 : 최설희의원, 배기홍의원 선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나. 제2차 본회의

2012년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11시 14분에 산회함.

1) 201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 보 고 자 : 3명(기획실장, 행정과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 질 의 자 : 10명(김옥래, 송경양, 송우섭, 김의규, 송인숙, 장세선, 송경석, 배기홍, 최설희, 신태균의원)
- 질의건수 : 21건

다. 제3차 본회의

2012년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15시 27분에 산회함.

1) 201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 보 고 자 : 6명(주민복지과장, 재무과장, 투자정책과장, 경제유통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산림과장)
- 질 의 자 : 10명(최설희, 장세선, 김옥래, 송경양, 송인숙, 송우섭, 신태균, 송경석, 배기홍, 김의규의원)
- 질의건수 : 38건

라. 제4차 본회의

2012년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15시 38분에 산회함.

1) 201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 보 고 자 : 6명(방재과,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종합민원실, 농업기술센터)
- 질 의 자 : 8명(김옥래, 김의규, 장세선, 최설희, 송경석, 송우섭, 송인숙, 송경양 의원)
- 질의건수 : 42건

마. 제5차 본회의

2012년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11시 36분에 산회함.

1) 201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 보 고 자 : 6명(평생학습사업소장,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주항공사업소장)
- 질 의 자 : 8명(송경석, 최설희, 송경양, 송우섭, 송인숙, 김옥래, 김의규, 신태균 의원)
- 질의건수 : 15건

바. 제6차 본회의

2012년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7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 17분에 산회함.

1) 201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의 검사와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친 2011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과 재무보고서를 고흥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세입 · 세출결산

(1) 일반회계

- 세입결산액 459,747백만원
- 세출결산액 381,096백만원
- 세계잉여금 78,651백만원
  - 세계잉여금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57,245백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2,275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131백만원임.

(2)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

- 세입결산액 23,332백만원
- 세출결산액 19,172백만원
- 세계잉여금 4,160백만원
  - 세계잉여금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82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53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87백만원임.

나) 기금결산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등 6종 기금의 2011년말 현재총액은 7,509백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음.

- 사회복지기금 3,110백만원
- 신청사건립기금 1,000백만원
-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 165백만원
- 재난관리기금 1,568백만원
- 식품진흥기금 63백만원
- 체육진흥기금 1,603백만원

다) 채권 · 채무의 결산

- 채 권
  - 2011년말 현재 채권총액은 5,512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회계 3,420백만원
  - 특별회계 2,092백만원
- 채 무
  - 2011년말 현재 채무총액은 21,558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회계 19,458백만원
  - 특별회계 2,100백만원

라) 공유재산 결산

2011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728,698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행정재산 600,693백만원
- 일반재산 128,005백만원

마) 물품결산

2011년말 현재 물품보유 총수는 533개이며 4,947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전년도말 현재액 487개 4,728백만원
- 신규취득 70개 509백만원
- 매각·폐기 24개 290백만원

바) 예 비 비

2011년 예비비 지출액은 1,122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소송 사건 관리 배상금 163백만원
- 구제역 차단 방역추진 471백만원
- 집중호우 피해응급복구 지원 209백만원
- 도양읍 축구장 조성 279백만원

사) 2011 회계연도말 재정상태(이하 재무보고서)

(1) 2011년말 우리군의 재정상태는 다음과 같음(일반 · 특별 · 기금회계 총괄)

- 총 자 산 2,040,715백만원
- 총 부 채 35,681백만원
- 순 자 산 2,005,034백만원

(2) 2011년말 총자산은 2,040,715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유 동 자 산 89,503백만원(4.39%)
- 투 자 자 산 14,563백만원(0.71%)
- 일반유형자산 135,638백만원(6.65%)
- 주민편의시설자산 175,268백만원(8.59%)
- 사회기반시설자산 1,618,928백만원(79.33%)
- 기타비유동자산 6,816백만원(0.33%)

(3) 2011년말 총부채는 35,681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유 동 부 채 5,144백만원(14.42%)
- 장기차입부채 19,646백만원(55.06%)
- 기타비유동부채 10,891백만원(30.52%)

아) 2011 회계연도말 재정운영 결과

(1) 2011년말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총 수 익 399,995백만원
- 총 비 용 292,874백만원
- 운영차액 107,121백만원

(2) 2011년말 총 수익은 399,995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자체조달수익 29,516백만원(7.38%)
- 정부간이전수익 368,536백만원(92.24%)
- 기 타 수 익 1,943백만원(0.49%)

(3) 2011년말 총 비용은 292,874백만원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공공행정 16,567백만원 (5.67%)
- 공공질서및안전 2,788백만원 (0.95%)
- 교 육 4,932백만원 (1.69%)
- 문화및관광 8,911백만원 (3.05%)
- 환경보호 18,832백만원 (6.44%)
- 사회복지 65,210백만원 (22.30%)
- 보 건 5,140백만원 (1.76%)
- 농림해양수산 76,263백만원 (26.08%)
- 산업.중소기업 1,558백만원 (0.53%)
- 수송및교통 5,757백만원 (1.97%)
- 국토및지역개발 6,272백만원 (2.15%)
- 과학기술 597백만원 (0.20%)
- 기 타 80,046백만원 (27.33%)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고흥군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 군민의 생활불편 및 애로사항을 현장에 찾아가 봉사함으로써 주민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군민에 대한 참 봉사 행정을 실현

○ 군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효과높은 봉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실시하는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운영을 위한 계획 및 방법을 명확히 하고 봉사분야 및 지원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지원대상

– 고흥군에 거주하는 주민,

–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은 우선하여 지원 가능

○ 이동봉사단 운영계획

– 다음 해 연중 운영계획을 전년도 12월까지 수립

○ 운영방법 및 지역

– 우선 순위지역을 정하여 읍면 대상마을을 순회하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 대상사업

– 생활환경 개선분야, 기계수리 분야, 건강증진 분야, 상담 및 서비스 분야 21개 분야를 기본적으로 운영하되 주민 불편사항 등 필요사업 발생시 추가 분야 확대 운영

○ 이동봉사단 참여

– 군수산하 공무원이 참여하여 운영하며, 필요시 유관기관 및 단체, 민간단체 또는 업체의 참여와 협조를 받아 운영

○ 이동봉사단 운영비 지원

– 예산의 범위에서 재료비 및 행사실비 지원

○ 이동봉사단 운영 성과분석 및 다음연도 운영시 개선사항 반영을 위한 성과보고회 개최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개정사유 :

○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변경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 보완

○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결정시 선심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해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무상사용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
○ 군청사(군수집무실 포함) 및 의회청사 면적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에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항목 추가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 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한 부패영향평가(2011. 5.)에 의거 자치단체 조례 개정 권고, 공유재산 무상임대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
○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에 기성대가 해당 부분 삭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으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심의회의 심의절차 없이 공유재산 편입됨
○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어 정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개정(공유재산 분류 체계 개선)
○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어 정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개정(공유재산 분류 체계 개선)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대상 구체화
•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변경승인 대상을 구체화함
○ 불법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대부료 기준 완화
• 주거용 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함)이 있는 토지에서 주거용 건물(무허가 건물포함)이 있는 토지로 하여 대부요율을 1,000분의 50이상에서 1,000분의 25이상으로 적용기준 완화
○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의 감액 조정 계수 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16조 및 제 34조의 개정으로 사용·대부료 감액 조정계수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
○ 사용료 ·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 납부 가능 금액 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5항 및 제81조 개정
(50만원 → 100만원 변경)
○ 주거용 토지에 대한 매각 기준 완화
• 일단의 토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4.30이전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일단의 토지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1.24일 이전 건물로 점 ·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변경, 무허가건물에 대한 수의계약 매각 허용

○ 공유지 개발방식의 다양화로 신탁의 종류 세분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2조 개정
  (임대형 토지신탁, 분양형 토지신탁 → 임대형 신탁, 분양형 신탁, 혼합형 신탁)

○ 청사 면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5조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
  ► 본청 청사 면적 : 9,406제곱미터 이하(군수 집무실 면적 : 99제곱미터 이하)
  ► 의회 청사 면적 : 1,787제곱미터 이하

○ 기타 상위법령 등 관계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정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사유**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의 합리화를 위해 2012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을 작성 고흥군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

■ **주요내용**

(단위 : ㎡, 백만원)

구분	재산	건수	사업내용	면적	추정가액	비 고
계					27,370	
취득	건물	1	고흥 운대 분청사기 문화관	8,625	25,000	문화관광과
	토지	106필지	운대분청사기 분화관 건림 부지 및 덤벙 분청공원조성 부지매입	314,359	570	〃
취득	건물	1	고흥 생활체육 야구장 관리동	400	1,500	문화체육 시설사업소
	토지	21필지	고흥 생활체육 야구장 조성 부지매입	21,063	300	〃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고흥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주요내용**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 및 관리
○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
○ 자전거이용안전사고 예방
○ 위원회 설치 등
■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사유 : 고흥읍 시가지의 혼잡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흥 공영주차장(주차타워)을 2012. 5. 30. 준공하여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흥군 주차장 조례를 개정코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2조 중 "노상주차장 및 노외 주차장"을 "주차장"로 개정
○ 조례 제8조 중 "노상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개정
■ 의결결과 : 원안가결

7) 고흥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법률 제10599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개정과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표기하여 정의규정에서부터 종래 도시계획에 군 계획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이 행정구역상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지역도 포함하는 시군종합계획임을 명확히 함(제2장, 제3조~5조, 제3장, 제6조 등)
○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및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에 대하여 건폐율 60%이하로 완화토록 조례에 규정함(제52조의 3)
○ 도시계획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라 도시계획등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사전 검토 및 도시계획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두도록 함(제67~70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개회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어느덧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는 지난 6월 21일 제205회 임시회의 선거를 통하여 고흥군의회 개원이래 21년의 의정사에서 볼 수 없었던 재적의원 전원 참석과 전원 투표, 그리고 만장일치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이례적이고 순조로운 원 구성을 마쳤으며, 오늘 제206회 1차 정례회 개회식과 더불어 고흥군의회 제6대 후반기 의회가 화목한 분위기와 굳건한 기조 속에서 흔들림 없는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원 여러분 모두가 나뭇가지보다 숲을 보는 혜안과 용기 있는 결단의 산물이며, 군민 모두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는 값진 결과로서 우리 군 의정사에 새롭게 기록될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이제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지방자치 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 이를 차질 없이 구현하는 일에 힘을 보태고 한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또한, 어느 한 쪽도 치우침이 없도록 부족하면 더하고, 넘어지면 세우고, 아픈 가슴은 쓰다듬어서 인정이 넘치는 이웃, 사람 다운 사람의 냄새가 나는 사회, 꿈과 희망이 들풀처럼 피어나는 고장이 되도록 각계 군민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일에도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206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군수가 제출한 201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2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 그리고 조례안을 비롯한 일반의안 등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했던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관한 보고 청취를 할 것입니다.

하반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연초에 계획하고 추진한 군정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지난해 말 업무계획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주문한 사항들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잘된 사례는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고 잘못된 점은 과감히 시정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정과 군정이 조화로운 균형 속에서 군민의 뜻에 따라 주어진 소임을 다할 때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의회와 집행부가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동안 의원님들께서는 계획한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군민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제20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가. 집회공고 및 의사일정

1) 집회공고

제20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송우섭의원 등 5인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2012년 7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2012년 8월 1일 오전 10시에 집회함.

2) 의사일정 : 2012. 8. 1(수) ~ 8. 3(금) 〈3일간〉

<table>
<tr><th>일 시</th><th>차수</th><th>안 건</th><th>비 고</th></tr>
<tr><td>8.1(수)
10:00</td><td>제1차
본회의</td><td>▶ 의사일정
1. 제20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위원 선임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td><td>본회의장</td></tr>
<tr><td>10:30</td><td></td><td>◎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
<table><tr><th>위원회별</th><th>건수</th><th>대상 실과소</th></tr><tr><td>총무위원회</td><td>4</td><td>행정과1,재무과1,
문화관광과1,보건소1</td></tr></table></td><td>상 임
위원회실</td></tr>
<tr><td>13:30</td><td></td><td>◎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심사
•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td><td>〃</td></tr>
<tr><td>8.2(목)</td><td>휴 회</td><td>◎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 심사
•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td><td>예 결
위원회실</td></tr>
<tr><td>8.3(금)
10:00</td><td>제2차
본회의</td><td>▶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고흥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흥군 우주항공축제추진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고흥군 지역보건법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5.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td><td>〃</td></tr>
</table>

나. 제1차 본회의

2012년 8월 1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5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 13분에 산회함.

1) 제20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0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 주요내용 : 2012. 8. 1(수) ~ 8. 3(금) 〈3일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2012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조정, 시급하지 않은 경비는 삭감·정리 후 채무 조기상환 및 필수적인 법정 · 의무적 경비를 반영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추경예산규모 : 38,826백만원(기정예산 396,627 → 435,453)
    - 일반회계 : 39,197백만원(기정예산 376,691 → 415,888)
    - 특별회계 : △371백만원(기정예산 19,936 → 19,565)
  - ○ 일반회계 추가세입 : 39,197백만원
    - 의존수입 : 24,095백만원(지방교부세 16,314, 재정보전금 19, 보조금 7,762)
    - 자체수입 : 15,102백만원(세외수입 15,102)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주요내용
  - 위원장 : 김주식의원
  - 간 사 : 신태균의원
  - 위 원 : 김옥래, 송경석, 송경양, 송인숙의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0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주요내용 : 김옥래, 송경석의원 선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휴회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주요내용 : 2012. 8. 2(목) 〈1일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나. 제2차 본회의

1)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2012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조정, 시급하지 않은 경비는 삭감·정리 후 채무 조기상환 및 필수적인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추경예산규모 : 48,826백만원(기정예산396,627 ⇒ 435,453)
    - 일반회계 : 39,197백만원(기정예산376,691 ⇒ 415,888)
    - 특별회계 : △371,139백만원(기정예산19,565 ⇒ 19,936)
  - ○ 일반회계 추가세입 : 39,197백만원
    - 의존수입 : 24,095백만원(지방교부세 16,314, 재정보전금 19, 보조금 7,762))
    - 자체수입 : 15,102백만원(세외수입 15,102)
- 의결결과 : 수정가결

2) 고흥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고, 별정직 시험 실시기관 및 임용절차를 명확히 하고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별정직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제도를 보환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 주요내용
  - ○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임용절차 명시
    -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 명시
    -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준용근거 마련
  - ○ 지방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 범위 명시

• 비서관 및 비서, 외국인 채용, 인사상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 기구·직제 개편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 마련

○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하여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 · 신체상의 장애 사유 삭제

○ 질병휴직 등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방법 개선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고흥군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있어, 같은 법 위반자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진단 등 다수의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행위와 질서에 대하여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과태료의 부과대상 명시

• 「지역보건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등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 「지역보건법」 제21조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명시

• 「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명시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 처분의 합리화를 위해 2012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을 작성 고흥군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

■ 주요내용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산	건수	사 업 내 용	면적	추정가액	비 고
취득	건 물	1	고흥 공용주차타워 건립	4,064	3,622	건 설 과
		1	고흥시장 현대화 사업 • 장옥신축 및 고객지원 센터 • 사업부지 내 건물 매입	2,274 883.8	6,352	경제유통과
	시설물	1	고흥시장 현대화사업 • 광장 및 거리조성	3,203		
	토 지	1	고흥시장 현대화사업 부지매입	772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제20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가. 집회공고 및 의사일정

1) 집회공고

제20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2012년 9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2012년 9월 18일 오전 10시에 집회함.

2) 의사일정 : 2012. 9. 18(화) ~ 9. 19(수) 〈2일간〉

<table>
<tr><th>일 시</th><th>차수</th><th>안 건</th><th>비 고</th></tr>
<tr><td>9.18(화)
10:00</td><td>제1차
본회의</td><td>▶ 의사일정
1. 제20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td><td>본회의장</td></tr>
<tr><td>10:30</td><td></td><td>◎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
<table><tr><th>위원회별</th><th>건수</th><th>대상 실과소</th></tr><tr><td>총무위원회</td><td>4</td><td>주민복지1,행정1,
재무1,문화관광1</td></tr></table></td><td>상 임
위원회실</td></tr>
<tr><td>9.19(수)
10:00</td><td>제2차
본회의</td><td>▶ 의사일정
1. 고흥군 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고흥군 우주항공축제추진위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계획안
4.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td><td>본회의장</td></tr>
</table>

나. 제1차 본회의

2012년 8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0시7분에 산회함.

1) 제20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0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 주요내용 : 2012. 9. 18(화) ~ 9. 19(수) 〈2일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2011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

- **제 안 자** : 송우섭의원 등 5명
- **제안이유** : 2011년도 군에서 발주 시행한 시설공사 및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견실시공 여부 등을 조사하여 시정 개선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과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기　　간 : 2012. 10. 24. ~ 10. 30.【5일간】
  - ○ 대상사업 : 2011년도 군 발주 시설공사 및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사업비 1천만원 이상인 사업
  - ○ 조 사 반 : 의원 12명(수행공무원 4명)

구 분	의　　원		수 행 공무원	조사지역
	반장	반 원		
1반	장세선	김주식, 김의규, 송경양, 송인숙	송여종 김선홍	고흥, 점암, 영남, 과역 남양, 동강, 대서, 두원
2반	송우섭	배기홍, 김옥래, 송경석, 신태균, 최설희	김영한 신상훈	도양, 풍양, 도덕, 금산 도화, 포두, 봉래, 동일

  - ○ 조사방법 : 서류 및 자료 사전검토, 대상사업 중 표본선정 현지확인조사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0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주요내용** : 송우섭의원, 신태균의원 선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다. 제2차 본회의

2012년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4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10시 8분에 산회함.

1) 고흥군 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저소득 주민 · 아동 · 노인 · 장애인 · 한부모가정 등 사회복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 내어 선도 및 상담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위원의 직무

• 고흥군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위촉함.

• 관할지역안의 저소득 주민 · 아동 · 노인 · 장애인 · 한부모가정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선도 및 상담

•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원

•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계 단체와의 협력

• 그 밖의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 사항의 지원

○ 위원의 정수

• 읍면별 각 2인으로 함.

○ 위원의 위촉

• 위원은 읍면장 추천으로 고흥군수가 위촉함

•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함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고흥군 우주항공축제추진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우주항공축제를 지역 대표 축제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2004. 2. 23. 고흥군 우주항공축제 추진위원회 조례를 제정 시행해 오고 있음.

○ 그동안 3회에 걸쳐 미비 사항을 개정하였으나 위원회 구성에 있어 고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모순되는 조항이 있으며, 업무한계 및 책임소재의 불명확과 보조금 집행에 있어 회계법령과의 상충 소지 등이 있어

○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순수 민간위원회 구성의 정착과 축제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제4조 관련) : 20인 이내의 민간인으로 구성(군수 위촉) ※ 의원, 공무원 배제

○ 사무국장 지정(제4조제3항 관련) :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여 사무를 수행토록 함.

○ 전문가 자문(제9조 관련) :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함.

○ 축제계획의 승인(제10조 관련) : 행사개최 90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함.

○ 평가보고서 제출(제11조 관련) : 축제평가보고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축제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계획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우리군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3조에 의거 군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대　　상 : 3명
- 백 영 훈(한국산업개발연구원 원장)
- 김 충 배(평화통일국민포럼 대표)
- 설 영 흥(현대자동차 부회장)

○ 일　　시 : 2012. 11. 1(예정)

○ 사　　유 : 우리군과 특별한 인연을 가진 인사로서 군 위상제고와 이미지 향상에 기여 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군 발전을 앞당기는데 큰 역할이 필요한 자로서 군민의 긍지와 사표로 삼고자 함.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의 합리화를 위해 2012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을 작성 고흥군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

■ **주요내용**

(단위 : ㎡, 백만원)

구분	재산	건수	면적	추정가액	비　　고
취득	건물	1	660	400	• 농기계임대 창고 신축 [농업기술센터]
	기계	140	-	600	• 농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 [농업기술센터]
	토지	11	34,663	18	• 사유재산(토지) 기부채납 [재무과]
처분	토지	3	19,079	576	• 구 도양중학교(폐교)매각 처분 [우주항공사업소]
	건물	5	2,027.1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제20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가. 집회공고 및 의사일정

1) 집회공고

제20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2012년 10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2012년 10월 22일 오전 10시에 집회함.

2) 의사일정 : 2012. 10. 22(월) ~ 10. 31(수) 〈10일간〉

<table>
<tr><th>일 시</th><th>차 수</th><th>안 건</th><th>비 고</th></tr>
<tr><td>10.22(월)
10:00</td><td>제1차
본회의</td><td>▶ 의사일정
1. 제20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변경 승인의 건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
4.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td><td>본회의장

기획실장</td></tr>
<tr><td>10:30</td><td></td><td>◎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
<table><tr><th>위원회별</th><th>건수</th><th>대상실과소</th></tr><tr><td>총무위</td><td>1</td><td>재무과</td></tr></table></td><td>상 임
위원회실</td></tr>
<tr><td>11:30</td><td></td><td>◎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심사
•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td><td>상 임
위원회실</td></tr>
<tr><td>10.23(화)</td><td>휴 회</td><td>◎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 심사
•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td><td>예 결
위원회실</td></tr>
<tr><td>10.23(화)</td><td>휴 회</td><td>◎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 심사
•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td><td>예 결
위원회실</td></tr>
<tr><td>10.24(수)
10:00</td><td>제2차
본회의</td><td>▶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휴회의 건</td><td>본회의장</td></tr>
<tr><td>10.25~
10.30</td><td>휴 회</td><td>◎ 2011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 권역별 조사 일정에 따라 실시</td><td></td></tr>
<tr><td>10.31(수)
14:00</td><td>제3차
본회의</td><td>▶ 의사일정
1.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 2011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td><td>본회의장</td></tr>
</table>

나. 제1차 본회의

2012년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7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0시 17분에 산회함.

1) 제20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0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 주요내용 : 2012. 10. 22(월) ~ 10. 31(수) 〈10일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2011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변경 승인의 건

- 제 안 자 : 송우섭의원 등 5인
- 제안이유 : 2011년도 군 발주 시설공사 및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승인 의결하였으나, 제209회 임시회 집회일이 연기됨에 따라 2011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변경하여 실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기간
    - • 당초 : 2012. 10. 16.(화) ~ 10. 25.(목) 【8일간】
    - • 변경 : 2012. 10. 24.(수) ~ 10. 30.(화) 【5일간】
  - ○ 대상 : 변경없음
  - ○ 방법 : 변경없음
  - ○ 조사반 편성 : 변경없음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 제 안 자 : 송우섭의원 등 5인
- 제안이유 :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며, 모범사례는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 감사기간 : 2012. 11. 19 ~ 11. 29 [9일간]

○ 감사장소 : 소회실 및 사업장 현지

○ 대상기관 :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

○ 대상사무 :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무

○ 감사방법(감사실시 주체) : 본회의(소관 위원회별 집중 실시)

○ 감사반 편성

구 분	감사위원 명단	감사보조자
본회의	• 위 원 장 : 의　장 • 부위원장 : 부의장 • 위　　원 : 김옥래, 송경석, 송우섭, 신태균, 김주식, 장세선, 김의규, 송경양, 송인숙, 최설희의원	•전문위원 서원태 •전문위원 김영한 •전문위원 송여종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2012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조정, 태풍피해 복구 및 2013년 국도비 확정사업 사전절차 이행, 필수적인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 안정적인 재정운영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추경예산규모 : 42,661백만원(기정예산 435,453 → 478,114)

• 일반회계 : 42,978백만원(기정예산 415,888 → 458,866)

• 특별회계 : △317백만원(기정예산　19,565 →　19,248)

– 의료보호 기금 : △257백만원(기정예산　2,134 →　1,877)

– 고흥지구간척사업 : △ 60백만원(기정예산　　509 →　449)

※ 재난관리 기금 : 55백만원(기정예산 1,800 →　1,855)

○ 일반회계 추가세입 : 42,978백만원

• 의존수입 : 41,491백만원(보조금 34,558　`12년 지방교부세 6,933)

• 자체수입 : 1,487백만원(세외수입 1,48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주요내용 : 6명
  - 위원장 : 김주식 의원
  - 간 사 : 신태균의원
  - 위 원 : 김옥래, 송경석, 송경양, 송인숙, 김주식, 신태균의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0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주요내용 : 장세선, 송경양의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7) 휴회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주요내용 : 2012. 10. 23(화) 〈1일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다. 제2차 본회의

2012년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0시 5분에 산회함.

1)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 안 자 : 김주식의원 등 6명
- 심사대상 : 2012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예산규모

○ 추경예산규모 : 42,661백만원(기정예산 435,453 → 478,114)

• 일반회계 : 42,978백만원(기정예산 415,888 → 458,866)

• 특별회계 : △317백만원(기정예산 19,565 → 19,248)

– 의료보호 기금 : △257백만원(기정예산 2,134 → 1,877)

– 고흥지구간척사업 : △ 60백만원(기정예산 509 → 449)

※ 재난관리 기금 : 55백만원(기정예산 1,800 → 1,855)

○ 일반회계 추가세입 : 42,978백만원

• 의존수입 : 41,491백만원(보조금 34,558 `12년 지방교부세 6,933)

• 자체수입 : 1,487백만원(세외수입 1,487)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휴회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2011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 주요내용 : 2012. 10. 25(수) ~ 10. 30(화) 〈6일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라. 제3차 본회의

1)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교환의 합리화를 위해 2012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 계획을 작성 고흥군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

■ 주요내용

(단위 : ㎡, 백만원)

구분	재산	건수	면적	추정가액	비 고
교환	군유지	1	5필지 2,970	10	• 국유재산(환경부)와 군유재산 교환 [재무과]
	국유지	1	7필지 9,187	53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2011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 **제 안 자** : 송우섭의원 등 5인
- **제안이유** : 제209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2011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 조사 결과 부실시공 여부 등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과 군민의 알 권리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조사기간 : 2012. 10. 24. ~ 10. 31.【5일간】
  - ○ 조사대상 : 2011년도 군 발주 시설공사 및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사업비 1천만원 이상인 사업
  - ○ 조사방법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 확 인 반 : 2개반 16명
  - ○ 지적사항 : 19건(별지참조, 제3절 행정사무조사)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제21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가. 집회공고 및 의사일정

1) 집회공고

제21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2012년 11월 6일 집회 공고를 하고 2012년 11월 12일 오전 10시에 집회함.

2) 의사일정 : 2012. 11. 12(월) ~ 12. 14(금) 〈33일간〉

<table>
<tr><th>일 시</th><th>차 수</th><th>안 건</th><th>비 고</th></tr>
<tr><td>11.12(월)
10:00</td><td>제1차
본회의</td><td>◎ 개 회 식
• 개 식
•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개회사
• 폐 식

▶ 의사일정
1. 제21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td><td>본회의장

운 영
위원장</td></tr>
<tr><td>10:30</td><td></td><td>◎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table><tr><th>위원회별</th><th>건수</th><th>비 고</th></tr><tr><td>계</td><td>6</td><td></td></tr><tr><td>총무위</td><td>4</td><td>기획실1,재무과2, 문화관광과1</td></tr><tr><td>산건위</td><td>2</td><td>환경산림과2</td></tr></table></td><td>상 임
위원회실</td></tr>
<tr><td>14:00</td><td></td><td>▶ 의사일정
4.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기 획 실 ■ 주민복지과 ■ 행 정 과</td><td>소회의실</td></tr>
<tr><td>11.13(화)
10:30</td><td>제2차
본회의</td><td>▶ 의사일정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재 무 과 ■ 투자정책과 ■ 경제유통과
■ 문화관광과 ■ 환경산림과</td><td>〃</td></tr>
<tr><td>11.14(수)
10:00</td><td>제3차
본회의</td><td>▶ 의사일정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해양수산과 ■ 건 설 과 ■ 방 재 과
■ 종합민원실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td><td>〃</td></tr>
<tr><td>11.15(목)
10:00</td><td>제4차
본회의</td><td>▶ 의사일정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보 건 소 ■ 평생학습사업소 ■ 우주항공사업소
■ 농업축산과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 휴회의 건</td><td>〃</td></tr>
</table>

일 시	차 수	안 건	비 고
11.16(금)	휴회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	
11.17(토) ~ 11.18(일)	〃	◎ 공휴일	
11.19(월)	휴 회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상임위별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	상 임 위원회실
11.20(화)	〃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상임위별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	〃
11.21(수)	〃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상임위별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	〃
11.22(목)	〃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상임위별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	〃
11.23(금)	〃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상임위별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	〃
11.24(토) ~ 11.25(일)	〃	◎ 공휴일	〃
11.26(월)	〃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상임위별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	〃
11.27(화)	〃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상임위별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	〃
11.28(수)	휴 회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상임위별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	상 임 위원회실
11.29(목)	〃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상임위별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	〃
11.30(금) 10:00	제5차 본회의	▶ 의사일정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본회의장
12.01(토) ~ 12.02(일)	휴 회	◎ 공휴일	

일 시	차 수	안 건	비 고
12.03(월) ~ 12:05(수)	〃	◉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상임위 심사 ■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심사	상 임 위원회실
12.06(목) ~ 12:07(금)	〃	◉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결위 심사 ■ 실과소 심사 및 계수조정	예 결 위원회실
12.08(토) ~ 12.09(일)	〃	◉ 공휴일	
12.10(월)	휴회	◉ 2013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예결위 심사 ■ 실과소 심사 및 계수조정	예 결 위원회실
12.11(화) 10:00	제6차 본회의	▶ 의사일정 1. 군정질문·답변의 건	본회의장
12.12(수) 10:00	제7차 본회의	▶ 의사일정 1. 군정질문·답변의 건 2. 휴회의 건	〃
12.13(목)	휴회	◉ 상임위 활동	
12.14(금) 10:00	제8차 본회의	▶ 의사일정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고흥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고흥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고흥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흥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본회의장

나. 제1차 본회의

2012년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을 가졌으며, 3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0시 14분 정회후, 13시 59분에 속개하여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실시하고 16시 35분에 산회함.

1) 제21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1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 주요내용 : 2012. 11. 12(월) ~ 12. 14(금) 〈33일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제 안 자 : 송우섭의원 등 5인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고흥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제210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군정질문·답변을 실시함에 있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 전반에 대한 책임있는 보고와 답변을 듣기 위함.
- 주요내용
  - ○ 출석요구기간 : 15일간
    - 2012. 11. 12. ~ 11. 15.(4일간)
    - 2012. 11. 19. ~ 11. 29.(9일간)
    - 2012. 12. 03. ~ 12. 04.(2일간)
  - ○ 출석범위
    - 군수
    - 고흥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1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주요내용 : 김주식의원, 김의규의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보 고 자 : 3명(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행정과장)
- 질 의 자 : 9명(송경석, 신태균, 김주식, 송우섭, 송경양, 송인숙, 김의규, 장세선, 최설희의원)
- 질의건수 : 25건

개회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 하고, 또 다가오는 2013년도 한 해를 알차게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오늘 제210회 제2차 정례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진정한 지방자치를 염원하는 열정으로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해 오신 동료 의원님들과 군민의 공복으로서 군정 수행에 매진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유난히도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연초부터 유럽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성장 둔화와 지역경기 침체, 그리고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분열 등의 난맥상을 겪었습니다.
또한 연이어 찾아온 3차례의 태풍으로 땀 흘려 가꾸어 놓은 농작물과 시설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 야속한 자연재난 앞에 허탈한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은 이 모든 아픔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사회통합의 걸림돌 앞에서는 화합을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하였으며, 거대한 자연재난 앞에서는 위기관리 능력을 키워 피해의 최소화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비갠 후에 대지는 더욱 굳어지며 지진 난 땅에도 꽃은 피어나듯이 이 모든 시련들을 교훈삼아 고흥발전과 군민화합의 밑거름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사회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련과 시행착오가 없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군민들은 슬기롭게 극복하여 왔으며 작금의 현실 또한 희망을 꽃피우기 위한 커다란 몸짓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적극적인 노력이 더더욱 요구되는 시기라 할 것입니다.

흔히들 민주주의의 꽃을 지방자치라고 말합니다.
열악한 지방재정과 제도적 불완전 등으로 완전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의정과 군정을 바라보는 군민들의 눈높이가 성숙했기에 이만큼 발전해 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정과 군정의 중심에는 군민들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의 조화로움 속에 협력을 다져 고흥발전과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가일층 분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를 통해 금년도 의정과 군정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합니다. 또한 내년도에 추진할 각종 사업을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알차게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만큼 이번 정례회의 중요성을 잊지 마시고 군민 중심의 생산적인 살림살이가 짜여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제2차 정례회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금년도 어느덧 절기상 입동이 지나고 옷깃을 여미게 하는 초겨울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군민 모두가 겨우살이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시어 훈훈하고 따뜻한 겨울을 나시기를 희망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제2차 본회의

2012년 11월 13일 10시 29분에 개의하여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실시하고 15시 13분에 산회함.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보 고 자 : 5명(재무과장, 투자정책과장, 경제유통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산림과장)
- 질 의 자 : 9명(김옥래, 김주식, 송경석, 김의규, 송인숙, 신태균, 송우섭, 최설희, 송경양의원)
- 질의건수 : 36건

라. 제3차 본회의

2012년 11월 14일 9시 58분에 개의하여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실시하고 15시 25분에 산회함.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보 고 자 : 6명(해양수산과장, 건설과장, 방재과장, 종합민원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 질 의 자 : 10명(신태균, 김의규, 김주식, 송경양, 송인숙, 장세선, 김옥래, 송경석, 송우섭, 최설희의원)
- 질의건수 : 44건

마. 제4차 본회의

2012년 11월 15일 9시 58분에 개의하여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실시하고 15시 20분에 산회함.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보 고 자 : 5명(농업축산과장, 보건소장, 우주항공사업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 질 의 자 : 8명(송경석, 최설희, 송인숙, 송우섭, 신태균, 김의규, 송경양, 김옥래의원)
- 질의건수 : 40건

2) 휴회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주요내용 : 2012. 11. 16(금) ~ 11. 29(목) 〈14일간〉 본회의 휴회
- 의결결과 : 원안가결

바. 제5차 본회의

2012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0시 24분에 산회함.

1) 2013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 보 고 자 : 고흥군수
- 주요내용 : 별지참조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주요내용
  - ○ 위원장 : 김주식의원
  - ○ 간 사 : 신태균의원
  - ○ 위 원 : 김옥래, 송경석, 송경양, 송인숙의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휴회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주요내용 : 2012. 12. 1(토) ~ 12. 10(월) 〈10일간〉 본회의 휴회
- 의결결과 : 원안가결

시정연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금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1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올 한 해도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이끌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여느 지자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올 한 해는 유난히도 어렵고 참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100년만의 대 가뭄과 세 차례의 연이은 태풍, 그리고 적조피해 등으로 우리 농어업인들에게 큰 시름과 슬픔을 안겨줬습니다. 저 또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군민 여러분의 상심어린 눈빛을 보면서 그저 발만 동동 굴리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조속한 피해복구와 군민생활 안정을 위해 군 예비비를 투입하여 피해보상에 적극 나섰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도 모든 행정력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 역시 희망을 잃지 않고 혼신을 다해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항상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힘을 모아 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비전은 오늘과 내일을 연결해 주는 희망의 다리입니다.
지금까지'꿈을 현실로! 하이고흥, 해피 고흥'의 비전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우리 모두의 꿈을 향한 도전과 열정은 계속 이어져, 군정 모든 부분에서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먼저 우주항공 분야는 상당한 진전을 보였습니다.
최근 준공한 우주발사전망대와 더불어 기 조성된 나로우주센터, 국립 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고흥 우주천문과학관 등 지금까지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국비 4000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2016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시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지난 8월 개관한 「포스코 수련원」은 투자제안부터 시설 개원까지 10개월 만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등 투자유치의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현재 추진 중인 각종 투자 의향 기업들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노력을 더욱 배가하겠습니다.

작년 말 개통한 「거금대교」는 인근의 국립 소록도병원의 역사 유물과 함께 우리 군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는 등 집적화되고 있는 우주체험 교육시설과 더불어 관광객 유인 효과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관광을 넘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축제 분야에선 '고흥의 재발견'이라 할 만큼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6년 만에 재개된 「고흥우주항공축제」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10만여 명의 인파가 행사장을 가득 메우는 등 결과로써 입증되었습니다. 「제2회 고흥 선정머드림픽」은 갯벌과 스포츠를 접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작지만 알찬 축제'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제49회 대종상단편영화제」는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1만 5000여 명의 관람객이 운집하는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처럼 '우주, 갯벌, 영화'를 바탕으로 한 고흥의 이색적인 축제 아이콘을 더욱 정제하고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우리 군 역점시책인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프로젝트'달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 5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가 준공되면서, 고흥 농산물의 규모화 · 표준화를 통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더불어 전국 지자체 중 농수축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최다로 확보하였습니다.
지리적 표시제 등록은 브랜드 가치상승을 이끌고 인지도 제고와 판매증가로 이어져 고흥 농수산물 전체 이미지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가공·유통 시설의 대폭적인 지원과 다각적인 마케팅 노력은 10월 말 현재 고흥 농수산물 수출액, '3000만 달러 돌파'라는 값진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전 5000'조기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진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 위상을 높이고 대내외적인 힘을 충전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상생발전과 공동 협력을 위하여 인접 지자체인 '보성군'을 시작으로 '강남 교육지원청', '부산외국어 대학교'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일본국 가시마시와는 십수 년간 이어오던 인적교류를 경제적 영역까지 확대하였으며, 중국 동흥시와는 경제, 문화, 관광, 교육 등 각 분야별로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러한 상호협력 토대 마련은 지역발전의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최남단인 우리 지역에서 '통일기금 모금 범국민 성지 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통일기금 모금운동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그 출발점에'고흥'이 있음을 알렸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 해의 성과를 얘기할 때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대외기관의 평가 결과로 말해 줍니다.
역대 최고의 성적표를 받았던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투자유치, 복지, 농업, SOC 등 모든 분야에서 값진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제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기업환경개선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제2회 대한민국 지자체 생산성 대상'에서는 작년에 이어 '으뜸행정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고흥석류는 농어촌박람회에서 '3년 연속 우수 상품'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국토해양부가 주최하는 '전국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되었으며,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국가 암 관리 사업 평가대회'에서는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금년은 매우 영광스러운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환경 100인 선정'과 '오바마 미(美) 대통령 봉사상'에 이어, '제17회 지식경영인대상'까지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항상 군정 발전을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한결 같은 사랑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새기면서,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분골쇄신(粉骨碎身)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민선 5기」도 벌써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흥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군민 모두가 잘사는 고흥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노력하였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있었고 시련과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든든한 후원자이자 조력자의 역할을 해 주신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이 계셨기에 '위기를 기회로', '도전을 성공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현재는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말로 대변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군민 행복지수를 높이는 첫걸음이자, 최종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를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역의 부 창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며, 내년도에도 변함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도양일반산업단지」는 조선경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7월 '고흥 해양플랜트 전용산단'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수요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고흥청정식품단지」는 100% 분양을 목표로 투자 의향기업과 협의 중에 있으며, 「제2농공단지」도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현재 6개 업체가 입주된 「고흥 산업형특화단지」는 「미래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창업보육실 입주기업의 본 공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교육청 임해수련원」은 토지매입 및 인허가 처리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흥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등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체육행사와 함께 전지훈련팀 유치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둘째, 우주항공 산업 집적화와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에 집중하겠습니다.
'나로호 발사'의 실패와 연기를 거듭하는 동안,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국가 차원에서 더욱 강조되면서 우리 군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에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비행시험센터」, 「고흥 우주랜드」, 「나로우주센터 2단계 확장사업」 등이 확정돼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고흥 과학로켓개발 연구센터」는 국가 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국립 고흥청소년 우주체험센터 확장 사업」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파일럿 플랜트 건립을 완공한 「해조류 바이오 에탄올 사업」은 본격 시험생산에 돌입하고, 부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사료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관광 컨테츠 개발로 고흥의 가치와 격을 높이겠습니다. 먼저 「고흥 덤벙분청 문화관 건립 및 공원 조성」은 국비 확보를 통해 제반 절차를 이행하겠으며, 「고흥군 설화문학 자료 집성」, 「목일신 동요작가 100주년 기념사업」, 「남도문화전 고흥 특별전 기획 전시」 등 지역의 문화유산을 재조명하는 다각적인 사업들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해창만 간척지 공원화 사업」,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 「마복산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해양레저 친수공간 조성」 등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흥 우주항공축제」, 「고흥 선정 머드림픽」, 「대종상단편영화제」 등 각종 축제 행사는 지역경제와 연계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목표달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전체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총소득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 작목별로 데이터베이스화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제는 사업을 위한 사업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어떻게 집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양지차(天壤之差)로 달라집니다. '비전 5000'은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시작하였고, 그 기조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고흥군유통 주식회사는 산지유통 경영체로 기능을 강화하고, 농수축산물 브랜드화 및 지리적 표시제 등록은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우량씨마늘 생산단지 조성」, 「조사료 생산 특구단지 조성」, 「실버 복지 농어촌산업 육성」, 「기능성 블랙농산물 생산 및 산업화 육성」 등 다양한 신규시책도 함께 펼쳐나가겠으며, 농어촌체험 마을과 대도시 초등학교 간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농림어업외 소득증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SOC 등 지역 정주기반을 착실히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국책사업인 「고흥 나들목 설치 사업」은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고흥-여수 간 연륙연도교」, 「고흥-봉래 간 국도 15호선 건설」, 「녹동항 정비」 등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최종 확정된 「도양읍 소재지 종합정비」, 「영남면 금사권역 종합정비」, 「동일면 사동마을 소득창출 사업」 등은 향후 5년 동안 144억 원이 투입되어 연차적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또한 추진 중인 「고흥읍 소도읍 육성」, 「과역면 소재지 종합정비」, 「도화면 소재지 종합정비」 등도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생활과 밀접한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주민 활용도가 높은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복지는 소외된 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들이 다함께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삶의 기본이며 고흥군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33.7%를 차지할 만큼 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 복지'를 군정의 최우선으로 삼고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지역에서 '촛불 화재사건'이라는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자리를 빌려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절대 재발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군민복지 분야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진정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시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군민복지 인권조례'도 제정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고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더 노력하고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흥 새마을 정신실천운동을 범군민 정신문화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고흥군은 그동안 우주항공 및 관광 인프라 확충, 농수특산물의 인지도 상승 등으로 관광객의 수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인 군 이미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결실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성숙된 군민의식, '참 고흥인'의 진정한 면모를 보여줄 때입니다.
미소와 감동이 있는 고흥, 정결하고 깨끗한 고흥의 모습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본 운동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금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국내 경기침체가 더 심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국비 확보가 그리 녹록치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군민과 고통을 분담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한 목소리를 낸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일념 하에 의회에서는 '5년 연속 의정비 동결'이라는 결단을 보여주셨으며, 집행부에서도 군민 여러분의 귀중한 세금을 단 한 푼도 헛되이 쓰는 일이 없도록 내년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우선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 이행을 위하여 내년도 투자사업비를 전액 반영하였으며, 2013년도 확정된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더불어 경상예산은 대폭 절감하고 사업예산은 증액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전 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읍면별로 주민설명회도 가졌습니다.
알뜰하고 튼실한 예산이 되도록 '보다 꼼꼼하게 살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금년대비 4.8% 증가한 415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005억 원으로 6.3%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151억 원으로 24.3%가 줄었습니다.
분야별로는 투자유치와 문화·관광 등에 237억 원, 지역인프라 확충 등에 535억 원, 농수축산업 경쟁력 향상 등에 1181억 원, 사회복지 향상 등에 675억 원, 환경개선 및 보건증진 등에 510억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금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고흥 발전'이라는 하나 된 목표 아래, 군정 모든 부분에 걸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공 패러다임을 열어가면서 다가오는 2013년도는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이 결실을 맺는 '완숙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정을 수행하다 보면 수많은 결정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교환과 공론화는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떠나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은 그 어떤 경우라도 존중되어야만 합니다.
'틀리다'가 아닌 '다르다'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한다면 더 큰 성공의 열매가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냅시다!
누구하나 지역의 발전을 염원하고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고흥 발전을 위해 저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 부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도전과 역경을 극복해 왔듯이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길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고흥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항상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고흥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2. 11. 30.

고 흥 군 수 박 병 종

바. 제6차 본회의

2012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고 15시 16분에 산회함.

1) 군정질문 및 답변

- 질 문 자 : 4명(김옥래의원, 송경양의원, 최설희의원, 장세선의원)
- 답 변 자 : 6명(해양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축산과장, 경제유통과장, 환경산림과장, 문화관광과장)
- 질문건수 : 22건
- 질문내용 : 별지참조(제4장 군정질문 및 답변)

사. 제7차 본회의

2012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고 12시 3분에 산회함.

1) 군정질문 및 답변

- 질 문 자 : 2명(신태균의원, 송우섭의원)
- 답 변 자 : 4명(경제유통과장, 고흥군유통(주)대표, 농업축산과장, 투자정책과장)
- 질문건수 : 6건
- 질문내용 : 별지참조(제4장 군정질문 및 답변)

2) 휴회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상임위원회 활동
- 주요내용 : 2012. 12. 13(목) 본회의 휴회
- 의결결과 : 원안가결

아. 제8차 본회의

2012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건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0시 26분에 산회함.

1) 2013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 확정으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주요내용

○ 총규모 : 415,629백만원('12당초예산 396,627백만원의 4.8% 증)

• 일반회계 : 400,524백만원('12당초예산 376,691백만원의 6.3% 증)

세 입 (재정자립도 : 10.2%)	
• 자체수입 : 40,784백만원(10.2%)	
– 지 방 세 : 14,730백만원(3.7%)	
– 세외수입 : 26,054백만원(6.5%)	
• 의존수입 : 359,740백만원(89.8%)	
– 지방교부세 : 196,285백만원(49.0%)	
– 보 조 금 : 160,455백만원(40.0%)	
– 재정보전금 : 3,000백만원(0.8%)	

세 출 (성질별)		
• 일반공공행정	:	19,457백만원(4.8%)
• 공공질서 및안전	:	1,278백만원(0.3%)
• 교육	:	2,639백만원(0.6%)
• 문화및관광	:	20,997백만원(5.2%)
• 환경보호	:	44,360백만원(11.1%)
• 사회복지	:	67,480백만원(16.9%)
• 보건	:	6,684백만원(1.7%)
• 농림해양수산	:	118,145백만원(29.5%)
• 산업·중소기업	:	2,710백만원(0.7%)
• 수송및교통	:	13,847백만원(3.5%)
• 국토및지역개발	:	39,684백만원(9.9%)
• 예비비	:	4,482백만원(1.1%)
• 기타	:	58,761백만원(14.7%)

• 특별회계(9개) : 15,104백만원(`12당초예산 19,936백만원의 24.27% 감)

• 기 금(6개) : 10,328백만원(`12 당초예산 9,021만원의 14.5% 증)

■ 2013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 총 삭감건수 : 30건, 삭감액 : 1,813,050천원

(단위 : 천원)

운영위원회별	위원회 삭감		예결위 최종조정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47	△6,319,150	30	△1,813,050	
의회운영위원회	2	12,240	–	–	
총 무 위 원 회	18	△1,524,750	12	△730,750	
산업건설위원회	27	△4,794,400	18	△1,082,300	

○ 삭감액 대책 : 예비비 등으로 조정

■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부서 및 항목 변경 등

○ 부서·세부사업(세세항) 변경

(단위 : 천원)

소 관	예산안 페이지	집행부안			수정안		
		세부사업	내역	예산액	소관	세부사업	예산액
		해	당	없	음		

○ 목변경 및 내역변경

(단위 : 천원)

소 관 실 과	예산안 페이지	세부사업	집행부안		수 정 안		
			목	예산액	목	예산액	부기변경
건설과	461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401	18,000	402	18,000	포두 송산배드민턴장 화장실 신축
〃	461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401	10,000	402	10,000	포두 서초마을회관 방수
〃	462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401	10,000	402	10,000	영남 의용소방회관 정비
〃	463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401	10,000	402	10,000	대서 남당마을회관 보수
〃	463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401	13,000	402	13,000	두원 중앙경로당 수리

○ 부기변경

(단위 : 천원)

소 관	예산안 페이지	과 목		예산액	부기내역	
		편성목	통계목		집행부안	수정안
방재과	488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20,000	과역 석봉천 정비	과역 봉촌 배수로 정비
읍·면	744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20,000	동강 매곡 배수로	동강 당곡 배수로

○ 증 액

(단위 : 천원)

소 관	예산안 페이지	회계	편성목	내 용	집행부안	증액
의회 사무과	139	일반회계	205 의회비	동부권 시군의회 의장회 출연금	-	2,000
기획실	158	일반회계	801 예비비	일반회계 예비비	4,481,799	1,811,050

■ **의결결과** : 수정가결

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3회계연도 고흥군 각종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고흥군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금운용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명	'12년도말 현재액ⓐ	'13년도 기금운용계획		'13년도말 현 재 액 ⓓ=ⓐ+ⓑ-ⓒ	증△감 ⓓ-ⓐ
		수입ⓑ	지출ⓒ		
6건	8,652,416	1,675,101	369,976	9,957,541	1,305,125
사 회 복 지 기 금	3,120,258	95,500	40,000	3,175,758	55,500
신 청 사 건 립 기 금	2,039,608	1,083,143	0	3,122,751	1,083,143
체 육 진 흥 기 금	1,702,514	152,680	55,000	1,800,194	97,680
재 난 관 리 기 금	1,644,578	161,501	94,350	1,711,729	67,151
재 활 용 품 판 매 기 금	80,104	177,277	180,626	76,755	△3,349
식 품 진 흥 기 금	65,354	5,000	0	70,354	5,000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고흥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고흥군의 위상과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활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흥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

■ 주요내용

○ 홍보대사의 주요 임무

- 고흥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 농·수·축산물 및 지역특산품 등 브랜드 홍보활동
- 지역축제 홍보 등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홍보활동
- 그밖에 군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홍보대사의 위촉

- 고흥군수가 위촉
- 군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 그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홍보대사의 보상

-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
- 다만, 회의참석 및 활동 여비 등 필요 실비 보상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고흥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수수료 납부 수단인 종이수입증지 사용 불편 및 위변조 등 비리대책의 일환으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 시 전자수입증지를통하여 표시 발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고흥군 수입증지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민원 편의제공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사용 규정 신설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발급하는 민원서류에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규정 신설
• 전자수입증지의 이미지 모양은 새마을 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함
○ 무인민원발급 및 지방세시스템 사용 규정 신설
• 무인민원발급기 및 지방세시스템의 사용에 대한 수수료 제외와 수입금의 정산에 대한 항목을 추가함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민원 편의 제공
○ 법령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수수료중 조례에 미반영된 민원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함
• 「어선법」 개정으로 어선검사관련 수수료를 정한 「어선의등록등에관한 수수료 규칙」 이 「어선의 건조허가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으로 전부개정
• 수산업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중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 에 따른 수수료가 누락되어 추가
■ 주요내용
○ 전자화폐 ·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 징수가능 근거 마련
•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일부개정 (어선법 제39조, 수산업법 제94조에 의거 추가 신설)
• 어선건조발주허가 및 변경허가신청 1,000원(어선법 제39조)
• 어선개조발주허가 및 변경허가신청 500원(어선법 제39조)
• 어선등록 및 변경등록신청 1,500원(어선법 제39조)
• 선적증서(등록필증)재발급 500원(어선법 제39조)
•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 2,000원(수산업법 제94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고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11.3.29)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11.10.10)에 따른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 시달('12.3.7)

○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12.7.5)에 따른 군 조례 전부 개정

○ 상위 법령 및 도 조례 개정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 전부개정하여 아름다운 경관문화 조성과 옥외광고물 관리에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추가 및 간판의 외국어 병기 등

• 조례에서 추가로 정하는 건물의 용도를 간판 수요가 많은 판매시설, 숙박시설을 포함

• 간판은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도록 규정

○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하는 근거 신설

• 그동안 옥외광고협회에 위탁,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던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사이버교육 이수시 교육수료로 인정하는 근거 신설

○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근거 신설

•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옥외광고 전수조사 후 요건구비 광고물 양성화조치, 법령개정 등에 따른 기 설치 광고물의 수수료 감면근거 신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절차 등 신설

•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주민협의회 업무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 의결결과 : 원안가결

7) 고흥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쓰레기 종량제 시행이후 봉투 판매가격이 유사 공공요금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현실화되지 못하여 청소재정자립도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어

○ 봉투가격 인상에 따른 주민부담율 최소화를 위하여 연도별 점진적 인상(3%이하) 및 현실에 맞는 봉투가격 산출을 위한 산정방법 개정

○ 행정안전부 운전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대책" 추진에 따른 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법규 정비 협조 요청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인상

(단위 : 천원)

구 분	2012 현재	2013 시행	2014 시행	2015 시행	2016 시행	2017 시행	2018 …
5 ℓ	50	70 (20)	70	70	90 (20)	90	
10 ℓ	90	110 (20)	110	110	140 (30)	140	
20 ℓ	170	170	210 (40)	210	210	260 (50)	
50 ℓ	410	410	410	450 (40)	450	450	

○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의 산정방법 제시

• 산정방법 : ℓ 당 처리비용 × 봉투용량(ℓ) × 주민부담율(목표치%) + 봉투제작비 + 판매수수료

○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조정(안 별표9)

• 현행 : 3만원 ⇒ 개정 : 5만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8) 고흥군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토록 규정

○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누락된 위원회 구성,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효율적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심의위원회 구성 : 7명

– 위원장 : 부군수

- 위　원 : 기획실장, 환경산림과장, 푸른고흥21협의회장, 고흥군새마을부녀회장, (사)고흥군새마을회장, 전국주부교실 고흥군지회장

○ 위원회의 기능(심의) 신설
- 기금의 운영계획, 기금의 결산
-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기금 관리 ·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

○ 위원회의 회의
- 정기회 및 임시회 구분(정기회:년2회, 임시회:수시)
-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의결결과** : 원안가결

9)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운영장

■ **제안이유**

○ 2012년도에 집행기관에서 추진했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예산집행 상황 등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채택,

○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개선하도록 하는 등 조치 결과를 보고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감사기간 : 2012. 11. 19. ~ 11. 29.【9일간】

○ 감사범위 : 군정업무 전반(감사대상기간 : 2011. 11. 01. ~ 2012. 10. 31.)

○ 감사방법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감사대상기관 :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

○ 주요 지적사항 : 32건

■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제21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가. 집회공고 및 의사일정

1) 집회공고

제21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송우섭의원 등 5인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2012년 12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2012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집회함

2) 의사일정 : 2012. 12. 20(목) ~ 12. 24(월) 〈5일간〉

<table>
<tr><th>일 시</th><th>차수</th><th>안 건</th><th>비 고</th></tr>
<tr><td>12.20(목)
10:00</td><td>제1차
본회의</td><td>▶ 의사일정
1. 제21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td><td>본회의장

기획실장</td></tr>
<tr><td>10:30</td><td></td><td>◎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
<table><tr><th>위원회별</th><th>건수</th><th>대상 실과소</th></tr><tr><td>총무위원회</td><td>9</td><td>기획실1,주민복지2,행정과4,
재무과1,종합민원실1</td></tr></table></td><td>상 임
위원회실</td></tr>
<tr><td>13:30</td><td></td><td>◎ 2012년도 제3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상임위 심사
•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td><td>〃</td></tr>
<tr><td>12.21(금)</td><td>휴 회</td><td>◎ 2012년도 제3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결위 심사
•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td><td>예 결
위원회실</td></tr>
</table>

일 시	차수	안 건	비 고
12.22(토) ~ 12.23(일)	휴회	◉ 공휴일	
12.24(월) 10:00	제2차 본회의	▶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고흥군 영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고흥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고흥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흥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8. 고흥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흥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0.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나. 제1차 본회의

2012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5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0시 9분에 산회함.

1) 제21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11회 임시회 회기결정
- 주요내용 : 2012. 12. 20(목) ~ 12. 24(월) 〈5일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2012년 제2회추경예산 확정이후 태풍「산바」피해복구비 등 보조금 정리·조정 및 법정·필수경비 반영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추경예산규모 : 16,691백만원(기정예산 478,114 → 498,805)
    - 일반회계 : 15,973백만원(기정예산 458,866 → 474,839)
    - 특별회계 : 718백만원(기정예산 19,248 → 19,966)

○ 일반회계 추가세입 : 15,973백만원

• 의존수입 : 14,959백만원(지방교부세 6,828, 보조금 8,131)

• 자체수입 : 1,014백만원(세외수입1,01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주요내용

○ 위원장 : 김주식의원

○ 간 사 : 신태균의원

○ 위 원 : 6명(김옥래, 송경석, 신태균, 김주식, 송경량, 송인숙의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1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주요내용 : 송인숙의원, 최설희의원 선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휴회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주요내용 : 2012. 12. 21(월) 〈1일간〉 본회의 휴회

■ 의결결과 : 원안가결

다. 제2차 본회의

2012년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0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0시14분에 산회함.

1)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2012년 제2회추경예산 확정이후 태풍「산바」피해복구비 등 보조금 정리 · 조정 및 법정 · 필수경비 반영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추경예산규모 : 16,691백만원(기정예산 478,114 → 498,805)

• 일반회계 : 15,973백만원(기정예산 458,866 → 474,839)

• 특별회계 : 718백만원(기정예산 19,248 → 19,966)

○ 일반회계 추가세입 : 15,973백만원

• 의존수입 : 14,959백만원(지방교부세 6,828, 보조금 8,131)

• 자체수입 : 1,014백만원(세외수입1,014)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고흥군 영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대종상단편영화제 추진과 관련하여 대종상영화제 역사관 건립 유치 등 영상문화 진흥에 필요한 영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내외

• 위원장 ·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은 영상업무, 문화·예술 업무를 관장하는 실과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고흥군의회 의원, 영화 전문가, 연예인, 교수, 지역 내 기관 · 사회 단체장 등 군수가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함.

○ 위원회의 기능

• 지역 내 국내 · 외 영상물 촬영 · 유치 지원

• 지역의 영상문화 · 교육 ·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 영화제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

• 기타 주요 영상 업무 및 사업에 관해 군수가 자문을 요하는 사항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고흥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 노인 · 장애인들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공중목욕장에 대하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및 지원 근거 마련

○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제37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57조

■ 주요내용

○ 공중목욕장 설치

• 군수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목욕장이 없는 면 단위 지역에 설치

○ 운영주체

• 공중목욕장은 군직영 또는 공중목욕장시설 보조사업자가 운영함. 다만, 군 직영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지역 실정에 따라 위탁 관리 가능

○ 공중목욕장 이용대상

• 고흥군에 주소를 둔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다만 노인 ·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일반인 이용 가능.

○ 운영비 지원

• 군수는 공중목욕장시설 보조사업자에게 운영비 일부를 지원

○ 이용료 징수

• 군수 또는 수탁자 · 보조사업자는 목욕장을 이용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 별표2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

○ 운영위원회 구성

• 목욕장 소재 면별로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목욕장이 소재한 면장이 됨.

• 위원은 다음 각호(별첨)의 자 중에서 목욕장이 소재한 면장이 위촉함.

○ 위탁운영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직영대상 목욕장 시설에 대하여 목욕장이 위치한 면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단체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목욕장 운영비는 목욕장 사용료,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목욕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수탁자 선정

•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공유재산의 사용

•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은 「고흥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업무의 위임

• 이 조례중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욕장 소재지 관할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고흥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참전유공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 참전의 명예를 높이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과 참전유공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격려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인상 지원

• 참전명예수당 : 1인당 /월 20,000원 ⇒ 30,000원

• 유공자사망위로금 : 1인당 / 150,000원 ⇒ 200,000원

○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범위 확대

• 무공수훈자 : 미지급(당초) ⇨ 지급(2013년)

○ 참전유공자 신상변동(사망, 관외전출 등)으로 인한 지급 중지에 대해 복지관련 수당 지급 기준(예)적용

• 복지관련 지원금이 대부분 사망 월까지 지급 :예)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기초노령 연금 등

※ 개정전 : 명예수당 중지는 사유발생 해당 월의 10일을 기준으로 하고, 11일 이후 중지사유 발생시는 해당 월까지 지급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우리군 행정여건 변화 및 부서 간 합리적 인력배치를 위한 직무분석(조직진단)이 완료됨에 따라 실과소·읍면의 사무를 재정비하여 군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혁신하고자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

■ 주요내용

▶ 담당 신설·통폐합 – 증 3, 감 3

○주민복지과 : 5담당 ⇨ 6담당 (증 1)

• 희망복지지원팀 ⇨ 희망복지지원담당 (신설)

○행정과 : 5담당 ⇨ 4담당 (감 1)

• 서무담당 (서무+공무원단체 통폐합)

○투자정책과

• 조선산업지원담당 ⇨ 산단지원담당(명칭변경)

○농업축산과 : 5담당 ⇨ 6담당 (증 1)
• 가축위생 담당 (신설)
○ 종합민원실 : 5담당 ⇨ 6담당 (증 1)
• 복합민원담당 2담당 분리 ⇨ 민원행정담당, 복합민원담당
○ 우주항공사업소 : 5담당 ⇨ 3담당 (감 2)
• 우주항공 담당 (우주항공 + 우주과학 통폐합)
• 간척지관리 담당 (간척지관리 + 간척지 시설 통폐합)

▶ 업무이관
○ 주민복지과 ⇨ 평생학습사업소 이관
• 아동업무 이관 ⇨ 드림스타트
○ 방재과 ⇨ 상하수도사업소 이관
• 농촌 생활용수 업무 이관 (상수도)
○ 해양수산과 ⇨ 경제유통과 이관
• 수산물 판촉 수출입 등 업무 (판촉지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군민 복지정책 체감도 향상과 정부의 복지담당 공무원 증원계획에 따라 2013년도 사회복지 인력의 순증분(4명)을 정원에 반영
○ 정부의 사회복지 인력 확충계획에 따른 정원대체(2명) 조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및 부칙 제4조(사무직렬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 임용 시험 특례)에 의해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2012년 2차)을 위한 정원 조정에 따른 개정
○ 우리군 행정여건 변화 및 부서간 합리적 인력배치를 위한 직무분석(조직진단)이 완료됨에 따라, 실과소·읍면의 정원을 재조정하여 군정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군민에게 신뢰받는 참 행정을 실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총 괄]

○ 고흥군 공무원 총정원 증원 755명 ⇨ 759명(사회복지직 4명 순증)
• 사회복지직(정원 50명) ➜ 사회복지직(정원 54명), +4명
• 보건9급 △3 ➜ 사회복지9급 +2, 해양수산9급 +1

-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사무기능직 △6 ➜ 일반 행정직 +6)
- 기능운전직 △2 ➜ 녹지9급(조경) +1, 농업9급 +1
- 농촌지도사 △2 ➜ 수의7급 +1, 사서8급 +1
- 직무분석 결과에 따른 정원반영(본청 +19, 직속기관 △9, 사업소 +1, 읍면 △11)

[개정 후 총괄 정원]

구분	기관별 /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당초정원	총계 (조정 전)	755	258	14	141	54	288
변경정원	총계 (조정 후)	759	283	14	127	56	279
증감		+4	+25	-	△14	+2	△9

[세부내역별] ※ 순서별 정원조정 보고

○ 사회복지직 정원 4명 순증

- 사회복지직 4명 순증 ➜ 주민복지과 사회복지 8급 2명증 도양읍·과역면 사회복지 9급 각1명증

구분	기관별 /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당초정원	6급이하 일반직	585	205	7	96	39	238
변경정원	6급이하 일반직	589	207	7	96	39	240
증감		+4	+2				+2

○ 사회복지직 정원대체 및 보건인력 감축: 3명

- 보건소 보건9급 3명 감 ➜ 주민복지과 사회복지 9급 2명 증, 해양수산9급 1명 증

구분	기관별 /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당초정원	6급이하 일반직	589	207	7	96	39	240
변경정원	6급이하 일반직	589	210	7	93	39	240
증감		-	+3		△3		

○ 기능직 일반직 전환 대상자 : 6명(총 15명중 前회기 9명 정원 전환완료)

- 사무기능 8급 1명 ➜ 행정 8급으로 정원 대체
- 사무기능 9급 5명 ➜ 행정 9급으로 정원 대체

구분	기관별 /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당초정원	기능직 계	94	37	4	8	11	34
변경정원	기능직 계	88	31	4	8	11	34
증감		△6	△6				

▼

구분	기관별 /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당초정원	6급이하 일반직	589	210	7	93	39	240
변경정원	6급이하 일반직	595	216	7	93	39	240
증감		+6	+6				

○ 기능운전9급 2명 정원조정

• 기능운전 9급 2명 감 ➜ 녹지(조경) 9급 1명 증, 농업 9급 1명 증 정원 대체

구분	기관별 /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당초정원	기능직 계	88	31	4	8	11	34
변경정원	기능직 계	86	29	4	8	11	34
증감		△2	△2				

▼

구분	기관별 /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당초정원	6급이하 일반직	595	216	7	93	39	240
변경정원	6급이하 일반직	597	218	7	93	39	240
증감		+2	+2				

○ 농업기술센터 지도사 2명 정원 감원

• 지도사 2명 감 ➜ 수의7급 1명 증, 사서8급 1명 증 정원 대체

구분	기관별 /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당초정원	지 도 사	29			29		
변경정원	지 도 사	27			27		
증감		△2			△2		

▼

구분	기관별 /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당초정원	6급이하 일반직	597	218	7	93	39	240
변경정원	6급이하 일반직	599	219	7	93	40	240
증감		+2	+1			+1	

○ 직무분석 결과에 따른 실과소 · 읍면 정원 조정

구분	기관별 /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당초정원	6급이하 일반직	599	219	7	93	40	240
변경정원	6급이하 일반직	599	238	7	84	41	229
증감			+19	-	△9	+1	△11

■ **의결결과** : 원안가결

7) 고흥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주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노력과 정책 발굴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코자 함.

■ **주요내용**

○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규정

○ 주민의 인권보장 달성을 위한 지자체장의 책무 명시

○ 인권교육 체계 마련을 위한 조치 등 명시

○ 인권보장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 **의결결과** : 원안가결

8) 고흥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면단위 건축 업무를 군(건축부서)으로 이관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

○ 건축 전문인력 확보로 민원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종합합민원실 업무 중 읍·면장 위임 사항 일부개정

• 건축물 신고, 가설건축물,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
  – 「읍·면장」 ⇨ 「읍장」
• 건축물 증축신고(85㎡이내) – 「읍·면장」 ⇨ 「읍장」
• 건축허가(100㎡이내)읍에 한함 – 「읍·면장」 ⇨ 「읍장」

■ 의결결과 : 원안가결

9) 고흥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1980년에 국민은행(구 한국주택은행)에 국민주택융자금으로 대출받아 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으나 2006년 국민은행(구 한국주택은행)에 전액 상환하였기에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짐.

■ 주요내용 : 전부폐지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0)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의 합리화를 위해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 고흥군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

■ 주요내용

(단위 : ㎡, 백만원)

구분	건수	면 적	추정가액	비 고
취득	토지 2	55,091	700	• 2012년 폐교 2개교 매입(재무과)
	건물 2	3,828.38		

■ 의결결과 : 원안가결

7. 제21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가. 집회공고 및 의사일정

1) 집회공고

제21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에 따라 송우섭의원 등 5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1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2012년 2월 5일 오전10시에 집회함.

2) 의사일정 : 2013. 2. 5(화) 〈1일간〉

<table>
<tr><th>일 시</th><th>차 수</th><th>안 건</th><th>비 고</th></tr>
<tr><td>2.05(화)
10:00</td><td>제1차
본회의</td><td>○ 개 회 식
• 개 식
•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개회사
• 폐 식

▶ 의사일정
1. 제21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고흥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 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정 회】</td><td>본회의장

운 영
위원장</td></tr>
<tr><td>10:30</td><td></td><td>○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table>
<tr><th>위원회별</th><th>건수</th><th>대상실과소</th></tr>
<tr><td>총무위원회</td><td>1</td><td>재무과 1</td></tr>
</table></td><td>상 임
위원회실</td></tr>
<tr><td>13:00</td><td>제1차
본회의
속개</td><td>▶ 의사일정
4.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
5. 2012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
6.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td><td>본회의장</td></tr>
</table>

나. 제1차 본회의

2013년 2월 5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6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3시 9분에 산회함.

1) 제 21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1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 **주요내용** : 2013. 1. 5(화) 〈1일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고흥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 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

- **제 안 자** : 송우섭의원 등 5인
- **제안이유**
  - ○ 지난 1월 30일 온 국민이 염원했던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 인공위성이 우리 땅 나로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는 쾌거를 거두었음.
  - ○ 이로써 그동안 줄기차게 추진했던 고흥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며, 미래 전략사업인 우주항공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권역별 역할 분담이 필요함.
  - ○ 따라서 고흥군의회는 군민과 더불어 고흥우주항공클러스터 사업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정부에 대하여 국가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함.
- **주요내용**
  - ○ 고흥은 나로우주센터와 우주과학관, 국립청소년우주체험센터, 항공센터 등 우주항공 관련 인프라가 조성되 있어 우주항공산업의 집적화가 요구됨.
  - ○ 미래 전략산업인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권역별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고흥 우주항공 클러 구축은 국가 균형발전 계획에도 부합함.
  - ○ 우주항공 관련 기반이 집약된 고흥에 우주항공산업 R&D센터와 과학로켓 연구센터, 국가비행시험센터, 고분자 융복합 소재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체험 관광명소화 등 집적화된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함.
- **의결결과** : 원안채택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1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주요내용** : 배기홍의원, 김옥래의원 선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위촉기간이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 위촉코자 함.
- **주요내용**
  - ○ 위촉대상자 : 송동석변호사
  - ○ 위촉기간 : 2013. 3. 1 ~ 2014. 2. 28(1년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2012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

- **제 안 자** : 송우섭의원 등 6인
- **제안이유**
  - ○ 2012년도에 읍면에서 발주 시행한 각종 시설공사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예산집행 상황 등 공사추진 전반에 걸쳐
  - ○ 서류검토와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 견실시공 여부 등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과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조사기간 : 2013. 03. 12.(화) ~ 03. 18.(월)【5일간】
  - ○ 조사대상 : 2012년도 읍면 발주 시설공사 중 사업비 1천만원 이상인 사업
  - ○ 조사방법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 조 사 반 : 2개반으로 편성운영(의원 12, 수행공무원 6)
-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의 합리화를 위해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 고흥군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
- **주요내용**

(단위 : ㎡, 백만원)

구 분	내 용	규 모	추정가액	비 고
취득	태양광 시설물	25MW	5,000 (임대수입)	• 거금에너지테마파크 조성사업 태양광시설물 설치 〔우주항공사업소〕

- **의결결과** : 원안가결

개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계사년 여명 속에 소망을 염원했던 새해 벽두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기상 봄이 시작되는 입춘을 보낸 시점에 금년도 첫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회에 높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민을 위한 의정과 군정에 열정을 쏟아온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엔 참으로 감동과 감격 속에 전 국민은 물론 온 군민들이 희망과 행복의 기쁨에 사로잡힌 한 주였습니다.
군민들의 염원이었던 고흥나들목 개통으로 땅의 문이 열렸으며,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 인공위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온 국민의 염원을 싣고 하늘 문을 여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2009년부터 발사를 시도하여 열 번의 연기와 두 번의 실패 끝에 성공한 값진 쾌거였기에 그 기쁨과 흥분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1번째 스페이스클럽 회원국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려 국격을 한층 드높였으며, 우리 군으로서도 고흥이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에 각인시킴으로써 군격 또한 우주항공의 메카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연초부터 감격스런 기운을 얻었기에 금년엔 우리 군으로서도 더욱 높게 흥하는 고흥융성의 징조로 삼아 이제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가짐을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서로운 기회를 호기로 삼아 온 군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우주항공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지혜를 다져 나가야 합니다.
지역발전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은 소통을 담보로 한 사회통합입니다.
통합의 전제조건은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천임을 잊지 마시고 군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공존과 상생의 관계정립을 확립해야 합니다.
비판과 견제는 의회의 본령(本領)이지만 소이(小異)를 버리고 대동(大同)을 추구하는데 의원 각자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복으로 법 집행을 사명으로 여기는 공직자는 청렴과 공정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군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매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국내·외 상황은 미국발 금융 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의 여파로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모두가 힘들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반만년 역사에서 위기가 없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질곡의 현대사를 통해 우리는 위기가 곧 기회임을 입증하며 성공적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옛부터 고난과 시련을 딛고 더불어 살아온 우리 민족의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때이며, 사람만이 희망이라는 말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희망이란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지만 그것은 이 땅에 생겨난 길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이 땅에는 길이 없었지만 걸어다니는 사람이 많아지자 길이 생긴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팍팍하고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해도 희망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기에 우리 모두는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가슴에 안고 우리의 미래, 고흥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쉼 없이 발걸음을 재촉해 나아가야 합니다.
소 두 마리가 한 멍에를 짊어지고 끄는 쟁기를 겨리라고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겨릿소가 되어 군민 행복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모두가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년 겨울은 유난히도 한파가 자주 찾아와 옷깃을 더욱 추스르게 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설 명절 군민 모두가 훈훈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명서

- 고흥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을 촉구하며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동안 의회에 높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30일 군민 모두가 그토록 염원했던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 인공위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온 국민의 염원을 싣고 하늘 문을 여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감동과 감격에 겨운 군민들의 환한 얼굴에서 우리 모두는 자축의 분위기를 만끽하였으며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2009년부터 발사를 시도하여 열 번의 연기와 두 번의 실패 끝에 성공한 값진 쾌거였기에 그 기쁨과 흥분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더불어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로지 발사 성공을 위해 땀과 열정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바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들과 과학기술인 여러분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1번째 스페이스클럽 회원국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려 국격을 한층 드높였으며, 우리 군으로써도 고흥이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에 각인시킴으로써 군격 또한 우주항공의 메카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사스런 기회를 호기로 삼아 온 군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우주항공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지혜를 다져 나가야 합니다.

때맞춰 정부도 이러한 감격을 힘찬 동력으로 삼아, 한국형 우주발사체를 독자 개발하여 2020년경에는 우리 기술로 우주에 갈 수 있도록 우주개발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주항공산업은 첨단 과학기술의 집약 산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이며 모든 산업에 시너지 효과가 큰 산업으로써 전 세계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은 세계 13번째로 건설된 나로 우주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우주발사체 국산화 개발에 필요한 각종 시험시설들을 구축 운용함으로써 국가 우주개발 목표 달성과 우주기술개발의 전초기지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흥군의회 의원 모두는 군민과 함께 우리의 숙원인 우주항공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정부에 대하여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나로 우주센터와 우주과학관, 국립청소년우주체험센터, 항공센터, 우주천문과학관 등이 운영되고 있어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고흥에 우주항공산업 R&D 및 시험·평가시설과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고분자 융복합소재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 체험 관광명소화 등 발사장 중심의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국정과제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우리 고흥이 우주항공 중심도시로 우뚝 서는 그 날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열정을 모아 힘을 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2월 5일
고흥군의회 의원 일동

8. 제21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가. 집회공고 및 의사일정

1) 집회공고

제21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에 따라 송우섭의원 등 5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3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2013년 3월 11일 오전10시에 집회함.

2) 의사일정 : 2013. 3. 11(월) ~ 3. 19(화) 〈9일간〉

<table>
<tr><th>일 시</th><th>차 수</th><th>안 건</th><th>비 고</th></tr>
<tr><td>3.11(월)
10:00</td><td>제1차
본회의</td><td>▶ 의사일정
1. 제21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td><td>본회의장</td></tr>
<tr><td>13:30</td><td></td><td>◎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table><tr><th>위원회별</th><th>건수</th><th>대상실과소</th></tr><tr><td>계</td><td>7</td><td></td></tr><tr><td>총무위원회</td><td>1</td><td>재무과1</td></tr><tr><td>산건위원회</td><td>6</td><td>환경산림과1,건설과3, 방재과2</td></tr></table></td><td>상 임
위원회실</td></tr>
<tr><td>3.12(화)
~
3.18(월)</td><td>휴 회</td><td>◎ 2012년도 읍면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실시
• 1반 : 고흥, 점암, 영남, 과역, 남양, 동강, 대서, 두원
• 2반 : 도양, 풍양, 도덕, 금산, 도화, 포두, 봉래, 동일</td><td></td></tr>
<tr><td>3.19(화)
10:00</td><td>제2차
본회의</td><td>▶ 의사일정
1. 바다송어 · 연어 산업연구센터 건축 동의안
2. 고흥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고흥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고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흥농업기술센터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6.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7. 고흥생활체육야구장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8. 2012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td><td>본회의장</td></tr>
</table>

가. 제1차 본회의

1) 제21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1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 주요내용 : 2013. 3. 11(월) ~ 3. 19(화) 〈9일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1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주요내용 : 송경석의원, 송우섭의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휴회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2012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실시
- 주요내용 : 2013. 3. 12 ~ 3. 18(7일간) 본회의 휴회
- 의결결과 : 원안가결

나. 제2차 본회의

1) 바다송어 · 연어 산업연구센터 건축 동의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고흥지소에서 재해(태풍,적조,동해 등)없는 겨울철 양식품종 개발과 안정적 종묘 수급을 통하여 관내 어류양식어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바다송어 · 연어 산업연구센터」를 우리군 소유 구 금산초교 서분교장 (금산면 신촌리 1123-5번지 등 11필지) 부지에 건립하고자 하여
  - ○ 고흥군 소유토지에 고흥군 이외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합의 및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고흥군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토지개요

- 위　치 : 고흥군 금산면 신촌리 1123-5 등 11필지
- 면　적 : 11,253㎡
- 소유자 : 고흥군 (2010. 6. 10 매입)
- 재산가액 : 117백만원(매입가격)

○ 건축개요

- 사업명 : 바다송어·연어 산업연구센터 건립
- 사업주체 :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고흥지소
- 위　치 : 고흥군 금산면 신촌리 1123-5번지 일원
- 사업비 : 5,157백만원(국비 2,550　도비 2,607)
- 건축내용
  - 순치사육동(1,000㎡) : 바다송어 · 연어 순치 80~100만리(200g 기준)
  - 실험연구동(330㎡) : 바다송어 연어류 예비실험, 가공제품 연구
  - 본 관(1,320㎡/ 2층) : 사무실, 어업인 교육실 등
  - 부대시설 : 해수저장시설, 인수라인, 전기실, 홍보관, 냉동실 등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고흥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지역간의 편차가 심하여 산사태발생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 관리함은 물론 산림예방사업을 시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기　능

-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 지정
-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산사태취약지 해제

○ 구 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산림과장이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 당연직 위원은 방재과장이며, 위촉위원은 산사태 및 사방분야의 전문가,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고흥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지진에 의한 시설물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적용범위 및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자격, 위험도 평가시기,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고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재난발생시 긴급하게 필요한 심리안정지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

■ **주요내용** :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 추가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고흥농업기술센터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보급, 대농민 교육훈련, 영농후계자 양성 및 청소년 지도 등 지자체별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농업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는 행정기관으로서 현재 고흥읍(센터)과 풍양면(연구단지)으로 이원화되어 운영중에 있음

○ 농업기술센터를 농업현장으로 이전·신축함으로써 첨단 시험연구시설 확충 및 기술개발 기능강화로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하고, 친환경 영농기술 교육장 및 세미나실 등의 군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코자 함

○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이전으로 청사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군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관리계획의 입안)에 의거하여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을 입안코자 함

■ 주요내용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위 치	면 적 (㎡)		면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고흥군 풍양면 율치리 1504-15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 획 관리지역	21,000	100%	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 청사	농업기술센터	고흥군 풍양면 율치리 1504-15번지 일원	-	21,000	21,000	-	

■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고흥 전통시장은 근교에서 생산자가 재배한 농산물을 소비자와 직거래로 상거래 행위가 이루어지고, 고흥군의 주요 재래시장으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 낙후된 시설 및 열악한 시장 환경으로 인해 상인, 시장 이용객 및 지역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시장 활성화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 낙후된 시장시설의 현대화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군계획시설 중 시장으로 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일반상업지역	2,507	–	2,507	100.0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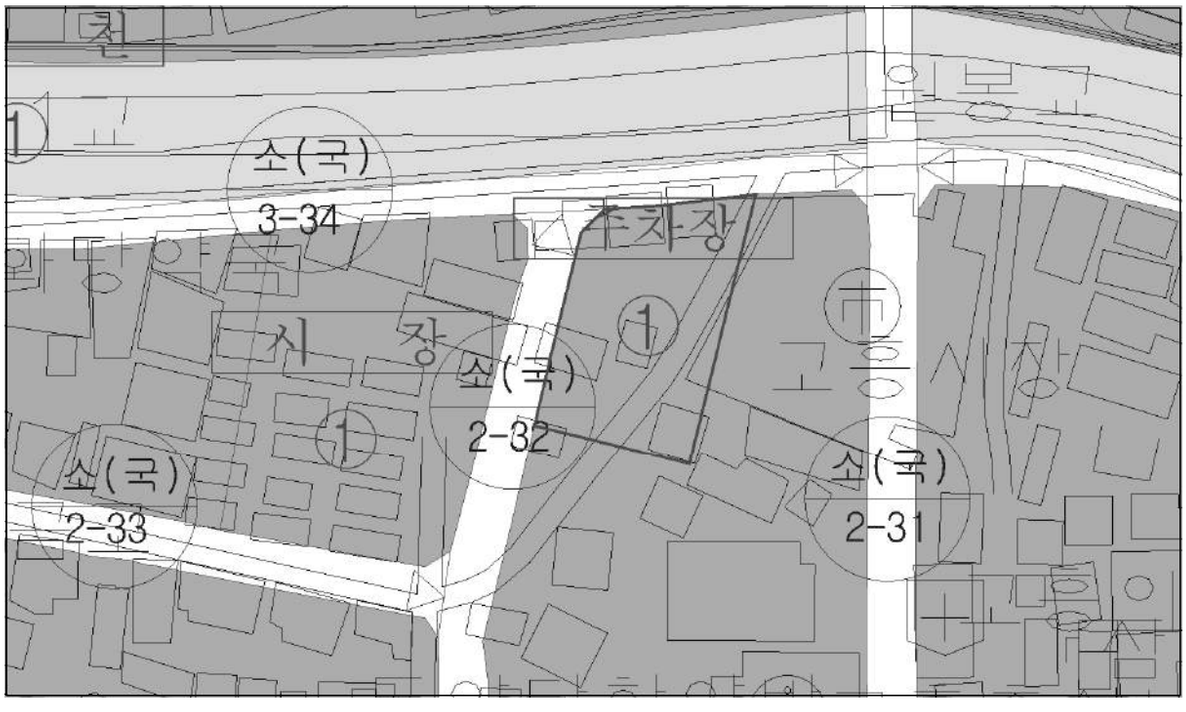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사 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주차장	고흥읍 남계리 628-1번지 일원	1,046	감)826	220	고흥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시장 신선로 주차장 축소

○ 시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사 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⑤	시장	고흥읍 남계리 628-5번지 일원	–	증)2,287	2,287	고흥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시장 신설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가) 기정



(나) 변경(안)



■ 의결결과 : 원안가결

7) 고흥생활체육야구장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주민건강증진과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는 웰빙문화시대에 대체적으로 체육복지에서 소외되어 온 남부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으며,

○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과 주변 생활체육시설물(김일체육관)과 상호연계를 통한 시설물 활용도 증대로 군민 여가활동 증진에 이바지 하며,

○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 건전한 여가문화의 형성과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및 국내 초·중·고·대학, 프로구단의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조서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율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금산면 신전리 73-26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38,678	1000이하	주민건강증진과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증대로 남부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야구장 공간을 확보

○ 체육시설(변경)(안)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사 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체육 시설	야구장	금산면 신전리 73-26번지 일원	-	증)38,678	38,678	주민건강증진과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증대로 남부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야구장 공간을 확보

■ **의결결과** : 원안가결

8) 2012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 **제 안 자** : 최설희의원 등 5인

■ **제안이유** : 제213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2012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개선하도록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 주요내용

○ 조사기간 : 2013. 03. 12. ~ 03. 18.【5일간】

○ 조사대상 : 2012년도 읍면 발주 시설공사 중 사업비 1천만원 이상인 사업

○ 조사방법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확 인 반 : 2개반 16명

○ 지적사항 : 7건(별지참조, 제3절 행정사무조사)

■ **의결결과** : 원안채택

9. 제21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가. 집회공고 및 의사일정

1) 집회공고

제21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송우섭의원 등 5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13년 4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2011년 4월 16일 오전10시에 집회함.

2) 의사일정 : 2013. 4. 16(화) ~ 4. 17(수) 〈2일간〉

<table>
<tr><th>일 시</th><th>차 수</th><th>안 건</th><th>비 고</th></tr>
<tr><td>4.16(화)
10:00</td><td>제1차
본회의</td><td>▶ 의사일정
1. 제21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td><td>본회의장</td></tr>
<tr><td>10:20</td><td></td><td>상임위원회 의안심사
<table>
<tr><th>위원회별</th><th>건수</th><th>대상실과소</th></tr>
<tr><td>계</td><td>4</td><td></td></tr>
<tr><td>총무위원회</td><td>3</td><td>주민복지과1,재무과1,보건소1</td></tr>
<tr><td>산건위원회</td><td>1</td><td>농업기술센터</td></tr>
</table></td><td>상임
위원회실</td></tr>
<tr><td>4.17(수)
10:00</td><td>제2차
본회의</td><td>▶ 의사일정
1. 고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흥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
3.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4. 고흥군 유용미생물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td><td>본회의장</td></tr>
</table>

나. 제1차 본회의

2013년 4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 3분에 산회함.

1) 제21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1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 주요내용 : 2013. 4. 16(화) ~ 4. 17(수) 〈2일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1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주요내용 : 신태균의원, 김주식의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다. 제2차 본회의

2013년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4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 8분에 산회함.

1) 고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근로능력판정에 있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근로능력평가 및 재평가의 결과에 대해 보다 정밀한 심의와 조정을 위해 근로능력판정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
○ 근로능력판정 조정위원회는 고흥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하며, 협의체내 소위원회로 구성
■ 주요내용
○ 근로능력판정 조정위원회 구성·운영의 근거 마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6조의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판정 사업 안내(2012)
○ 고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 소위원회로 근로능력판정 조정위원회를 구성
○ 고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수 및 각 위원회별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위원수를 달리 지정 가능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고흥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가운데 금연에 관한 조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실현하는 법적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 금연구역 지정, 변경, 해제에 관한 사항

○ 흡연구역 지정, 설치에 관한 사항

○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위반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의 합리화를 위해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 고흥군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

■ 주요내용

(단위 : 백만원)

구분	재 산	소 재 지	면 적(㎡)	추정 가액	비 고
교환	국유지	도화면 발포리 산32-1 등 7필지	9,187	53	• 국유지(환경부)와 군유지 교환 변경추진 [재무과]
	군유지	점암면 성기리 380 등 11필지	9,377	26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고흥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현행 유용미생물 무상공급으로 인한 정량을 초과한 사용남발 방지

○ 무상수령 후 미사용·방치로 인한 농가 폐기물량 절감,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으로 전환

■ 주요내용
○ 유용미생물 교육을 이수한 고흥군민 유상공급
○ 사전신청 수량파악 및 대금납부, 납입영수증 제시 후 수령
○ 생산비용 고려하여 공급가격을 매년 고시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0. 제21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가. 집회공고 및 의사일정

1) 집회공고

제21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송우섭의원 등 5인으로 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13년 5월 14일 집회 공고를 하고 2013년 5월 21일 오전 10시에 집회함.

2) 의사일정 : 2013. 5. 21(화) ~ 5. 22(수) 〈2일간〉

<table>
<tr><th>일 시</th><th>차 수</th><th>안 건</th><th>비 고</th></tr>
<tr><td>5.21(화)
10:00</td><td>제1차
본회의</td><td>▶ 의사일정
1. 제21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td><td>본회의장</td></tr>
<tr><td>10:30</td><td></td><td>◉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table>
<tr><th>위원회별</th><th>건수</th><th>대상실과소</th></tr>
<tr><td>계</td><td>3</td><td></td></tr>
<tr><td>총무위원회</td><td>1</td><td>문화관광과</td></tr>
<tr><td>산건위원회</td><td>2</td><td>농업기술센터</td></tr>
</table></td><td>상 임
위원회실</td></tr>
<tr><td>5.22(수)
10:00</td><td>제2차
본회의</td><td>▶ 의사일정
1. 고흥군 테마의 섬 진지도 민박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2. 고흥군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 조례안
3. 고흥군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관리 운영 조례안</td><td>본회의장</td></tr>
</table>

나. 제1차 본회의

2013년 5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 4분에 산회함.

1) 제21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1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 주요내용 : 2013. 5. 21(화) ~ 5. 22(수) 〈2일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 주요내용 : 5명(신태균의원, 강재민교수, 박영인세무사, 장영조세무사, 김임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1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주요내용 : 장세선의원, 김의규의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다. 제2차 본회의

2013년 5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 7분에 산회함.

1) 고흥군 테마의 섬 진지도 민박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 농어촌 소득증대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체류형 체험관광시설(한옥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 ○ 한옥 및 일반민박시설의 관리자 지정 및 이용료 징수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이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규정
○ 사용허가, 사용기간,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
○ 수탁자의 의무, 사용 및 이용의 제한에 관한 규정
○ 사용허가 및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규정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고흥군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농촌진흥법」에 의하여 우리군의 기본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 및 농촌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촌지도사업, 시험연구사업, 농업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 농촌지도사업 ,교육훈련사업, 시험연구사업, 농업학습단체, 시범사업
○ 지원
•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고흥군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관리 운영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자체생산 및 공급으로 정부 보급 씨감자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관내 감자재배 농업인들에게 우량씨감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
■ 주요내용
○ 우량씨감자 공급대상 및 범위
○ 우량씨감자 단계별 공급 방법 등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1. 제216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가. 집회공고 및 의사일정

1) 집회공고

제216회 고흥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송우섭의원 등 5인으로 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2013년 6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2013년 6월 25일 오전 10시에 집회함.

2) 의사일정 : 2013. 6. 25(화) ~ 6. 27(목) 〈3일간〉

<table>
<tr><th>일 시</th><th>차수</th><th>안 건</th><th>비 고</th></tr>
<tr><td>6.25(화)
10:00</td><td>제1차
본회의</td><td>▶ 의사일정
1. 제216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td><td>본회의장

기획실장</td></tr>
<tr><td>10:30</td><td></td><td>○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table>
<tr><th>위원회별</th><th>건수</th><th>해당부서</th></tr>
<tr><td>계</td><td>6</td><td></td></tr>
<tr><td>총무위</td><td>3</td><td>행정과2, 재무과1</td></tr>
<tr><td>산건위</td><td>3</td><td>기술센터1, 상하수도2</td></tr>
</table></td><td>상임
위원회실</td></tr>
<tr><td>13:30</td><td></td><td>○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심사
•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td><td>〃</td></tr>
<tr><td>6.26(수)</td><td>휴 회</td><td>○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 심사
•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td><td>예결
위원회실</td></tr>
<tr><td>6.27(목)
10:00</td><td>제2차
본회의</td><td>▶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흥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흥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흥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흥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7. 고흥군 마을상수도 ·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td><td>본회의장</td></tr>
</table>

나. 제1차 본회의

2013년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5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 11분에 산회함.

1) 제216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16회 고흥군의호 임시회 회기결정
- 주요내용 : 2013. 6. 25(화) ~ 6. 27(목) 〈3일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2013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조정,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의무 절감하여 재해 예방·서민생활 안정 사업에 재투자하여 재정운영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 추경예산규모 : 114,158백만원(기정예산 415,629 → 529,787)
    - 일반회계 : 112,483백만원(기정예산 400,524 → 513,007)
    - 특별회계 : 1,675백만원(기정예산 15,105 → 16,780)
  - ○ 일반회계 추가세입 : 112,483백만원
    - 의존수입 : 79,780백만원(지방교부세 31,741, 재정보전금 21, 보조금 48,018)
    - 자체수입 : 32,703백만원(세외수입 32,703)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주요내용
  - ○ 위원장 : 김주식의원
  - ○ 간 사 : 신태균의원
  - ○ 위 원 : 김옥래, 송경석, 송경양, 송인숙의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16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주요내용 : 송경양의원, 송인숙의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휴회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주요내용 : 2013. 6. 26(1일간) 본회의 휴회
- 의결결과 : 원안가결

다. 제2차 본회의

2013년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7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 16분에 산회함.

1)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2013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조정,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의무 절감하여 재해예방·서민생활 안정 사업에 재투자하여 재정운영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비 고
계	529,786,836	415,628,511	114,158,325	27.5	
일반회계	513,007,165	400,524,213	112,482,952	28.1	
특별회계	16,779,671	15,104,298	1,675,373	11.1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시·군 안전조직 개편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안전관리 체계를 통합 구축하여 군민의 안전과 지방행정의 역량 제고를 위해 「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과 명칭변경 : 방재과 ⇨ 안전총괄과

○ 과 총괄담당 지정 : 재난관리 담당 ⇨ 안전관리 담당

○ 안전관리 업무 신설 및 사무이관(시행규칙 개정사항)

현 행			개 편
과	방 재 과		안전총괄과
담당 (계)	▪ 재난관리 ▪ 복구지원 ▪ 민 방 위 ▪ 농업기반 ▪ 농촌개발	⇨	▪ 안전관리 ▪ 복구지원 (현행과 같음) ▪ 민 방 위 (현행과 같음) ▪ 농업기반 (현행과 같음) ▪ 농촌개발 (현행과 같음)

사무이관 ▶ 행정과 : 사회안전 업무(특사경관리) ⇨ 안전총괄과(시행규칙 반영)

사무신설 (시행규칙 반영) ▶ 1. 자치단체 재난 및 국가기반 분야 매뉴얼 통합관리
▶ 2. 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 작성 지원 및 관리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고흥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조항 신설(안 제2조 제3호)

– 간호직렬에 준하는 수당 월 5만원 ⇨ 월 25만원(도서지역의 경우 월 35만원)

보건진료원을 대상으로 '11.12.16 이전까지 「보건진료소 운영 규정」(복지부 훈령)에 따라 지급하던 활동장려금(월20만원) 및 간호직렬에 준하여 지급해오던 의료업무수당(월5만원) 수준을 감안하여 지급액 산정

※ 동 훈령이 '11.12.16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방식 변경
(민간위탁운영→자치단체 직접운영 /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일반회계로 전환)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고흥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2013년 「지방세법」 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게 하고 주택분 재산세 부과의 명확한 근거를 두고자 함.

■ **주요내용**

○ 주택분재산세 일괄고지 금액 상향조정(5만원⇨10만원)
(당초) 주택분 재산세 금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7월 부과
(변경) 주택분 재산세 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 7월 부과

○ 조문 용어 수정
(당초) 과세특례(도시계획세) ⇨ (변경) 도시지역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고흥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조직개편에 의한 업무분장 변동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9조 제3항 중 "기술보급과장" ⇒ "연구개발과장" 으로

○ 제19조 제4항 중 "인력교육담당" ⇒ "농업기계담당"
"농기계업무 담당자" ⇒ "임대사업 업무 담당자" 로 변경

■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고흥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수도공사 및 수도시설 손괴 등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수도공사 등에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정손실을 예방하고 수도 사용자 주의 및 경각심 고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의 신설로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발생시켜 취·정수장시설 등의 신설 또는 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로시설의 신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당해 공사비용을 수돗물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 부담금 산정기준

• 부담금의 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 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

○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

•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 시행전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첨부하여 공사를 요청해야 됨.

•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어떤 행위로 인한 수도공사가 필요할 때는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통지 해야 함.

○ 손괴자 부담금의 징수

•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비용을 산출한 후 손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의결결과 : 원안가결

7) 고흥군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주민이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 요구(국민권익위원회)함에 따라,

○ 관리비용을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신규자 수도연결시 입회비 납부를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규정코자 함.

■ 주요내용

○ 관리비용

•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비용외 입회비 등 요구할 수 없다” 단서 신설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2. 제217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가. 집회공고 및 의사일정

1) 집회공고

제217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2013년 6월 25일 집회 공고를 하고 2013년 7월 1일 오전 10시에 집회함.

2) 의사일정 : 2013. 7. 1(월) ~ 7. 12(금) 〈12일간〉

<table>
<tr><th>일 시</th><th>차 수</th><th>안 건</th><th>비 고</th></tr>
<tr><td>7. 1(월)
10:00</td><td>제1차
본회의</td><td>◎ 개 회 식
• 개 식
•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개회사
• 폐 식

▶ 의사일정
1. 제217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td><td>본회의장

재무과장</td></tr>
<tr><td>10:30</td><td></td><td>◎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table><tr><th>위원회별</th><th>건수</th><th>해당실과소</th></tr><tr><td>총무위</td><td>4</td><td>기획실1, 재무과2
문화관광과1</td></tr></table></td><td>상 임
위원회실</td></tr>
<tr><td>7. 2(화)
10:00</td><td>제2차
본회의</td><td>▶ 의사일정
1. 2013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질의)의 건
■ 행 정 과 ■ 재 무 과 ■ 문화관광과
■ 경제유통과 ■ 투자정책과 ■ 환경산림과</td><td>소회의실</td></tr>
</table>

일 시	차 수	안 건	비 고
7. 3(수) 10:00	제3차 본회의	▶ 의사일정 1. 2013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질의)의 건 ■ 기획실 ■ 농업축산과 ■ 해양수산과 ■ 건설과 ■ 안전총괄과 ■ 종합민원실	소회의실
7. 4(목) 13:30	제4차 본회의	▶ 의사일정 1. 2013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질의)의 건 ■ 보건소 ■ 상하수도사업소 ■ 우주항공사업소 ■ 평생학습사업소	소회의실
7. 5(금) 09:30	제5차 본회의	▶ 의사일정 1. 2013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질의)의 건 ■ 주민복지과 ■ 농업기술센터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 휴회의 건	소회의실
7. 6(토) ~ 7. 7(일)	휴회	◉ 공휴일	
7. 8(월) ~ 7. 9(화)	휴회	◉ 2012 회계연도 결산안 상임위 심사 ■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	상 임 위원회실
7. 10(수) ~ 7. 11(목)	휴회	◉ 2012 회계연도 결산안 예결위 심사 ■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	예 결 위원회실
7.12(금) 10:00	제6차 본회의	▶ 의사일정 1. 2012 회계연도 결산안 2. 사단법인 고흥영상문화위원회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본회의장

나. 제1차 본회의

2013년 7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을 가졌으며, 5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 28분에 산회함.

1) 제217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17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 주요내용 : 2013. 7. 1(월) ~ 7. 12(금) 〈12일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 제안이유
  - ○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고흥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1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및 질의를 실시함에 따라
  - ○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사무 처리 전반에 대한 보고와 의문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함.
- 주요내용
  - ○ 출석요구기간 : 2013. 7. 2. ~ 7. 05.(4일간)
  - ○ 출 석 범 위
    - 군수
    - 고흥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 주요내용

○ 위원장 : 김의규의원

○ 간 사 : 최설희의원

○ 위 원 : 배기홍, 김옥래, 송우섭, 장세선의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의 검사와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재무보고서를 고흥군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세입·세출결산

• 일반회계

– 세입결산액 548,030백만원

– 세출결산액 419,120백만원

– 세계잉여금 128,910백만원

▶ 세계잉여금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79,908백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7,690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1,312백만원임.

•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

– 세입결산액 21,213백만원

– 세출결산액 19,045백만원

– 세계잉여금 2,168백만원

▶ 세계잉여금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70백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88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10백만원임.

○ 기금결산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등 6종 기금의 2012년말 현재총액은 9,829백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사회복지기금 3,161백만원
• 신청사건립기금 3,040백만원
•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 213백만원
• 재난관리기금 1,649백만원
• 식품진흥기금 65백만원
• 체육진흥기금 1,701백만원

○ 채권 · 채무의 결산

• 채　권

– 2012년말 현재 채권총액은 4,802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회계　3,420백만원

– 특별회계　1,382백만원

• 채　무

– 2012년말 현재 채무총액은 6,234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회계　5,534백만원

– 특별회계　700백만원

○ 공유재산 결산

2012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047,345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행정재산　897,427백만원

• 일반재산　149,918백만원

○ 물품결산

2012년말 현재 물품보유 총수는 615개이며 4,924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전년도말 현재액　601개　4,621백만원

• 신규취득　38개　478백만원

• 매각 · 폐기　24개　175백만원

○ 예 비 비

2012년 예비비 지출액은 1,627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 및 재난지원금 등　1,424백만원

• 고흥만 간척지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송비용　44백만원

• 폭염에 따른 경로당 선풍기 지원　79백만원

• 적조방제 비용　18백만원

• 봉래 신금 배수펌프장 침수방지 비용　62백만원

○ 2012 회계연도말 재정상태(이하 재무보고서)

• 2012년말 우리군의 재정상태는 다음과 같음(일반 · 특별 · 기금회계 총괄)

– 총 자 산　2,202,176백만원

– 총 부 채　24,842백만원

– 순 자 산　2,177,333백만원

• 2012년말 총자산은 2,202,176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유 동 자 산 138,625백만원 (6.29%)
- 투 자 자 산 17,608백만원 (0.80%)
- 일반유형자산 142,154백만원 (6.46%)
- 주민편의시설자산 190,991백만원 (8.67%)
- 사회기반시설자산 1,707,279백만원 (77.53%)
- 기타비유동자산 5,518백만원 (0.25%)

• 2012년말 총부채는 24,842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유 동 부 채 10,613백만원 (42.72%)
- 장기차입부채 4,567백만원 (18.38%)
- 기타비유동부채 9,663백만원 (38.90%)

○ 2012 회계연도말 재정운영 결과

• 2012년말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총 수 익 474,943백만원
- 총 비 용 308,563백만원
- 재정운영결과 166,380백만원

• 2012년말 총 비용은 308,563백만원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인 건 비 58,745백만원 (19.04%)
- 운 영 비 74,257백만원 (24.07%)
- 정부간이전비용 7,173백만원 (2.32%)
- 민간등이전비용 128,328백만원 (41.59%)
- 기 타 비 용 40,061백만원 (12.98%)

• 2012년말 총 수익은 474,943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자체조달수익 32,612백만원 (6.87%)
- 정부간이전수익 442,330백만원 (93.13%)
- 기 타 수 익 1백만원 (0.01%)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17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주요내용** : 최설희의원, 배기홍의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개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하는 시점에 금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과 군정수행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령화와 일손부족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풍년농사를 꿈꾸며 뙤약볕 들녘에서 땀 흘리며 바쁜 영농철을 슬기롭게 이겨내 오신 군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부터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민과 더불어 기쁨과 고통을 함께 하면서 쉼 없이 달려 왔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시책과 사업 등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었는지 반추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는지 예산의 낭비적 요소들은 없었는지 등 뒤돌아보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서 보다 나은 하반기를 준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며 현재는 미래를 잉태하는 중요한 디딤돌이기 때문입니다. 의정과 군정의 성과는 군민들이 체감하는 것이며 체감 정도에 따라 지역발전과 행복지수가 달라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정과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그 중심에는 언제나 군민들의 눈과 귀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군민들의 눈높이와 귀 기울임에 소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의정과 군정을 꾸려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척도일 것이며,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는 그 어느 회기보다 의미가 크며, 다루어야 할 안건들도 중요도가 크다 할 것입니다.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집행에 있어 예산낭비 등 과오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시에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는지 문제점 등을 살펴서 개선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여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심오한 사고와 열정어린 마음가짐으로 정례회에 임하는 각오를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와 장마철로 접어들어 무기력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또한 집중호우 등으로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재해로부터 취약한 시기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군민들의 생활안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두가 재해예방 대책추진 등 맡은 바 소임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 모두가 건강에 유의하시고 날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제2차 본회의

2013년 7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 3시 42분에 산회함.

1)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 보 고 자 : 6명(행정과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경제유통과장직무대리, 투자정책과장, 환경산림과장)
- 질 의 자 : 10명(김옥래, 최설희, 신태균, 송경석, 김의규, 송우섭, 장세선, 송인숙, 배기홍, 송경양의원)
- 질의건수 : 37건

라. 제3차 본회의

2013년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 4시 3분에 산회함.

1)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 보 고 자 : 6명(기획실장, 농업축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과장, 안전총괄과장, 종합민원실장)
- 질 의 자 : 10명(송경양, 송우섭, 김의규, 신태균, 김옥래, 송경석, 송인숙, 최설희, 송경양)
- 질의건수 : 56건

마. 제4차 본회의

2013년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 3시 16분에 산회함.

1)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 보 고 자 : 4명(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주항공사업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 질 의 자 : 10명(최설희, 송경석, 송경양, 송인숙, 김옥래, 송우섭, 장세선, 배기홍, 신태균, 최설희의원)
- 질의건수 : 19건

바. 제5차 본회의

2013년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오전 11시 28분에 산회함.

1)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 보 고 자 : 3명(주민복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 질 의 자 : 9명(송경석, 최설희, 신태균, 송경양, 김의규, 송인숙, 장세선, 김옥래, 송인숙의원)
- 질의건수 : 23건

사. 제6차 본회의

2013년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5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15분에 산회함.

1)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제 안 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세입·세출결산

○ 일반회계

- 세입결산액 548,030백만원
- 세출결산액 419,120백만원
- 세계잉여금 128,910백만원
  - 세계잉여금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79,908백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7,690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1,312백만원임.

○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

- 세입결산액 21,213백만원
- 세출결산액 19,045백만원
- 세계잉여금 2,168백만원
  - 세계잉여금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70백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88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10백만원임.

나) 기금 결산

○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등 6종 기금의 2012년말 현재총액은 9,829백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사회복지기금 3,161백만원
- 신청사건립기금 3,040백만원
-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 213백만원
- 재난관리기금 1,649백만원
- 식품진흥기금 65백만원
- 체육진흥기금 1,701백만원

다) 채권 · 채무의 결산

○ 채 권

- 2012년말 현재 채권총액은 4,802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회계 3,420백만원
- 특별회계 1,382백만원

○ 채 무

- 2012년말 현재 채무총액은 6,234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회계 5,534백만원
- 특별회계 700백만원

라) 공유재산 결산

○ 2012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047,345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행정재산 897,427백만원
- 일반재산 149,918백만원

마) 물 품 결 산

○ 2012년말 현재 물품보유 총수는 615개이며 4,924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전년도말 현재액 601개 4,621백만원
- 신규취득 38개 478백만원
- 매각 · 폐기 24개 175백만원

바) 예 비 비

○ 2012년 예비비 지출액은 1,627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 및 재난지원금 등 1,424백만원
- 고흥만 간척지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송비용 44백만원
- 폭염에 따른 경로당 선풍기 지원 79백만원
- 적조방제 비용 18백만원
- 봉래 신금 배수펌프장 침수방지 비용 62백만원

사) 2012 회계연도말 재정상태(이하 재무보고서)

○ 2012년말 우리군의 재정상태는 다음과 같음(일반 · 특별 · 기금회계 총괄)

- 총 자 산 2,202,176백만원
- 총 부 채 24,842백만원
- 순 자 산 2,177,333백만원

○ 2012년말 총자산은 2,202,176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유 동 자 산 138,625백만원 (6.29%)
- 투 자 자 산 17,608백만원 (0.80%)
- 일반유형자산 142,154백만원 (6.46%)
- 주민편의시설자산 190,991백만원 (8.67%)
- 사회기반시설자산 1,707,279백만원 (77.53%)
- 기타비유동자산 5,518백만원 (0.25%)

○ 2012년말 총부채는 24,842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유 동 부 채 10,613백만원 (42.72%)
- 장기차입부채 4,567백만원 (18.38%)
- 기타비유동부채 9,663백만원 (38.90%)

사) 2012 회계연도말 재정운영 결과

○ 2012년말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총 수 익 474,943백만원
- 총 비 용 308,563백만원
- 재정운영결과 166,380백만원

○ 2012년말 총 비용은 308,563백만원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인 건 비 58,745백만원 (19.04%)
- 운 영 비 74,257백만원 (24.07%)
- 정부간이전비용 7,173백만원 (2.32%)
- 민간등이전비용 128,328백만원 (41.59%)
- 기 타 비 용 40,061백만원 (12.98%)

○ 2012년말 총 수익은 474,943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자체조달수익 32,612백만원 (6.87%)
- 정부간이전수익 442,330백만원 (93.13%)
- 기 타 수 익 1백만원 (0.01%)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사단법인 고흥영상문화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지역 내 영상문화·교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및 국내외 영상물 제작·촬영 유치·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 단편영화제 개최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의 정관**

1. 명칭 및 목적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정수·임면·임기·직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소집·의결·기능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 사무국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사업**

1. 영화제의 개최
2. 지역의 영상문화·교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3.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개최

4. 고흥 영상문화 발전 사업 및 지원사업
5. 위원회 목적 사업을 위한 간행물 발간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영화 사업 지원 서비스
8. 영화 홍보 및 광고
9. 그 밖의 문화사업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현행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코자 함.

○ 낚시어선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어선법 규정에 따른 수수료 중 13종 수수료가 누락되어 신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중 분사무소 설치신고에 따른 수수료가 누락되어 3종 신설

■ **주요내용**

○ **전국적통일표준금액 징수수수료 개정 28종**

• 농수산관련 25종 / 문화관광관련 3종

※ 증액 : 어업면허신청 등 17종, 감액 : 어업허가유예신청 등 11종

○ **조례위임 미반영수수료 신설 16종**

• 내수면어업관련 3종 / 수산어업관련 10종 / 부동산거래관련 3종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도선료가 포함된 시설 입장료를 타 시설입장료와 비교하여 도선이용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체험시설 입장요금을 현실화 하고,

○ 탄력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세부 운영규정 마련의 제도적 근거를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변경) 체험시설 입장료 일부 인상

구 분	현 행		개정(안)		비 고
	개인	20인이상 단체	개인	20인이상 단체	
어른 (19세 이상)	5,000원	3,000원	현행과 동 일	현행과 동 일	도선료 포함
청소년(13세이상 18세이하) 및 군인	3,000원	2,000원	4,000원	현행과 동 일	도선료 포함
어린이 (7세이상 12세이하)	1,000원	500원	3,000원	1,500원	도선료 포함

※ 도내 타 시설 입장료 (어른 - 청소년 - 어린이 순서임)

담향 죽향문화체험마을	2,000원 - 1,500원 - 1,000원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3,000원 - 2,500원 - 2,000원
영암 월출산 기차랜드	5,000원 - 3,000원 - 2,000원

○ (신설) 조례에서 정한 운영 전반사항의 세부 운영규정 마련

○ (신설) 현재 운영 중인 운영위원회의 제도적 근거 반영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의 합리화를 위해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 고흥군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

■ 주요내용

(단위 : ㎡, 백만원)

구분	재 산	건수	소 재 지	면 적	추정 가액	비 고
취득	건 물	1	고흥읍 남계리 404-4	1,230	1,800	• 고흥군 문서고 신축 〔재무과〕
취득	건 물	1	고흥읍 행정리 694	2,306	3,500	• 고흥 국민체육센터 건립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취득	건 물	1	금산면 신촌리 345-1	766	2,000	• 거금도 휴게소 신축 〔건설과〕
취득	조형물	1	금산면 신촌리 343	580	2,000	•고흥 항공랜드 조형물 설치 〔문화관광과〕
취득	토 지	1	남양면 망주리 1451 등	15,117	500	• 구 남양 망주초등학교 매입 〔재 무 과〕
	건 물	1		2,326.76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3. 제21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가. 집회공고 및 의사일정

1) 집회공고

제21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송우섭의원 등 5인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2013년 9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2013년 9월 23일 오전 10시에 집회함.

2) 의사일정 : 2013. 9. 23(월) ~ 9. 24(화) 〈2일간〉

<table>
<tr><th>일 시</th><th>차 수</th><th>안 건</th><th>비 고</th></tr>
<tr><td>09.23(월)
10:00</td><td>제1차
본회의</td><td>▶ 의사일정
1. 제21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2년도 군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td><td>본회의장</td></tr>
<tr><td>10:30</td><td></td><td>◎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table><tr><th>위원회별</th><th>건수</th><th>비 고</th></tr><tr><td>계</td><td>7</td><td></td></tr><tr><td>총무위원회</td><td>5</td><td>행정과2,보건소3</td></tr><tr><td>산건위원회</td><td>2</td><td>농업축산과1,건설과1</td></tr></table></td><td>상 임
위원회실</td></tr>
<tr><td>09.24(화)
10:00</td><td>제2차
본회의</td><td>▶ 의사일정
1. 고흥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흥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흥군 저소득층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고흥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고흥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고흥군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7. 고흥덤벙분청공원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td><td>본회의장</td></tr>
</table>

나. 제1차 본회의

2013년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10시 8분에 산회함.

1) 제21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1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 주요내용 : 2013. 9. 23(월) ~ 9. 24(화) 〈2일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2012년도 군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

- 제 안 자 : 송우섭의원 등 5인
- 제안이유
  - ○ 2012년도 군 발주 시설공사 및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 ○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견실시공 여부 등을 살펴, 모범사례는 권장하고 문제점은 시정 개선하여 부실공사 추방과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조사기간 : 2012. 10. 15.(화) ~ 10. 24.(목) 【8일간】
  - ○ 조사대상 : 2012년도 군 발주 사업 중 사업비 2천만원 이상인 시설공사 및 민간자본보조사업
  - ○ 조사방법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 조사반편성 : 2개반 18명(의원 12, 공무원 6)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1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주요내용 : 김옥래의원, 송우섭의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다. 제2차 본회의

2013년 9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7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10시 12분에 산회함.

1) 고흥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에 따른 보건진료소장의 직위를 신설하고,

○ 전라남도로부터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 전략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우주항공사업소 한시기구 연장승인”이 통보됨에 따라 부칙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변경함.

현 행	보건진료원	▶	변 경	보건진료소장

○ 우주항공사업소의 존속기한을 연장함.

기 존	2011. 10. 1 ~ 2013. 9. 30(2년)	▶	연 장	2013. 10. 1 ~ 2015. 9. 30(2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고흥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사무분야 기능직”인력을 감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 및 조직·인력관리의 효율화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의 정원을 일부 개정하여 기능직 비율을 조정하고,

○ 고흥덤벙분청문화관 건립 추진 및 운영에 따라 전문지식을 갖춘 학예연구사(1명)를 채용하여 소장 유물의 상설 전시 및 보존처리와 우리군 역사 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 정원 일부를 개정하고,

○ 고흥특화작목연구단지 운영 및 기후변화에 따른 경쟁력 있는 새로운 소득 작물 발굴을위해 농업연구사(원예 1명)를 증원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정원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 사무기능직공무원 감축 △4명 ⇨ 일반행정직 +4명

○ 일반직 행정9급 감축 △1명 ⇨ 학예연구사 +1명

○ 농촌지도사 감축 △1명 ⇨ 농업연구사 +1명

[세부내역별]

○ 기능직 총정원 감원에 따른 비율 조정

• 기능직 → 일반직 전환인원 : 31명(2012년 – 27명, 2013년 – 4명)

구분	직급 / 비율	6급	7급	8급	9급
당초	기능직 비율	6% 이내	15% 이내	22% 이내	57% 이상
변경		8% 이내	18% 이내	24% 이내	50% 이상
증감		2% 증	3% 증	2% 증	7% 감

• 기능직 사무기능 8급 △1명 → 일반행정 8급으로 정원 대체

• 기능직 사무기능 9급 △3명 → 일반행정 9급으로 정원 대체

구분	기관별 /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당초정원	기능직 계	83	28	4	8	11	32
변경정원	기능직 계	79	28	4	8	11	28
증감		△4					△4

▼

구분	기관별 /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당초정원	6급이하 일반직	602	239	7	84	41	231
변경정원	6급이하 일반직	606	239	7	84	41	235
증감		+4					+4

○ 학예연구사 정원반영 : 1명

• 일반행정 9급 △1명 → 학예연구사 +1명 정원 대체

구분	기관별 /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당초정원	6급이하 일반직	606	239	7	84	41	235
변경정원	6급이하 일반직	605	238	7	84	41	235
증 감		△1	△1				

▼

구분	기관별 /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당초정원	연 구 사	3	1		2		
변경정원	연 구 사	4	2		2		
증 감		+1	+1				

○ 원예연구사 정원반영 : 1명

• 농촌지도사 △1명 → 원예연구사 +1명 정원 대체

구분	기관별 /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당초정원	지 도 사	27			27		
변경정원	지 도 사	26			26		
증 감		△1			△1		

▼

구분	기관별 /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당초정원	연 구 사	4	2		2		
변경정원	연 구 사	5	2		3		
증 감		+1			+1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고흥군 저소득층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고흥군 거주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만성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한 무릎인공관절수술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 ○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범위
  - ○ 비용 부담 및 대상자 승인
  - ○ 수술비 지원방법 및 환수
  - ○ 수술비 지원금액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고흥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고흥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코자 지역사회의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군민 자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 ○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 ○ 군수의 책무 및 군민 등의 의무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 ○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고흥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정신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고흥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흥군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 제정 목적
  - ○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운영
  - ○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구체적인 사업 수행
  - ○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 ○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 ○ 환자 등 지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고흥군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우리군 기본산업인 농어업 발전과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번기철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 지원대상 범위, 지원기간, 지원방법, 사업신청 등

○ 행정·재정적 지원

– 농번기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예산(인건비, 식재료비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의결결과 : 원안가결

7) 고흥덤벙분청공원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역사의식이 난삽한 이 시대에 고흥 운대리 도요지를 중심으로 문화재 원형보존의 가치 아래 고흥의 모든 역사문화 공간을 확보(충)하여 대내외에 부각시킴으로써 지역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국가적 문화 관광의 견인차 역할을 통해 유·무형의 예술, 정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함

○ 또한 설화문학의 대가인 류몽인에 대한 재발견과 그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 사업은 고흥인의 고품격 생활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후세들에게 무한한 자긍심과 긍지를 심어줌은 물론 고흥을 설화문학 부동의 성지로 자리매김 하고자

○ 고흥군이 문화공원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군 계획시설(문화공원)결정이 필요함에 따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같은 법 제30조(군관리계획의 결정), 제43조(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공원), 제53조(공원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 기준)에 의거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코자 함

■ 주요내용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

– 변경 없음 –

나.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공간시설

가) 공원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분청 공원	문화공원	두원면 운대리 141-1 일원	-	99,885	99,885	-	-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1	분청공원	· 신설 · 면적 : 99,885㎡	· 문화공원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군계획시설(문화공원)로 변경 결정코자 함

2) 교통시설

가) 도로결정(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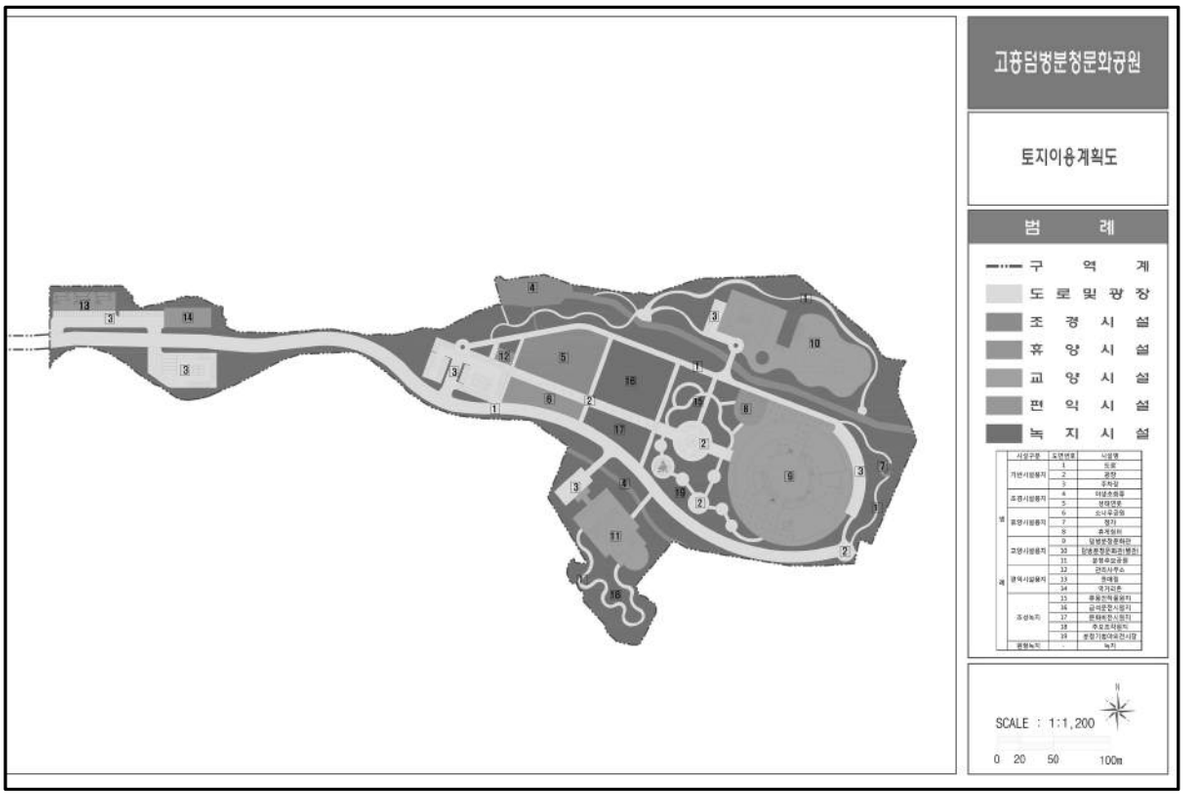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신설	중로	3	00	12	국지 도로	372	산76-6도	899답	진입 도로	-	-	-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3-00	· 노선신설 - 폭원 : 12m - 연장 : 372m	· 문화공원의 원활한 진 · 출입을 위한 진입도로를 군계획 시설로 결정(변경)코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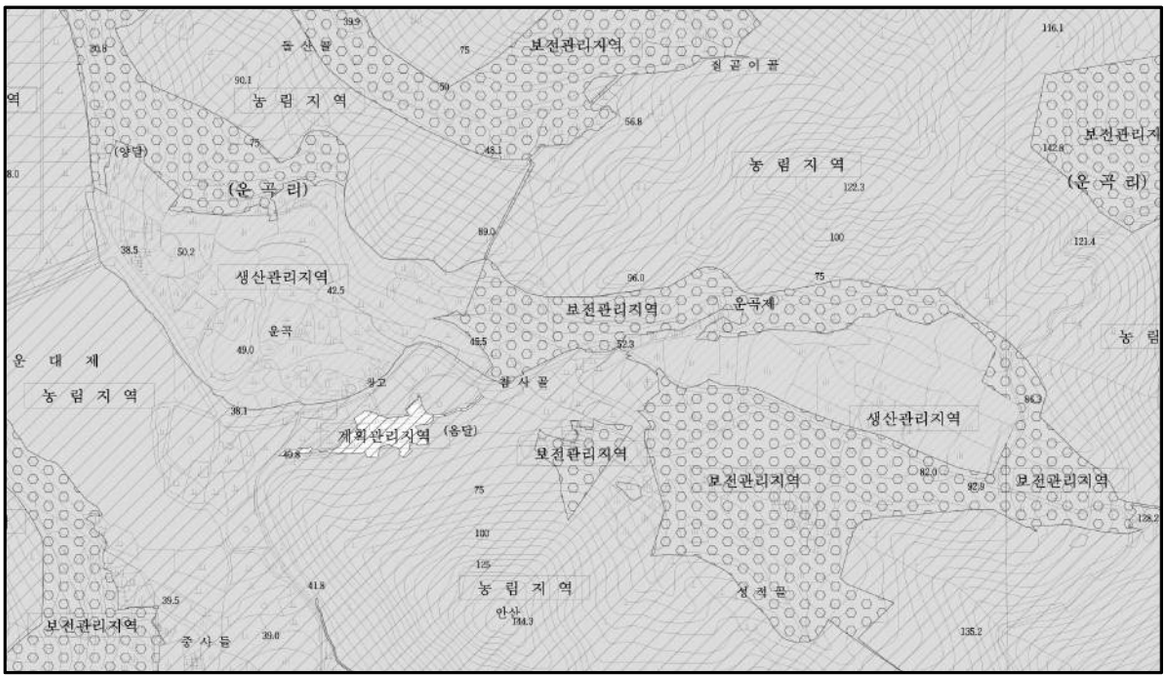
문화공원 사업계획

시설구분	부지면적(㎡)	구성비(%)	시설내용	비고
총 계	99,885	100.0		
기반시설용지	26,567	26.6	도로, 광장, 주차장	
조경시설용지	7,066	7.1	야생초화류, 생태연못	
휴양시설용지	2,031	2.0	소나무정원, 정자, 휴게쉼터	
교양시설용지	19,306	19.3	덤벙분청문화관, 문화관(별관), 분청추모공원	
편익시설용지	1,783	1.8	관리사무소, 판매점, 먹거리촌	
녹지용지	43,132	43.2		
조성녹지	11,357	11.4	류몽인작품원지, 금석문전시원지, 문화비전시원지, 추모조각원지, 분청기법야외전시장	
원형녹지	31.775	31.8	녹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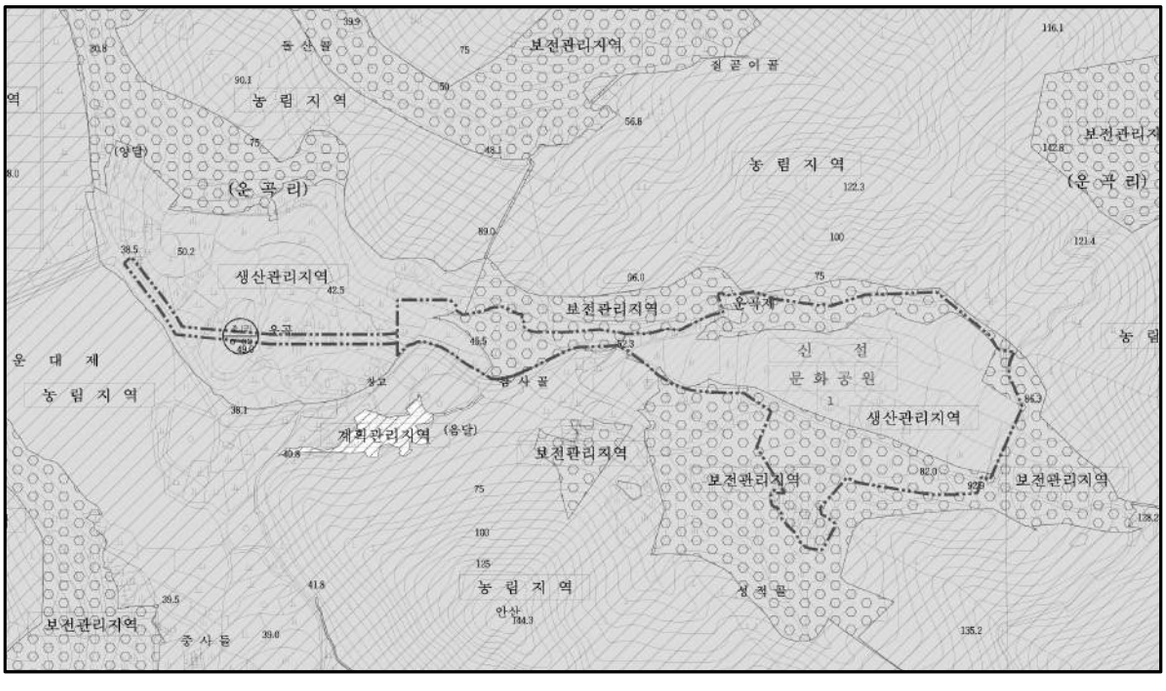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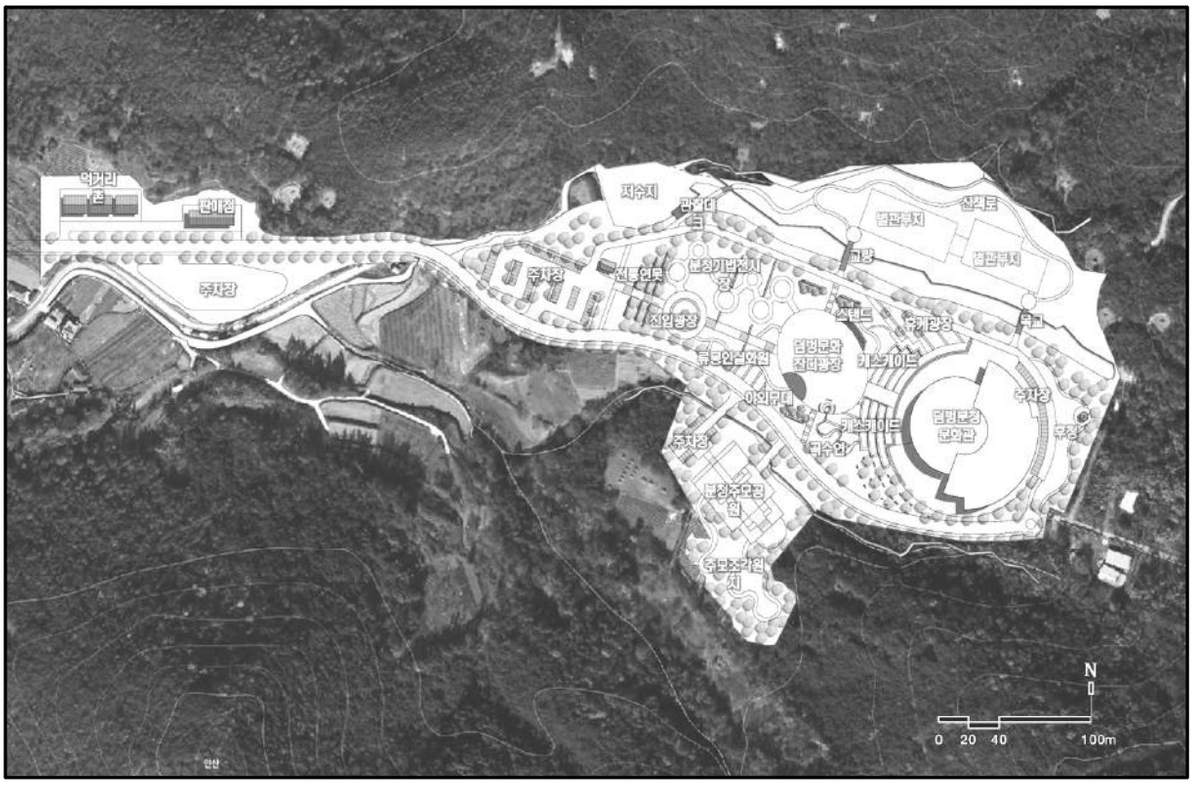
가. 기정



나. 변경(안)



●●● 토지이용계획(안) 도면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4. 제21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가. 집회공고 및 의사일정

1) 집회공고

제21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송우섭의원 등 5인으로 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13년 10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2013년 10월 14일 오전 10시에 집회함.

2) 의사일정 : 2013. 10. 14(월) ~ 10. 25(금) 〈12일간〉

<table>
<tr><th>일 시</th><th>차수</th><th>안 건</th><th>비 고</th></tr>
<tr><td>10.14(월)
10:00</td><td>제1차
본회의</td><td>▶ 의사일정
1. 제21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td><td>본회의장</td></tr>
<tr><td>10:30</td><td></td><td>◎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
<table><tr><th>위원회별</th><th>건수</th><th>비 고</th></tr><tr><td>계</td><td>7</td><td></td></tr><tr><td>총무위원회</td><td>5</td><td>기획실1, 행정과3, 종합민원실1</td></tr><tr><td>산건위원회</td><td>2</td><td>경제유통과1, 환경산림과1</td></tr></table></td><td>상 임
위원회실</td></tr>
<tr><td>10.15~
10.24</td><td>휴 회</td><td>◎ 2012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활동
• 10.15~10.22
– 권역별 조사 일정에 따라 실시
• 10.23 ~ 10.24
– 자료정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td><td>현 지</td></tr>
<tr><td>10.25(금)
10:00</td><td>제2차
본회의</td><td>▶ 의사일정
1. 고흥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흥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계획안
5.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고흥 웰빙유자·석류 특구지정 신청 의견제시의 건
7. 2012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td><td>본회의장</td></tr>
</table>

나. 제1차 본회의

2013년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4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 7분에 산회함.

1) 제21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1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 주요내용 : 2013. 10. 14(월) ~ 10. 25(금) 〈12일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

- 제 안 자 : 송우섭의원 등 5인
- 제안이유
  - ○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상황을 면밀히 파악, 군정시책과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하고,
  - ○ 위법부당 및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뒷받침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감사기간 : 2013. 11. 18. ~ 11. 28.【9일간】
  - ○ 감사범위 : 행정사무 전반
    - • 감사대상기간 : 2012. 11. 01. ~ 2013. 10. 31.
      - ☞ 사안에 따라 기간 예외 적용
  - ○ 감사실시 주체 : 감사특별위원회
  - ○ 감사방법 : 서류확인 및 현지확인
  - ○ 감사대상기관 :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
  - ○ 감사일정,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요령 등
    -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참조(제3절 행정사무조사)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1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주요내용 : 송경석의원, 신태균의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휴회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2012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 주요내용 : 2013. 10. 10 ~ 10. 24(10일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다. 제2차 본회의

2013년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7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 10분에 산회함.

1) 고흥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 고흥군 또는 고흥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사건을 수행하는 소송수행자 사기앙양과 책임감 및 자긍심 고취, 업무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현실과 맞지않는 포상금 지급금액을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현실화하고,
  - ○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급변하는 행정여건과 행정환경에 부합토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포상금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함(안 제5조)
    - 행정 · 민사(본안)소송 “1인당 10만원 이내” ⇒ “1명당 50만원 이내”
    - 소액사건 : “1인당 2만원 이내” ⇒ “1명당 15만원 이내”
    - 신청사건 : “1인당 2만원 이내” ⇒ “1명당 15만원 이내”
  -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정을 정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고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공무원이 민원인 등과 함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식사를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민원인 등을 포함하여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청렴식권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 청렴하게 근무할 수 있는 공직 여건을 조성하여 직원복지 및 업무생산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청렴식권제도의 정의

• 공무원이 민원인 등과 함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식사를 할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민원인 등을 포함하여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식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 청렴식권제도의 운영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고흥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해 토지의 실제경계와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지적재조사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등 「지적재조사에 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고흥군 조례로 제정하여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고흥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기능

• 지적공부정리의 정지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및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고흥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

•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지적재조사 측량시 발생되는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권고 및 그 밖에 지적재조사 측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고흥군 지적재조사추진 조직 구성

• 실시계획의 입안, 사업의 시행,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계획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우리 군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3조에 의거 군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증대상 : 3명

- 박 선 규【52세, 제37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 윤 용 현【61세, 초당대학교 교수】
- 조 진 수【57세, 한양대학교 교수】

○ 수 여 일 : 2013.11.1(예정)

○ 사　유 : 우리 군과 특별한 인연을 가진 인사로서 군 위상제고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군 발전을 앞당기는 데 큰 역할이 필요한 자로서 군민의 긍지와 사표로 삼고자 함.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고흥군 팔영산 일원이 2011. 1. 10일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2011. 4. 20일 관리권이 고흥군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이관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2006. 12. 31) 등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바뀌면서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일제히 정비하여 팔영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이용객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제명이 일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제명변경

○ 자연휴양림 적용범위, 시설물 등의 정의,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 등을 정하여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시설 사용기간, 주차, 요금표 게시, 시설물 예약 및 예약금 반환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 사용에 있어 사전 정보 제공으로 이용객의 안정적인 사용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시설의 임대와 관리에 관한사항, 손해배상과 과태료, 이용자의 준수사항인 입장 제한 및 퇴장, 이용자 유의사항 게시를 규정함과 어울러, 휴양림 관리 운영자 입장에서 사용제한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 시설 운영으로 발생되는 사용료 수입을 시설보완 및 수리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와 금전 징수에 관한 준용사항을 규정함

■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고흥 웰빙유자·석류 특구지정 신청 의견제시의 건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고흥군은 국내에서 유자·석류의 최대 주산지이며, 최적의 생산 적지로 생산력이 가장 높고, 비교우위의 지역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주로 유자차, 석류즙 등 단순 가공 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유통 및 가공 신기술 개발 등이 미흡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산업화를 통해 지역부존자원과 연계 관광활성화로 고부가가치 자원개발 등 유자와 석류의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지구온난화현상 등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고흥지역의 상황을 적극 활용하여 유자·석류산업의 생산·기술 지원체계를 연계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고차원의 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연관상품 연구·개발을 통해 유자·석류산업의 비교적 우위를 확대하고자 함

○ 이에 따라 특구지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체계를 정비하여 유자·석류 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특구개요

- 특 구 명 : 고흥 웰빙유자·석류 특구
- 특구신청자 : 전라남도 고흥군수
- 위 치 :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등 4개면 일원
- 면 적 : 약 246,524㎡
- 특화사업자 : 전라남도 고흥군수
- 총사업비 : 36,041백만원(국비 13,890 지방비 9,102 민자 13,049)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5년)
- 사업내용 : 별첨(190페이지)

■ **의결결과** : 원안가결

고흥 웰빙유자·석류특구 특화사업

특구지정을 통한 특화사업으로 생산기반 혁신화, 가공유통 산업화, 관광홍보 활성화 등
총 3가지 부문의 13개 사업으로 구성됨

1. 생산기반 혁신화

○ 아열대 농업기반 조성

■ 기　　간 : 2014~2016년 (3년간)
■ 사 업 비 : 3,000백만원(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 필 요 성
– 지구 온난화 영향에서 재배지역의 북상으로 고흥은 전국 최고의 일조량과 자연재해가 적고 지속적인 기온상승에 대비할 수 있는 유자、석류 등의 아열대과일 최적 재배지임
■ 사업내용 : 특화작목 연구단지 조성, 유전자원 수집 및 시범포 설치운영, 묘목구입 및 시설하우스 지원, 집단화지역 포장·가공시설 지원, 체험·전시·판매장 및 산책로 조성사업 등

○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

■ 기　　간 : 2014~2018년 (5년간)
■ 사 업 비 : 600백만원(과수 FTA기금)
■ 필 요 성
– 유자·석류산업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고품질 과일생산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재배농가의 애로사항 해결
■ 사업내용 : 고품질 생산단지 조성, 유기농 재배농가 육성, 우량품종 과원 조성사업, 무독묘 양성, 영농기자재 지원 및 농기계 임대·수리

○ 친환경 과일육성

■ 기　　간 : 2016~2018년 (3년간)
■ 사업주체 : 고흥군 및 해당농가
■ 사 업 비 : 1,020백만원(과수 FTA기금)
■ 필 요 성
– 친환경재배, GAP재배등 재배기술 문제와 경제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인 안전한 유자와 석류를 생산하여 소비자 신뢰 확보
■ 사업내용 : 친환경생산 표준매뉴얼 구축, 과원퇴비사, 공동이용 미생물 발효기, 과원종

합관리시스템 활성화, 과원토양구조 개선사업 등

2. 가공유통 산업화

○ 가공상품 다양화(가공식품 상품화 사업)

- 기　　간 : 2014~2018년 (5년간)
- 사 업 비 : 6,281백만원(광특 공모사업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등)
- 참여조직 : 한성푸드, 두원농협, 석류향토사업단, 에덴식품 등
- 규　　모 : 69,628㎡
- 필 요 성

– 고흥유자·석류의 명품화 육성을 위한 가공시설 확충으로 경쟁력 확보
– 세계 명품화를 위해 지속적인 가공시설 현대화가 필요
– 지역에서 생산된 유자·석류의 다양한 활용으로 부가가치 창출
–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 및 상품화 추진

- 사업내용 : 가공위생시설 정비, (친환경)가공식품 생산라인 구축 및 시설 현대화, 발효 가공식품을 이용한 상품화, 유자、석류를 활용한 다양한 신상품연구·개발 및 실용화

○ 유통환경 개선

- 기　　간 : 2014~2018년 (5년간)
- 참여조직 : 고흥군 유통 등 영농법인
- 규　　모 : 9,715㎡
- 사 업 비 : 4,300백만원(광특회계 공모사업 외)
- 필 요 성

– 고흥유자·석류의 명품화 육성을 위한 가공시설 확충으로 경쟁력 확보
– 세계 명품화를 위해 다양한 유통판로가 필요

- 사업내용 : 저온창고 물류시설 확충, 기타 유통판로 확충 및 체계개편, 프로모션 개발 및 운영

○ 인력관리 과학화

- 기　　간 : 2014~2018년 (5년간)
- 사업대상 : 고흥군 및 해당농가 및 기관
- 사 업 비 : 1,250백만원(경제유통과,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 필 요 성

– 생산관리, 품질관리, 마케팅, 수출 및 무역실무 등의 종합적인 유자、석류산업에 대한 전문성 강화 필요

■ **사업내용** : 고흥군 유자、석류산업 혁신인력양성, 종합컨설팅,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 유자 · 석류 연구기반 조성

■ **기　　간** : 2014~2016년 (3년간)
■ **위　　치** : 고흥군 풍양면 율치리 140-1번지 일원 (농업기술센터)
■ **규　　모** : 총 면적 49,354㎡ / 건축규모 3층 2,000㎡
■ **사 업 비** : 1,000백만원
■ **필 요 성**
– 기후온난화에 따른 생산환경 변화로 인한 연구를 비롯하여 고흥군의 유자 · 석류산업의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 등 전분야에 걸쳐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할 수 있는 장소 필요
■ **사업내용** : 유자 · 석류에 관한 상품연구, 신물질 추출 등 종합적인 연구활동이 가능한 농업기술센터 부속연구소 추진

○ 유자부산물 자원화

■ **기　　간** : 2016~2017년 (2년간)
■ **위　　치** : 개별농가
■ **사 업 비** : 2,000백만원(광특 공모 등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 **필 요 성**
– 친환경 농업 확대에 발맞추어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력 증진 필요
– 지역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자원 재활용생산 · 공급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 유자 파지생산 과다에 따른 항구적인 대책 마련 기반 조성
■ **사업내용** : 유자파지 등 부산물을 활용한 퇴비, 사료 생산라인 구축

○ 석류 건강타운 조성

■ **기　　간** : 2016~2018년 (3년간)
■ **위　　치** : 고흥군 일원
■ **사 업 비** : 7,000백만원(민자사업 : (주) 건강사랑)
■ **필 요 성**
– 청정 자연과 온화한 기후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석류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농가일자리를 창출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사업내용 : 석류특화 가공공장 건립, 석류 테마 관광체험 농원 조성

3. 관광홍보 활성화

○ 고흥 유자 · 석류 홍보체험장

■ 기　　간 : 2014~2015년 (2년간)
■ 위　　치 : 고흥군 동강면 한천리 393-3번지 일원(만남의 광장)
　　고흥군 풍양면 야막리 645-7번지 일원(유자공원)
■ 규　　모 : 총 45,115㎡(만남의 광장 18,203㎡/유자공원 26,912㎡)
■ 사 업 비 : 1,410백만원(광특회계 공모사업 외)
■ 필 요 성
- 고흥의 유자·석류 및 연관산업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인 홍보·체험시설 필요

■ 사업내용 : 유자·석류를 테마화한 홍보·체험지원센터 1동 건립

○ 고흥 웰빙유자·석류축제

■ 기　　간 : 2016~2018년 (3년간)
■ 위　　치 : 고흥군 도덕면 용동리 30-5번지 일원(고흥만 축제장)
■ 사업주체 : 고흥군 및 고흥웰빙유자·석류축제 추진위원회
■ 규　　모 : 55,571㎡
■ 사 업 비 : 900백만원(광특회계 공모사업 외)
■ 필 요 성
- 고흥의 유자·석류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행사와 체험활동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이에따른 판매촉진을 야기위한 행사 필요

■ 사업내용
- 주요시설 : 주무대, 임시천막구조물, 음향·영상시설 등
- 프로그램 : 고흥유자·석류요리 경연대회, 사진 컨테스트 등

○ 석류 테마마을 조성

■ 기　　간 : 2018년(이후 4년간)
■ 위　　치 : 고흥군 두원면 예회리 109-1번지 일원
■ 참여마을 : 고흥군 예회마을(예정)
■ 사 업 비 : 5,000백만원(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 필 요 성
- 고흥군 석류산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종합적인 석류 테마마을 구성

■ 사업내용 : 석류마을 커뮤니티센터, 로컬푸드 직판장, 재배·수확체험, 석류활용 요리교실, 석류밭길 조성 등

○ 브랜드파워 강화

■ 기　　간 : 2014~2018년 (5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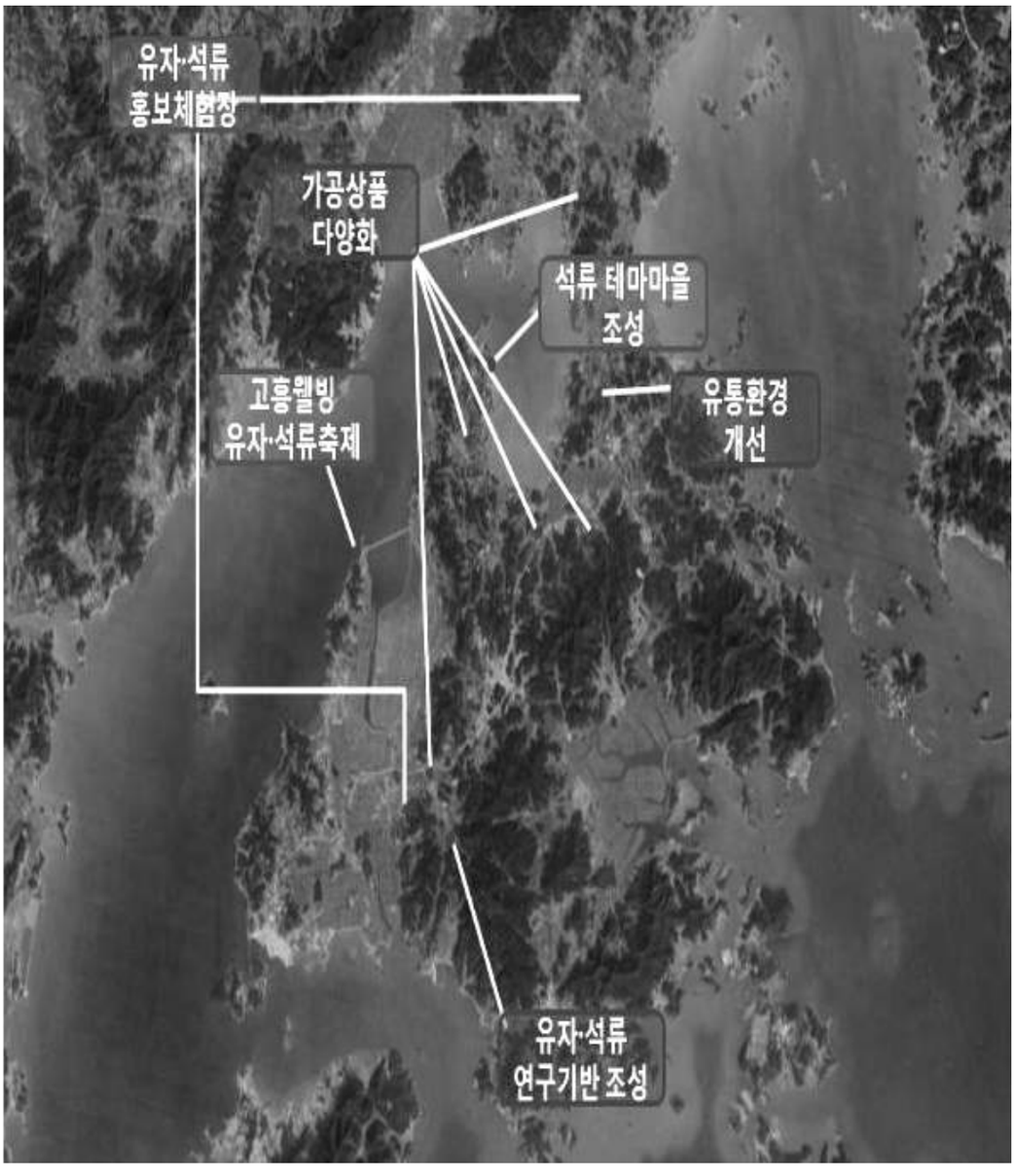
■ 사 업 비 : 2,280백만원(경제유통과,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 필 요 성

– 고흥군 유자 · 석류산업의 브랜드화, 고급화로 부가가치 창출

■ 사업내용 : 공동브랜드 패키지 개발, 홍보동영상 및 바이어 상품 설명회 등 개최, 고흥군 유자 · 석류 전용사이트 구축, 가공상품 프로모션, 기타 국내외 인지도 제고활동 등

4. 특화사업 계획도



고흥 웰빙유자·석류특구 특화사업 총괄표(안)

투자비 / 기능별 세부사업	사업비 (백만원)	사업근거	소관부처 (소관기업)	면적(㎡)	사업기간
합 계	**36,041**				
1. 생산기반 혁신화	**4,620**				
① 아열대 농업기반조성	3,000 (250)	농업기반조성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연구 센터내	3년간
②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	600 (300)	과수 FTA기금 (생산시설현대화)	농림축산식품부 과수경영과	–	5년간
③ 친환경 과일육성	1,020 (510)	과수 FTA기금 (친환경생산시설)	농림축산식품부 과수경영과	–	3년간
2. 가공유통 산업화	**21,831**				
① 가공상품 다양화	6,281 (2,512)	농어촌자원복합 산업화지원 등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 지원사업, 가공시설현대화 등)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69,628	5년간
② 유통환경 개선	4,300 (1,075)	농어촌자원복합 산업화지원, 신활력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9,715	5년간
③ 인력관리 과학화	1,250	지역전략식품산업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	5년간
④ 유자·석류연구기반 조성	1,000	농업기술센터 이전사업	농촌진흥청	49,354	3년간
⑤ 유자부산물 자원화	2,000 (800)	농어촌자원복합 산업화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	2년간
⑥ 석류건강타운 조성	7,000 (7,000)	민자사업	(주)건강사랑	100,000	3년간
3. 관광홍보 활성화	**9,590**				
① 유자·석류 홍보체험장	1,410 (602)	향토산업육성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45,115	2년간
② 고흥 웰빙유자·석류축제	900	도시관광 활성화사업	문화체육관광부	55,571	3년간
③ 석류 테마마을 조성	5,000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17,141	1년간
④ 브랜드파워 강화	2,280	지역전략산업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	5년간

고흥 웰빙유자·석류특구 규제특례

규제특례명	해당 특화사업	규제특례 내용	비 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23조)	관광홍보 활성화 (브랜드파워 강화)	·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광고물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함 – 지면높이 15m, 1면 면적 50㎡, 합계 150㎡이내	
"국유·공유"에 관한 특례 (법 제36조의 2)	가공유통 산업화 (유자·석류 연구기반조성)	·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임대·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인정	
「주세법」에 관한 특례 (법 제36조의 3)	가공유통 산업화 (가공상품 다양화)	· 특구지역의 유자·석류를 주원료로 하는 주류 제조시 면허취득 허가 절차완화	
"특허법"에 관한 특례 (법 제36조의 8)	가공유통 산업화 (가공상품 다양화)	· 특구내에서 생산되는 유자·석류와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우선 심사대상에 포함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법 제43조)	가공유통 산업화 (가공상품 다양화)	· 특구내에서 생산된 유자·석류 및 관련 가공식품에 대하여 타 지역상품과 차별화를 위한 표시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 할 수 있음	

5. 참고사항

■ 법적근거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제5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2항(지방의회의 의견)

■ 지금까지 추진경위

○ 지정신청 특구계획 공고(군홈페이지 공고/군보) : 2013. 8. 20

○ 열람 및 의견제출(군홈페이지 공고/군보) : 2013. 8. 20 ~ 9. 8

○ 주민·기업·관계전문가 공청회(군홈페이지 공고/군보) : 2013. 9. 12

■ 앞으로 추진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중소기업청에 11월중 특구지정 신청

■ 주무과 의견

○ 고흥 유자·석류 지역대표 농산물 산업화와 전국 최초 특구지정 선점을 위하여 원안 가결 요함.

7) 2012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제219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한 2012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부실시공 여부 등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 시정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조사기간 : 2013. 10. 15. ~ 10. 24.【8일간】

○ 조사대상 : 2012년도 군 발주 시설공사 및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사업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

○ 조사방법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확 인 반 : 2개반 16명

○ 지적사항 : 16건(별지참조, 제3절 행정사무조사)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5. 제22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가. 집회공고 및 의사일정

1) 집회공고

제22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2013년 11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2013년 11월 11일 오전 10시에 집회함.

2) 의사일정 : 2013. 11. 11(월) ~ 12. 17(화) 〈37일간〉

<table>
<tr><th>일 시</th><th>차 수</th><th>안 건</th><th>비 고</th></tr>
<tr><td>11.11(월)
10:00</td><td>제1차
본회의</td><td>◎ 개 회 식
• 개 식
•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개회사
• 폐 식
▶ 의사일정
1. 제22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td><td>본회의장

운 영
위원장</td></tr>
<tr><td>10:30</td><td></td><td>◎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table><tr><th>위원회별</th><th>건수</th><th>비 고</th></tr><tr><td>계</td><td>22</td><td></td></tr><tr><td>총무위</td><td>11</td><td>의원발의7, 행정과2,재무과2</td></tr><tr><td>산건위</td><td>11</td><td>의원발의6, 환경산림과2, 건설과3</td></tr></table></td><td>상 임
위원회실</td></tr>
<tr><td>11.12(화)
10:00</td><td>제2차
본회의</td><td>▶ 의사일정
1. 2014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 기 획 실 ■ 행 정 과
■ 재 무 과 ■ 투자정책과 ■ 경제유통과</td><td>소회의실</td></tr>
<tr><td>11.13(수)
10:00</td><td>제3차
본회의</td><td>▶ 의사일정
1. 2014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 농업축산과 ■ 문화관광과
■ 환경산림과 ■ 농업기술센터 ■ 평생학습사업소</td><td>〃</td></tr>
<tr><td>11.14(목)
10:00</td><td>제4차
본회의</td><td>▶ 의사일정
1. 2014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 건 설 과 ■ 안전총괄과
■ 종합민원실 ■ 보 건 소 ■ 주민복지과</td><td>〃</td></tr>
<tr><td>11.15(금)
10:00</td><td>제5차
본회의</td><td>▶ 의사일정
1. 2014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 해양수산과 ■ 상하수도사업소
■ 우주항공사업소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 휴회의 건</td><td>〃</td></tr>
<tr><td>11.16(토)
~
11.17(일)</td><td>〃</td><td>◎ 공휴일</td><td></td></tr>
</table>

일 시	차 수	안 건	비 고
11.18(월)	휴 회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실 ■ 주민복지과 ■ 행정과 ■ 보건소	소회의실
11.19(화)	〃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투자정책과 ■ 문화관광과 ■ 환경산림과 ■ 경제유통과	〃
11.20(수)	〃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안전총괄과 ■ 종합민원실 ■ 농업축산과 ■ 우주항공사업소	〃
11.21(목)	〃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재무과 ■ 상하수도사업소 ■ 평생학습사업소 ■ 농업기술센터 ■ 건설과	〃
11.22(금)	〃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해양수산과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
11.23(토) ~ 11.24(일)	〃	◎ 공휴일	
11.25(월) ~ 11.28(목)	〃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현지확인	
11.29(금)	휴 회	◎ 2014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자료검토	
11.30(토) ~ 12.01(일)	〃	◎ 공휴일	
12.02(월) 10:00	제6차 본회의	▶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4. 고흥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흥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흥덤벙분청청소년수련시설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본회의장
10:30		◎ 2014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상임위 심사 ■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심사	상임 위원회실

일 시	차 수	안 건	비 고
12.03(화) ~ 12:06(금)	휴 회	◎ 2014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상임위 심사 ■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심사	상 임 위원회실
12.07(토) ~ 12:08(일)	〃	◎ 공휴일	
12.09(월) ~ 12.11(수)	〃	◎ 2014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예결위 심사 ■ 실과소 심사 및 계수조정	예 결 위원회실
12.12(목) 10:00	제7차 본회의	▶ 의사일정 1. 고흥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휴회의 건	본회의장
12.13(금) 10:00	휴 회	◎ 상임위원회 활동	
12.14(토) ~ 12.15(일)	〃	◎ 공휴일	
12.16(월)	〃	◎ 상임위원회 활동	
12.17(화) 10:00	제8차 본회의	▶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고흥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고흥군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장

나. 제1차 본회의

2013년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을 가졌으며, 3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 15분에 산회함.

1) 제22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2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 주요내용 : 2013. 11. 11(월) ~ 12. 17(화) 〈37일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안이유**
  - ○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고흥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2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2014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청취 등을 실시함에 따라
  - ○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사무 처리 전반에 대한 보고와 의문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함.
- **주요내용**
  - ○ 출석요구기간 : 15일간
    - 2013. 11. 12. ~ 11. 15.(4일간)
    - 2013. 11. 18. ~ 11. 28.(9일간)
    - 2013. 12. 12. ~ 12. 13.(2일간)
  - ○ 출석범위
    - 군수
    - 고흥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2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주요내용** : 송우섭의원, 장세선의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개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내년도 예산을 심의 확정해야 하고 의정과 군정의 알찬 계획을 설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 소망을 그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기상 입동이 지나고 한 해를 갈무리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민들께서는 영농현장에서 땀흘린 보람으로 풍년농사의 결실을 일구셨으며,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민생현장과 의정단상에서 군민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애써 오셨습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맡은 바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여 3년 연속 대한민국 생산성 대상 수상의 금자탑을 달성하는 등 공복으로서 소임을 다하여 오셨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고흥의 발전과 풍요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원동력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는 지방자치란 말이 낯설지 않고 우리의 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려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동안 불안전한 제도와 중앙정부와의 불합리한 관계로 인하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군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선진 자치정신을 성숙시켜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하여 지방재정 확충 문제 등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문제들을 지방의회 차원에서 수도 없이 건의해 왔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범국가적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대오 각성하는 사고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난달 정부에서 지방자치의 날을 제정하고 경축하면서 지방자치 헌장을 공표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실천 의지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군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 되어 줄기차게 요구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연륜과 함께 우리 고흥도 많은 변화와 지역발전을 이루어 왔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의 의지를 받들어 견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 대화와 타협의 상생관계를 견지했기에 가능했다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매년 이맘때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회의지만 이번 37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제2차 정례회는 시기적으로나 다루어야 할 안건으로 보나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내년도 추진해야 할 각종 사업 들을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살림살이를 짜임새 있게 설계해야 할 중요한 시기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나 중앙부처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복지예산 증대로 금년 하반기부터 세수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예산이 15%나 감축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정수지 악화로 예산부족 현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어려운 전망이어서 재정환경이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최적의 예산안을 갖추기 위하여 온갖 지혜를 마련하느라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정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낭비적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탈피하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그 수혜자가 우리 군민들임을 잊지 마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예산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하시고 내년도 의정과 군정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서리 내리고 찬바람 부는 차가운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날이 차가워지면 우리들의 몸도 마음도 움츠려드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차가운 겨울을 보내는 군민들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군민 모두가 몸과 마음이 따뜻한 겨울을 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제2차 본회의

2013년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오전 12시 25분에 산회함.

1) 2014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 · 청취의 건

- 보 고 자 : 5명(기획실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투자정책과장, 경제유통과장)
- 질 의 자 : 9명(송경석, 송우섭, 최설희, 김의규, 김옥래, 장세선, 송경양, 신태균, 김주식 의원)
- 질의건수 : 21건

라. 제3차 본회의

2013년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 2시 19분에 산회함.

1) 2014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 · 청취의 건

- 보 고 자 : 5명(농업축산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 질 의 자 : 9명(송경석, 장세선, 송인숙, 송경양, 김의규, 김옥래, 신태균, 최설희, 송인숙의원)
- 질의건수 : 23건

마. 제4차 본회의

2013년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오전 11시 50분에 산회함.

1) 2014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 · 청취의 건

- 보 고 자 : 5명(건설과장, 안전총괄과장, 종합민원실장, 보건소장, 주민복지과장)
- 질 의 자 : 7명(장세선, 송경석, 김의규, 송우섭, 신태균, 김옥래, 최설희의원)
- 질의건수 : 24건

바. 제5차 본회의

2013년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오전 11시 12분에 산회함.

1) 2014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 · 청취의 건

- 보 고 자 : 5명(해양수산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주항공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 질 의 자 : 8명(김옥래, 신태균, 김의규, 최설희, 장세선, 송우섭, 송인숙, 송경석의원)
- 질의건수 : 15건

사. 제6차 본회의

2013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8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0시 35분에 산회함.

1) 2014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 보 고 자 : 고흥군수
- 주요내용 : 별지참조(213페이지)

2)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13. 12. 12)에 맞춰 기능직 · 별정직을 직렬 또는 직위별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고,
  - ○ 군민 복지정책 체감도 향상과 정부의 복지담당 공무원 증원계획에 따라 2014년도 사회복지 인력의 순증분(1명)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총정원 : 759명⇒ 760명(증원 1명)
  - ○ 일반직 : 644명⇒ 724명(증원 80명)
    - • 기능직 79명 감원(전체 정원폐지)⇒일반직 79명 증원
    - • 사회복지 순증 1명(주민복지과)
  - ○ 전문경력관 정원 신규책정 : 1명(농업기술센터)
    - • 농업기술센터 별정직 △1명(정원 대체)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 처분의 합리화를 위해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 고흥군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

■ 주요내용

(단위 : ㎡, 백만원)

구분	재산	건수	소 재 지	면 적	추정가액	비 고
취득 (4)	건물	1	영남면 남열리 173, 174	519	1,108	• 남열지구 남해안관광벨트사업 복합건물 신축 〔문화관광과〕
	건물 토지	1 9	도화면 당오리 1148-3 일원	660 13,662	1,927	• 도화면 주민복합문화센터 신축 〔안전총괄과〕
	건물 토지	1 8	도덕면 오마리 540-3 일원	458 18,452	2,299	• 도덕면 오마권역 주민복합문화센터 신축 〔안전총괄과〕
	건물	1	포두면 오취리 1161-1	480	1,100	• 포두면 해창권역 주민복합문화센터 신축 〔안전총괄과〕
처분 (2)	토지	12	두원면 운대리 888 등	9,698	33	• 도예(한옥)마을 조성 예정부지 매각 〔문화관광과〕
	토지	1	금산면 신촌리 1543-9	4,322.1	24	• 군유재산(토지) 매각 〔재무과〕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고흥군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기금의 용도에 따른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환경미화 종사자의 후생복지 비용으로 활용하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활용품판매대금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 환경미화원 명칭변경, 장려금 조항 삭제

• "환경미화원" ⇒ "환경미화 종사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고흥읍 시가지의 혼잡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영주차타워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의 주차편익제공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이용요금을 재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1구획당 주차요금 하향 조정

○ 고흥군 주차장 조례 제3조제1항의 [별표 1] 공영주차장 요금표 개정

공영주차장 요금표

급지구분		최초 1시간까지 (1구획당)	1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1구획당)	1일 주차권	월정기 주차요금	
					주간	야간
1급지	소형	무 료	500원	3,000원	30,000원	20,000원
	대형	무 료	600원	4,000원	50,000원	40,000원
2급지	소형	무 료	400원	2,000원	20,000원	10,000원
	대형	무 료	500원	3,000원	30,000원	20,000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고흥 덤벙 분청 청소년수련시설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국내 관광환경의 특징적 변화는 점차 선진국형 여가문화가 확산되어 양보다 질을 중시하며 단순 소비형 여가활동에서 도구와 장비를 이용한 여가활동으로 변화되어가고 있으며 세분화, 전문화 되고 있음.

○ 관광여건 및 체험활동 변화에 발맞추어 고흥군은 덤벙 분청 도요지, 다도해상국립공원 등의 뛰어난 역사문화자원과 자연생태자원을 바탕으로 평면적 관광형태를 극복하고 변화되어가는 관광 트랜드에 부합.

○ 따라서 지역의 우수 자연환경이 융화되어 휴식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시설로 청소년수련시설(캠핑장)을 두원면 운대리에 조성하여, 변화하는 관광패턴에 적극 부응하는 차별화된 시설의 도입 및 서비스제공을 통한 청소년 및 가족단위 캠핑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직·간접적인 소득증대 및 관광고흥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관리계획의 입안)에 의거하여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을 입안코자 함.

■ 주요내용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799,931,389.8	-	799,931,389.8	100.000	
도시지역	합 계		28,353,544.6		28,353,544.6	3.544	
	주거지역	소 계	3,442,498.0	-	3,442,498.0	0.430	
		제1종 전용주거지역	4,585.0	-	4,585.0	0.001	
		제2종 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2,373,358.0	-	2,373,358.0	0.297	
		제2종 일반주거지역	884,368.0	-	884,368.0	0.111	
		제3종 일반주거지역	44,210.0	-	44,210.0	0.006	
		준주거지역	135,977.0	-	135,977.0	0.017	
	상업지역	소 계	551,674.0	-	551,674.0	0.069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551,674.0	-	551,674.0	0.069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지역	소 계	529,649.0	-	529,649.0	0.066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31,310.0	-	31,310.0	0.004	
		준공업지역	498,339.0	-	498,339.0	0.062	
	녹지지역	소 계	23,173,688.0	-	23,173,688.0	2.897	
		보전녹지지역	720,445.0	-	720,445.0	0.090	
		생산녹지지역	3,951,429.0	-	3,951,429.0	0.494	
		자연녹지지역	18,501,814.0	-	18,501,814.0	2.313	
	도시지역 미세분		656,035.6	-	656,035.6	0.082	
비도시지역	합 계		771,577,845.2		771,577,845.2	96.456	
	관리지역	소 계	225,232,649.9	증)59,389	225,292,038.9	28.164	
		계획관리지역	88,333,831.1	증)92,289	88,426,120.1	11.054	
		생산관리지역	76,017,979.5	-	76,017,979.5	9.503	
		보전관리지역	60,880,839.3	감)32,900	60,847,939.3	7.607	
		미세분관리지역	-	-	-	-	
	농림지역		399,207,016.5	감)59,389	399,147,627.5	49.898	
	자연환경보전지역		117,458,563.0	-	117,458,563.0	14.684	
	미지정지역		29,679,615.8	-	29,679,615.8	3.710	

※ 기정 : 전라남도 고시 제2013-254호(2013. 08. 27) 근거

○ 결정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두원면 운대리 112-1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 획 관리지역	59,389	100% 이하	• 청소년수련시설 조성에 따른 적정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코자 함
㉯	두원면 운대리 산36번지 일원	보 전 관리지역	계 획 관리지역	32,900	100% 이하	

나.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112-1번지 일원	-	증) 92,289	92,289	-	-

○ 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청소년 수련시설	○ 신설 ○ 청소년수련시설 -면적 : 92,289㎡	•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하고 교육적인 여가 활동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교와 가정교육을 연대 통합하여 '사회교육'의 기능을 담당하고자 청소년수련시설을 조성하고자 함

※ 청소년수련시설 사업계획

시설구분	부지면적(㎡)	구성비(%)	시설내용	비고
총 계	92,289	100.0		
기반시설용지	13,555	14.7	도로, 광장, 제1,2,3주차장	
수련시설용지	9,867	10.6	제1야영장, 제2야영장, 제3야영장	
체육시설용지	2,815	3.1	모험체육시설, 체력단련시설	
문화시설용지	13,227	14.3	야외무대, 다목적 야외공연장, 고인돌 전시원지, 금석문 전시원지, 문화비 전시원지, 분청체험공방	
환경학습시설용지	5,510	6.0	생태환경학습장, 자연탐사학습장	
모험활동시설용지	2,216	2.4	자연수영장, 물놀이체험장	
녹 지 용 지	45,099	48.9	녹지	
조성녹지	14,772	16.0	-	
원형녹지	30,327	32.9	-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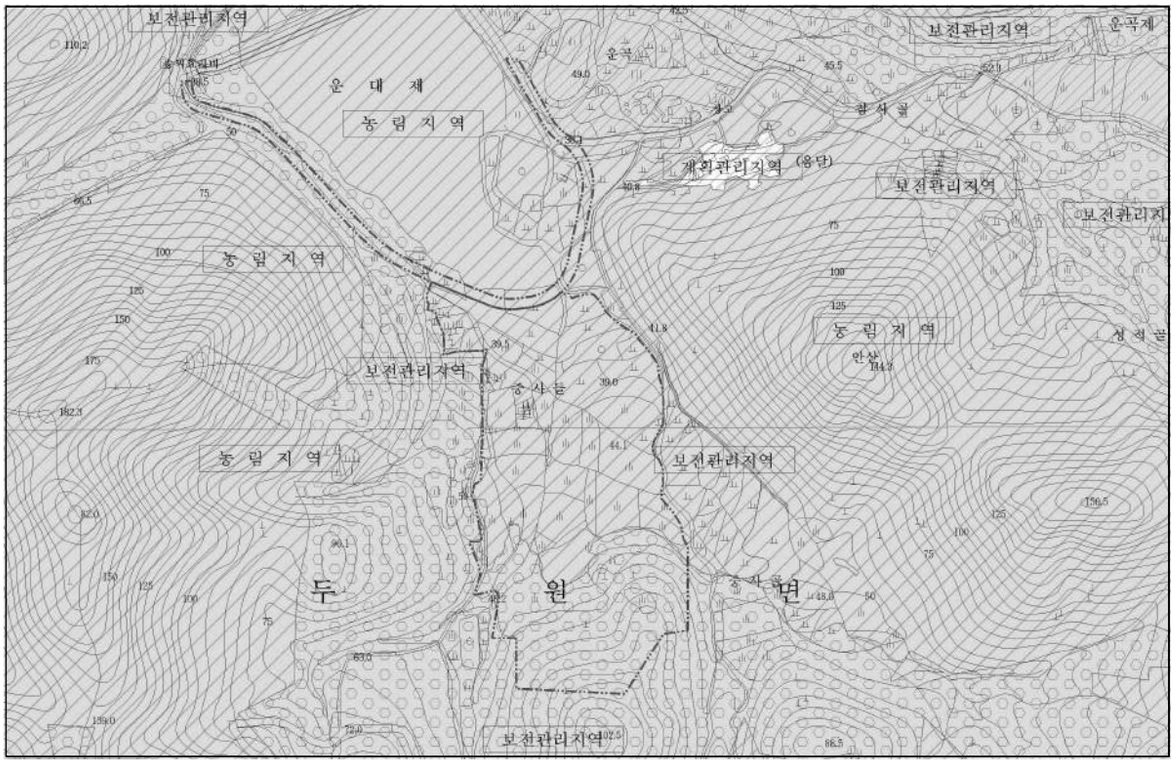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00	12	국지도로	823	산28-3도	920-7도	진입도로 및 연결도로	-	-

○ 결정 변경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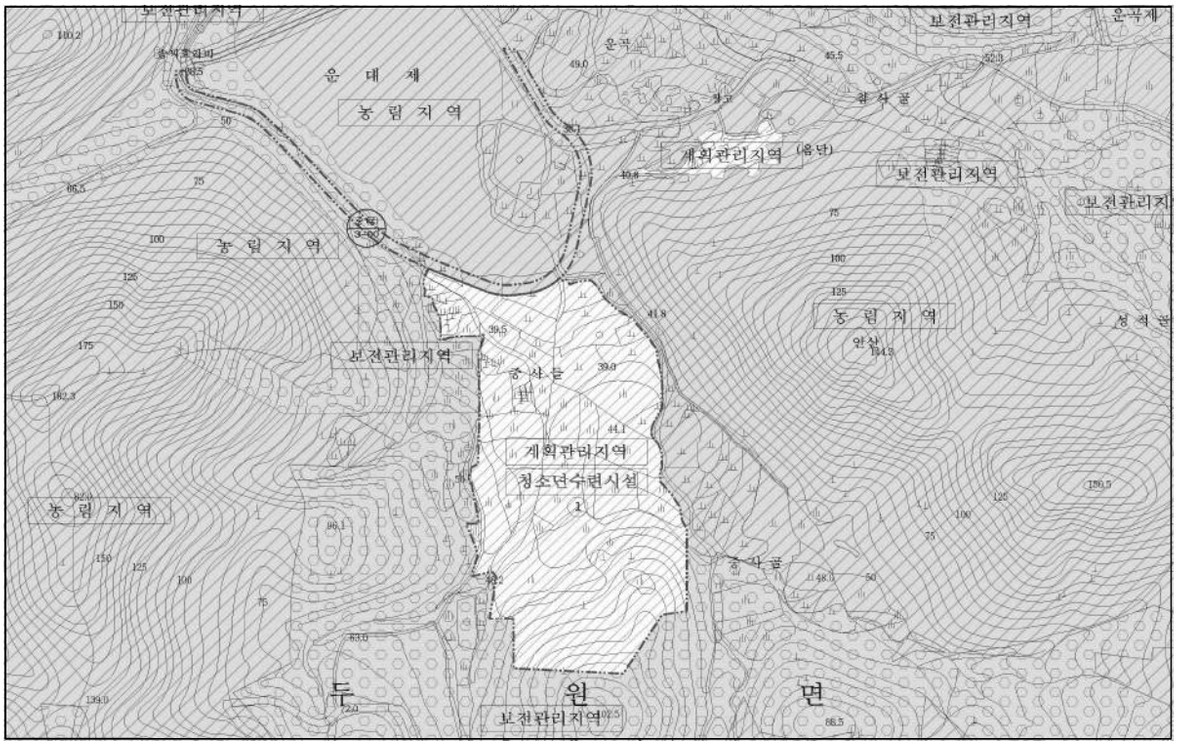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3-00	○노선신설 - 폭원 : 12m - 연장 : 823m	• 청소년수련장의 원활한 진 · 출입 및 북동쪽에 위치한 문화공원 간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연결도로를 군계획시설로 결정(변경)코자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가. 기정



나. 변경(안)



3. 토지이용계획(안) 도면



■ 의결결과 : 원안가결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주요내용
  - ○ 위원장 : 김의규의원
  - ○ 간 사 : 최설희의원
  - ○ 위 원 : 배기홍, 김옥래, 송우섭, 장세선의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8) 휴회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주요내용 : 2013. 12. 3 ~ 12. 11(9일간) 본회의 휴회
- 의결결과 : 원안가결

시정연설 (고흥군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해서 시정연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금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2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선 5기」 고흥군정이 정상궤도에 오르고 많은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꿈을 현실로! 하이 고흥, 해피 고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오로지 고흥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모두 다 어렵다고 했던 꿈들이 하나 둘씩 현실이 되는 것을 보면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꿈을 이루어 나갈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반드시 될 것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행정과 의회, 그리고 군민이 의기투합한다면 기필코 '더 큰 고흥'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초, 온 국민을 설레게 했던 나로호가 굳게 닫힌 '하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정말이지 감동의 순간이 따로 없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 있었기에, 너무나 간절했던 우리의 염원이었기에,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또한 같은 날 고흥 나들목이 수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전 군민의 힘을 모아 개통식까지 열리면서 우리의 기쁨을 두 배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연초부터 퍼진 하늘과 땅의 '성공 기운'은 2013년도를 풍성하고 알찬 '수확의 해'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개발에 관한 정부차원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고흥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에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나로우주센터와 항공센터를 비롯하여 우주과학 교육체험시설들이 집적화 되어있고, 연관 산업들이 순탄하게 들어서고 있는 만큼, '우주항공 중심도시'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녹색산업의 메카, 고흥'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각인시키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먼저 폐석산을 활용한 국내 최대 규모의 「거금에너지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전액 민간 자본유치를 통해 7년 만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버려진 땅인 폐석산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고, 군 세수증대와 에너지 자립률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지역의 흉물이 '고흥의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에는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실증공장을 준공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들이 해외로 수출됨은 물론, 기술보급에 따른 개런티까지 받는 시대가 머지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농수산업 분야에서도 가공·유통 시설의 대폭적인 지원과 다각적인 마케팅 노력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유자 식품에 대하여 전국 최초로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고흥 친환경 쌀은 대도시 500여 개 학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삼성에버랜드와 업무제휴로 미역, 다시마 등 연간 20억 원의 매출을 확보하였으며, 대도시 직거래 장터 운영 등 그동안 농수산업의 탄탄한 기반위에 유통의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는 더욱 속도가 붙어 지금까지 투자실현 28건 중, 올해에만 11개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민선 4기」 이전까지 전무했던 각종 규제 해제와 산업단지 조성 등 투자유치를 위한 기본적인 터 닦기부터 시작해서 불과 7년여 만에 이룬 쾌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축제분야에서는 새로운 시도로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4월, 「우주항공축제」와 「대종상단편영화제」, 「고흥우주마라톤 대회」를 동시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축제에 쓰이는 불필요한 예산을 절약하고,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만족도를 높이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추운 날씨로 인해 우리가 준비한 축제의 향연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점이 너무나 야속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대종상단편영화제」와 작년, 6년 만에 재개된 「우주항공축제」를 우리가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할지 보여주는 좋은 경험이었고 시험무대였다고 생각합니다. 고흥의 축제가 지역 문화산업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에는 특히나 크고 작은 행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만큼 고흥의 위상이 높아지고 대내외적으로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중국 동흥시와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한 이후, 홈스테이 학생교류단 방문에 이어 90명의 시민교류단 방문으로 실질적인 관광교류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중국 감숙성 주천시와는 무역, 교육, 문화, 농업, 관광 등 각 방면에 협력을 위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3회째를 맞이한 「고흥 선정 머드림픽」 개최를 비롯하여, 「고흥 국제 열기구 대회」, 「고흥 인간동력 항공기 경진대회」, 우주발사전망대를 활용한 「청정고흥 전어 한마당 잔치」, 「목일신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등 고흥의 가치와 격을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밖에 우리 군과 보성군 벌교읍을 잇는 「뱀골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도 마무리하여 군민 교통편익과 접근성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준공한 「거금 생태숲」은 인근 「거금대교」와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3년도 새해 첫 날을 민·관·군 1300여 명과 함께 '취약계층 사랑나눔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군민복지를 위해 의지를 다지고 행동으로 옮긴 한 해였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한 '해피 고흥 이동봉사단 운영'은 자원봉사자와 관내업체, 행정이 함께 참여하여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보건소의 '기지개 봉사단 운영'은 군민 만족도를 더욱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효친 사상 고취를 위한 다양한 시책 전개와 찾아가는 행복나눔 '이동 빨래방 운영' 등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군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알차고 값진 성과들은 단순히 우리의 만족에 그치지 않고, 대외적으로도 '확실한 도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경합한 대한민국 생산성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3년 연속 수상은 전남에선 유일하며, 전국적으로도 지자체 6곳에 불과하는 등 지속 발전된 군 위상을 '정부로부터 당당히 인증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드림스타트 사업평가에서는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영예의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농업인 대상은 6개 분야에서 '2개 분야를 석권'하였으며, 제32회 전라남도 한우경진대회에서는 4개 분야에서 '3개 부문 최우수상'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더불어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2013년도 암관리사업 평가대회 '최우수상' 수상, 폐가전 제품 수거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등 군정 다방면에서 고흥의 입지를 널리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짧은 속담에 담긴 진리를 몸소 실천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우선 18개 업체, 96%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고흥 청정식품단지」는 '통합 홍보·전시관'을 운영하는 등 사후관리 및 분양 마무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고흥 동강특화농공단지」는 농공단지 승인 고시 및 실수요기업 발굴에 집중하고, 「고흥 산업형 특화단지」는 고분자센터와 연계하여 연관기업 투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더불어 고흥청정식품단지 활성화와 고흥 동강특화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식품 유통·수출 물류센터'를 유치하여 지역 물류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고흥도양일반산업단지」는 1단계 부지조성을 위한 내실 있는 실수요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 할 것이며,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조성」은 국가 공모사업 유치를 통한 공공부분 선개발로 민간투자 여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흥시장 현대화 사업과 함께 마을기업·사회적 기업 발굴 등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고,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와 전지훈련팀 유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둘째, 우주항공 산업의 확실한 비교우위를 점하겠습니다.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 우주항공 산업에 상당한 탄력을 받고 있는 만큼, 계획 중인 우주항공 연관 산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가계획에 반영된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고흥 우주랜드」, 「나로 우주센터 확장」 등 6개 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고흥 과학로켓센터」는 국가계획 및 재정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흥 항공센터 일원에 「고흥 우주기술특화단지」를 조성하여 항공우주부품 시험평가센터, 해양 융복합소재 산업화 사업 등 국가사업 및 기업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셋째,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조기 목표달성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이미 농수산물 수출액은 중기 목표액 3000만 불을 돌파하였고, 5000만 원 이상 고소득 가구와 농림어업 소득액 또한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비전 5000' 조기 목표달성에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상승의 흐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가공, 유통 역량강화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유통 주식회사'는 농산물 유통센터로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RPC 건조저장시설 현대화사업」,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확충」 등 농수축산물 기반을 더욱 키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석류, 마늘, 취나물 등 지리적 표시제 등록 확대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고흥 한우 파워브랜드 육성」, 「조사료 유통센터 지원」 등 농어가 소득증대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고흥 관광 인프라 확충과 관광객 유인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고흥 덤벙 분청문화관 건립 및 공원 조성」은 문화특구 지정과 함께 사업 발주 등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하겠으며, 지난 7월 개장한 '시호도 원시체험의 섬'은 체험시설 보강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국내 유일의 체류형 시간여행 관광지로 입지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복산 목재 문화 체험장」 및 「자생식물원 조성」, 「거금 해양레저 친수공간 조성」,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 「다도해 명품 해수욕장 조성」 등 관광자원 개발에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흥 우주항공축제」, 「대종상단편영화제」, 「고흥 선정 머드림픽」은 더욱 정제하고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유자, 석류, 전어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계절별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경제와 연계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정주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국책사업인 「고흥-여수 간 연륙·연도교 가설」, 「고흥-봉래 간 국도 15호선 건설」은 계획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고흥읍 소도읍 육성과 도양읍·도화면·동강면 소재지 정비를 비롯하여 포두 해창권역·도덕 오마권역·영남 금사권역 종합정비를 통해 지역개발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고흥 터미널에서 등암 간 4차로 확포장으로 도로 접근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군민생활과 밀접한 군도와 농어촌도로도 투자계획에 따라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퍼진 '나눔과 봉사'의 에너지를 고흥의 온 누리에 구석구석 퍼질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봉사행정의 롤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해피고흥 이동봉사단'과 '기지개 봉사단' 운영, '이동 빨래방' 운영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인 경로당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식사배달 사업, 무료급식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응급안전 돌봄 서비스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인재육성에 있어서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한국사 경시대회를 비롯하여 영어 경시대회, 중·고생 주요 과목 아카데미 운영, 교육발전기금 조성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4대 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
요즈음 고흥을 찾는 향우 여러분을 비롯하여 방문객들에게 '고흥이 이전보다 깨끗하고 청결해졌다'는 말씀을 많이 듣곤 합니다. 이는 본 운동이 군민들의 생활속에 서서히 뿌리내리기 시작한 '하나의 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분명, 고흥의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운동의 조기정착을 위해 4대 과제인 주정차 질서 확립, 경로효친사상 고취, 녹색생활 정착, 친절한 손님맞이와 청결운동 생활화를 내년에도 계속 이어가면서, 민간 주도의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본 운동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금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책과 사업들이 속도를 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입니다.
재정이 튼튼하고 가용재원이 많아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사회복지 안전망도 튼실히 다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재원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였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우선 보통교부세 산정자료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2013년도 지방교부세를 전국 최고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지방재정균형집행 실적 평가에서 전국 2위인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안전행정부가 주관한 2013년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비로 갚아야할 채무를 전액 상환하였으며, 공모사업 또한 6년 연속 국도비 100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기금조성액도 교육발전기금 115억 원, 신청사 건립기금 122억 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307억 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탄탄한 군 재정력을 갖추게 된 한 축에는 의원님 여러분의 한결같은 지원과 협조, 그리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군정 농사의 시초는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알차고 성실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2014년도 군정 발전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경상예산을 대폭 절감하고, 투자사업을 최대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계속사업 마무리와 재정투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예산편성권 일부를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본격 도입하여 군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인터넷과 우편을 통한 주민설문조사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금년대비 4.5% 증가한 434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235억 원으로 5.7%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109억 원으로 27.4%가 줄었습니다.
분야별로는, 투자유치와 문화관광 등에 269억 원, 지역인프라 확충 등에 581억 원, 농수축산업 경쟁력 향상 등에 1183억 원, 사회복지 향상 등에 875억 원, 환경개선 및 보건증진 등에 503억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금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과 희망이 있고 나아가야할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달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역량과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동안의 성공 노하우와 열정이라면, 우리는 그 어떠한 난관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직자들의 '열정'을 믿고, 우리 군민들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지'를 믿습니다. 고흥인의 모든 에너지를 한데모아 '지역발전의 성장판'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자연의 순리이지만, '고인 물'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흐르는 물'에서만 소리가 납니다.
행동하고 실천하기에 성공이든 실패든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더 큰 소리를 내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군민들과 두 손을 맞잡고,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면서 함께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과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바라면서, 고흥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충만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3. 12. 2.
고흥군수 박병종

아. 제7차 본회의

2013년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 4분에 산회함.

1) 고흥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여 군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고자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 ○ 일부 축종의 악취발생 등 생활환경 침해민원이 빈번하고 분뇨 배출에 따른 혐오시설 인식으로 민원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생활환경보호와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일부 축종에 대하여 사육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별표 2] 가축사육제한지역 제1호 중 일부개정
    - 10호 이상 인가밀집지역으로부터 닭, 오리, 개의 사육제한거리를 200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변경

현 행	돼지는 500미터 이내, 닭, 오리, 개는 200미터 이내
▼	
변 경	돼지 · 닭 · 오리 · 개는 500미터 이내

  - ○ 부칙 제5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를 일부개정
    - 기존 축사의 증축 또는 개축은 1회에 한정
    - 증축의 경우 기존 축사면적 20퍼센트 이내로 한정
- 의결결과 : 수정가결

2) 휴회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 심사보고서 작성
- 주요내용 : 2013. 12. 13 ~ 12. 16(4일간)까지 본회의 휴회
- 의결결과 : 원안가결

자. 제8차 본회의

2013년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 43분에 산회함.

1) 2014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확정으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주요내용

○ 총규모 : 434,433백만원('13 당초예산 415,628백만원의 4.5% 증)

• 일반회계 : 423,473백만원('13 당초예산 400,524백만원의 5.7% 증)

세 입 (재정자립도 : 5.7%)	
• 자체수입 : 46,297백만원(10.9%)	
– 지 방 세 : 15,180백만원(3.6%)	
– 세외수입 : 9,095백만원(2.1%)	
– 보존수입등 : 22,022백만원(5.2%)	
• 의존수입 : 377,176백만원(89.1%)	
– 지방교부세 : 197,131백만원(46.6%)	
– 보 조 금 : 177,045백만원(41.8%)	
– 재정보전금 : 3,000백만원(0.7%)	

세 출 (성질별)	
• 일반공공행정 :	22,658백만원(5.4%)
• 공공질서 및안전 :	1,566백만원(0.4%)
• 교 육 :	2,874백만원(0.7%)
• 문화 및 관광 :	22,901백만원(5.4%)
• 환 경 보 호 :	39,598백만원(9.4%)
• 사 회 복 지 :	85,630백만원(20.2%)
• 보 건 :	7,387백만원(1.7%)
• 농림해양수산 :	114,503백만원(27.0%)
• 산업·중소기업 :	4,011백만원(1.0%)
• 수송 및 교통 :	11,937백만원(2.8%)
• 국토및지역개발 :	44,967백만원(10.6%)
• 예 비 비 :	4,422백만원(1.0%)
• 기 타 :	61,019백만원(14.4%)

• 특별회계(8개) : 10,960백만원('13 당초예산 15,104백만원의 △27.4%)

– 기 금(6개) : 21,214백만원(' 13 당초예산 10,328만원의 105.4% 증)

■ 의결결과 : 수정가결

2)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4회계연도 고흥군 각종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고흥군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금운용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명	'13년도말 현재액ⓐ	'14년도 기금운용계획		'14년도말 현재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19,136,737	2,077,179	420,580	20,793,336	1,656,599
사 회 복 지 기 금	3,226,346	95,500	40,000	3,281,846	55,500
신 청 사 건 립 기 금	12,153,751	1,394,600	0	13,548,351	1,394,600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	225,000	252,920	218,480	259,440	34,440
재 난 관 리 기 금	1,665,271	177,880	107,100	1,736,051	70,780
식 품 진 흥 기 금	67,369	4,000	0	71,369	4,000
체 육 진 흥 기 금	1,799,000	152,279	55,000	1,896,279	97,279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고흥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출향인 교류·협력사업 및 지원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시행과정에서 관련 상위법령인 「공직선거법」과 충돌 또는 무분별한 확대운영 우려가 예상되어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을 정하도록 함.

■ **주요내용**

○ 교류·협력사업 범위 중 포괄적으로 규정된 문화·체육행사와 각종 교류·협력사업 등을 삭제하고 군 및 향우회가 주최하는 행사를 구체적으로 규정

○ 지원내용 중 문화·체육행사 개최 필요경비 등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군 및 향우회가 주최한 행사를 명확히 규정하고 연간 지원횟수도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의결결과** : 수정가결

4) 고흥군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66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자료를 제출토록 규정되었으며,

○ 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의안의 비용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비용 추계서 작성대상

• 연평균 1억원 이상, 한시적 경비 3억원 이상

○ 비용 추계서 작성방법 등

• 비용발생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등

○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 필요시 전문기관 도움 가능

•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 이행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고흥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공무원 부조리 행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신고기한 조정 및 신고자 등의 비밀보호강화 등을 통한 실효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1년 이내”에서 지방공무원 징계만료시효(3년 내지 5년)로 조정

○ 부조리 행위 신고자뿐만 아니라 신고와 관련된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까지도 비밀보호 등 불이익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포상금의 계좌지급 외에 지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고흥군 장애인차별규정 일괄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지난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계기로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보장을 위해 법과 상충되는 관련 군조례를 일괄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관계법령에 맞는 용어변경 : 폐질등급 ⇒ 장애등급(1건)

○ 부정적이고 차별적 용어인 “정신질환자” 삭제(7건)

■ **의결결과** : 원안가결

7) 고흥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양성평등정책의 실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의 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사업 등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으로 함

-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지방재정법」 제41조의 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 예외: 정책의 효과가 간접적이거나 광범위하여 사실상 성별 구별이 불가능한 경우 등

○ 분석평가 결과는 정책 및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 계획서의 작성 등에 반영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등

- 분석평가 기본방향,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해 심의 조정

○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 소속과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사무를 총괄토록 함
-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 이행

■ 의결결과 : 원안가결

8)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임신 여성공무원의 보호강화 등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부합하도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법령의 인용조문을 일치시키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무원의 공가 허가 범위 추가 및 인용관계 법령정비

– 헌혈참가나 공무원노조단체 교섭위원의 단체교섭 등 체결 참석시 공가허가

○ 임신 등 유산 또는 사산 공무원에게 임신기간에 따라 특별휴가 허가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시 : 5일 이내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 10일 이내
-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 30일 이내
-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 : 60일 이내
- 임신기간 28주 이상인 경우 : 90일 이내

○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 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음

■ **의결결과** : 원안가결

9) 고흥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지방세 기본법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현행 징수 포상금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보완하여 관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세금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안 제2조)

-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감면 세액산정에 중요자료 제공자
- 은닉재산신고, 숨은 재원 발굴 부과한 자
-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 기여자

○ 지급한도는 건 당 30만원 이하, 개인별 월 100만원 이하(안 제4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0) 고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도로명주소법」에서 규정한 지번방식의 주소표기 방식이 2013년 12월 31일 종료되고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토록 함에 따라 지번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관련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각종 시설물의 소재 지번방식의 주소표기 관련 조례 일괄정비

– 고흥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0건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1)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의 합리화를 위해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 고흥군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

■ 주요내용

(단위 : ㎡, 백만원)

구분	재산	건수	소 재 지	면적	추정가액	비 고
취득	건물	1	도양읍 사산리 734 일원	315	1,500	• 사산도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환경산림과〕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2) 고흥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공공장소(도로, 공원)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를 돌보지 않아 동물들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서 내버려진 동물들이 있어, 동물보호법에 정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 **주요내용**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 등록대행자 지정 및 관리

○ 동물의 보호 및 관리

○ 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3) 고흥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지원대상사업

○ 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

○ 재정지원의 사후관리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4)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주차공간이 부족한 도시계획지역 내 기존 주택건물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코자 함.
- **주요내용**
  - ○ 기존의 단독 또는 다세대 주택에 주차장 설치 시 보조금 지원
    - 담장철거 및 대문철거 후 주차장 설치
    - 이웃간 대문경계 담장철거 후 주차장 설치
    - 시설에 따라 최고 200만 원 보조 및 2대 이상 설치 시 대수 1대당 최고 50만원까지 추가 지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5) 고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야간 및 방범 사각지대에 순찰과 우범지역에 청소년선도 등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등을 재정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코자 함
- **주요내용**
  - ○ 임무
  - ○ 지원대상
  - ○ 지원
  - ○ 지도 및 점검
  - ○ 포상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6) 고흥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물 사용량이 늘어나는 반면 한정된 물 자원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앞으로 물 수급이 지역적인 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기존 물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동안 버려졌던 빗물, 오수 및 하·폐수처리를 생활용수 등 각종 용수로 재이용함으로써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군수와 군민의 책무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 재정지원 등
○ 설치신고 및 확인
○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7) 고흥덤벙분청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역사의식이 난삽한 이 시대에 고흥 운대리 도요지를 중심으로 문화재 원형보존의 가치 아래 고흥의 모든 역사문화 공간을 확보(충)하여 대내외에 부각시킴으로써 지역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국가적 문화 관광의 견인차 역할을 통해 유무형의 예술, 정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함
○ 또한 설화문학의 대가인 류몽인에 대한 재발견과 그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 사업은 고흥인의 고품격 생활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후세들에게 무한한 자긍심과 긍지를 심어줌은 물론 고흥을 설화문학 부동의 성지로 자리매김 하고자
○ 고흥군이 문화공원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원조성계획(문화공원)결정이 필요함에 따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규정 및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에 의거, 군계획시설인 문화공원을 조성코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문화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결정내용	결 정 사 유
–	덤벙분청공원	• 문화공원 신설 – 면적 : 99,885㎡	• 고흥의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 및 보존은 물론 학술적·예술적 가치 향유와 함께 지역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본 공원을 조성하고자 함

나.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번호	시 설 명	면적(㎡)	건 축		비 율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기반시설	소 계		25,412			25.4%	
	1	도로	9,439				
	1-1	중앙광장	672				
	1-2	덤벙문화광장	7,621				
	1-3	소형주차장1	1,383				
	1-4	소형주차장2	3,759				
	1-5	문화관주차장	568				
	1-6	문화관별관주차장	615				
	1-7	대형버스주차장	1,355				
조경시설	소 계		2,575			2.6%	
	2-1	전통연못	715				
	2-2	역사이야기원	1,860				
휴양시설	소계		906		68.54	0.9%	
	3-1	전통휴게마당	773		68.54		전통가옥
	3-2	후정	133				
교양시설	소 계		13,265		8,998.34	13.3%	
	4-1	류몽인설화거리	1,092				
	4-2	분청기법전시장	2,575				
	4-3	덤벙분청문화관	7,043		7,730.70		지하1층 지상2층
	4-4	문화관별관	2,555		1,267.64		지상1층
편익시설	소 계		1,989		585.19	2.0%	
	5-1	먹거리촌	1,145		356.00		지상1층
	5-2	판매점	672		196.00		지상1층
	5-3	종합안내소	172		33.19		지상1층
시설소계			44,147	8,124.47	9,652.07	44.2%	
녹지	6-1	녹지 및 기타	55,738			55.8%	
합 계			99,885	8,124.47	9,652.07	100.0%	

2. 공원조성계획 총괄도면



3. 기본구상 도면



4. 기본계획 도면



■ 의결결과 : 원안채택

18) 거금대교 과적운행차량 단속 및 관련 시설설치 건의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2011. 12. 16. 거금대교 개통 이후 거금도를 찾는 관광객 등으로 차량 통행이 급증하고 있으나, 최근 석산에서 석재를 운반하는 과적차량 운행이 빈번하여 교량의 훼손과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음.

○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단속에 한계가 있으며, 단속반이 철수한 취약시간을 이용한 과적운행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과적차량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함.

○ 따라서 과적차량 근절을 위한 고정식 검문소 운영 및 전자동 중차량 중량 정보시스템을 설치해 줄 것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전라남도에 건의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과적차량 근절을 위한 고정식 검문소 운영 및 전자동 중차량 중량 정보시스템(WIM) 등 제반시설 설치 건의

■ **의결결과** : 원안채택

19)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등 5인

■ **제안이유**

○ 2013년도에 집행기관에서 추진했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예산 집행상황 등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채택,

○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개선하도록 하는 등 조치 결과를 보고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감사기간 : 2013. 11. 18. ~ 11. 28.【9일간】

○ 감사범위 : 군정업무 전반

○ 감사방법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감사대상기관 :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

○ 주요 지적사항 : 34건

■ **의결결과** : 원안채택

16. 제22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가. 집회공고 및 의사일정

1) 집회공고

제22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송우섭의원등 5인으로 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13년 12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2013년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집회함.

2) 의사일정 : 2013. 12. 18(수) ~ 12. 20(금) - 3일간

<table>
<tr><th>일 시</th><th>차수</th><th>안 건</th><th>비 고</th></tr>
<tr><td>12.18(수)
10:00</td><td>제1차
본회의</td><td>▶ 의사일정
1. 제22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td><td>본회의장

기획실장</td></tr>
<tr><td>10:30</td><td></td><td>◎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table><tr><th>위원회별</th><th>건수</th><th>비 고</th></tr><tr><td>계</td><td>10</td><td></td></tr><tr><td>총무위</td><td>6</td><td>기획실1, 주민복지1, 행정과1, 재무과1, 문화관광1, 종합민원1</td></tr><tr><td>산건위</td><td>4</td><td>안전총괄과3, 우주항공1</td></tr></table></td><td>상 임
위원회실</td></tr>
<tr><td>13:30</td><td></td><td>◎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심사
•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td><td>상 임
위원회실</td></tr>
<tr><td>12.19(목)</td><td>휴 회</td><td>◎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 심사
•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td><td>예 결
위원회실</td></tr>
<tr><td>12.20(금)
10:00</td><td>제2차
본회의</td><td>▶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고흥군 군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흥군 해창만수변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
5. 고흥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고흥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7. 고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흥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
9. 고흥우주랜드조성사업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수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td><td>본회의장</td></tr>
</table>

나. 제1차 본회의

2013년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5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 10분에 산회함.

1) 제22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2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 주요내용 : 2013. 12. 18(수) ~ 12. 20(금) 〈3일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보 고 자 : 기획실장
- 주요내용
  - ○ 추경예산규모 : 6,340백만원(기정예산 529,787 → 536,127)
    - 일반회계 : 6,314백만원(기정예산 513,007 → 519,321)
    - 특별회계 : 26백만원(기정예산 16,780 → 16,806)
  - ○ 일반회계 추가세입 : 6,314백만원
    - 의존수입 : 6,123백만원(지방교부세 1,425, 보조금 4,694, 재정보전금 4)
    - 자체수입 : 191백만원(지방세 590, 세외수입 △399)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주요내용
  - ○ 위원장 : 김의규 의원
  - ○ 간 사 : 최설희 의원
  - ○ 위 원 : 배기홍, 김옥래, 송우섭, 장세선의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2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주요내용 : 김주식의원, 송경양의원 선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휴회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주요내용 : 2013. 12. 19(목) 본회의 휴회
- 의결결과 : 원안가결

다. 제2차 본회의

2013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 18분에 산회함.

1)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2013년 제1회 추경예산 확정이후 보조금 정리·조정 및 법정·필수경비 반영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비 고
계	536,126,855	529,786,836	6,340,019	1.2	
일반회계	519,321,108	513,007,165	6,313,943	1.2	
특별회계	16,805,747	16,779,671	26,076	1.2	

○ 편성목 변경

(단위 : 천원)

소 관	예산안 페이지	세부사업	집행부안		수 정 안		
			목	예산액	목	예산액	부기내역
건설과	151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401-01	15,000	401-01	10,000	옥상마을 구거덮개 정비
					402-01	5,000	옥하마을 회관보수

○ 부기변경

소 관	예산안 페이지	과 목		예산액	부 기 내 역	
		편성목	통계목		집행부안	수 정 안
건설과	151	401	01	20,000	호천마을 배수로 정비	• 비아마을 배수로 정비
〃	151	401	01	15,000	독산 골짜기 농로포장	• 옥상마을 구거 덮개정비(10,000) • 옥하마을 회관보수(5,000)

■ **의결결과** : 수정가결

2) 고흥군 군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군정평가위원회 위원 중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우주항공분야, 대표성 있는 지역 상공인, 기관 사회단체대표 등을 위촉함에 있어 지역 실정에 맞게 연임제한을 완화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보완 ·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군정평가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삭제(안 제6조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삭제) 연임할 수 있다.”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명칭변경(수탁자 → 관리수탁자)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설

○ 행정재산의 교환차금 분할납부시 연 3%이자율 신설
○ 대부료등의 분할납부시 연 3% 이자율 신설
○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연 2~3%로 이자율 인하
○ 일반재산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시 연 3% 이자율 신설
○ 변상금의 분할납부시 연 3%이자율 신설
○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연 3%이자율 신설
※ 금번에 신설된 사항은 개정 전 시행령에서 6%로 정해져 있어 조례에 분납 이자율이 미규정 되었으나, 개정 시행령에서 2~6%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 사유
– 공유재산 분납이자율 등을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감안, 2~6%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
– 타 시·도 및 시·군 조례와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자율을 3%로 인하하여 주민 부담 완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
– 다만,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중 공익 목적 및 농공단지나 공장용지 매각시의 이자율을 2%로 인하하여 기업 유치 효과 도모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고흥군 해창만 수변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체류형 관광 유도를 위해 해창만 간척지에 조성한 야영기능 수변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 공원 시설의 관리·운영 기준 및 이용료 징수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이용객 편의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 사용료 감면 및 반환, 사용제한 및 취소
○ 사용자 의무사항
○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고흥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 최근 먹거리 음식과 숙박 등이 관광 및 지역경제로 연계됨으로써 음식점과 숙박업 등의 위생업소가 지역경제 동력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
  - ○ 고흥군의 관광산업 발전 및 음식문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위생관리와 음식문화개선 등이 절실히 요구되기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
  - ○ 위생업소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의 범위
  - ○ 지원 신청과 현지조사 및 선정에 관한 규정
  - ○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고흥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
-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고흥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 평가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목적 및 협의회 설치
  - ○ 협의회 구성·운영
  - ○ 협의회의 기능
  -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 ○ 경비지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7) 고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민간전문가를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
■ **의결결과** : 원안가결

8) 고흥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 운영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체계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 및 조정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체제로 전환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요건의 명확화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 지정
○ 유관기관 간 상시 공조협력체제 구축 재난현장통합대응
■ **의결결과** : 원안가결

9) 고흥우주랜드 조성사업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수립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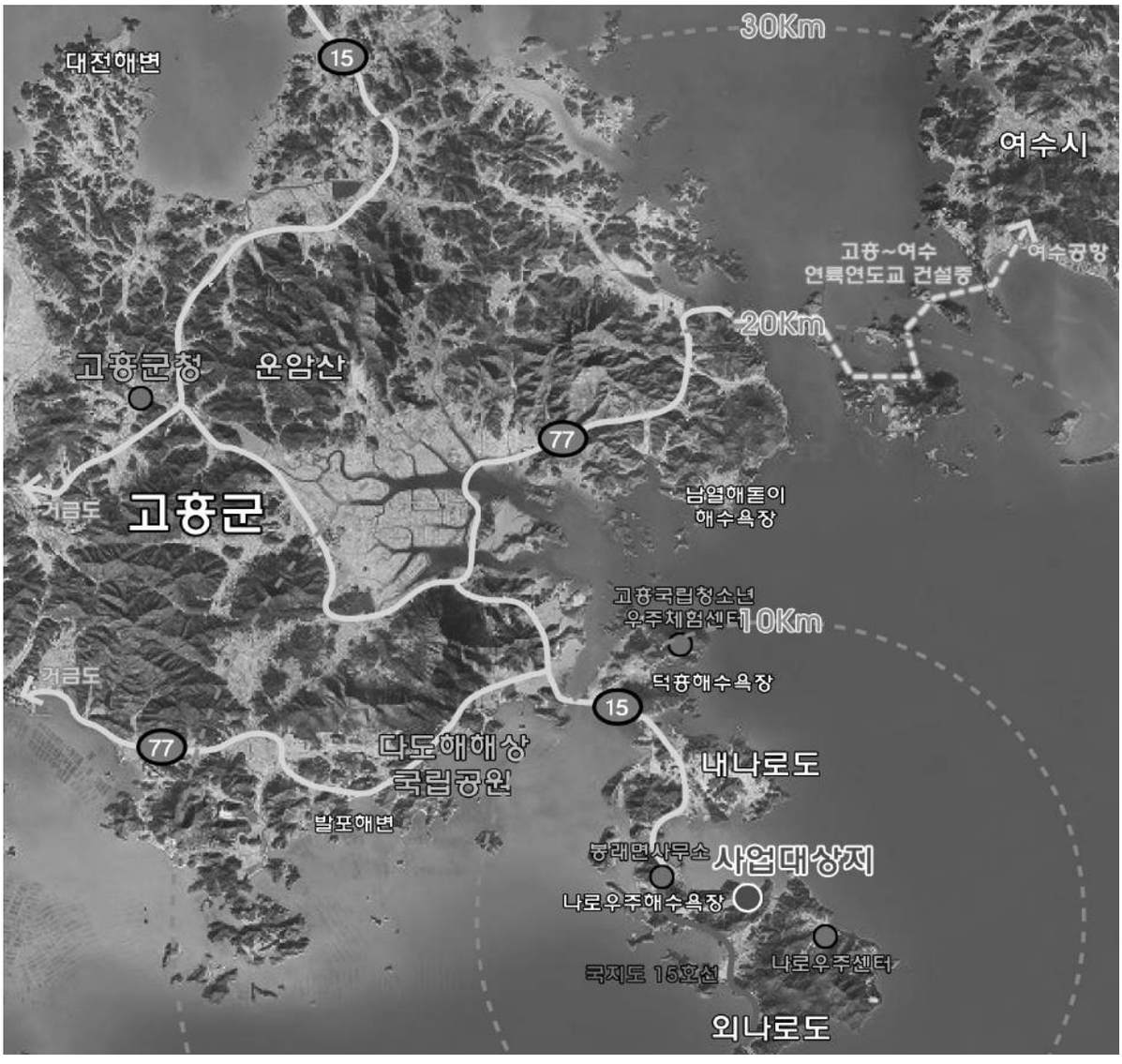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고흥군내 국내 유일의 우주발사기지인 나로 우주센터가 입지함에 따라, 지역 연관자원 및 시설의 연계적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 해안권 휴양관광문화벨트 구축, 영 · 호남지역 동서통합지대 조성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국토정책 추진에 따른 기반 마련 필요함에 따라,
○ 국가우주산업 핵심인 나로우주센터 주변에 우주항공을 테마로 한 관람 · 체험 · 교육 숙박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 우주과학관련 문화·관광수요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남해안 선벨트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계획의 개요

○ 구 역 명 : 고흥우주랜드 개발구역
○ 위　　치 :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1033일원
○ 면　　적 : 159,612㎡
○ 계획기간 : 2013년 ~ 2016년
○ 근거법률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시 행 자 : 고흥군수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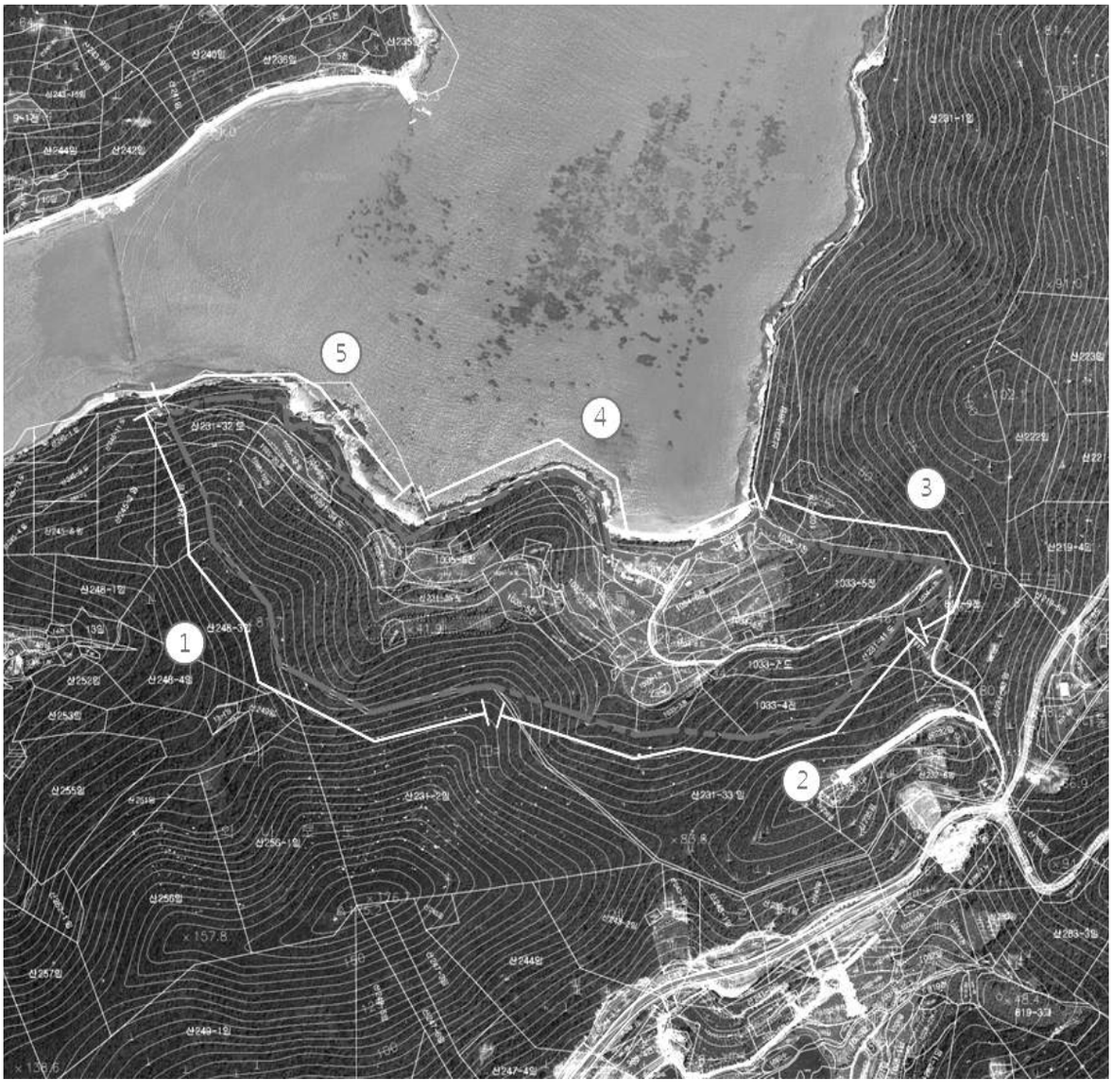


2. 개발구역 지정(안)

가. 개발구역 지정(안)

구분	구역 설정사유	구 분	구역 설정사유
1	지형고려(지적 및 행정구역 경계)	3	지형고려(지적경계)
2	정형화 및 용도지역경계 (일부 지적경계)	4	해안선(지적경계)
5	지형고려(암반 경계)		

〈개발구역 지정(안)〉



나. 토지세목조서 총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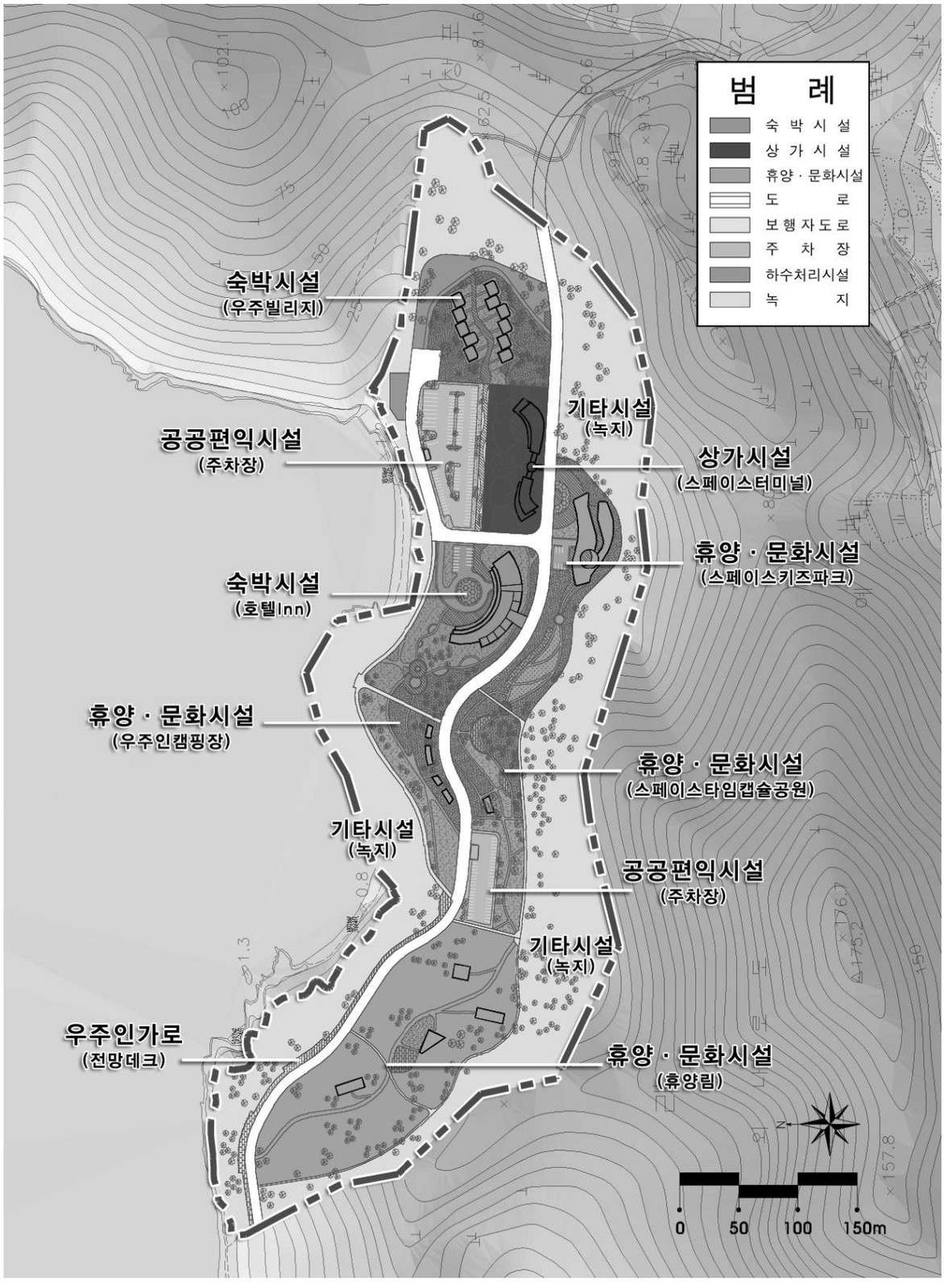
구분	총합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계	53	159,612	1	3,320	48	152,123	4	4,169
전	25	55,719	-	-	23	52,238	2	3,481
답	2	688	-	-	-	-	2	688
임	5	72,794	1	3,320	4	69,474	-	-
대	1	264	-	-	1	264	-	-
도	20	30,147	-	-	20	30,147	-	-

3. 토지이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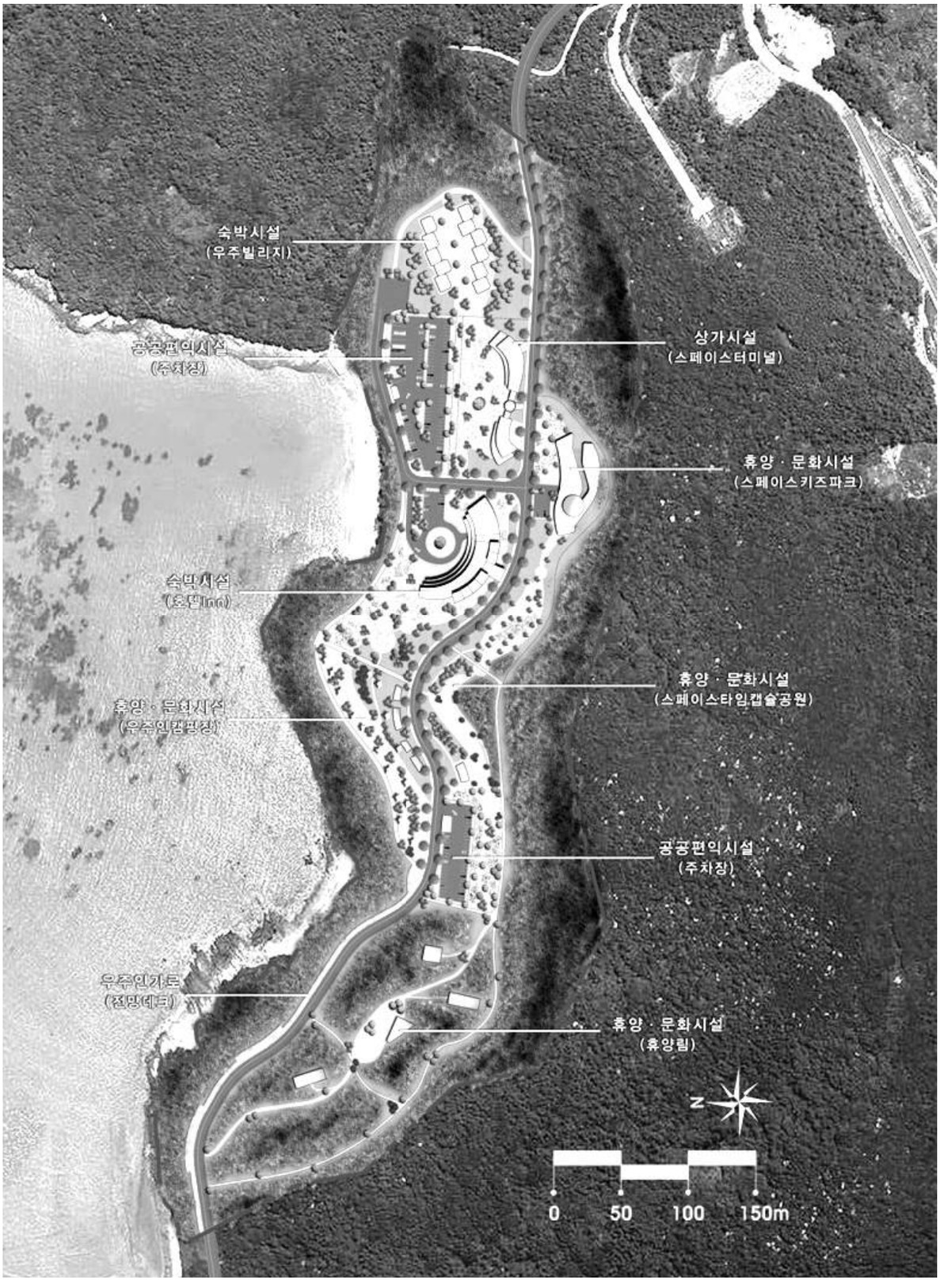
(단위 : ㎡, %)

구 분		부지면적	건 축 연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59,612	19,440	100.0	
숙박시설	소계	20,403	9,700	12.7	
	우주Inn(호텔)	10,754	6,400	6.7	
	우주빌리지(빌라동)	9,649	3,300	6.0	
상가시설	소계	5,517	3,600	3.5	
	스페이스터미널	5,517	3,600	3.5	- 방문자센터, 우주인푸드코트, 테마형상가, 스페이스 어드벤쳐 - 3개동
휴양문화시설	소계	41,833	5,830	26.2	
	휴양림	21,785	1,300	13.7	- 가족휴양센터 4개동
	우주인캠핑장	5,336	520	3.3	- 관리 및 부대시설 4개동
	스페이스키즈파크	8,118	3,800	5.1	- 애니메이션 박물관, UFO박물관, 로봇체험관 - 1개동
	스페이스타임캡슐공원	6,594	210	4.1	- 관리 및 부대시설 1개동
공공편익시설	소계	22,626	310	14.2	
	도로	10,991	-	6.9	
	보행자도로	4,363	-	2.7	- 우주인가로 포함(우주인 모자이크벽, 전망데크, 형상화가로등)
	주차장	6,770	310	4.3	- 관리 및 부대시설 2개동
	하수처리시설	502	-	0.3	
기타시설	소계	69,233	-	43.4	
	녹지	69,233	-	43.4	

〈토지이용계획도〉


범 례
숙 박 시 설
상 가 시 설
휴양 · 문화시설
도 로
보행자도로
주 차 장
하수처리시설
녹 지
숙박시설
(우주빌리지)
기타시설
(녹지)
공공편익시설
(주차장)
상가시설
(스페이스터미널)
휴양 · 문화시설
(스페이스키즈파크)
숙박시설
(호텔Inn)
휴양 · 문화시설
(우주인캠핑장)
휴양 · 문화시설
(스페이스타임캡술공원)
기타시설
(녹지)
공공편익시설
(주차장)
기타시설
(녹지)
우주인가로
(전망데크)
휴양 · 문화시설
(휴양림)
N
0
50
100
150m

4. 시설배치계획


숙박시설
(우주빌리지)
공공편익시설
(주차장)
상가시설
(스페이스터미널)
휴양 · 문화시설
(스페이스키즈파크)
숙박시설
(호텔Inn)
휴양 · 문화시설
(스페이스타임캡술공원)
휴양 · 문화시설
(우주인캠핑장)
공공편익시설
(주차장)
우주인가로
(전망데크)
휴양 · 문화시설
(휴양림)
N
0
50
100
150m

5.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가.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내용	면적(㎡)	최 초 결정일
신설	1	고흥우주랜드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1033번지 일원	–	159,612	

○ 용도지구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 정 사 유	비고
신설	1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1033번지 일원	159,612	• 관람·체험·교육·숙박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서·남해안권개발 특별법」에 의한 동·서·남해안권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관광·휴양기능의 집중적 개발 도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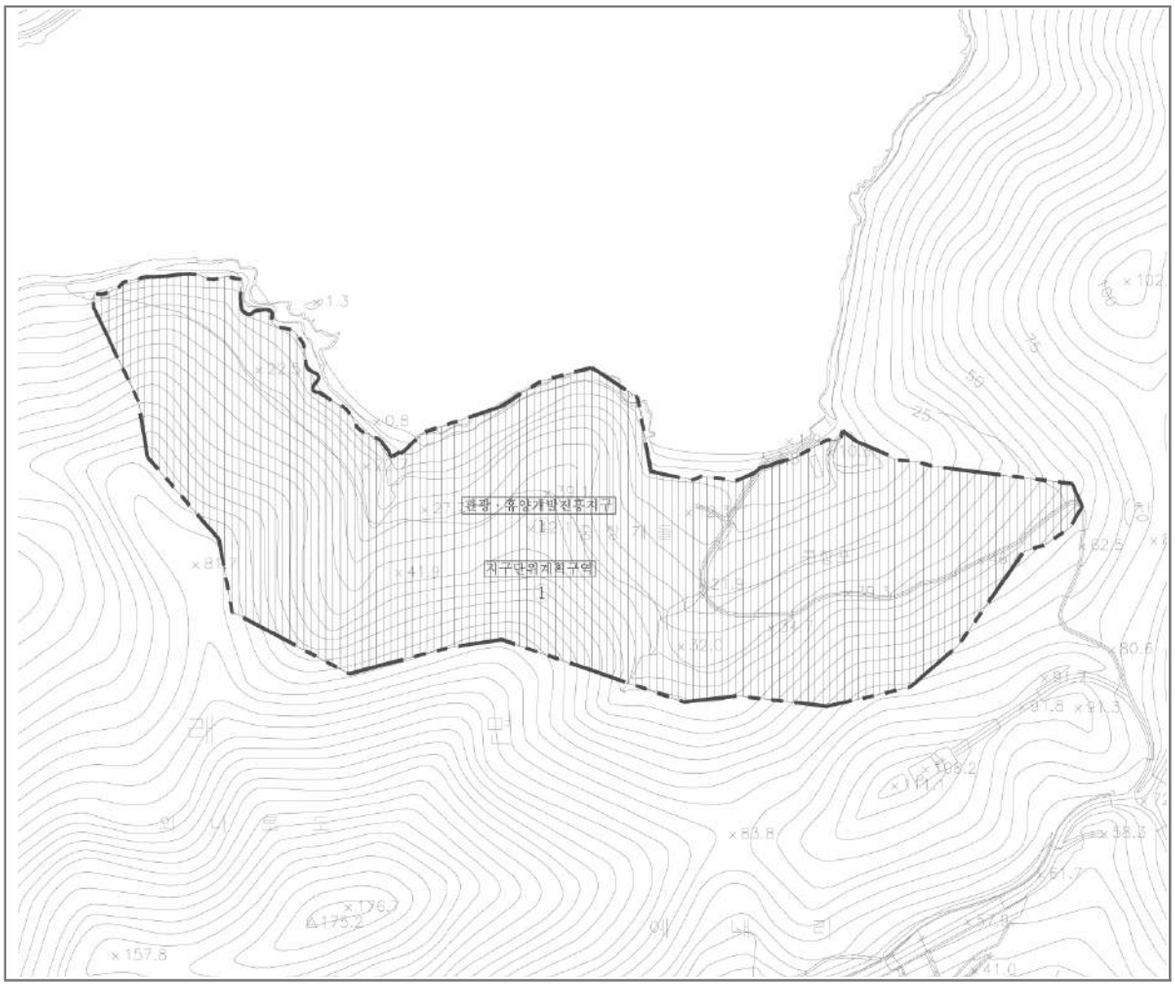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고흥우주랜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1033번지 일원	–	159,612	159,612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1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1033번지 일원	159,612	• 관람·체험·교육·숙박이 어우러진 복합·문화 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서·남해안권개발 특별법」에 의한 동·서·남해안권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6.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가. 사업비 산정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업비로 구분하여 산정 : 총 사업비 519억

○ 공공부문 : 단지조성비, 건축공사비(스페이스터미널 중 방문자센터, 주차장)

○ 민간부문 : 공공부문 이외의 건축공사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단지조성비	건축공사비
	사업비	구성비(%)		
합 계	51,947	100.0	6,742	45,205
공공부문	8,783 (983)	16.9	6,742 (983)	2,041
민간부문	43,164	83.1	-	43,164

※ ( )는 국비매칭비 3,900백만원 외 보상비와 조사설계비 중 지방비 부담액(983백만원)임

나. 재원조달계획

○ 국비가 3,900백만원, 지방비가 4,883백만원, 나머지 43,614백만원은 민간자본을 활용

• 지방비는 국비매칭 3,900백만원, 조사설계비 512백만원, 보상비 471백만원

구 분	계	국 비	지방비	민간자본	비 고
사업비 (백만원)	51,947	3,900	4,883 (983)	43,164	

※ ( )는 국비매칭비 3,900백만원 외 보상비와 조사설계비 중 지방비 부담액(983백만원)임

다. 연도별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비고
합 계			51,947	2,000	12,303	15,240	22,404	
공공부문	소 계		8,783	2,000	2,303	2,240	2,240	
	단지조성공사비	국 비	2,879.5	700	960	620	599.5	
		지방비	3,117.5	1,300	598	620	599.5	
	건축공사비	국 비	1,020.5	-	-	500	520.5	
		지방비	1,020.5	-	-	500	520.5	
	진입도로	지방비	745	-	745	-	-	
민간부문	건축공사비		43,164	-	10,000	13,000	20,164	

■ **의결결과** : 원안채택

17. 제22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가. 집회공고 및 의사일정

1) 집회공고

제22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송우섭의원 등 5인으로 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14년 2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2014년 2월 12일 오전 10시에 집회함.

2) 의사일정 : 2014. 2. 12(수) - 1일간

일 시	차 수	안 건	비 고
2. 12(수) 10:00	제1차 본회의	◎ 개 회 식 • 개 식 •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개회사 • 폐 식 ▶ 의사일정 1. 제22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정회】	본회의장
10:30		◎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위원회별 / 건수 / 소관부서 산건위 / 3 / 건설과2, 우주항공사업소1	상 임 위원회실
14:00	제1차 본회의 속개	▶ 의사일정 4. 시산도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5. 도화 당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6. 2013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	본회의장

나. 제1차 본회의

2014년 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을 가졌으며, 6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후 2시 10분에 산회함.

1) 제22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2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 주요내용 : 2014. 2. 12(수) 〈1일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

- 제 안 자 : 송우섭의원 등 3인
- 제안이유 : 위촉기간이 2014. 2. 28로 만료됨에 따라 재 위촉코자 함.
- 주요내용
  - ○ 위촉대상자 : 송동석 변호사
  - ○ 위촉기간 : 2014. 3. 1 ~ 2015. 2. 28(1년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2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주요내용 : 김의규의원, 최설희의원 선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시산도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 현재 시산도 마을인근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없어 불법소각 및 매립 방치로 인한 해충발생 등 청정지역 이미지 훼손
  - ○ 유동인구 증가로 인하여 생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함으로써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보건위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특히 고흥군 도양읍에 있는 시산도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과 해양폐기물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매립장 및 쓰레기 처리시설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시산도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특성을 조사하고 이를 경제적·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처리 ·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폐기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 도모를 위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을 설치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에 의거하여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을 입안코자 함.

■ 주요내용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나.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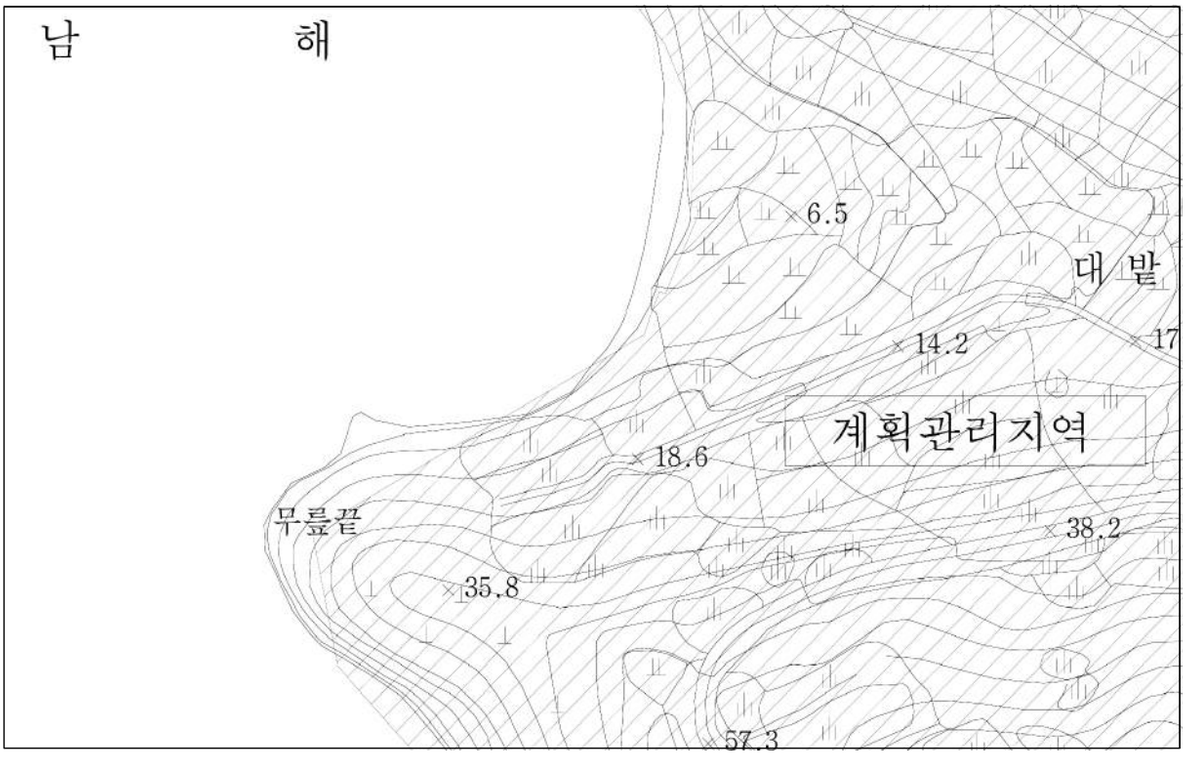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폐기물 처리시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도양읍 시산리 734번지 일원	–	증)2,147	2,147	–	–

○ 결정 변경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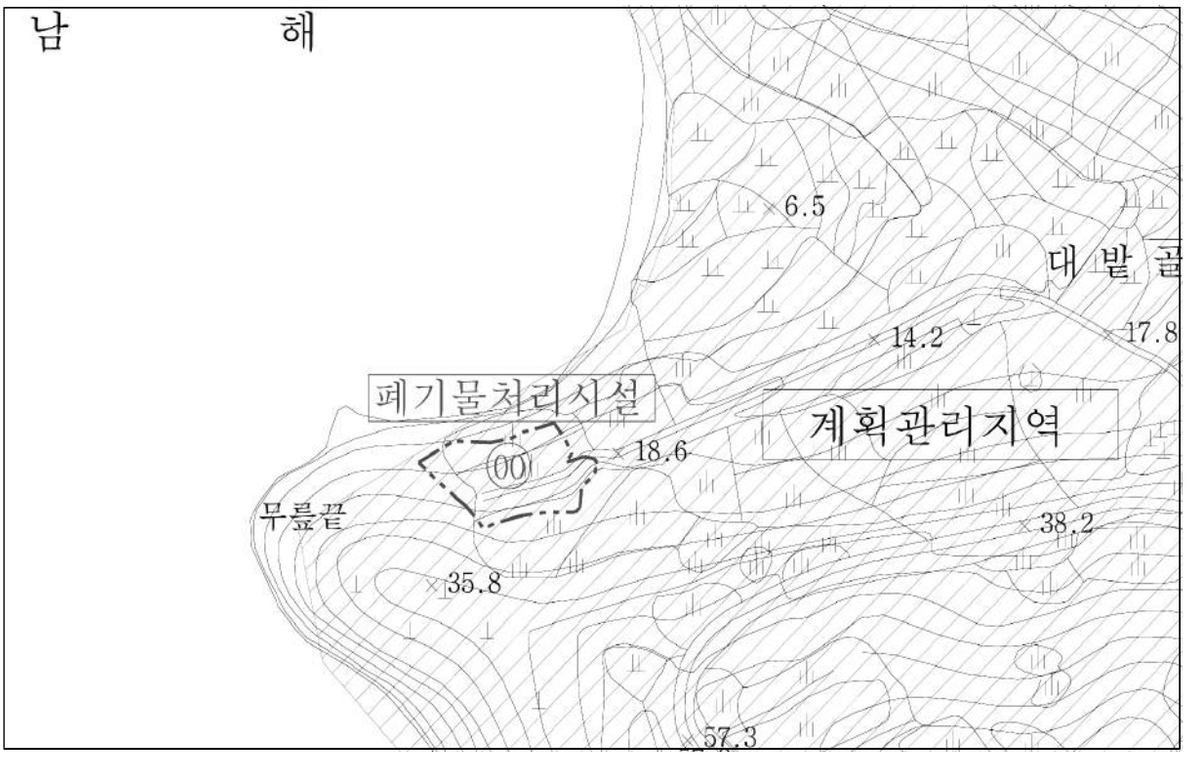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폐기물 처리시설	• 신설 • 폐기물처리시설 –면적 : 2,147㎡	• 시산도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경제적 ·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폐기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억제와 주민들의 보건·위생 향상을 도모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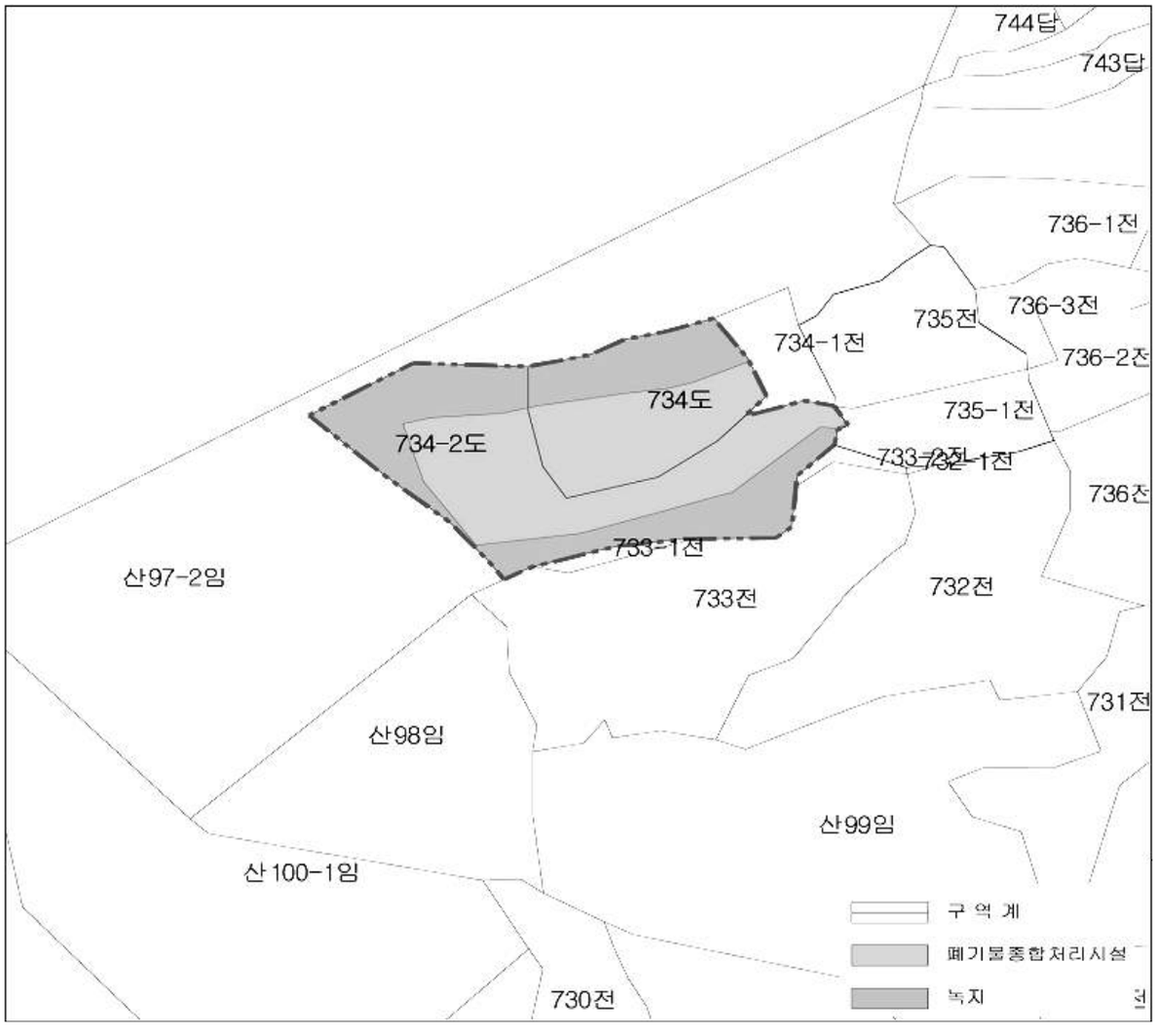
가. 기 정



나. 변 경(안)



3. 토지이용계획(안) 도면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폐기물종합처리시설	1,172	54.5
녹 지	975	45.5
합 계	2,147	100.0

■ 의결결과 : 원안채택

5) 도화 당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2010년 02월 05일(전라남도 고시 제2010-28호)에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일원에 주택이 소규모로 연담화하여 건설되어 있으며, 개발여건이 양호하여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 주거지역의 정비, 건축기준의 제시,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등으로 주민편익시설이 증대되고 도시이미지 제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결정 고시된 "당오 지구단위계획" 에 대하여

○ 농어촌지역의 거점공간인 면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의 불특정 다수 주민이 이용 가능한 적정수준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면소재지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서비스 기능 향상에 도모하고

○ 면소재지의 생활 편익,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함으로써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의 충족과 농어촌 지역의 중심거점 공간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시행하는 도화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의 기초생활기반확충 전략사업 설치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하여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입안코자 함.

■ 주요내용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58,006	-	858,006	100.0	
관리지역	소 계	858,006	-	858,006	100.0	
	계획관리지역	858,006	-	858,006	100.0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내용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⑩	당오지구	주거개발 진흥지구	도화면 당오리 510번지 일원	–	858,006	10.02.05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⑩	당오지구	도화면 당오리 510번지 일원	858,006	–	858,006	10.02.05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합 계		858,006	–	858,006	100.0	100.0	
주거용지	소 계	400,228	감)8,727	391,501	46.6	45.6	
	단 독	301,620	감)4,610	297,010	35.2	34.6	
	연 립	34,541	–	34,541	4.0	4.0	
	근린생활	64,067	감)4,117	59,950	7.5	7.0	
상업용지		17,865	증)730	18,595	2.1	2.2	주거용지의 4.75%
녹지용지	소 계	250,289	감)3,969	246,320	29.2	28.7	
	소 공 원	4,779	감)439	4,340	0.6	0.5	
	완충녹지	19,406	감)2,992	16,414	2.3	1.9	
	녹 지	200,035	–	200,035	23.3	23.3	
	하 천	22,754	–	22,754	2.7	2.7	
	보행자도로	3,315	감)538	2,777	0.4	0.3	
공공시설용지	소 계	201,631	증)11,966	213,597	23.5	24.9	
	도 로	137,746	감)7,407	130,339	16.1	15.2	
	주 차 장	5,293	감)673	4,620	0.6	0.5	
	학 교	55,540	–	55,540	6.5	6.5	
	공공청사	3,052	–	3,052	0.4	0.4	
	체육시설	–	증)20,046	20,046	–	2.3	
※완충녹지, 하천 중복지정 : 12,007㎡,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총괄 조서

(단위 : 연장 m, 면적 ㎡)

구 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합계	기정	79	50,773 (16,794)	817,357 (155,737)	1	31,566 (2,027)	631,120 (40,540)	18	11,026 (6,586)	138,803 (67,763)	60	8,181	47,434
	변경	75	49,957 (15,978)	811,454 (147,823)	1	31,566 (2,027)	631,518 (40,540)	17	10,636 (6,196)	134,804 (62,151)	57	7,755	45,132
중로	기정	4	38,018 (4,039)	733,331 (71,711)	1	31,566 (2,027)	631,120 (40,540)	3	6,452 (2,012)	102,211 (31,171)	–	–	–
	변경	4	37,874 (3,895)	731,569 (67,938)	1	31,566 (2,027)	631,518 (40,540)	3	6,308 (1,868)	100,051 (27,398)	–	–	–
소로	기정	59	11,929	80,722	–	–	–	15	4,574	36,592	44	7,355	44,130
	변경	57	11,456	77,526	–	–	–	14	4,328	35,160	43	7,061	42,366
소로 특	기정	16	826	3,304	–	–	–	–	–	–	16	826	3,304
	변경	14	694	2,776	–	–	–	–	–	–	14	694	2,776

※ ( )는 구역내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중로1-25호선	중로1-25호선	• 일부 폭원변경 -20→20~23m	• 기초생활기반시설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일부 폭원 변경
중로2-2호선	중로2-2호선	• 노선선형변경 -924→706m	• 기초생활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 및 진·출입을 위한 일부 선형 변경
소로2-4호선	소로2-4호선	• 노선선형변경 -260→38m	• 차량 및 보행자 등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도로 노선 변경
소로2-5호선	–	• 노선폐지 -24m	• 당오지구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기초생활기반시설의 신설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3-19호선	–	• 노선폐지 -294m	• 당오지구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기초생활기반시설의 신설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특)3-3호선	–	• 노선폐지 -69m	• 당오지구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기초생활기반시설의 신설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특)3-4호선	–	• 노선폐지 -63m	• 당오지구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기초생활기반시설의 신설에 따른 노선 폐지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⑪	주차장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977-1번지	604	-	604	10.02.05	
기정	⑫	주차장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1112-1번지	102	-	102	10.02.05	
기정	⑬	주차장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517-7번지	779	-	779	10.02.05	
기정	⑭	주차장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산44-3번지	1,905	-	1,905	10.02.05	
폐지	⑮	주차장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1147-12번지	673	감)673	-	10.02.05	
기정	⑯	주차장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1150-1번지	382	-	382	10.02.05	
기정	⑰	주차장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1153-2번지	586	-	586	10.02.05	
기정	⑱	주차장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159-3번지	119	-	119	10.02.05	
기정	⑲	주차장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89-2번지	143	-	143	10.02.05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⑮	주차장	• 주차장 폐지 -감)673㎡	• 주차장 용지가 체육시설 부지 내 편입으로 폐지하였으며, 체육시설 부지 내 주차장을 별도 설치할 계획임 • 체육시설 내 주차장 -면 적 : 4,534㎡ -주차대수 : 52대

2) 공간시설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 정 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㉔	녹지	완충녹지	도화면 당오리 1147-12번지 일원	19,406	감)2,992	16,414	10.02.05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㉔	완충녹지	• 면적 축소 –중로2–2호선변 : 감)2,988㎡ –소로2–4호선변 : 감4㎡	• 도로기능의 변경과 대형필지 및 주차장 설치에 따른 완충녹지의 기능저하로 인한 일부구간 폐지 • 도로노선변경에 따른 가각설치로 면적 일부 감소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②	공원	소공원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1112–1번지	239	–	239	10.02.05
기정	③	공원	소공원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515번지	941	–	941	10.02.05
기정	④	공원	소공원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산44–1번지	780	–	780	10.02.05
기정	⑤	공원	소공원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산44–1번지	846	–	846	10.02.05
폐지	⑥	공원	소공원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1148–12번지	439	감)439	–	10.02.05
기정	⑦	공원	소공원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1150–18번지	690	–	690	10.02.05
기정	⑧	공원	소공원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1081–4번지	550	–	550	10.02.05
기정	⑨	공원	소공원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107–1번지 일원	294	–	294	10.02.05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⑥	소공원	• 소공원 폐지 –감)439㎡	• 당오지구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대체 시설(체육시설) 신설 설치로 인한 소공원 폐지

○ 광장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⑮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1081–10번지	1,346	–	1,346	–

3) 공공 문화 체육시설

○ 학교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㉕	학 교	초등학교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518번지	17,216	–	17,216	10.2.5
기정	㉖	학 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480–3번지	38,324	–	38,324	10.2.5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⑭	공공청사	면사무소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510번지	2,031	–	2,031	10.2.5
기정	⑮	공공청사	보건지소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1490–2번지	1,021	–	1,021	10.2.5

○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③	체육시설	생 활 체육시설	도화면 당오리 1148–3번지 일원	–	증)20,046	20,046	

○ 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③	생 활 체육시설	• 생활 체육시설 신설 –증)20,046㎡	• 농촌지역에 거점기능 강화 및 기초서비스 기능 향상 등을 위해 시행하는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기초생활기반시설로서 지역 거점시설 기능과 지역 주민의 다목적 커뮤니티 핵심공간의 활용 공간을 위해 체육시설 신설

4) 방재시설

○ 하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⑫	하천	지방2급 하천	구역계	구역계	면소재지내	0.77	30	22,754	10.02.05

다. 가구 및 획지계획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

도면번호	가구	가구 면적(㎡)		획지	획지 면적(㎡)		비고
	가구번호	기정	변경	위치	기정	변경	
단독주택용지	단44	3,977	-	-1	487	-	폐 지
				-2	494	-	폐 지
				-3	495	-	폐 지
				-4	502	-	폐 지
				-5	495	-	폐 지
				-6	498	-	폐 지
				-7	504	-	폐 지
				-8	502	-	폐 지
	단45	5,465	3,966	-1	558	-	자율적 공동개발구역
				-2	551	-	
				-3	560	-	
				-4	546	-	
				-5	558	-	
				-6	544	-	
				-7	552	-	
				-8	544	-	
				-9	528	-	
				-10	524	-	
	단66	-	866	-	-	-	자율적 공동개발구역

2) 연립주택용지 - 변경없음

3)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	가구 면적(㎡)		획지	획지 면적(㎡)		비고
	가구번호	기정	변경	위치	기정	변경	
근린생활시설용지	근16	3,169	-	-	-	-	폐 지
	근21	2,406	3,702	-1	156	1,061	공동개발 권장
				-2	374	972	공동개발 권장
				-3	530	632	공동개발 권장
				-4	310	548	공동개발 권장
				-5	533	489	공동개발 권장
				-6	272	-	
				-7	231	-	
	근22	2,245	-	-1	255	-	폐 지
				-2	283	-	폐 지
				-3	257	-	폐 지
				-4	326	-	폐 지
				-5	379	-	폐 지
				-6	379	-	폐 지
				-7	366	-	폐 지

4) 상업용지

도면번호	가구			획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상업용지	상2	6,742	9,910	-	-	-	자율적 공동개발구역
	상3	2.438	-	-1	391	-	폐 지
				-2	402	-	폐 지
				-3	355	-	폐 지
				-4	446	-	폐 지
				-5	400	-	폐 지
				-6	444	-	폐 지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단1~666	건폐율		• 60% 이하(조례 4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10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배 치		-
		용 도		• 권장용도 : 토지이용계획 및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적정용도 • 지정용도 - 고흥군 계획조례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2-1에 의해 고흥군 계획조례 제28조 제3항(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 불허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28조의 장례식장 - 그 외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축선	기정	• 건축한계선 1~2m 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 블록(단7, 단11, 단12, 단14, 단15, 단22, 단29, 단30, 단36, 단58, 단63)
			변경	• 건축한계선 1~2m 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 블록(단7, 단11, 단12, 단14, 단15, 단22, 단29, 단30, 단36, 단58, 단63, 단66)
		형태 및 외관		• 지붕(평지붕 설계시 옥상녹화 30%이상 권장) -2층 이하 : 경사형 지붕 및 눈썹지붕 권장 -2층 초과 : 경사형 지붕 권장 • 담장 :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5m이하로 권장 • 광고물의 모양은 입체문자를 사용하며, 2층 이상 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을 금지
		대지내 공지		-
		색 채		• 고채도의 색채를 배제하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색채사용 • 장식과 과다한 색채사용은 피함 • 거리의 활기를 살린 색채 적용 • 조화되는 배색을 사용하여 인공 환경 색에 순응 하도록 하여 안정감과 친근감 있는 도시경관 형성

2) 연립주택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연립주택용지	연립주택용지(연1~5)	건폐율	• 60% 이하(조례 4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1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용 도	• 권장용도 : 토지이용계획 및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적정용도 • 지정용도 –고흥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2–1에 의해 고흥군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제4항(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 불허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28조의 장례식장 –그 외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축선	• 건축한계선 1m 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 블록 : 연2
		형 태 및 외 관	• 지붕 : 경사형 지붕 및 눈썹지붕, 평지붕 권장(평지붕 계획시 옥상녹화 30%이상 설치 의무) • 담장 :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5m이하로 권장 • 광고물의 모양은 입체문자를 사용하며, 2층 이상 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을 금지
		대지내 공 지	–
		색 채	• 고채도의 색채를 배제하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색채사용 • 장식과 과다한 색채사용은 피함 • 거리의 활기를 살린 색채 적용 • 조화되는 배색을 사용하여 인공 환경 색에 순응 하도록 하여 안정감과 친근감 있는 도시경관 형성

3) 근린생활시설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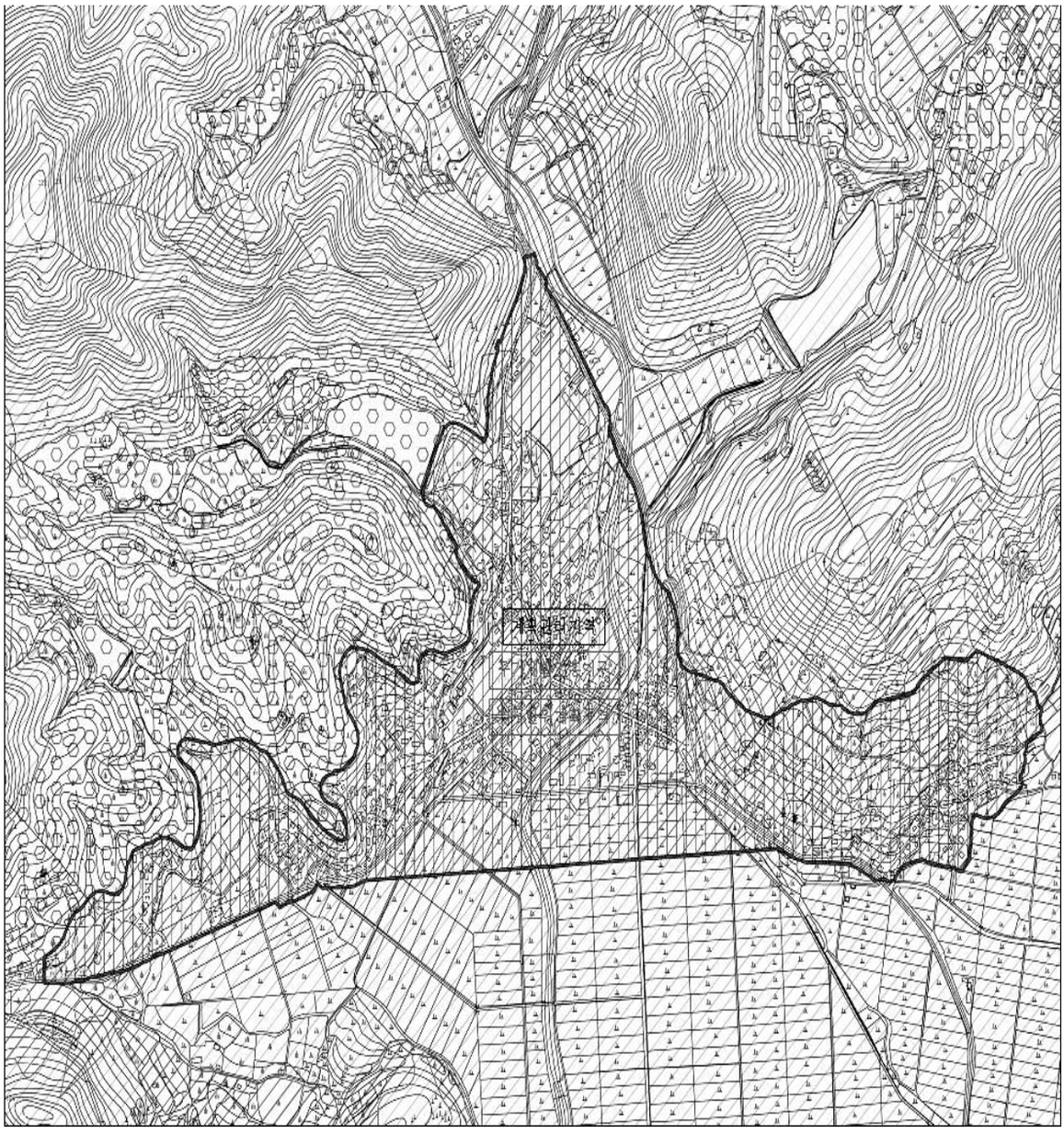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근린생활시설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근1~24)	건폐율		• 60% 이하(조례 4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10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용 도		• 권장용도 : 토지이용계획 및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적정용도 • 지정용도 –고흥군 계획조례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2–1에 의해 고흥군 계획조례 제28조 제6항(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 불허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그 외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축선	기정	• 건축한계선 1m 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 블록(근1, 근8, 근11, 근17, 근21, 근22, 근23, 근24)
			변경	• 건축한계선 1m 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 블록(근1, 근8, 근11, 근17, 근21, 근23, 근24)
		형 태 및 외 관		• 지붕 : 평지붕 계획 시 옥상녹화 30%이상 설치의무 –2층 이하 : 경사형 지붕 및 눈썹지붕, 평지붕 지정 –2층 초과 : 경사형 지붕 및 눈썹지붕, 평지붕 지정 • 담장 :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5m 이하로 권장 • 광고물 수량은 근린생활시설당 1개 이내로 지정 • 광고물의 모양은 입체문자를 사용하며, 2층 이상 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을 금지
		대지내 공 지		–
		색 채		• 고채도의 색채를 배제하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색채사용 • 장식과 과다한 색채사용은 피함 • 거리의 활기를 살린 색채 적용 • 조화되는 배색을 사용하여 인공 환경 색에 순응 하도록 하여 안정감과 친근감 있는 도시경관 형성

4) 상업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상업 용지	상업용지 (상1~5)	건폐율		• 60% 이하(조례 4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10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용 도		• 권장용도 : 토지이용계획 및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적정용도 • 지정용도 –고흥군 계획조례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2–1에 의해 고흥군 계획조례 제28조 제6항(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축선	기정	• 건축한계선 1m 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 블록(상1, 상2, 상3, 상4, 상5)
			변경	• 건축한계선 1m 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 블록(상1, 상2, 상4, 상5)
		형 태 및 외 관		• 지붕 : 평지붕 계획 시 시각적 효과를 위하여 (옥상녹화 30%이상 계획) –2층 이하 : 경사형 지붕 및 눈썹지붕, 평지붕 지정 –2층 초과 : 경사형 지붕 및 눈썹지붕, 평지붕 지정 • 담장 :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5m 이하로 권장 • 광고물 수량은 상업시설당 1개 이내로 계획 • 광고물의 모양은 입체문자를 사용하며, 2층 이상 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을 금지
		대지내 공 지		–
		색 채		• 고채도의 색채를 배제하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색채 사용 • 장식과 과다한 색채사용은 피함 • 거리의 활기를 살린 색채 적용 • 조화되는 배색을 사용하여 인공 환경 색에 순응 하도록 하여 안정감과 친근감 있는 도시경관 형성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계획(안) 도면

○ 기정



○ 변경



■ **의결결과** : 원안채택

6) 2013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등 5인

■ **제안이유**

○ 2013년도 군 발주 시설공사 및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견실시공 여부 등을 살펴, 모범사례는 권장하고 문제점은 시정 개선하여 부실공사 추방과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사기간 : 2013. 3. 11(화) ~ 3. 18(화)【6일간】

○ 조사대상 : 2013년도 군 발주 사업 중 사업비 2천만원 이상인 시설공사 및 민간자본보조사업

○ 조사방법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조사반편성 : 2개반 18명(의원 12, 공무원 6)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8. 제22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가. 집회공고 및 의사일정

1) 집회공고

제22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송우섭의원 등 5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14년 3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2014년 3월 10일 오전 10시에 집회함.

2) 의사일정 : 2014. 3. 10(월) ~ 3. 19(수) - 10일간

일 시	차 수	안 건	비 고
3. 10(월) 10:00	제1차 본회의	▶ 의사일정 1. 제22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본회의장
10:30		◎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 2013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자료검토	상 임 위원회실
3. 11(화) ~ 3. 18(화)	휴 회	◎ 2013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활동 • 권역별 일정에 따라 실시	
3. 19(수) 10:00	제2차 본회의	▶ 의사일정 1. 고흥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본회의장

나. 제1차 본회의

2014년 3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 4분에 산회함.

1) 제22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2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 주요내용 : 2014. 3. 10(월) ~ 3. 19(수) 〈10일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2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주요내용 : 송인숙의원, 김옥래의원 선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휴회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2013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활동
- 주요내용 : 2014. 3. 11 ~ 3. 18 〈8일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다. 제2차 본회의

2014년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 11분에 산회함.

1) 고흥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행정 여건의 변화와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변경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위 원 장	군 수	부 군 수
부위원장	부 군 수	기획실장

○ 대리출석 규정 신설

제9조(대리출석) ①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군세 감면 일부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사항과 「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과 폐지에 따라 조례 본문 중 타 법령의 인용 조문을 관련 법에 맞게 하고자하며,

○ 동강농공단지의 명칭이 고흥청정식품단지로 변경됨에 따라 군세 감면의 명확한 근거를 두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이관 되어 조문 삭제

1) 농수산물 지방공사 감면(현행 조례 제3조)
2)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현행 조례 제5조)
3)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현행 조례 제7조)
4)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현행 조례 제9조)
5)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현행 조례 제10조)
6)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현행 조례 제11조)
7)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현행조례 제12조)

나. 타 법령 개정 및 폐지에 따른 조문 개정

1)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인용조문 변경
–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제1항 및 제19조의4 제1항 제1호

다. 상위법의 위임 사항과 인용 조문에 부합하게 개정

1)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안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
– 외국인투자기업 재산세 감면 : 15년 초과 ⇨ 15년
–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재산세 감면 : 10년 초과 ⇨ 10년
2) 감면자료의 제출(안 제13조)(지방세특례제한법)
– 인용조문 변경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제184조
3) 중복감면의 배제(안 제15조)(지방세특례제한법)
– 인용조문 변경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 ⇨ 제180조

라.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1)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동강농공단지(고흥청정식품단지)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2013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 **제 안 자**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제안이유**

○ 제223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한 2013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부실시공 여부 등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 시정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 시정 개선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조사기간 : 2014. 3. 11. ~ 3. 18. 〈6일간〉

○ 조사대상 : 2013년도 군 발주 시설공사 및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사업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

○ 조사방법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확 인 반 : 2개반 16명

○ 지적사항 : 10건(별지참조, 제3절 행정사무조사)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9. 제22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가. 집회공고 및 의사일정

1) 집회공고

제22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송우섭의원 등 5인으로 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14년 4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2014년 4월 22일 오전 10시에 집회함.

2) 의사일정 : 2014. 4. 22(화) ~ 4. 23(수) - 2일간

<table>
<tr><th>일 시</th><th>차 수</th><th>안 건</th><th>비 고</th></tr>
<tr><td>4. 22(화)
10:00</td><td>제1차
본회의</td><td>▶ 의사일정
1. 제22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td><td>본회의장</td></tr>
<tr><td>10:20</td><td></td><td>◉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table>
<tr><th>위원회별</th><th>건수</th><th>소관부서</th></tr>
<tr><td>계</td><td>17</td><td></td></tr>
<tr><td>총무위</td><td>14</td><td>의원발의1,기획실2, 주민복지과2, 행정과1, 재무과4,
투자정책과1, 문화관광과1, 평생학습1, 문화체육시설사업소1</td></tr>
<tr><td>산건위</td><td>3</td><td>농업축산과1, 건설과2,</td></tr>
</table></td><td>상 임
위원회실</td></tr>
<tr><td>4. 23(수)
10:00</td><td>제2차
본회의</td><td>▶ 의사일정
1. 고흥군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2.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흥군 영유아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흥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흥군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9. 고흥군 고흥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고흥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
12. 전라남도 동부생활권협의회 규약안
13.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4.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15.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금산면 휴양관광빌리지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7. 도덕면 신양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td><td>본회의장</td></tr>
</table>

나. 제1차 본회의

2014년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 6분에 산회함.

1) 제22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2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 주요내용 : 2014. 4. 22(화) ~ 4. 23(수) 〈2일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구성
- 주요내용 : 5명(김옥래의원, 강재민교수, 박영인세무사, 장영조세무사, 최현홍)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2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주요내용 : 송우섭의원, 김주식의원 선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다. 제2차 본회의

2014년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 20분에 산회함.

1) 고흥군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21세기 글로벌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선진 우수시책 도입 및 군정발전의 중장기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해외 우수도시와 국제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나, 국제교류와 관련된 명문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화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아울러 「고흥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폐지하여,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은 조례를 따로 두지 않고, 그 주된 내용을 이 조례 안에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명 칭 : 「고흥군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함

• 자매결연대상을 정함

• 자매결연 체결시 군의회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함

•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의 취소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적용하여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 저소득 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을 명확화하여 꿈나무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을 2018. 12. 31.까지로 지정 운영

○ 사회복지기금 심의 절차 및 방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용 조례를 준용

○ 장학금 지급대상 구체화

• 고흥군 소재 중·고등학교의 재학생 (※ 고흥군으로 지역제한)

○ 장학금 지급 제외대상 명시

• 학교 자체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 수혜 학생 중복 방지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고흥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의 합리화를 통한 공정성 제고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비율 중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비율을 전체 위원 100분의 45이상(15명 중 7명)으로 정함.(안 제8조제2항)

○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사항에서 제외(제9조제7호 삭제)

○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시설의 시설장”을 “어린이집 원장”으로 명칭 변경.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결된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의 순증분(4명)을 확충하고,

○ 안전행정부의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계획에 의거 세무인력 순증분(2명)을 증원하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정부의 지적인력 총액인건비 반영에 따른 지적업무 순증인력(1명)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고흥군 공무원 총정원 증원 760명 ⇨ 767명(7명 순증)

- 사회복지직(정원 54명) → 사회복지직(정원 58명), +4명
- 세 무 직(정원 17명) → 세 무 직(정원 19명), +2명
- 지 적 직(정원 9명) → 지 적 직(정원 10명), +1명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고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지방세법」(2014. 1. 1.시행)의 개정에 따른 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및 세율을 상위법에 부합하게 적용하고, 과세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종업원분 소득세로 세목변경
  - ○ 국세결정 세액의 10%인 부가세 구조를 과세표준 구간별 0.6%~3.8%로 지방소득세 독립세율 규정
  - ○ 재산세 및 자동차세의 조례 규정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 적용
-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고흥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2014. 1. 1.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군세의 적용을 상위법에 부합하게 하고, 지방세 징수업무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공매 등의 배당 교부금 잔액 예치 장소 변경

현 행	배당금 등 공탁	▶	변 경	군 금고 예치

※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금 잔액 자치단체 귀속

- **의결결과** : 원안가결

7)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안전행정부의 「민원수수료의 카드결제 도입 확대방안」 추진에 따라 민원인의 납부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 **주요내용**
  - ○ **수수료 납부방법**

"수입증지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 · 신용카드 · 전자화폐 ·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무인민원 발급기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한다."

○ 수수료 반환

"단,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이 압인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의결결과 : 원안가결

8) 고흥군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불합리한 기업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려는 정부 및 전남도의 기업지원 정책에 따라 우리군 기업이 기업규제를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업규제를 신고한 기업·기업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군과 기업간의 소통과 신뢰로 수준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명칭 : 「고흥군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 헌장의 기본원칙을 정함

○ 헌장의 내용을 정함

○ 헌장의 구성, 개정,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정함

○ 헌장의 공표 및 홍보,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에 관한 사항

○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우수부서 및 공무원의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 의결결과 : 원안가결

9) 고흥군 고흥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고흥군 및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우리군과 서울특별시가 협약하여 건립한 내발산동 공공기숙사(고흥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효율적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설치

• 고흥학사 부지는 서울특별시가 제공한다.

• 고흥학사 건축비는 고흥군이 지원한다.

• 그 밖에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

○ 운영

• 고흥군과 서울특별시는 협약에 따라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고흥학사의 운영에 따른 경비 분담은 고흥군과 서울특별시의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및 운영 협약에 따른다.

○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 고흥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학생은 입사생 선발 공고일 이전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이 고흥에 있는 자 및 고흥출신 향우의 자녀로서 수도권 소재 2년제 대학 이상에 재학 중 이거나 신입생으로 한다.

• 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0)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군민의 건전한 스포츠 여가 공간을 조성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한 고흥 국민체육센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사용기준을 마련코자 함.

■ **주요내용**

○ 고흥 국민체육센터를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체육시설로 편입시키고, 사용료 기준을 명시

○ 김일기념체육관 연습 입장사용료를 명시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1)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

■ **제 안 자** : 최설희의원 등 5인

■ **제안이유**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흡연자의 암 발생은 비흡연자보다 최대 6.5배 높고 진료비도 연간 1조7천억원이 추가 지출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실정임.

○ 지난 1월 이사회를 개최하여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안을 심의의결하여 담배 제조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국민건강증진 및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응에 나섬.

○ 따라서 고흥군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제조 회사에 대한 소송 제기와 정부의 담배소송법의 입법추진을 촉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최근 흡연으로 인한 피해 분석결과 각종 암 발생 위험도가 최대 6.5배가 높고 흡연 관련 사회적 비용이 매년 1조 7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와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 국민간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증진과 재정 절감을 위하여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정부는 각종 질병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입법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해당 기관들과 적극 협조하여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강구

■ **의결결과** : 원안가결

결의문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은 작년 8월 흡연의 건강영향분석 및 의료비 부담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남성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질병 발생 위험도가 후두염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가 더 높았고, 여성은 후두암 5.5배, 췌장암 3.6배, 결장암 2.9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1조 7천억 원으로, 이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 원의 3.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의 재정손실을 초래하고 있는바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공단에서는 보험재정의 관리 책임자로서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의지를 공식화했다.

소비자인 흡연자의 경우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담배회사는 2011년 기준 당기순이익 조308억 원을 올리면서도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흡연폐해로 생긴 환자들을 생각할 때 담배회사는 최소한의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을 위배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98년 49개 주정부가 4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2,460억 달러(한화 약 260조원)의 배상 합의가 이루어졌고 캐나다도 흡연과 질병 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을 인정해주는 "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을 마련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500억 달러(한화 53조원)의 배상 합의가 있었음은 흡연의 폐해의 심각성을 인정해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우리「헌법」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담배로 인한 재정손실은 건강보험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행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비 부담비율은 국비 80%, 지방비 20%의 부담비율로 비추어 볼 때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정부와 우리 군이 담배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군민의 보건을 지키기 위한 의무임을 천명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우리는 국민건강증진과 재정절감을 위해 담배회사에서는 즉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정부의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책강구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4. 4. .

고흥군의회 의원 일동

12) 전라남도 동부생활권협의회 규약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육성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동부 생활권협의회」를 창립하고자 하며,

○ 전라남도 동부 생활권협의회 규약을 신설하여, 「전라남도 동부 생활권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협의회 구성

• 협의회 위원은 전라남도 고흥군,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보성군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

나. 자문위원 위촉

•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관련 기관·단체장·지방의회 의원 및 관계 전문가 중 협의회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함

다. 협의사항

•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및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협의회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할 사항
• 협의회의 화합과 교류증진에 관한 사항
• 기타 본 협의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라. 협의방법

• 협의안건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

마. 경비부담

•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의 개최 자치단체에서 부담
• 사업개발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공동 부담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3)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의 합리화를 위해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 고흥군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

■ 주요내용

○ 사업명: 시산도 다목적 도선건조

○ 사업비: 1,500백만원(국비)

○ 사업량: 75톤급 차도선(강선) → 승선인원 38명, 엔진 1,200마력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4)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우주해양리조트 특구지역 내 남열해돋이 해수욕장은 우주발사전망대와 더불어 고흥의 관광명소로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해수욕장 편의시설이 노후되고 열악하여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특구계획의 토지이용계획 일부를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규모는 샤워장·화장실·특산품판매장·휴게음식점·게스트하우스 등 관광휴게시설 복합용도의 지상 2층 연면적 520㎡ 건물 신축과 오토 캠핑장 조성 14,370㎡임.

○ 본 시설을 위하여 특구계획 전체 면적 변경은 없으며, 특구 토지이용계획상에 휴양문화시설 면적 6,720㎡증, 상가시설 2,150㎡ 증, 숙박시설 60㎡ 감, 녹지면적 8,310㎡ 감 될 예정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5)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농업·농촌 및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관련된 규정을 현행화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명확히 하여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회계관계 공무원을 변경

구 분	현 행	개정안
기금운용관	경제유통과장	농업축산과장
기금출납원	유통시설담당	원예특작담당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6) 금산면 휴양관광빌리지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고흥군 관광수요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고흥군 읍·면 대부분 지역에 숙박시설이 열악하고 가족단위 펜션 및 야영(캠핑) 시설이 부족

○ 특히 고흥군의 상징인 나로 우주센터, 우주과학관, 항공센터, 우주체험센터, 우주천문과학관 등 우수한 지역 자원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나 숙박시설 부족으로 연계가 미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

○ 따라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변 관광자원 활용, 자연과 몸이 하나 되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으로써 역할을 제고하여 전라남도의 관광거점 시설로 해양테마 펜션단지 관광휴양빌리지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함.

■ 주요내용

○ 위　　치 :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신평리 산73-1번지 일원

○ 면　　적 : 74,024㎡

○ 사업내용 : 고흥 군관리계획(지역·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 사업기간 : 2013 ~ 2015년

○ 사업시행 주체 : 고흥휴양관광빌리지(주)

○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준보전산지

○ 사 업 비 : 205억원

■ 의결결과 : 원안채택

17) 도덕면 신양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가축분뇨 및 분뇨는 그 특성상 발생량에 비해 오염물질 부하량이 매우 큰 폐수로서 미처리되어 방류할 경우 하천의 수질악화는 물론 호소 등 정체수역에서 부영양화 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토양, 지하수, 대기오염 등 환경전반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로 퇴비화, 바이오가스화 등 육상자원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외 수요처 확보 및 에너지화, 자원화 처리방식 등 다각화 필요성 대두되고 있음.

○ 따라서,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정부의 노력과 각 가정, 축사 등의 발생원에서 오수분뇨 등 유기성 폐기물 발생량 저감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공중보건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보건 향상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군관리계획 입안) 및 같은 법 제30조(군관리계획의 결정),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9조 내지 161조(수질오염방지시설)에 의거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코자 함.

■ 주요내용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556.4	-	8,556.4	100.0	
농 림 지 역	8,556.4	-	8,556.4	100.0	

나.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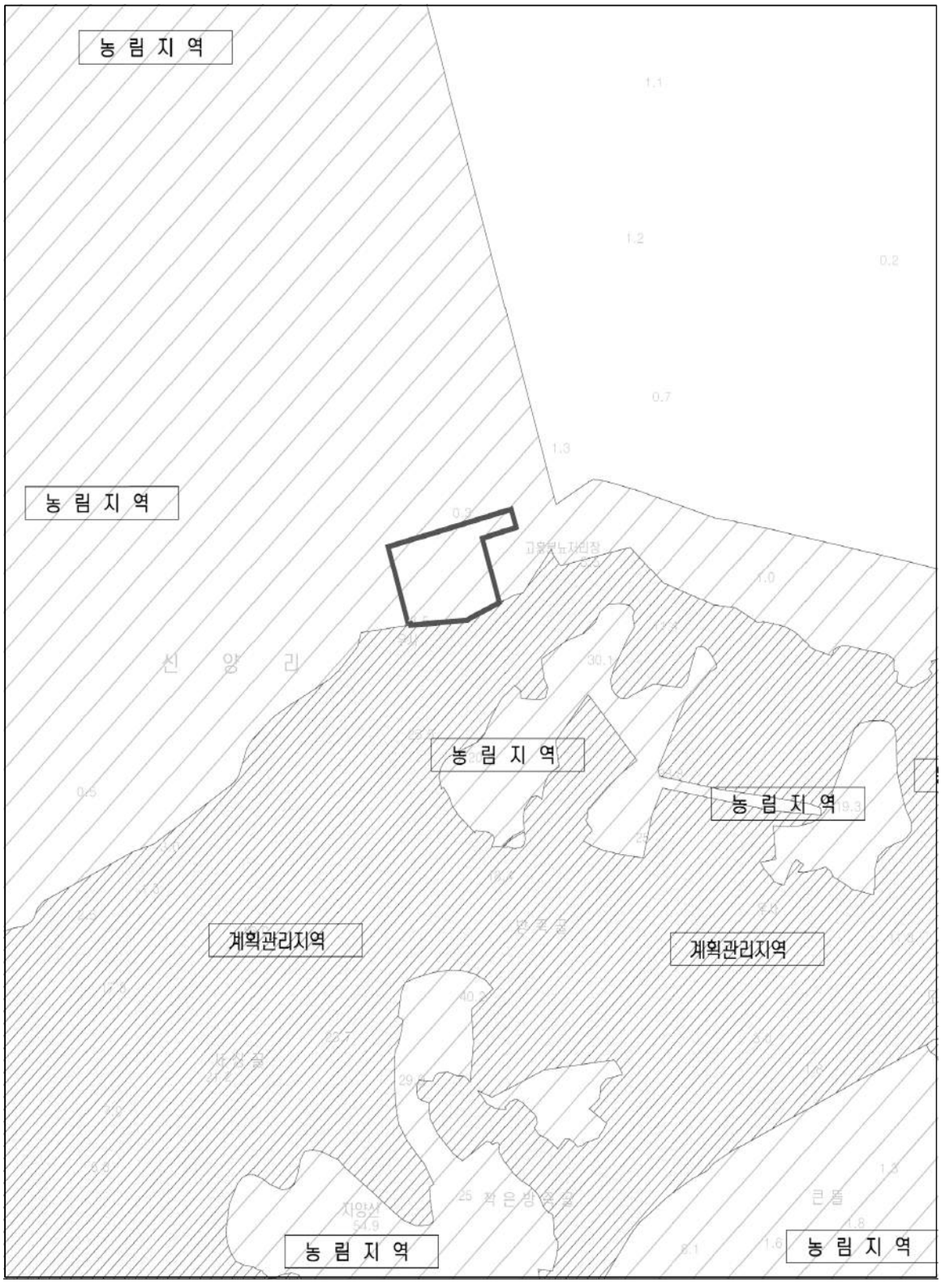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수질오염방지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고흥군 도덕면 신양리 2849-16번지 일원	-	증)8,556.4	8,556.4	-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수질오염방지시설	• 신설 – 면적:8,556.4㎡	• 가축사육농가의 가축분뇨처리를 통한 경제적 손실, 경감 및 수질오염 총량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관내에 발생되는 가축분뇨 및 음식물 수거 후 자원화하기 위하여 군계획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신설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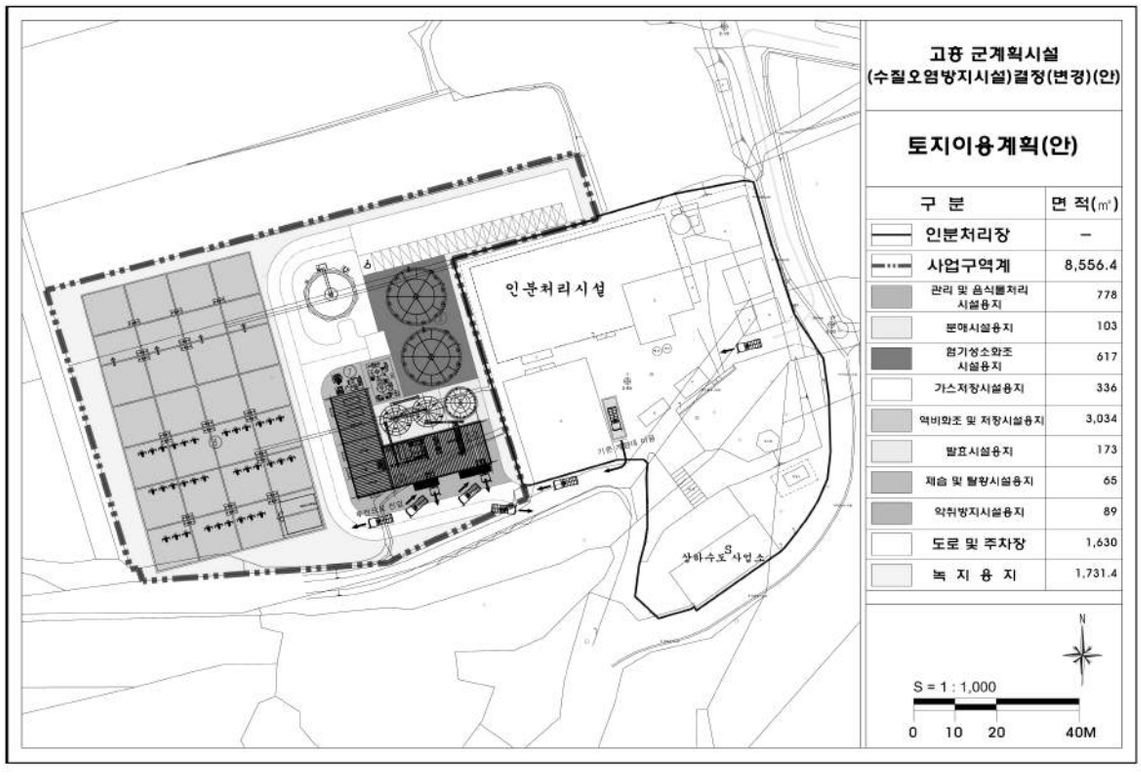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나. 토지이용계획(안)

연번	시설구분	부지면적 (㎡)	구성비 (%)	비 고
1	관리 및 음식물처리시설용지	778	9.1	음식물처리동(음식물기계및퇴비포장설비,저장조및기계실)관리동, 발전기동, 지하탈리액저장조, 혼합조동
2	분해시설용지	103	1.2	가수분해/산발효조
3	혐기성소화조시설용지	617	7.2	혐기성소화조 2동
4	가스저장시설용지	336	3.9	가스저장조
5	액비화조 및 저장시설용지	3,034	35.5	액비화조, 액비저장조
6	발효시설용지	173	2.0	발효조 2동
7	제습 및 탈황시설용지	65	0.8	제습 및 탈황시설
8	악취방지시설용지	89	1.0	악취방지시설
–	도로 및 주차장	1,630	19.1	도로 및 주차장
–	녹지용지	1,731.4	20.2	조성녹지
합 계		8,556.4	100.0	–



■ **의결결과** : 원안가결

의정백서
議政白書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 고흥군의회

제3장
행정사무감사 및 특별위원회 활동상황

제1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절 행정사무감사
제3절 행정사무조사





GOHEUNG COUNTY COUNCIL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 고흥군의회



의정백서 議政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의정백서

議政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제3장

제1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 7. 1 ~ 2014. 6. 30)

1. 제20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제20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제20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 제21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 제21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 제22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 제22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GOHEUNG COUNTY COUNCIL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 고흥군의회

의정백서 議政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제1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제206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위원회 구성

2012년 7월 2일 오전 10시에 제206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1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하고 위원으로 김옥래의원, 송경석의원, 신태균의원, 김주식의원, 송경양의원, 송인숙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장에 김주식의원, 간사에는 신태균의원을 호선함.

나. 의사일정

기 간	안 건	비 고
2012. 7. 11 ~ 7. 12(2일간)	◦ 201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심사 – 심사보고서 작성	예 결 위원회실

다. 2011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2년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11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관계법령에 근거, 분야별 질의·답변과 서류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고 회의를 마감함.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의 검사와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재무보고서를 고흥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세입·세출결산〉

(1) 일반회계

- 세입결산액 459,747백만원
- 세출결산액 381,096백만원
- 세계잉여금 78,651백만원

– 세계잉여금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57,245백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2,275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131백만원임.

(2)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

- 세입결산액 23,332백만원
- 세출결산액 19,172백만원
- 세계잉여금 4,160백만원

– 세계잉여금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82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53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87백만원임.

〈기금결산〉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등 5종 기금의 2011년말 현재총액은 7,509백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음.

- 사회복지기금 3,110백만원
- 신청사건립기금 1,000백만원
-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 165백만원
- 재난관리기금 1,568백만원
- 식품진흥기금 63백만원
- 체육진흥기금 1,603백만원

〈채권 · 채무의 결산〉

- 채 권

– 20110년말 현재 채권총액은 5,512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회계 3,420백만원

– 특별회계 2,092백만원

- 채 무

– 2011년말 현재 채무총액은 21,558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회계 19,458백만원

– 특별회계 2,100백만원

〈공유재산 결산〉

2011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728,698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행정재산 600,693백만원
- 일반재산 128,005백만원

〈물품결산〉

2011년말 현재 물품보유 총수는 533개이며 4,947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전년도말 현재액 487개 4,728백만원
- 신규취득 70개 509백만원
- 매각·폐기 24개 290백만원

〈예 비 비〉

2011년 예비비 지출액은 1,122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소송 사건 관리 배상금 163백만원
- 구제역 차단 방역추진 471백만원
- 집중호우 피해응급복구 지원 209백만원
- 도양읍 축구장 조성 279백만원

〈2011 회계연도말 재정상태(이하 재무보고서)〉

(1) 2011년말 우리군의 재정상태는 다음과 같음(일반·특별·기금회계 총괄)

- 총 자 산 2,040,715백만원
- 총 부 채 35,681백만원
- 순 자 산 2,005,034백만원

(2) 2011년말 총자산은 2,040,715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유 동 자 산 89,503백만원 (4.39%)
- 투 자 자 산 14,563백만원 (0.71%)
- 일반유형자산 135,638백만원 (6.65%)
- 주민편의시설자산 175,268백만원 (8.59%)
- 사회기반시설자산 1,618,928백만원 (79.33%)
- 기타비유동자산 6,816백만원 (0.33%)

(3) 2011년말 총부채는 35,681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유 동 부 채 5,144백만원 (14.42%)
- 장기차입부채 19,646백만원 (55.06%)
- 기타비유동부채 10,891백만원 (30.52%)

〈2011 회계연도말 재정운영 결과〉

(1) 2011년말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총 수 익 399,995백만원
- 총 비 용 292,874백만원
- 운영차액 107,121백만원

(2) 2011년말 총 수익은 399,995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자체조달수익 29,516백만원 (7.38%)
- 정부간이전수익 368,536백만원 (92.24%)
- 기 타 수 익 1,943백만원 (0.49%)

(3) 2011년말 총 비용은 292,874백만원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공공행정 16,567백만원 (5.67%)
- 공공질서및안전 2,788백만원 (0.95%)
- 교 육 4,932백만원 (1.69%)
- 문화및관광 8,911백만원 (3.05%)
- 환경보호 18,832백만원 (6.44%)
- 사회복지 65,210백만원 (22.30%)
- 보 건 5,140백만원 (1.76%)
- 농림해양수산 76,263백만원 (26.08%)
- 산업.중소기업 1,558백만원 (0.53%)
- 수송및교통 5,757백만원 (1.97%)
- 국토및지역개발 6,272백만원 (2.15%)
- 과학기술 597백만원 (0.20%)
- 기 타 80,046백만원 (27.33%)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01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6

2012. 7.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12. 6. 26. 고흥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2. 6. 26.

다. 상 정 일 자 : 2012. 7. 11.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일반회계

- 세입결산 : 459,747,208 천원
- 세출결산 : 381,095,602 천원
- 세계잉여금 : 78,651,606 천원

○ 특별회계

- 세입결산 : 23,331,985 천원
- 세출결산 : 19,171,653 천원
- 세계잉여금 : 4,160,332 천원

3. 검토의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 서원태)

○ 2011년도 군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491,949,258천원으로 98.2%의 징수실적을 올렸으나 미수납액이 8,870,065천원으로 지방세 징수 및 세외수입 관리에 보다더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 징수불능 세입은 실태조사를 하여 결손처분 등 미수납 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출예산현액은 478,432,267천원으로 지출액이 예산현액 83.7%인 400,267,25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세계잉여금 82,811,938천원중 명시이월액이 26,614,552천원으로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요구됩니다.

○ 특별회계 미수납액 3,845,108천원 중 2,753,815천원이 주택사업체납액으로 체납실태를 정확히 조사, 분석하여 회수대책을 적극 강구하기바라며 결손처분사유에 해당할 경우 결손처분 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재 적 : 6명
○ 참 석 : 5명
○ 찬 성 : 5명
○ 반 대 : 없음.

6.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심 사 결 과 보 고 서

2012. 7. 13(금) 10:00
제206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식 의원입니다.
제206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심사했던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각 분야의 전문가 5인의 검사위원들이 세입·세출 분야 전반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6월 26일자로 결산검사 결과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송된 결산 심사안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운용의 제반규정 및 원칙 준수 여부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4919억 49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5% 감소하였으며, 세입결산액은 4830억 7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2%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수납액 중 결손 처분액을 제외한 순 미수납액은 69억 58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47억 9000만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손처분 등 미수금 정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지방세 징수 및 세외수입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특별회계는 미수납액 38억 4500만원 중 27억 5000만원이 주택사업 체납액으로 연체이자 누적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체납실태를 정확히 조사·분석하여 조기 회수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할 경우 결손처분 조치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784억 3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3% 감소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4002억 원으로 83.7%를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582억 6500만원, 집행잔액은 198억 99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일반회계 이월액 574억 4000만원 중 명시이월액은 266억 1000만원으로 다수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규사업 추진 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며 예산편성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투자심사 등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23건으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고흥군 재무회계 규칙 149조에 의한 장부 마감은 한 회계연도 출납을 마감하고, 다음회계 기간의 재무활동을 기록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임에도 장부 마감을 소홀히 한 사례가 있어 철저한 장부정리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보통예금 잔액의 관리에 있어, 예산 편성 시 필요한 예산 사용 시점을 고려하여 단기간에 사용될 자금 이외는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건전한 재정운영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범사례로는 고흥군에 주소를 둔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비속이 동일 주택에서 3세대 이상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209명의 가정에 3080만 원의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부모봉양 기피현상이 두드러진 요즘 지역사회의 효행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우리군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분위기 형성에 기여한 모범 사례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며,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2013년 예산편성과 2012년 예산결산 시에는 2011년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례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20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위원회 구성

2012년 8월 1일 오전 10시에 제20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하고 위원으로 김옥래의원, 송경석의원, 신태균의원, 김주식의원, 송경양의원, 송인숙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장에 김주식의원, 간사에는 신태균의원을 호선함.

나. 의사일정

기 간	안 건	비 고
2012. 8. 2 (1일간)	◦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심사 – 심사보고서 작성	예결위원회실

다.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 8월 2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관계법령에 근거, 분야별 질의·답변과 서류심사를 거쳐 수정가결하고 회의를 마감함.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2012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조정, 시급하지 않는 경비는 삭감·정리 후 채무 조기상환 및 필수적인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 안정적인 재정운영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추경예산규모 : 38,826백만원(기정예산 396,627 → 435,453)**
    - 일반회계 : 39,197백만원(기정예산 376,691 → 415,888)
    - 특별회계 : △371백만원(기정예산 19,936 → 19,565)
  - ○ **일반회계 추가세입 : 39,197백만원**
    - 의존수입 : 24,095백만원(지방교부세 16,314, 재정보전금 19, 보조금 7,762)
    - 자체수입 : 15,102백만원(세외수입 15,102)

■ 2012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 · 조정 내역

(단위 : 천원)

실과소	예산안 페이지	예 산 과 목		예 산 액			내 역	비고
		편성목	통계목	요구액 (A)	조정액 (B)	증감액 (C=A-B)		
계				408,163	408,163	0		
경 제 유통과	154	민간 이전	민간경상 보 조	308,163	208,163	100,000	· 고흥쌀 평생고객택배비지원	
건설과	249	시설비및 부대비	시설비	100,000	200,000	+100,000	· 방범용 CCTV 설치	

■ 의결결과 : 수정가결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8

2012. 8.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대상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12. 7. 26.
나. 회 부 일 자 : 2012. 8. 2.
다. 상 정 일 자 : 2012. 8. 2.

3.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비 고
계	435,453,079	396,627,257	38,825,822	9.8	
일반회계	415,888,378	376,691,417	39,196,961	10.4	
특별회계	19,564,701	19,935,840	△371,139	△1.9	

4. 질의 및 답변내용 : 생 략

5. 검토의견(요지)

○ 당초 예산확정이후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사항 정리
○ 필수적인 법정, 의무적 경비의 적정편성
○ 지방채무 감축으로 건정재정 운영도모
○ 신규투자 억제로 안정적 재정 운영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경제유통과 고흥쌀 평생고객 택배비 중 100,000천원 조정(삭감)
○ 건설과 방범용 CCTV설치비로 1000,000천원 계상

7. 위원회 참석현황

○ 총 원 : 6명
○ 재 적 : 6명
○ 참 석 : 5명
○ 반 대 : 없음.

심 사 결 과 보 고 서

2012. 8. 3(금) 10:00
제20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식 의원입니다.
제20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하였던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심사 경과와 예산안 규모, 심사기준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지난 7월 26일 군수가 제출한 본 안건을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8월 2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규모는 4355억 원으로 기정예산 3966억 원에 비해 388억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159억 원으로 기정예산 3767억 원보다 39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6억 원으로 기정예산 199억 원보다 4억여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기준으로는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예산을 편성함과

아울러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예산 확정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에 대한 기정예산의 정리 조정과 필수적인 법정·의무적 경비와 당면한 군정 현안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투자의 필요성 예산배부 등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심사한 결과 고흥 쌀 택배비 지원사업비 3억 816만 3000원 중 1억 원을 삭감,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방범용 시설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방채무를 상환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에 기여한 점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된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심사에 적극 협조하신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제20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위원회 구성

2012년 10월 22일 오전 10시에 제20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고 위원으로 김옥래의원, 송경석의원, 신태균의원, 김주식의원, 송경양의원, 송인숙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장에 김주식의원, 간사에는 신태균의원을 호선함.

나. 의사일정

기 간	안 건	비 고
2012. 10. 23 (1일간)	◦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심사 – 심사보고서 작성	예결위원회실

다.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 10월 23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관계법령에 근거, 분야별 질의·답변과 서류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고 회의를 마감함.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2012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조정, 태풍피해 복구 및 2013년 국도비 확정사업 사전절차 이행, 필수적인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 안정적인 재정운영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추경예산규모 : 42,661백만원(기정예산 435,453 → 478,114)**

- 일반회계 : 42,978백만원(기정예산 415,888 → 458,866)
- 특별회계 : △317백만원(기정예산 19,565 → 19,248)
  - 의료보호 기금 : △257백만원(기정예산 2,134 → 1,877)
  - 고흥지구간척사업 : △ 60백만원(기정예산 509 → 449)

※ 재난관리 기금 : 55백만원(기정예산 1,800 → 1,855)

○ **일반회계 추가세입 : 42,978백만원**

- 의존수입 : 41,491백만원(보조금 34,558 `12년 지방교부세 6,933)
- 자체수입 : 1,487백만원(세외수입 1,487)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012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9

2012. 10.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대상

2012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12. 10. 15.
나. 회 부 일 자 : 2012. 10. 22.
다. 상 정 일 자 : 2012. 10. 23.

3.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비 고
계	478,114,189	435,453,079	42,661,110	9.8	
일반회계	458,866,403	415,888,378	42,978,025	10.3	
특별회계	19,247,786	19,564,701	△316,915	△1.6	

4. 질의 및 답변내용 : 생 략

5. 검토의견(요지)

○ 2012년 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변경된 국 · 도비 보조사업 정리조정
○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편성 및 2013년 국도비 확정사업 사전절차 이행
○ 필수적인 법정, 의무적 경비 반영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위원회 참석현황

○ 재 적 : 6명
○ 참 석 : 5명
○ 찬 성 : 5명
○ 반 대 : 없음.

심 사 결 과 보 고 서

2012. 10. 24(수) 10:00
제20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태균 의원입니다.
제20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하였던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심사 경과와 예산안 규모, 심사기준,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지난 10월 15일 군수가 제출한 본 안건을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3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규모는 총 4781억 원으로 기정예산 4354억 원에 비해 426억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588억 원으로 기정예산 4158억 원보다 42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2억 원으로 기정예산 195억 원보다 3억여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기준으로는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건전예산을 편성함과 아울러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2012년 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에 대한 정리, 조정과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편성, 2013년 국·도비 확정사업 사전절차 이행, 그리고 필수적인 법정·의무적 경비 반영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심사한 결과 태풍피해를 하루속히 복구하여 군민들이 영농과 일상생활에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제21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가. 위원회 구성

2012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제21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고 위원으로 김옥래 의원, 송경석의원, 신태균의원, 김주식의원, 송경양의원, 송인숙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장에 김주식의원, 간사에는 신태균의원을 호선함.

나. 의사일정

기 간	안 건	비 고
2012. 12. 6 ～ 12. 7(2일간)	◦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심사 – 심사보고서 작성	예결위원회실

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관계법령에 근거, 분야별 질의·답변과 서류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고 회의를 마감함.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확정으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주요내용

○ 총규모 : 415,629백만원('12당초예산 396,627백만원의 4.8% 증)

○ 일반회계 : 400,524백만원('12당초예산 376,691백만원의 6.3% 증)

○ 세 입 (재정자립도 : 10.2%)	
• 자체수입 : 40,784백만원(10.2%)	
– 지 방 세 : 14,730백만원(3.7%)	
– 세외수입 : 26,054백만원(6.5%)	
• 의존수입 : 359,740백만원(89.8%)	
– 지방교부세 : 196,285백만원(49.0%)	
– 보 조 금 : 160,455백만원(40.0%)	
– 재정보전금 : 3,000백만원(0.8%)	

○ 세 출 (성질별)	
• 일반공공행정 :	19,457백만원(4.8%)
• 공공질서및안전 :	1,278백만원(0.3%)
• 교 육 :	2,639백만원(0.6%)
• 문화및관광 :	20,997백만원(5.2%)
• 환 경 보 호 :	44,360백만원(11.1%)
• 사 회 복 지 :	67,480백만원(16.9%)
• 보 건 :	6,684백만원(1.7%)
• 농림해양수산 :	118,145백만원(29.5%)
• 산업·중소기업·	2,710백만원(0.7%)
• 수송및교통 :	13,847백만원(3.5%)
• 국토및지역개발 :	39,684백만원(9.9%)
• 예 비 비 :	4,482백만원(1.1%)
• 기 타 :	58,761백만원(14.7%)

○ 특별회계(9개) : 15,105백만원('12당초예산 19,936백만원의 24.27% 감)

○ 기 금(6개) : 10,328백만원(' 12 당초예산 9,021백만원의 14.5% 증)

■ 의결결과 : 수정가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56

2012. 12.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대상

○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12. 11. 26. 고흥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2. 11. 27.
다. 상 정 일 자 : 2012. 12. 3.

3. 예산안 규모 및 특징

가. 규 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13예산액	2012당초예산	증 감	증감율(%)	비 고
계	415,628,511	396,627,257	19,001,254	4.8	
일반회계	400,524,213	376,691,417	23,832,796	6.3	
특별회계	15,104,298	19,935,840	△4,831,542	△24.2	

나. 특 징

○ 2013년 투자사업 조기발주(준공)를 위한 전년도에 미리 실시설계 용역추진
○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을 가급적 지양하였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 및 주민 건의 생활민원 해결에 중점 투자하여 군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
○ 투자비 성격의 경상적 경비를 시설비목 등으로 전환 편성 및 과목조성으로 경상예산 절감, 재정 건전성 확보

4. 검토의견 (검토자 :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선란)

○ 신규투자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계속 사업비의 마무리와 주민의 생활 민원 해결에 중점 투자하여 군민 복리증진 기여.

○ 자체수입은 지방세인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의 일부가 감소되나, 순세계 잉여금목 등의 증가로 인하여 전년대비 상승.
○ 경상경비는 연례 반복적인 예산과 불요 불급한 경비는 절감 편성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낮은 경비는 삭감하여 건전한 재정운용

5. 질의 및 답변내용 : 생 략.

6. 심사결과 : 삭감조정액 : 1,813,050천원)

○ 일반회계 : 조정(삭감액 : 30 건, 1,813,050천원)
○ 특별회계 : 원안가결

7. 위원회 참석현황

○ 총 원 : 6명
○ 재 적 : 6명
○ 참 석 : 6명
○ 반 대 : 없음.

8. 기타 필요사항 : 없 음

■ 2013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삭감내역

(단위 : 천원)

실과소별	건수	삭감내역		비 고
		증액	삭감	
합 계	30		1,813,050	
기 획 실	2		50,000	
주 민 복 지 과	2		19,000	
행 정 과	1		95,000	
재 무 과	1		300,000	
투 자 정 책 과	1		200,000	
경 제 유 통 과	3		60,000	
문 화 관 광 과	1		7,250	
환 경 산 림 과	1		200,000	
농 업 축 산 과	8		746,800	
농 업 기 술 센 터	6		75,500	
문화체육시설사업소	3		35,000	
읍 면	1		24,500,	

■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 총 삭감건수 : 30건, 삭감액 : 1,813,050천원

(단위 : 천원)

운영위원회별	위원회 삭감		예결위 최종조정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47	△6,319,150	30	△1,813,050	
운 영 위 원 회	2	12,240	-	-	
총 무 위 원 회	18	△1,524,750	12	△730,750	
산 업 건 설 위 원 회	27	△4,794,400	18	△1,082,300	

○ 삭감액 대책 : 예비비 등으로 조정

■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 소관별 : 총무위원회 12건, 730,750천원 삭감

(단위 : 천원)

실과소별	총무위원회 삭감		예결위 최종조정(삭감)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8	1,524,750	12건	730,750	
기 획 실	3	140,000	2	50,000	
주 민 복 지 과	3	288,000	2	19,000	
행 정 과	1	152,500	1	95,000	
재 무 과	1	400,000	1	300,000	
투 자 정 책 과	1	200,000	1	200,000	
문 화 관 광 과	2	107,250	1	7,250	
종 합 민 원 실	1	55,000	-	-	
보 건 소	1	1,000	-	-	
평 생 학 습 사 업 소	-	-	-	-	
문 화 체 육 시 설 사 업 소	5	181,000	3	35,000	
읍 면	-	-	1	24,500,	

■ 2013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 소관별 : 산업건설위원회 18건, 1,082,300천원 삭감

(단위 : 천원)

실과소별	산업건설위원회 삭감		예결위 최종조정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27	4,794,400	18	1,082,300	
경 제 유 통 과	6	404,800	3	60,000	
환 경 산 림 과	3	942,000	1	200,000	
농 업 축 산 과	11	2,511,400	8	746,800	
해 양 수 산 과	1	40,000	-	-	
건 설 과	1	748,000	-	-	
방 재 과	1	20,000	-	-	
농 업 기 술 센 터	4	128,200	6	75,500	
상 하 수 도 사 업 소	-	-	-	-	
우 주 항 공 사 업 소	-	-	-	-	

■ 2013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삭감내역

1) 총무위원회

(단위 : 천원)

실과소	예산안 페이지	예 산 안			내 역	비고
		요구액(A)	조정액(B)	감액(C=A-B)		
합 계		8,265,250	6,452,200	Δ1,813,050	30건	
총무위원회		2,353,250	1,622,500	Δ730,750	12건	
기획실	147	207,000	177,000	Δ30,000	해외 문화체험	
〃	148	50,000	30,000	Δ20,000	통일기금모금운동 기념탑	
주민복지과	187	8,000	0	Δ8,000	효도마을 표지판	
〃	190	22,000	11,000	Δ11,000	IT융합 노인 기능성운동구	군비
행정과	226	305,000	210,000	Δ95,000	직원휴양 회원권	
재무과	257	1,000,000	700,000	Δ300,000	폐교 부지 매입	
투자정책과	268	500,000	300,000	Δ200,000	투자유치 보조금	
문화관광과	303	7,250	0	Δ7,250	천경자 전시 운영	
문화체육 시설사업소	683	120,000	110,000	Δ10,000	기획 공연	
〃	683	30,000	15,000	Δ15,000	전속예술단 해외공연	
〃	699	10,000	0	Δ10,000	길거리 씨름대회	
읍·면		94,000	69,500	Δ24,500	읍·면민의 날 행사	

2) 산업건설위원회

(단위 : 천원)

실과소	예산안 페이지	예 산 안			내 역	비고
		요구액(A)	조정액(B)	감액(C=A-B)		
산업건설 위 원 회		5,912,000	4,829,700	△1,082,300	18건	
경 제 유통과	287	140,000	120,000	△20,000	공동출하용 오이 선별기 지원	군비
〃	287	50,000	40,000	△10,000	연구 용역비	
〃	288	30,000	0	△30,000	식품기능성평가인체적용시험 재료비	
환경산림과	352	3,400,000	3,200,000	△200,000	고흥 쓰레기소각시설 개보수	군비
농업축산과	382	100,000	50,000	△50,000	귀농인 빈집수리 및 생산기반시설	
〃	384	50,000	40,000	△10,000	농어촌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 중앙 공모 용역	
〃	385	75,000	66,250	△8,750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군비
〃	388	28,000	18,200	△9,800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	군비
〃	395	60,000	18,000	△42,000	검정콩 등 두류 잡곡 수확기 구입	군비
〃	398	900,000	700,000	△200,000	원예 전문단지	군비
〃	403	900,000	483,750	△416,250	경종농가 경영체 기계 장비	군비
〃	414	30,000	20,000	△10,000	고소득클럽 과제연구 및 멘토활동 지원	
농업기술센터	531	2,000	1,000	△1,000	새기술 및 수출 농업 정보지	군비
〃	547	14,000	6,000	△8,000	조생종벼 조기재배 확대	군비
〃	548	5,000	2,500	△2,500	과수 전정사 육성 시범	군비
〃	549	84,000	52,000	△32,000	민간자본보조(새소득원 등)	군비
〃	550	14,000	0	△14,000	매실 친환경 재배기술	군비
〃	552	30,000	12,000	△18,000	축산 관리실 운영	군비

3) 의회운영위원회

(단위 : 천원)

실과소	예산안 페이지	예 산 안			내 역	비고
		요구액 (A)	조정액 (B)	증감액 (C=A-B)		
		0	2,000	2,000	1건	
의회사무과	139	0	2,000	2,000	동부권 시군의회의장회 출연금	군비

■ 2013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부서 및 항목 변경 등

1) 부서 · 세부사업(세세항) 변경

(단위 : 천원)

소 관	예산안 페이지	집행부안			수정안		
		세부사업	내역	예산액	소관	세부사업	예산액
		해	당	없	음		

2) 목변경 및 내역변경

(단위 : 천원)

소 관 실 과	예산안 페이지	세부사업	집행부안		수 정 안		
			목	예산액	목	예산액	부기변경
건설과	461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401	18,000	402	18,000	포두 송산배드민턴장 화장실 신축
〃	461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401	10,000	402	10,000	포두 서초마을회관 방수
〃	462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401	10,000	402	10,000	영남 의용소방회관 정비
〃	463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401	10,000	402	10,000	대서 남당마을회관 보수
〃	463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401	13,000	402	13,000	두원 중앙경로당 수리

3) 부기변경

(단위 : 천원)

소 관	예산안 페이지	과 목		예산액	부기내역	
		편성목	통계목		집행부안	수정안
방재과	488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20,000	과역 석봉천 정비	과역 봉촌 배수로 정비
읍·면	744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20,000	동강 매곡 배수로	동강 당곡 배수로

4) 증 액

(단위 : 천원)

소 관	예산안 페이지	회계	편성목	내 용	집행부안	증액
의회 사무과	139	일반회계	205 의회비	동부권 시군의회 의장회 출연금	-	2,000
기획실	158	일반회계	801 예비비	일반회계 예비비	4,481,799	1,811,050

심 사 결 과 보 고 서

2012. 12. 14(금) 10:00
제21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2항 및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11월 26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0일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군수의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총 4156억 2800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보다 4.8%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6.3%가 증가한 4005억 2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4.2% 감소한 151억 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심사기준은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인 군민 복리증진 기여와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 배분의 적정성, 그리고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투자사업은 기대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예산과 불요불급한 경비는 절감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낮은 경비는 투자재원으로 전환토록 하였으며,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생활민원 해결에 중점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경기침체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군민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증진에 지속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예산 4005억 2400만 원 중 투자시기가 시급하지 않고 과다 계상 및 투자의 실효성이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일반예산 18억 1305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긴축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산 151억 400만 원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 등 6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심사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제시한 대안에 대해 앞으로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정된 심사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지혜와 열정을 모아주신 각 상임위와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송자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3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제21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위원회 구성

2012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제21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고 위원으로 김옥래의원, 송경석의원, 신태균의원, 김주식의원, 송경양의원, 송인숙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장에 김주식의원, 간사에는 신태균의원을 호선함.

나. 의사일정

기 간	안 건	비 고
2012. 12. 21 (1일간)	◦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심사 – 심사보고서 작성	예결위원회실

다.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관계법령에 근거, 분야별 질의·답변과 서류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하고 회의를 마감함.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2012년 제2회 추경예산 확정이후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등 보조금 정리·조정 및 법정·필수경비 반영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추경예산규모 : 16,691백만원(기정예산 478,114 → 498,805)**
    - 일반회계 : 15,973백만원(기정예산 458,866 → 474,839)
    - 특별회계 : 718백만원(기정예산 19,248 → 19,966)
  - ○ **일반회계 추가세입 : 15,973백만원**
    - 의존수입 : 14,959백만원(지방교부세 6,828, 보조금 8,131)
    - 자체수입 : 1,014백만원(세외수입 1,014)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012년도 제3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1

2012. 12.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대상

2012년도 제3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12. 12. 13.
나. 회 부 일 자 : 2012. 12. 14.
다. 상 정 일 자 : 2012. 12. 21.

3.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비 고
계	494,805,505	478,114,189	16,691,316	3.5	
일반회계	474,839,489	458,866,403	15,973,086	3.5	
특별회계	19,966,016	19,247,786	718,230	3.7	

4. 질의 및 답변내용 : 생 략

5. 검토의견(요지)

○ 2012년 2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후 변경된 국 도비 보조사업 정리조정
○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예산 반영
○ 필수적인 법정, 의무적 경비 반영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위원회 참석현황

○ 총 원 : 6명 ○ 재 적 : 6명
○ 참 석 : 6명 ○ 반 대 : 없음.

심 사 결 과 보 고 서

2012. 12. 24(월) 10:00
제21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식 의원입니다.
제21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하였던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 경과와 예산안 규모, 심사기준,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지난 12월 13일 군수가 제출한 본 안건을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는 총 4948억 원으로 기정예산 4781억 원에 비해 16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748억 원으로 기정예산 4589억 원보다 15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9억 원으로 기정예산 192억 원보다 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기준으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건전예산을 편성함과 아울러 2012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정리, 조정과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편성, 그리고 필수적인 법정·의무적 경비 반영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심사한 결과 신속한 태풍피해 복구로 군민들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제216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위원회 구성

2013년 6월 25일 오전 10시에 제216회 고흥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고 위원으로 김옥래의원, 송경석의원, 신태균의원, 김주식의원, 송경양의원, 송인숙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장에 김주식의원, 간사에는 신태균의원을 호선함.

나. 의사일정

기 간	안 건	비 고
2013. 6. 26 (1일간)	◦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심사 – 심사보고서 작성	예결위원회실

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관계법령에 근거, 분야별 질의·답변과 서류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고 회의를 마감함.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2013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조정,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의무 절감하여 재해예방·서민생활 안정사업에 재투자하여 재정운영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추경예산규모 : 114,158백만원(기정예산 415,629 → 529,787)**

- 일반회계 : 112,483백만원(기정예산 400,524 → 513,007)
- 특별회계 : 1,675백만원(기정예산 15,105 → 16,780)

○ **일반회계 추가세입 : 112,483백만원**

- 의존수입 : 79,780백만원(지방교부세 31,741, 재정보전금 21, 보조금 48,018)
- 자체수입 : 32,703백만원(세외수입 32,703)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013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95

2013. 6.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대상

2013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13. 6. 18.
나. 회 부 일 자 : 2013. 6. 25.
다. 상 정 일 자 : 2013. 6. 26.

3.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비 고
계	529,786,836	415,628,511	114,158,325	27.5	
일반회계	513,007,165	400,524,213	112,482,952	28.1	
특별회계	16,779,671	15,104,298	1,675,373	11.1	

4. 질의 및 답변내용 : 생 략

5. 검토의견(요지)

○ 2013년 당초예산 확정 이후 변경된 국 · 도비 보조금 정리조정 및 법적 · 의무적경비 반영
○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재해예방 · 서민생활 안정사업 등 재투자
○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4년 주요 투자사업의 설계용역비 반영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위원회 참석현황

○ 재 적 : 6명 ○ 참 석 : 5명
○ 찬 성 : 5명 ○ 반 대 : 없음.

심 사 결 과 보 고 서

2013. 6. 27(목) 10:00
제216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식 의원입니다.
제216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하였던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 경과와 예산안 규모, 심사기준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18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5297억 8 7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4156억 2800만 원보다 27.5% 증가한 것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28.1%가 증가한 5130억 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1.1% 증가한 167억 7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심사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인 군민 복리증진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 배분의 적정성, 그리고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으며, 정부 방침에 따라 절감된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의 재해예방, 서민생활 안정사업 등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도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외 경기침체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군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복지증진에 지속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복지, 사회안전망 확대, 서민생활과 밀접한 SOC사업 등과 우리 군 각종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촉박한 심사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지혜와 열정을 모아주신 각 상임위와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년 동안 예결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 제217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위원회 구성

2013년 7월 1일 오전 10시에 제217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여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고 위원으로 배기홍의원, 김옥래의원, 송우섭의원, 장세선의원, 김의규의원, 최설희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장에 김의규의원, 간사에는 최설희의원을 호선함.

나. 의사일정

기 간	안 건	비 고
2013. 7. 10 ~ 7. 11(2일간)	◦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심사 – 심사보고서 작성	예결위원회실

다.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3년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관계법령에 근거, 분야별 질의·답변과 서류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고 회의를 마감함.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의 검사와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보고서를 고흥군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세입·세출결산〉

(1) 일반회계

- 세입결산액 548,030백만원
- 세출결산액 419,120백만원
- 세계잉여금 128,910백만원

– 세계잉여금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79,908백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7,690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1,312백만원임.

(2)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

- 세입결산액 21,213백만원
- 세출결산액 19,045백만원
- 세계잉여금 2,168백만원
  - 세계잉여금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70백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88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10백만원임.

〈기금결산〉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등 6종 기금의 2012년말 현재총액은 9,829백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음.

- 사회복지기금 3,161백만원
- 신청사건립기금 3,040백만원
-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 213백만원
- 재난관리기금 1,649백만원
- 식품진흥기금 65백만원
- 체육진흥기금 1,701백만원

〈채권 · 채무의 결산〉

- 채 권
  - 2012년말 현재 채권총액은 4,802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회계 3,420백만원
  - 특별회계 1,382백만원

- 채 무
  - 2012년말 현재 채무총액은 6,234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회계 5,534백만원
  - 특별회계 700백만원

〈공유재산 결산〉

2012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047,345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행정재산 897,427백만원
- 일반재산 149,918백만원

〈물품결산〉

2012년말 현재 물품보유 총수는 615개이며 4,924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전년도말 현재액 601개 4,621백만원
- 신규취득 38개 478백만원
- 매각·폐기 24개 175백만원

〈예 비 비〉

2012년 예비비 지출액은 1,627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 및 재난지원금 등 1,424백만원
- 고흥만 간척지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송비용 44백만원
- 폭염에 따른 경로당 선풍기 지원 79백만원
- 적조방제 비용 18백만원
- 봉래 신금 배수펌프장 침수방지 비용 62백만원

〈2012 회계연도말 재정상태(이하 재무보고서)〉

(1) 2012년말 우리군의 재정상태는 다음과 같음(일반 · 특별 · 기금회계 총괄)

- 총 자 산 2,202,176백만원
- 총 부 채 24,842백만원
- 순 자 산 2,177,333백만원

(2) 2012년말 총자산은 2,202,176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유 동 자 산 138,625백만원 (6.29%)
- 투 자 자 산 17,608백만원 (0.80%)
- 일반유형자산 142,154백만원 (6.46%)
- 주민편의시설자산 190,991백만원 (8.67%)
- 사회기반시설자산 1,707,279백만원 (77.53%)
- 기타비유동자산 5,518백만원 (0.25%)

(3) 2012년말 총부채는 24,842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유 동 부 채 10,613백만원 (42.72%)
- 장기차입부채 4,567백만원 (18.38%)
- 기타비유동부채 9,663백만원 (38.90%)

〈2012 회계연도말 재정운영 결과〉

(1) 2012년말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총 수 익 474,943백만원
- 총 비 용 308,563백만원
- 재정운영결과 166,380백만원

(2) 2012년말 총 비용은 308,563백만원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인 건 비 58,745백만원 (19.04%)
- 운 영 비 74,257백만원 (24.07%)
- 정부간이전비용 7,173백만원 (2.32%)
- 민간등이전비용 128,328백만원 (41.59%)
- 기 타 비 용 40,061백만원 (12.98%)

(3) 2012년말 총 수익은 474,943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자체조달수익 32,612백만원 (6.87%)
- 정부간이전수익 442,330백만원 (93.13%)
- 기 타 수 익 1백만원 (0.01%)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01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01

2013. 7.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13. 6. 27. 고흥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3. 6. 28.
다. 상 정 일 자 : 2013. 7. 9.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사유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세입·세출결산 】

(1) 일반회계

- 세입결산액 548,030백만원
- 세출결산액 419,120백만원
- 세계잉여금 128,910백만원
  - 세계잉여금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79,908백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7,690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1,312백만원임.

(2)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

- 세입결산액 21,213백만원
- 세출결산액 19,045백만원
- 세계잉여금 2,168백만원
  - 세계잉여금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70백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88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10백만원임.

【 기금 결산 】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등 6종 기금의 2012년말 현재총액은 9,829백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음.

- 사회복지기금 3,161백만원
- 신청사건립기금 3,040백만원
-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 213백만원
- 재난관리기금 1,649백만원
- 식품진흥기금 65백만원
- 체육진흥기금 1,701백만원

【 채권 · 채무의 결산 】

○ 채 권

- 2012년말 현재 채권총액은 4,802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회계 3,420백만원
- 특별회계 1,382백만원

○ 채 무

- 2012년말 현재 채무총액은 6,234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회계 5,534백만원
- 특별회계 700백만원

【 공유재산 결산 】

2012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047,345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행정재산 897,427백만원
- 일반재산 149,918백만원

【 물 품 결 산 】

2012년말 현재 물품보유 총수는 615개이며 4,924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전년도말 현재액 601개 4,621백만원
- 신규취득 38개 478백만원
- 매각 · 폐기 24개 175백만원

【 예 비 비 】

2012년 예비비 지출액은 1,627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 및 재난지원금 등 1,424백만원
- 고흥만 간척지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송비용 44백만원
- 폭염에 따른 경로당 선풍기 지원 79백만원
- 적조방제 비용 18백만원
- 봉래 신금 배수펌프장 침수방지 비용 62백만원

【2012 회계연도말 재정상태(이하 재무보고서)】

(1) 2012년말 우리군의 재정상태는 다음과 같음(일반 · 특별 · 기금회계 총괄)

- 총 자 산 2,202,176백만원
- 총 부 채 24,842백만원
- 순 자 산 2,177,333백만원

(2) 2012년말 총자산은 2,202,176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유 동 자 산 138,625백만원 (6.29%)
- 투 자 자 산 17,608백만원 (0.80%)
- 일반유형자산 142,154백만원 (6.46%)
- 주민편의시설자산 190,991백만원 (8.67%)
- 사회기반시설자산 1,707,279백만원 (77.53%)
- 기타비유동자산 5,518백만원 (0.25%)

(3) 2012년말 총부채는 24,842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유 동 부 채 10,613백만원 (42.72%)
- 장기차입부채 4,567백만원 (18.38%)
- 기타비유동부채 9,663백만원 (38.90%)

【 2012 회계연도말 재정운영 결과 】

(1) 2012년말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총 수 익 474,943백만원
- 총 비 용 308,563백만원
- 재정운영결과 166,380백만원

(2) 2012년말 총 비용은 308,563백만원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인 건 비 58,745백만원 (19.04%)
- 운 영 비 74,257백만원 (24.07%)

• 정부간이전비용 7,173백만원 (2.32%)
• 민간등이전비용 128,328백만원 (41.59%)
• 기 타 비 용 40,061백만원 (12.98%)

(3) 2012년말 총 수익은 474,943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자체조달수익 32,612백만원 (6.87%)
• 정부간이전수익 442,330백만원 (93.13%)
• 기 타 수 익 1백만원 (0.01%)

3. 검토의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 조철호)

○ 2012 회계연도 결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총액은 5,692억 4천 3백만원이며, 세출총액은 4,381억 6천 5백만원으로써

○ 2011 회계연도 결산액과 비교할 때 세입은 17.8%인 861억 6천 4백만원, 세출은 9.5%인 378억 9천 7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음.

○ 순 채무액은 전년대비 153억 2천 4백만원이 감소한 62억 3천 4백만원으로 이는 국비와 수혜자 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로써 군비로 부담할 채무는 남아있지 않아 우리군 재정상태는 매우 건전함.

○ 다만 세외수입 미수납액 44억 9백만원 중 과년도 수입이 74% 차지하고 있어 고질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이 589억 8천 5백만원으로써 이는 예산현액의 10.66%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 등 사전 충분한 검토가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재 적 : 6명 ○ 참 석 : 6명
○ 찬 성 : 6명 ○ 반 대 : 없음.

6.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심 사 결 과 보 고 서

2013. 7. 12(금) 10:00
제217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의규 의원입니다.
제217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심사했던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6월 27일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뒤 7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등을 중심으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우리 군 결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 총액은 5692억 4300만원이고, 세출 총액은 4381억 6500만 원으로써 2011 회계연도 결산액과 비교할 때 세입은 17.8%인 861억 6400만 원, 세출은 9.5%인 378억 97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322억 85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537억 7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5480억 3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57억 4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322억 8500만 원으로 그중 78.7%인 4191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1289억 1000만 원으로써 이 중 801억 9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07억 8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24억 43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12억 1300만 원으로 12억 30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7억 8600만 원으로 그중 78.6%인 190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21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세외수입 미수납액 44억 900만 원 중 과년도 수입이 74%를 차지하고 있어 고질체납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 특별징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이 예산현액의 10.6%인 589억 8500만 원으로 이는 당해연도에 계획된 다수의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써 신규사업의 경우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등 사전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수범사례입니다.
열악한 우리 군 재정 상황을 감안 세원 발굴과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자체 세정동아리를 구성하여 공제 가능한 매입분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8개월에 걸쳐 관련 자료를 찾는 등 꾸준한 노력의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12억 3500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이는 우리 군 산업구조상 세원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체 학습동아리를 구성하여 숨은 세원을 발굴한 것은 타 자치단체에서도 보기 드문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결산심사 목적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있는 만큼 2014년 예산편성과 2013 회계연도 예산결산 시에는 지적된 문제점 등이 시정과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제22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위원회 구성

2013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제220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여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고 위원으로 배기홍 의원, 김옥래의원, 송우섭의원, 장세선의원, 김의규의원, 최설희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장에 김의규의원, 간사에는 최설희의원을 호선함.

나. 의사일정

기 간	안 건	비 고
2013. 12. 9 ~ 12. 11(3일간)	◦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심사 – 심사보고서 작성	예결위원회실

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관계법령에 근거, 분야별 질의·답변과 서류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고 회의를 마감함.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확정으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주요내용**
  - ○ 총 규 모 : 434,433백만원(`13 당초예산 415,628백만원의 4.5% 증)
  - ○ 일반회계 : 423,473백만원(`13 당초예산 400,524백만원의 5.7% 증)

(단위 : 천원)

세 입 (재정자립도 : 5.7%)	세 출 (성질별)	
•자체수입 : 46,297백만원(10.9%)	• 일반공공행정 :	22,658백만원(5.4%)
– 지 방 세 : 15,180백만원(3.6%)	• 공공질서 및안전 :	1,566백만원(0.4%)
– 세외수입 : 9,095백만원(2.1%)	• 교 육 :	2,874백만원(0.7%)
– 보존수입등 : 22,022백만원(5.2%)	• 문화 및 관광 :	22,901백만원(5.4%)
	• 환 경 보 호 :	39,598백만원(9.4%)
•의존수입 : 377,176백만원(89.1%)	• 사 회 복 지 :	85,630백만원(20.2%)
– 지방교부세 : 197,131백만원(46.6%)	• 보 건 :	7,387백만원(1.7%)
– 보 조 금 : 177,045백만원(41.8%)	• 농림해양수산 :1	114,503백만원(27.0%)
– 재정보전금 : 3,000백만원(0.7%)	• 산업·중소기업·	4,011백만원(1.0%)
	• 수 송 및 교 통 :	11,937백만원(2.8%)
	• 국토및지역개발 :	44,967백만원(10.6%)
	• 예 비 비 :	4,422백만원(1.0%)
	• 기 타 :	61,019백만원(14.4%)

○ 특별회계(8개) : 10,960백만원(`13 당초예산 15,104백만원의 △27.4%)

○ 기 금(6개) : 21,214백만원(`13 당초예산 10,328만원의 105.4% 증)

■ **의결결과** : 수정가결

2014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26

2013. 12.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대상

2014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13. 11. 21. 고흥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3. 11. 22.
다. 상 정 일 자 : 2013. 12. 9.

3. 예산안 규모 및 특징

가. 규 모

(단위 : 천원)

구분 / 회계별	2014년 예산(안)	2013년 당초예산	전년대비 증△감	%	비고
합 계	434,432,751	415,628,511	18,804,240	4.5	
○ 일 반 회 계	**423,472,712**	**400,524,213**	**22,948,499**	5.7	
○ 특 별 회 계	**10,960,039**	**15,104,298**	**△4,144,259**	△27.4	
• 상 수 도 사 업	3,911,417	4,466,828	△555,411	△12.4	
• 장기미집행도시계획	1,000.000	1,000,000	-	-	
• 기반시설부담금	-	34,786	△34,786	△100	폐 지
• 의 료 급 여 기 금	1,828,387	2,028,717	△200,330	△9.9	
• 농어민소득기금운영	419,801	391,801	28,000	7.2	
• 발전소주변지역지원	34,046	4,156	29,890	719.2	
• 농 공 단 지 조 성	200,000	560,873	△360,873	△64.3	
• 해창오마간척사업	3,171,982	6,235,190	△3,063,208	△49.1	'13년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완료
• 고흥지구간척사업	394,406	381,947	12,459	3.3	

나. 일반회계 세입 · 세출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예산(안)	구성비	2013년 당초예산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	%	비고
합 계		**423,472,712**	**100**	**400,524,213**	**100**	**22,948,499**	**5.7**	
세입	○ 자체수입	46,296,548	10.9	40,784,193	10.2	5,512,355	13.5	
	• 지 방 세	15,180,000	3.6	14,730,000	3.7	450,000	3.1	
	• 세 외 수 입	9,095,097	2.1	8,554,193	2.1	540,904	6.3	
	• 보전수입 등	22,021,451	5.2	17,500,000	4.4	4,521,451	25.8	
	○ 의존수입	377,176,164	89.1	357,740,020	89.3	17,436,144	4.8	
	• 지방교부세	197,131,463	46.6	196,285,307	49.0	846,156	0.4	
	• 재정보전금	3,000,000	0.7	3,000,000	0.7	-	-	
	• 보 조 금	177,044,701	41.8	160,454,713	40.1	16,589,988	10.3	
합 계		**423,472,712**	**100**	**400,524,213**	**100**	**22,948,499**	**5.7**	
세출	○ 경상예산	122,905,929	29.0	117,168,602	29.3	5,737,327	4.9	
	•인 건 비	48,111,256	11.4	45,685,119	11.4	2,426,137	5.3	
	•기 준 경 비	12,696,205	3.0	11,629,523	2.9	1,066,682	9.2	
	•경상이전등	62,098,468	14.7	59,853,960	14.9	2,244,508	3.7	
	○ 사업예산	300,566,783	71.0	283,355,611	70.7	17,211,172	6.1	
	•보 조 사 업	255,249,578	60.3	237,718,713	59.4	17,530,865	7.4	
	•자 체 사 업	45,317,205	10.7	45,636,898	11.4	△319,693	△0.7	

다. 특 징

○ 경상예산을 대폭 절감하고 투자사업을 최대한 확대

○ 추진 중인 계속사업 마무리와 재정투자의 시너지효과 극대화에 중점

○ 주민 참여 예산제 도입으로 군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노력

4. 검토의견

○ 세입예산은, 재산세, 지방소득세 증가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13.5%가 늘어났으며 기초연금, 공공하수처리장 사업비 증가 등 정부정책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다소 늘어나 의존재원은 전년대비 4.8%가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은, 산업기반 기업유치와 활동 지원, 친환경 농·축수산업의 육성, 일자리 확충 및 맞춤형 복지 실현, SOC사업 확충, 역사·문화·관광자원 발굴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경비는 일몰제 적용 및 예산편성 한도액인 3,655백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음.

○ 내년에도 세계경제와 국내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으로 그 어느 해 보다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재정 건전성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내용 : 생 략.

6. 심사결과 : 삭감조정액 1,269,400천원

○ 일반회계 : 삭감조정액 - 13건, 1,269,400천원

○ 특별회계 : 원안가결

※ 삭감 조정 내역 : 별첨

7. 위원회 참석현황

○ 총 원 : 6명 ○ 참 석 : 6명

○ 찬 성 : 6명 ○ 반 대 : 없음.

8. 기타 필요사항 : 없 음.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

Ⅰ. 예산총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증 액	감 액	증 감
세 입	434,432,751	0	0	0
세 출	434,432,751	1,269,400	1,269,400	0

Ⅱ. 예산 수정 규모

가. 순계규모 : 0

나. 삭감규모 : △1,269,400천원

다. 증액규모 : 1,269,400천원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감 액〉	0	〈감 액〉	△1,269,400
		▶ 문화관광과	△215,000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39,800
		▶ 농업축산과	△415,000
		▶ 해양수산과	△329,600
		▶ 농업기술센터	△70,000
〈증 액〉	0	〈증 액〉	1,269,400
		▶ 예비비	1,269,400
〈합계(순계)〉	0	〈합계(순계)〉	0

Ⅲ.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가. 감액

(단위 : 천원)

소관	예산안 페이지	회계	과목		집행부안 (A)	수정안 (B)	감 액 (C=A-B)	부기내역
			편성목	통계목				
총 계					3,672,000	2,402,600	△1,269,400	
문 화 관광과	312P	일반	401	01	600,000	400,000	△200,000	분청문화관및공원 조성 부지매입비
〃	327P	일반	401	01	10,000	5,000	△5,000	발포역사전시 체험관간판교체
〃	335P	일반	307	04	10,000	0	△10,000	해변가요제
문화체 육시설 사업소	717	일반	401	01	9,800	0	△9,800	게이트볼장만국기 제작설치
〃	717	일반	303	01	30,000	0	△30,000	F1그랑프리티켓 구입
〃	722P	일반	307	04	400,000	200,000	△200,000	국제열기구 대회개최
농 업 축산과	391P	일반	307	02	100,000	0	△100,000	농어업인마을 공동급식지원
〃	400P	일반	402	01	185,000	55,500	△129,500	소득유망아열대 과수단지조성
〃	〃	일반	402	01	15,000	4,500	△10,500	과수유해조수 포획트랩설치
〃	403P	일반	402	01	50,000	15,000	△35,000	수급불안품목작목 전환
〃	404P	일반	301	11	200,000	60,000	△140,000	지역소득작물 명품화
해 양 수산과	433P	일반	401	01	1,852,200	1,522,600	△329,600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농업기 술센터	552P	일반	402	01	210,000	140,000	△70,000	극조생종조평벼 2기작생산시험

나. 증액

(단위 : 천원)

소관	예산안 페이지	회계	과 목		집행부안 (A)	수정안 (B)	증액 (C=B-A)	부기내역
			편성목	통계목				
총 계							1,269,400	
기획실	163P	일반	801	01	4,422,451	5,691,851	1,269,400	예비비

다. 부서 및 항목변경 등

1) 세부사업(세세항) 변경

(단위 : 천원)

소 관	예산안 페이지	집행부안			수정안		
		세부사업	내역	예산액	세부사업	내 역	예산액
문화 관광과	335P	해변축구대회 행사지원	해변축구대회	25,000	해변행사 지원	해변행사 지원	25,000

2) 편성목 변경

(단위 : 천원)

소 관	예산안 페이지	세부사업	집행부안		수 정 안		
			목	예산액	목	예산액	부기내역
건설과	469P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402-01	20,000	401-01	20,000	대서중산쉼터신축
해양 수산과	432P	공동가공시설 현대화사업	402-01	600,000	401-01	600,000	공동가공시설 현대화사업

3) 부기변경

(단위 : 천원)

소 관	예산안 페이지	과 목		예산액	부기내역	
		편성목	통계목		집행부안	수정안
건설과	469P	402	01	20,000	대서중산쉼터신축	대서중산쉼터 주변정비

심 사 결 과 보 고 서

2013. 12. 17(화) 10:00
제22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의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2항 및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2일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군수의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총 4344억 33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보다 4.5%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5.7%가 증가한 4234억 7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7.4% 감소한 109억 6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심사기준은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인 군민 복리증진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 배분의 적정성 그리고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되 사업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계속사업의 경우 지금까지 추진실적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의에 빠져있는 우리 농민과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촌 현실을 감안, 농수축산업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국내·외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와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4234억 7300만 원 중 투자시기가 시급하지 않고 과다계상 및 투자의 실효성이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12억 694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

정하였으며, 특별회계 109억 6000만 원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사회복지기금 등 6건의 기금운용 계획안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심사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제시한 대안에 대해 앞으로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정된 심사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지혜와 열정을 모아주신 각 상임위와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제22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위원회 구성

2013년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제22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고 위원으로 배기홍의원, 김옥래의원, 송우섭의원, 장세선의원, 김의규의원, 최설희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장에 김의규의원, 간사에는 최설희의원을 호선함.

나. 의사일정

기 간	안 건	비 고
2013. 12. 19 (1일간)	◦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심사 – 심사보고서 작성	예결위원회실

다.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관계법령에 근거, 분야별 질의·답변과 서류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하고 회의를 마감함.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2013년 제1회 추경예산 확정이후 보조금 정리·조정 및 법정·필수경비 반영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추경예산규모 : 6,340백만원(기정예산 529,787 → 536,127)
    - 일반회계 : 6,314백만원(기정예산 513,007 → 519,321)
    - 특별회계 : 26백만원(기정예산 16,780 → 16,806)
  - ○ 일반회계 추가세입 : 6,314백만원
    - 의존수입 : 6,123백만원(지방교부세 1,425, 보조금 4,694, 재정보전금 4)
    - 자체수입 : 191백만원(지방세 590, 세외수입 △399)
- 의결결과 : 수정가결

2013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54

2013. 12.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대상

○ 2013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13. 12. 12. 고흥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3. 12. 12.
다. 상 정 일 자 : 2013. 12. 12.

3.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	비 고
계	536,126,855	529,786,836	6,340,019	1.2	
일반회계	519,321,108	513,007,165	6,313,943	1.2	
특별회계	16,805,747	16,779,671	26,076	1.2	

4. 질의 및 답변내용 : 생 략

5. 검토보고

○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5,361억원으로써, 기정예산 5,298억원의 1.2% 증가한 것이며, 일반회계는 63억 1,400만원이 늘어난 5,193억원, 특별회계는 2,600만원이 늘어난 168억원임.

○ 금회 추경예산안의 특징은 제1회 추경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과 법정, 필수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 행사 및 경상예산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편성목 변경 1, 부기변경 2)

※ 편성목 및 부기변경 내역 : 별첨

7. 위원회 참석현황

○ 재 적 : 6명 ○ 참 석 : 5명

○ 찬 성 : 5명 ○ 반 대 : 없음.

■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목변경 및 부기변경

○ 편성목 변경

(단위 : 천원)

소 관	예산안 페이지	세부사업	집행부안		수 정 안		
			목	예산액	목	예산액	부기내역
건설과	151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401-01	15,000	401-01	10,000	옥상마을 구거덮개 정비
					402-01	5,000	옥하마을 회관보수

○ 부기변경

(단위 : 천원)

소 관	예산안 페이지	과 목		예산액	부 기 내 역	
		편성목	통계목		집행부안	수 정 안
건설과	151	401	01	20,000	호천마을 배수로 정비	• 비아마을 배수로 정비
〃	151	401	01	15,000	독산 골짜기 농로포장	• 옥상마을 구거 덮개정비(10,000) • 옥하마을 회관보수(5,000)

GOHEUNG COUNTY COUNCIL 의정백서



의정백서

議政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議

제3장

제2절 행정사무감사

1. 제210회 제2차 정례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2. 제220회 제2차 정례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GOHEUNG COUNTY COUNCIL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 고흥군의회

의정백서 議政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제2절 행정사무감사

1. 제210회 제2차 정례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상황을 면밀히 파악,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며,

○ 모범사례는 권장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1)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 감사기간 : 2012. 11. 19 ~ 11. 29【9일간】

3) 감사장소 : 소회실 및 사업장 현지

4) 대상기관 :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

5) 대상사무 :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무

6) 감사방법(감사실시 주체) : 본회의(소관 위원회별 집중 실시)

7) 감사반 편성

구 분	감사위원 명단	감사보조자
본회의	• 위 원 장 : 의 장 • 부위원장 : 부의장 • 위 원 : 김옥래, 송경석, 송우섭, 신태균, 김주식, 장세선, 김의규, 송경양, 송인숙, 최설희의원	• 전문위원 서원태 • 전문위원 김영한 • 전문위원 송여종

8) 감사일정

월 일	감사대상기관(실과소)	비 고
11.19(월)	• 기획실, 주민복지과, 행정과	•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 • 실과소장의 보고 및 질의 답변
11.20(화)	• 재무과, 투자정책과, 경제유통과	
11.21(수)	•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농업축산과	
11.22(목)	• 해양수산과, 건설과, 방재과	
11.23(금)	• 종합민원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11.26(월)	• 상하수도사업소, 우주항공사업소, 평생학습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11. 27~11.29	• 현지확인 및 결과보고서 정리	

※ 감사일정은 의사운영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감사요령

○ 수감자료 보고 및 질의 답변
○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병행
○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 및 의견 진술 청취

10) 감사진행 순서

감 사 선 언 …… 감사위원장
인 사 말 씀 …… 감사위원장
선 서 …… 피 감사기관장(실과소장)
수 감 자 료 보 고 …… 피 감사기관장(실과소장)
질 의 및 답 변 ……
※ 필요시 현지확인 병행
감 사 종 료 선 언 …… 감사위원장

1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자료요구 등은 소관 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이 기록·정리하며, 종합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위원장의 지휘아래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에서 취합하여 작성

○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기간·대상기관·실시경과 등 일반사항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 시정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의견 등을 포함

○ 의회운영위원회는 작성한 결과보고서(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지적사항 처리에 관하여는 본회의 의결로 채택

12) 기타사항

○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음.

○ 본 계획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과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름.

13) 첨부서류

○ 감사장 좌석 배치도

○ 피 감사공무원 선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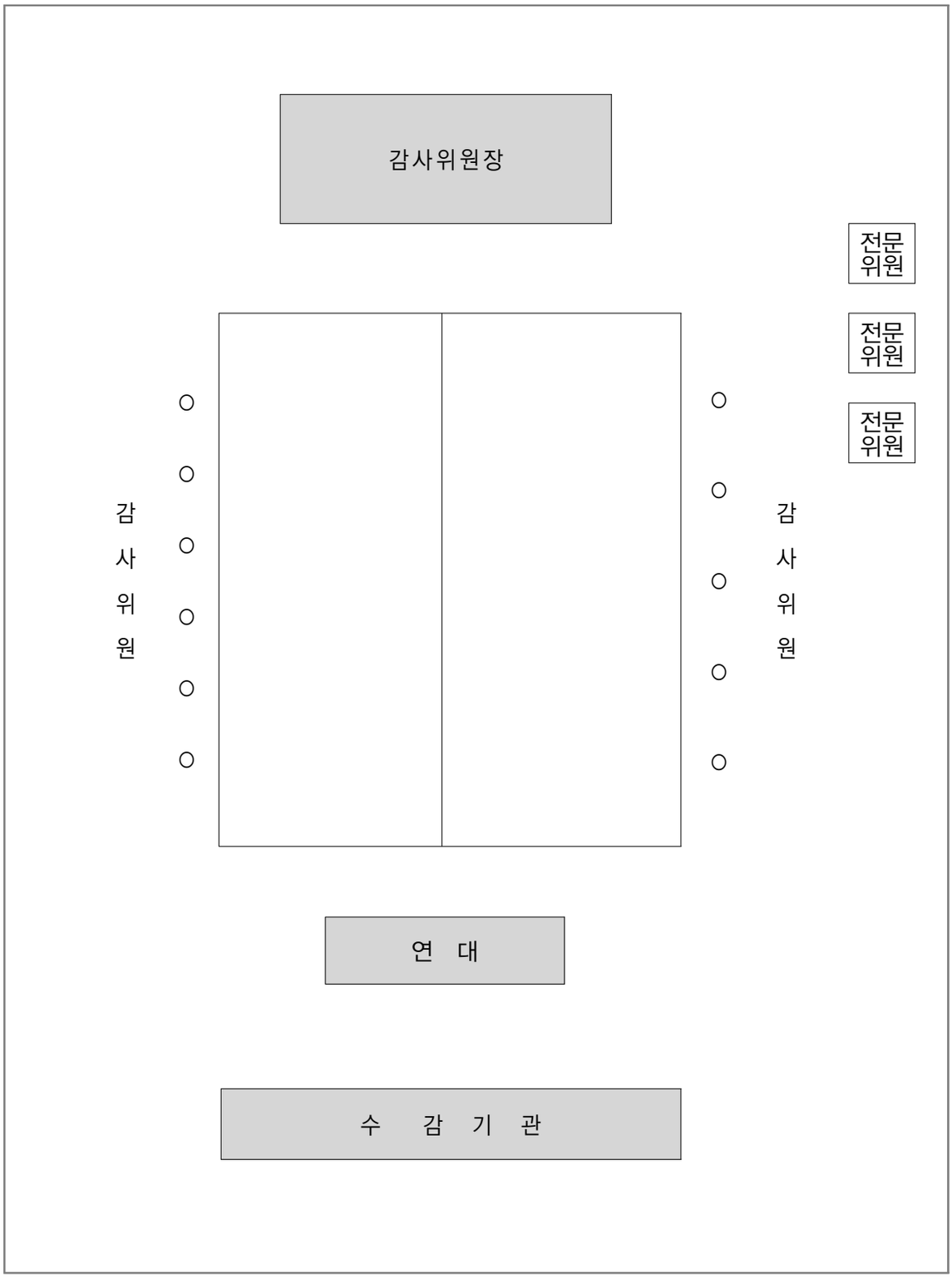
○ 증인 선서서

○ 감정인 선서서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서식)

별지 2 감사장 배치도(예시)



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실과소	요 목	주요 지적사항	비고
기획실	성립전예산 목적 부합 운영	• 실과소의 성립전예산 사용승인 요구 시 성립전 도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여부를 검토 후 승인할 것.	
주민복지과	독거노인 복지혜택 다양화 추진	• 타 지자체에서는 이동차량을 이용한 빨래방 사업을 운영하여 독거노인 등에 사회복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경로당 운영시설 일괄구입 강구	• 경로당에 보급된 안마의자 등 운동기구를 군에서 일괄 구입으로 배정되어 고장 시 수리처를 몰라 장기간 방치된 사례가 있으므로 고장을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참빛아동센터 부실운영 시정	• 포두 참빛 아동센터 운영 상황에 대한 현장감사 결과 컴퓨터 1대가 배치되어 활용도가 낮고 난방이 되지 않는 등 운영 상태가 부실함으로 즉시 시정 조치할 것.	
행정과	마을부녀회장 처우개선 방안 마련	• 마을 부녀회장도 현재의 이장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업무철저	•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사회단체 설립 목적 및 활동사항을 고려하여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고 실적이 없는 단체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	
재무과	공사입찰시 관내업체 참여방안 마련	• 종합건설 및 전문건설 공사 입찰시 업체 입찰참가 가능 한도액 상향조정으로 우리군 업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제·개정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지방재정 운영계획 효율화 시행	• 정부의 지방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이자 수입 감소로 재정 건전성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함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지방재정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	
투자정책과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세수증대 방안 강구	• 우리군의 태양광 발전 시설 투자자가 대부분 외지인으로 태양광 설치에 따른 환경파괴로 민원이 야기되는 등 우리군에 보탬이 되지 않는 투자사업으로 투자자에 대한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할 것.	
	투자일몰제 도입 강구	• 지금까지 우리 군이 추진해 온 투자협약 시 투자기간 등을 포함한 강제이행 조건이 없어 투자가 장기화 되는 등의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투자일몰제 도입을 강구할 것.	

실과소	요 목	주요 지적사항	비고
문 화 관 광 과	우주항공축제 안전사고 예방	• 고흥우주항공축제 기간에 안전사고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 • 고흥 만남의 광장 입점자에 대한 공공요금은 군의 공공시설 대부계약에 의거 원칙적으로 징수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종 합 민 원 과	고흥만남의광장 활성화 방안 강구	• 공유수면점사용허가는 사전 현장 확인을 거쳐 공공목적 외에 사적인 점사용 허가는 가급적 불허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공유수면 점사용허가확인 철저	• 빈집 정비사업비가 일률적으로 1,000천원을 보조하고 있는데 현지 확인을 거쳐 건물 구조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축산시설산지 전용 허가 업무철저	• 축사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는 주변 환경의 위해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토석허가관련 제한방안 검토	• 우리군의 청정 지역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토석채취 허가 및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보 건 소	보건지소 주민편익제공 방안 검토	• 보건지소 등의 진료시간 전 내방환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농어촌증진사업 업무 일원화 추진	• 농어촌 노인건강 증진사업 업무가 보건소와 주민복지과로 이원화되어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함으로 주민복지과로 일원화할 것.	
	비효율운영 보건지소 개선 촉구	• 과역보건지소의 년 수진자가 909명으로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평생학습 사 업 소	아카데미 선발 다양화 추진 검토	• 중 · 고등학생 아카데미 선발 시 성적순으로만 대상을 선발하기 때문에 면 단위 학생에게는 기회가 없으므로 앞으로는 성적과 학교장 추천 등을 일정 비율로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문화체육 시 설 사 업 소	김일체육관 운영 효율화 추진	• 김일 체육관을 단순한 체육시설로만 사용하지 말고 김일 선수를 추모할 수 있는 유품전시, 기념품 판매, 영상물 상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실과소	요 목	주요 지적사항	비고
경 제 유 통 과	고흥 사동마을 영농조합 생산품 홍보 미흡	•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고흥 사동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유자, 매실을 원료로 생산하고 있는 효소식초 홍보가 미흡함.	
	고흥유통(주) 운영지도 감독 소홀	• 고흥유통(주) 운영실적을 보면 매년 적자이고, 시설물은 확충되고 있는데 판로개척이나 품종 선택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매우 미흡함.	
농 업 축 산 과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 홍보 및 추진 소홀	•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부로부터 35개 품목에 한정되어 있고 우리군에는 주로 벼, 배, 단감, 참다래 등인데 국비 50%, 도비 및 군비 30%가 지원되어 농가 부담이 얼마 되지 않아 많은 농가가 가입할 텐데 지도와 홍보 부족으로 소수농가만 가입되었음.	
	조사료 생산 판매 개선	• 우리군 관내에서 생산된 조사료를 타지역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축산업을 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고가로 구입하고 있으므로 축협과 생산자단체와 연결하여 관내 판매토록 개선할 것.	
	흙누리영농조합 (대표:진용식) 밭작물브랜드 육성사업 추진 소홀	• 본 사업은 관내 다양한 잡곡류 생산단지를 조직 생산, 가공, 유통을 체계적으로 구축 고품질 밭작물 우수 브랜드 경영체 육성을 위한 사업인바 • 품목별 작목반은 구성되어 있으나 조직 자체가 불 분명하고 D/B도 구축되지 않아 형식적이고 • 종합처리시설 중 기계설비가 콩을 위주로 선별하게 되어 있어 사업계획 당시 품목인 기장, 수수, 조 등은 선별할 수 없음	현장
	고흥유자연합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채환) 운영 소홀	• 우리군은 유자 생산량이 전국 46%, 전남 57%의 생산량을 점유하고 있는 품목이며, 1,443농가가 재배하고 있으나 • 공동출하 판매장이 없어 농가가 제값을 받지 못하고 현재 매취 방법으로 수매하고 있으며 • 고흥유자영농조합법인으로 통합 FTA기금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3개단체로 분산(고흥유자연합영농조합법인, 고흥친환경유자연구회, 유자영농조합법인) 운영함으로써 불화가 조성되고 있음	현장

실과소	요 목	주요 지적사항	비고
해 양 수산과	치어방류사업 지도단속 소홀	• 치어방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강력한 지도 단속이 소홀하여 위판장이나 시장에서 치어가 판매되고 있는 실정임.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 유지관리 소홀	•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은 당초에 소규모로 설치해 오다가 물량증가 또는 화물차의 대형화 등으로 한 어촌계에 2~3개가 설치되는 곳도 있는데, 일부 어촌계는 전혀 사용하지 않아 녹이 슬어 고철화되는 곳이 있는 등 사후 유지관리 (소규모 어촌계에 이설 설치)가 소홀함.	
건설과	해창만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소홀	• 해창만지구는 간척지로써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나 교통량 증가는 물론 대형화물차 등이 통행함에 따라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어 있고 미보수한 상태이며 또한 통행 톤수 규제 안내판이 미설치되어 있음	
상하수도 사업소	포두면 하수도시설 공사관리 소홀	• 상·하수도 관로를 동시에 매설하면서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도로를 굴착한 후 관리 소홀로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는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우주항공 사업소	해창만 일시경작지 사용료 징수 소홀	• 해창만지구 일시경작지 사용료가 2011년도에 64,865천원이 부과되었으나 현재까지 59,592천원을 징수하고 5,273천원을 미징수하고 있음.	

결 과 보 고 서

2012. 12. 14(금) 10:00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우섭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는 2012년 11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2012년도에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주요 업무와 각종 시책사업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21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실시하였고 관련 수감자료 및 증빙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 현지 확인을 병행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32건이 지적되었으며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을 요하는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유통주식회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흥군이 출자한 회사로서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특화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과 고객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공급과 소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소득을 창출 하여야 합니다.
친환경 농수축산물로 일류제품을 만들고 국내는 물론 해외수출 시장을 개발하고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여가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고흥유통주식회사의 운영실적을 보면 시설물에 대한 확충과 투자는 되고 있으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판로 개척과 제품 선택의 불합리, 적극적인 행정지도 미흡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고흥유통주식회사가 고흥의 경제를 살리는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7만 1000여 명의 인구 가운데 34%가 65세 이상의 노령인구입니다.
노인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이며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를 거쳐 오늘의 발전을 이루어 오신 산증인입니다.

편안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다행히 여러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더욱 세밀한 관심과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독거노인은 활동력이 떨어지고, 세탁을 자주할 수 없는 노인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빨래방을 운영하여 지원하고 체력 보호를 위하여 노인에게 맞는 운동기구 보급과 기구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율을 제고하는 등 노인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는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어촌 특성상 보건소 내방환자의 진료시간이 공무원 근무시간과 맞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찍 진료 받고 농사일에 종사하거나 농사일을 마치고 늦게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읍면 보건지소에서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진료 시간 전이나 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역 보건지소의 경우 연간 수진자가 909명 정도입니다.
타 보건지소와 비교 분석을 통하여 비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수진자 대부분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입니다.
친절하고 편안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우리나라에 덴빈, 볼라벤, 산바 등 3개의 태풍이 내습하여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도로, 하천, 어항 등 기반시설과 농어민이 땀 흘려 지은 농수산물에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원의 보상 한도가 낮아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된 농작물 재해보험은 타 시군에서는 많은 농민이 가입하였으나 우리 군 가입실적은 저조합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농가에 지급된 금액이 1326억 원입니다.
전국적으로 누적 지원내역은 9만 3839농가에 5202억 원이 재해보험에서 지원되어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농가당 약5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우리 군 농민들도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발생 시 경제적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몇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시된 32건의 지적 사항은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을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220회 제2차 정례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 군정시책과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하고,

○ 위법·부당 및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의 효율적 수행을 뒷받침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1)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 감사기간 : 2013. 11. 18. ~ 11. 28.【9일간】

3) 감사장소 : 소회의실 및 사업장 현지

4) 대상기관 :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

5) 대상사무 :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무

6) 감사실시 주체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7) 감사반 편성

감사특별위원 명단	감사보조자
○ 위원장 : ○ 위 원 : 배기홍, 김옥래, 송경석, 송우섭, 신태균, 김주식, 장세선, 김의규, 송경양, 송인숙, 최설희	• 전문위원 조철호 • 전문위원 김유철 • 전문위원 라성욱 • 직 원 이정묵 • 직 원 이혜나 • 직 원 천음미

※ 위원장 선정은 별도 의원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

8) 감사일정

월 일	감사대상기관	비 고
11.18(월)	• 기획실 • 주민복지과 • 행정과	•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 • 실과소장의 보고 및 질의 답변
11.19(화)	• 재무과 • 투자정책과 • 경제유통과	
11.20(수)	• 문화관광과 • 환경산림과 • 농업축산과	
11.21(목)	• 해양수산과 • 건설과 • 안전총괄과	
11.22(금)	• 종합민원실 • 농업기술센터 • 보건소	
11.25(월)	• 상하수도사업소 • 우주항공사업소 • 평생학습사업소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11.26(화)	• 현지확인 감사	
11.27(수)	• 현지확인 감사	
11.28(목)	• 현지확인 감사	

※ 감사일정은 회의운영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감사요령

○ 주요 감사사항

- 조직,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 주요 시책 및 업무추진 사항
-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 각종 민원처리 사항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한 사항

○ 감사방법
-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업무 등 수감자료 보고청취
- 질의 · 답변, 서류제출요구, 증인 등 출석요구
- 출석한 증인 등에 대한 증언·진술의 청취와 신문
- 문서확인과 현장확인 병행

10) 감사진행 순서

감 사 선 언	……	감사특별위원장
인 사 말 씀	……	감사특별위원장
선 서	……	피 감사기관장(실과소장)
수 감 자 료 보 고	……	피 감사기관장(실과소장)
질 의 및 답 변	……	
※ 필요시 현지확인 병행		
감 사 종 료 선 언	……	감사특별위원장

11)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 수감자료 현황보고 요구
-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감사일에 보고하도록 함.

○ 서류(수감자료)제출 요구
-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일반현황(조직, 인원, 예산, 설비 또는 시설)
  -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
  -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 2013년도 각종 조례안 등 제정·개정 및 폐지현황
  - 각종 민원처리 현황 등

12) 증인 출석요구

○ 감사대상기관의 부서장 등을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감사 실시일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함.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때 출석요구 의결)

○ 증인출석 요구 의결 후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임 부서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것으로 봄.

○ 그 밖의 추가 증인 및 일반 증인의 채택은 위원장의 책임아래 위원회에서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위임함.

13) 선서요령

○ 증인은 선서서를 낭독하고 위원장은 기립하여 선서를 받음.

○ 증인이 다수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대표자(부서장)가 선서서를 낭독하고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함.

○ 위원장은 선서 전에 선서취지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증인에게 설명하여야 함.

14)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자료요구 등은 소관 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이 기록·정리하며, 종합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특별위원장의 지휘아래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에서 취합하여 작성

○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기간·대상기관·실시경과 등 일반사항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의견 등을 포함 작성

○ 감사특별위원회는 작성한 결과보고서(안)을 위원회 의결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지적사항 처리에 관하여는 본회의 의결로 채택

15) 그 밖의 사항

○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음.

○ 본 계획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과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름.

16) 첨부서류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서식)

○ 감사장 좌석 배치도

○ 피 감사공무원 선서서

○ 증인 선서서

○ 감정인 선서서

별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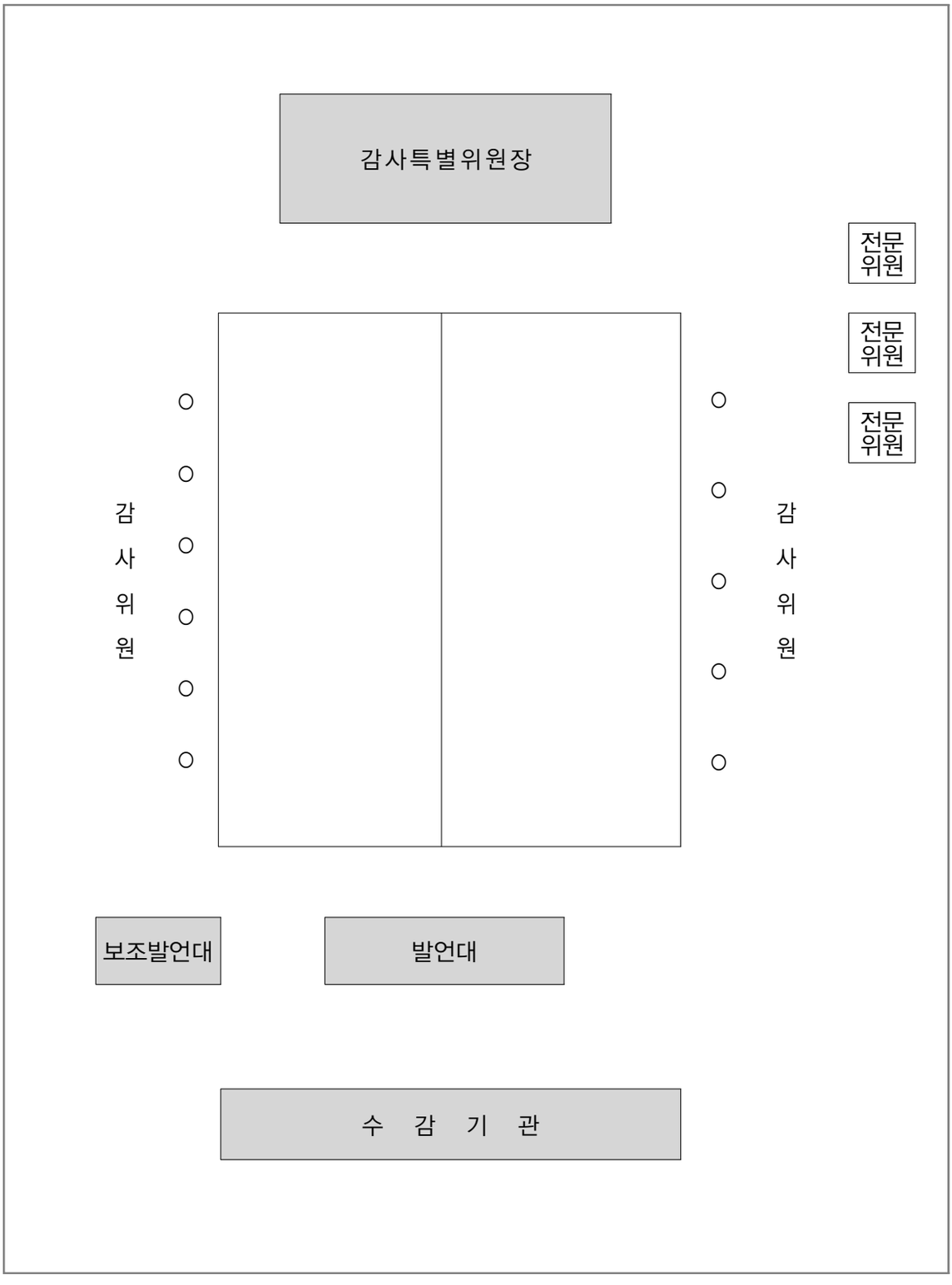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감사특별위원장 : 인

연번	실과소	제 목	지적사항	처리요구사항

별지 2

감사장 배치도(예시)



별지 3

피감사공무원 선서서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군의회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인 : (인)

별지 4

증인 선서서

선 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증 인 : (인)

별지 5

감정인 선서서

선　　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정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감　정　인 :　　(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요구 현황

- 총 14개 실과소 28건 -

기획실 - 5건

- 2013 특정감사(농림사업보조금, 수산보조금) 지적사항
- 예산 성립전 집행 세부내용
- 2013년도 읍면종합감사 세부 지적사항
- 2012년 전남도 정부합동감사 인사 관련 지적사항
- 2013 대종상단편영화제 보조금 정산내역

주민복지과 - 2건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현황 및 역할
- 거주 외국인 여성 자녀현황

행정과 - 1건

- 2013년 기관표창 현황

재무과 - 1건

- 풍양농공단지 입주업체(8개) 지방세 부과 · 징수 현황(2012~2013)

투자정책과 - 1건

- 인쇄물 홍보물 제작 현황 중 2013투자유치홍보 책자, 고흥우주해양리조트특구계획 책자, 도양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서 책자 제출

경제유통과 - 3건

-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선정농가 현황
- 친환경식품업체 인프라구축 사업(참살이) 세부 지원내여역과 지출현황 자료
- 농산물 수출업체 지원 산출근거 설명자료

문화관광과 - 1건

- 천문과학관, 발포역사체험관, 시호도, 우도 자료(내방객 수, 입장료, 유지 관리비 등)

환경산림과 - 1건

- 군유림 대부 현황

농업축산과 - 4건

-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실적 자료 제출
- 친환경농업 친환경단지 자료 제출
- 우량씨마늘지원사업 관련 일반농가 보급실적 자료
- 유자연합회 민원제기 관련 자료 제출

해양수산과 - 1건

- 새꼬막 양식 어업면허 현황

안전총괄과 - 2건

- `13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예비비 사업내역
- 과역면소재지 정비사업 준공이후 운영방안 및 유지관리방법

농업기술센터 - 2건

- 실증시험포 작목별 세외수입 현황
- 벼멸구 예비비 읍면별 집행 현황

상하수도사업소 - 1건

- 봉래면, 금산면 상수도 공급량 대비 요금이 맞지 않는 이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 3건

- 열기구 대회 세부 지출내역
- 동계전지훈련 수익 내역
- 군 취업선수 육성 관리 자료

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실과소	제 목	주요(시정)사항	비고
기 획 실	대종상 단편 영화제 개최 재검토	• 2013년 대종상 단편 영화제는 우주항공축제와 병행 개최로 인해 2012년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였음. • 그동안 두 번의 개최 상황을 고려할 때 많은 군민들이 성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 따라서 2014년 대종상 단편영화제 개최는 필요성 및 성과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 요망.	
주민복지과	긴급지원수혜 대상범위 지원확대	•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군민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법적요건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많음. • 따라서 사례관리 긴급지원 수혜 대상 범위를 적극 확대 및 안정적 지원 요망.	
〃	장애인 심부름센터 장애인 채용검토	•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 장애인 고용을 통하여 자립 지원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행정과	보조금지원 사회단체 지도감독 철저	•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지원을 받지 않고도 활동이 우수한 단체에는 보조금지원 또는 표창 등의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	
재무과	군 소유 불용차량 매각처리 소홀	• 차량매각 시 군 상징 마크 및 도색을 제대로 지우지 않은 채로 매각하여 질서위반 행위 시 군소유 차량으로 오인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되니 이에 대한 해소대책을 강구.	
재무과	군 매입 폐교 사후관리 소홀	• 군에서 매입한 5개의 폐교가 관리되지 않고 있어 미관저해가 우려되니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투자정책과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	• 우리군 투자유치 제한 여건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세수확보와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추진을 하고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적극검토.	
〃	가동중단 업체 등의 사업재개 방안 강구	• 가동중단이나 사업포기 등의 업체에 대해서는 업종변경 유도, 기술제공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	

실과소	제 목	주요(시정)사항	비고
경제유통과	고흥유통(주) 정상화 방안 강구	• 고흥유통이 본래 목적과 기능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실적 또한 매년 적자를 내고 있고 자본금 마저 잠식하고 있는 실정인 바 고흥유통을 정상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	향토산업 육성지원 보조금 관리감독 철저 (석류향토사업단)	• 석류향토산업단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사업비가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개인 관정개발이나 묘목지원 등에 지출한 사례가 있는바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비에 대해서는 석류산업 발전과 개별농가 역량강화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문화관광과	문화관련시설의 향후 운영비의 부담가중 해소방안 강구	• 덤벙문청문화관, 발포역사관, 우주천문과학관 등 각종 문화시설의 증가추세로 적자운영, 유지비 부담 등 향후 군재정에 부담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문화관광과	해창만 공원화 사업장 사후관리 방안검토	• 해창만 공원화 사업장 사후관리는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군 직영으로 운영 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바람.	
문화관광과	전승·보존이 필요한 문화재 발굴	• 인간문화재 등 전승·보존이 필요한 문화재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로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노력해주길 바람.	
환경산림과	폐수배출업소 지도감독 강화	• 돈사 및 유기질 비료공장의 악취로 인하여 주민생활 불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단속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강력한 행정조치 등 강력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개선방안 마련	• 시설비가 기름보일러 보다 많이 들뿐더러 연료비 또한 기름보일러와 비교할 때 별 차이가 없어 농가에서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농업축산과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소홀	• 단순한 장비구입 등 많은 사업기간이 필요치 않음에도 사업기간을 연말까지로 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바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한 사업기간 설정이 요구됨.	

실과소	제 목	주요(시정)사항	비고
해양수산과	민간자본보조 사업 추진 지연	•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 고밀도부표공급, 수산물가공시설, 소형저온저장고 시설사업 등 수산분야 민간자본 보조사업 공정률이 70%로 사업을 완료할 시기임에도 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함.	
〃	우리 지역 생산 개량부자의 사용 방안 마련	• 우리 군에서 생산된 개량부자가 타 시군 제품과 비교해도 품질이나 성능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음에도 우리군 제품 사용을 외면하고 있는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새꼬막 채묘시설물 수거 철저	• 우리군 새꼬막 채묘 허가건수는 56건으로 수거되지 못한 채묘시설물이 어장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채묘시설업자에 대한 수거비용부담 등 불법투기행위가 근절되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함.	
건설과	소규모지역 개발사업 선정절차 투명성 및 정보 공유 미흡	• 군발주 소규모지역 개발사업 등의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한다는 사례가 있고 해당지역 군의원 및 지역주민 대표와도 정보공유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	
안전총괄과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준공후 운영방안 강구	• 과역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비롯한 각종 공모사업 중 복합문화센터 등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시설물 완공 후 관리주체와 협약서 체결 등 내실있는 운영방안에 대한 대책 강구.	
종합민원실	빈집정비 사업 확대 및 우선순위 반영	• 빈집정비 사업은 신청 수요를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경관을 저해하는 대상부터 우선순위에 반영 바람.	
농업 기술센터	고흥쌀 품질고급화 시범사업 추진 장소선정 부적정	• 자연재배 쌀생산시범단지가 인근 경작지의 농약 유입 등 오염요인이 최대한 배제되어야 함에도 일반재배단지와 이격되지 않았던 만큼 장소선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고흥마늘 종자 보급 지연	• 초영마늘 등 고흥 씨마늘 확보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종자구입비 역외 유출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조기보급을 위한 대책을 강구	

실과소	제 목	주요(시정)사항	비고
농업 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소홀	•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62종에 284대이며, 금년 임대실적은 1,298건으로 한대 당 평균 임대건수는 4.57회, 마늘파종기의 경우 0.35회에 불과한 실정임. 농번기 일손부족해소와 고가 농기계 구입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 만큼 많은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함.	
보건소	의료기관 지도감독 강화	•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과잉진료나 불친절 및 의료기관의 불결한 장비나 시설 등으로 인해 일부 불편사례가 있음. • 지역 건강 환경조성 및 군민 불편해소를 위해 의료기관의 지도감독 강화에 노력.	
〃	출산장려금 지원 방안개선 검토	• 우리 군 출산지원 장려금은 셋째 자녀 지원액이 첫째·둘째 자녀보다 많음. • 최근 한국재정학회에서 전국 지차제 출산장려금 운영상황 분석결과 첫째 자녀는 효과가 큰 반면, 셋째 자녀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출산장려금 지원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요망.	
상하수도 사업소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잦은 도로 굴착	• 하수관 및 상수관 등의 사업추진과 관련 잦은 도로 절단과 굴착으로 인해 주민 불편 및 예산 낭비의 사례가 있으니 통합 추진 등의 대책을 강구.	
상하수도 사업소	사유지 약수터 관리 소홀	• 관내 사유지 중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고흥읍 호산 등)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수질 정보제공 등 안전대책을 강구.	
우주항공 사업소	해창만 · 오마 간척지 소유권 미정비해소	• 해창 · 오마간척지 일부 보상답 중 소유권이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고흥군으로 되어 있어 실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특단의 해소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실과소	제 목	주요(시정)사항	비고
〃	우주항공체험 연계투어	• 고흥 청소년우주체험센터 및 나로우주과학관을 방문하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우리군 우주항공체험투어와 연계방안을 강구.	
평생학습 사업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내실 있는 운영 지원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상 수요가 있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으므로 일률적인 예산편성보다는 3개 지역실정과 프로그램 수요에 맞게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	
문화체육 시설사업소	생활체육 단체 및 지도자의 종목별 편중지원	• 생활체육 단체 지원이나 지도자 운영에 있어서 특정분야(축구, 에어로빅) 에 편중 지원되고 있는 바, 성과 및 군민 수요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	
〃	고흥 머드림픽 및 국제열기구 대회 개최여부 신중한 판단	• 고흥 머드림픽 및 국제열기구대회는 선수선발 부담과 애로 및 대회개최 효과 미흡 등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바 획기적인 개선 방안이 없다면 중단 여부도 신중히 검토 요망.	

결 과 보 고 서

2013. 12. 17(화) 10:00
제22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우섭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 11월 18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에 걸쳐 2013년도에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주요 업무와 각종 시책사업 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219회 고흥군의회 제1차 본회의 시 의결된 감사계획에 의거 본회의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관련 수감자료 및 증빙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 현지 확인을 병행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34건이 지적되었으며, 이 중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기가정 사례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은 지역사회 공공, 민간자원이 관리 및 지원 체계를 구축, 위기가정에 대하여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기준, 우리 군 사례관리 대상자는 95가구이며, 지원대상 유형은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조손가정 등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1가구당 최고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95가구는 독거노인의 경우, 수급자를 제외한 우리 군 독거노인 7698가구의 1.23%에 불과한 실정이며, 생활지원비 또한 기초생활 조차도 유지할 수도 없는 수준입니다.
위기가정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자치단체의 책무이며, 군민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사실상 어려움에 처해있는 위기의 가정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례관리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이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꼬막 채묘시설물 수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 말 우리 군 새꼬막 채묘허가 건수는 56건에 허가면적은 112㏊로 허가지역은 도양읍 등 6개 읍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새꼬막 채묘시설물들이 사용 후에는 반드시 수거되어야 함에도 아무렇게나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투기함으로써 어장에 큰 피해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켜 쓰레기 수거비용 또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채묘시설업자에 대한 수거비용 부담 방안 등 불법 투기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 출산지원 장려금은 둘째 자녀는 1년에 120만 원, 셋째 자녀는 2년에 4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생아 양육지원금으로 신생아 전체에 대하여 30만 원씩을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첫째보다 둘째가, 둘째보다 셋째가 많이 지원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재정학회에서는 전국지자체 출산장려금 운영 사항을 분석한 결과 첫째 자녀가 제일 효과가 큰 반면 셋째 자녀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출산장려금 지원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 지원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면 소재지 종합정비 등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역량 강화 및 소득기반 확충을 통한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써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사업은 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3건, 권역 단위 종합정비 사업이 4건으로 총 7건입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장마다 복합 문화센터와 기반시설물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의 특성상 사업 선정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도 있겠지만 문제는 사업 준공 후 이들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지가 관건이며, 해당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정상적인 관리가 되지 못할 경우 이는 장기적으로 군 재정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진부서에서는 관리주체에 대한 역량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가의 영농편의 제공과 고가 농기계 구입부담을 해소할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임대장비는 62종에 28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3년 임대실적을 보면 1289건으로 농기계 한 대당 평균 임대건수는 4.57회, 마늘파종기의 경우 0.35회로써 구입하여 한 번도 임대실적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기종별 임대빈도 수는 최대가 133회, 최저는 0.35회로 기종별 편차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기종선택 시 지역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보다 많은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이용률 제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시된 34건의 지적사항은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HEUNG COUNTY COUNCIL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 고흥군의회



의정백서 議政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의정백서

議政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議

제3장

제3절 행정사무조사

1. 제209회 임시회 2011년도 군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2. 제213회 임시회 2012년도 읍면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3. 제219회 임시회 2012년도 군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4. 제223회 임시회 2013년도 군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GOHEUNG COUNTY COUNCIL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 고흥군의회

의정백서 議政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제3절 행정사무조사

1. 제20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2011년도 군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가. 2011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 2011년도 군에서 발주 시행한 시설공사 및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견실시공 여부 등을 조사하여 시정 개선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과 군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1)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2) 추진방침

○ 부실시공 등 하자발생 사업장 중점적으로 확인조사
○ 모범사례는 권장하고 문제점은 시정 개선하여 재발방지 대책 강구

3) 추진계획

○ 기　　간 : 2011. 10. 24. ~ 10. 30.【5일간】
※ 세부 조사일정 별지 참조
○ 대상사업 : 2011년도 군 발주 시설공사 및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사업비 1천만원 이상인 사업
○ 조 사 반 : 의원 12명(수행공무원 4명)
○ 조사방법 : 서류 및 자료 사전검토, 대상사업 중 표본선정 현지확인조사

4) 조사반 편성

○ 편성인원 : 2개반 16명(의원 12, 수행공무원 4)

구 분	의 원		수 행 공무원	조사지역
	반장	반 원		
1반	장세선	김주식, 김의규, 송경양, 송인숙	송여종 김선홍	고흥, 점암, 영남, 과역 남양, 동강, 대서, 두원
2반	송우섭	배기홍, 김옥래, 송경석, 신태균, 최설희	김영한 박상욱	도양, 풍양, 도덕, 금산 도화, 포두, 봉래, 동일

※ 의장님은 반별 구분없이 수시 참여

5) 협조사항

○ 2011년도 군 발주사업 자료제출 : 2011. 10. 9.까지

○ 해당 실과소장은 조사일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배치하여 사업장 안내 등 현지 확인에 차질없도록 조치

○ 현지확인 운행 차량 및 선박

– 승합차량 1대(운전원 포함) : 재무과
– 화물트럭(임차), 코아채취기(종사원 포함) : 건설과
– 어업지도선 : 수산과

6) 행정사무조사 일정

월 일	반별	조사지역	대상 실과소
10. 17.(수)	1반	오전 : 봉래 오후 : 동일	
	2반	오전 : 대서 오후 : 동강	
10. 18.(목)	1반	오전 : 도화 오후 : 포두	
	2반	오전 : 남양 오후 : 과역	
10. 19.(금)	자 료 검 토		
10. 22.(월)	1반	오전 : 풍양 오후 : 도덕	
	2반	오전 : 점암 오후 : 영남	
10. 23.(화)	1반	오전 : 금산 오후 : 도양	
	2반	오전 : 두원 오후 : 고흥	
10. 24. ~ 10. 25	자료정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위 일정은 의사운영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2011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 지적사항 목록

일련번호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대상실과
1	풍양 송정주차장 조성 공사	○ 위 치 : 풍양면 송정리 ○ 사업량 : 주차장 1,806㎡ 화장실 1동 ○ 사업비 : 243백만원 • 도급액 : 114백만원 • 관급액 : 129백만원 ○ 공사기간 • 착공일 : '11.10.11 • 준공일 : '11.12.29 ○ 도급자 • 회사명 : 대해건설 • 대표자 : 류승석	▶ 계획수립 소홀 ◀ ○ 등산객 등의 편의를 위한 주차시설로 등산 진입로와 멀리 떨어져 위치 선정의 부적정함 ○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주차 안내표지판 미설치	○ 앞으로는 주차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위치를 선정할 것 ○ 주차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것	문화관광과
2	오마간척지 테마공원 관광인프라 조성사업	○ 위 치 : 도덕면 오마리 ○ 사업량 : 조형물 1식 편의시설 1식 포장공 572㎡ ○ 사업비 : 1,660백만원 • 도급액 : 1,660백만원 • 관급액 : – ○ 공사기간 • 착공일 : '11.4.22 • 준공일 : '11.12.21 ○ 도급자 • 회사명 : 영진산업개발(주) • 대표자 : 김영	▶ 계획수립 소홀 ◀ ○ 한센인의 오마간척의 한을 추모하기 위한 테마공원으로 공원내 안내판 미설치됨 (방조제에 안내판 설치됨) ○ 향후 관광인프라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요구됨	○ 공원내 오마간척의 역사를 담은 안내판을 추가 설치할 것 ○ 관광인프라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을 수립하여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로 예산낭비를 최소화 할 것	문화관광과
3	나무은행 조성사업	○ 위 치 : 과역면 신곡리 ○ 사업량 : 572주 ○ 사업비 : 72백만원 • 도급액 : 72백만원 • 관급액 : – ○ 공사기간 • 착공일 : '11.10.26 • 준공일 : '11.12.6 ○ 도급자 • 회사명 : 산림조합 • 대표자 : 송영현	▶ 계획수립 소홀 ◀ ○ 나무은행 조성단지 진입로가 너무 협소하여 나무 반입·반출이 불편하고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금후 진입로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계획 결과보고 할 것	환경산림과

일련번호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대상 실과
4	송정마을 안길정비	◦ 위 치 : 남양면 장담리 ◦ 사업량 : L형 옹벽 31m ◦ 사업비 : 24백만원 · 도급액 : 20백만원 · 관급액 : 4백만원 ◦ 공사기간 · 착공일 : '11.9.16 · 준공일 : '11.11.9 ◦ 도급자 · 회사명 : 광진건설(주) · 대표자 : 조재상	▶ **계획수립 소홀** ◀ ○ 마을과 마을간 연결도로 L형 옹벽 높이가 H=2.5m 이상이나 안전 시설이 되지 않아 사고발생 우려	○ 안전시설을 설치 하고 보고할 것	건 설 과
5	동강 운동 농어촌도로 309호선 확포장	◦ 위 치 : 동강면 한천리 ◦ 사업량 : L=1.097㎞ B=5~6m ◦ 사업비 : 184백만원 · 도급액 : 114백만원 · 관급액 : 70백만원 ◦ 공사기간 · 착공일 : '11.2.25 · 준공일 : '12.12.30 ◦ 도급자 · 회사명 : 보아건설(주) · 대표자 : 신숙희	▶ **계획수립 소홀** ◀ ○ 도로 확포장 구간 L=50m 구간의 밭에 강우시 흙탕물이 흘러내려 비산먼지 발생 및 소유자 민원 발생	○ 밭(L=50m) 구간에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고 결과보고 할 것	건 설 과
6	월등 배수로정비	◦ 위 치 : 대서면 남정리 ◦ 사업량 : JU형개거 69m ◦ 사업비 : 28백만원 · 도급액 : 20백만원 · 관급액 : 8백만원 ◦ 공사기간 · 착공일 : '11.7.18 · 준공일 : '11.8.16 ◦ 도급자 · 회사명 : 해양산업개발(주) · 대표자 : 송중석	▶ **계획수립 소홀** ◀ ○ 농로 확포장 구간내 전주(4본)가 미이설되어 이용에 불편	○ 전주 이설 조치 하고 보고할 것	건 설 과

일련번호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대상실과
7	연소항 사설공사	◦ 위 치 : 금산면 어전리 ◦ 사업량 · 당초 : 방파제 89.5m TTP 27게 · 변경 : 방파제 89.5m TTP 167게 ⇨ TTP 140개 증감 ◦ 사업비 : 1,024백만원 · 도급액 : 1,162백만원 · 관급액 : 137백만원 ◦ 공사기간 · 당초 : '11.6.20 ~ '12.1.30 · 변경 : '11.6.20 ~ '12.1.30 ◦ 도급자 · 회사명 : 세움건설 · 대표자 : 김현진	▶ **계획수립 소홀** ◀ ○ TTP 무게가 10톤/개당은 초대형 태풍에 유실 우려가 있음	○ 앞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초대형 태풍이 예상되므로 TTP 무게를 상향조정 설계에 반영토록 할 것	해양수산과
8	남성항 사설공사	◦ 위 치 : 포두면 남성리 ◦ 사업량 · 당초 : 방파제 79.5m · 변경 : 방파제 89.5m TTP 289개 ⇨ 증감 : TTP 289개 ◦ 사업비 · 당초 : 1,000백만원 · 변경 : 1,154백만원 ⇨ 증감 : 154백만원 ◦ 공사기간 · 착공일 : '11.6.20~'12.12.30 · 준공일 : '11.6.20~'12.1.30 ◦ 도급자 · 회사명 : 오광건설 · 대표자 : 강수정	▶ **계획수립 소홀** ◀ ○ TTP 무게 5톤/개당은 초대형 태풍에 유실 우려가 있음	○ 앞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초대형 태풍이 예상되므로 TTP 무게를 상향조정 설계에 반영토록 할 것	해양수산과

일련번호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대상실과
9	백련소 하천정비	◦ 위 치 : 고흥읍 등암리 ◦ 사업량 : 배수공, 호안공 L=218m ◦ 사업비 : 983백만원 · 도급액 : 520백만원 · 관급액 : 463백만원 ◦ 공사기간 · 착공일 : '11.5.31 · 준공일 : '11.11.30 ◦ 도급자 · 회사명 : (주)송암건설 · 대표자 : 박재현	▶ 시공 소홀 ◀ ○ 호안공사를 시행하면서 제방과 접한 도로노면수가 강우시 노견에 고여 주민 및 차량통행 불편과 노견 유실될 우려가 있음	○ 노면수가 노견에 고이지 않도록 하천으로 배수 처리하고 결과보고 할 것	방재과
10	상오마을 호안 정비공사	◦ 위 치 : 포두면 오취리 ◦ 사업량 : 전석 L=418m ◦ 사업비 : 596백만원 · 도급액 : 536백만원 · 관급액 : 59백만원 ◦ 공사기간 · 착공일 : '11.5.3 · 준공일 : '11.12.2 ◦ 도급자 · 회사명 : 자일토건 · 대표자 : 김현호	▶ 시공 소홀 ◀ ○ 거푸집 고정핀이 제거되지 않아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음 ○ 해수와 접한 배수 구조물에 피복 파형 강관을 시공함은 부적절함	○ 거푸집 고정핀을 제거 할 것 ○ 해수와 접한 구조물은 염분에 강한 콘크리트 압력관 등으로 설계에 반영할 것	해양수산과
11	대서 농어촌 도로 303호선 확포장 공사	◦ 위 치 : 대서면 금마리 ◦ 사업량 : L=603m B=3~5m ◦ 사업비 : 67백만원 · 도급액 : 27백만원 · 관급액 : 40백만원 ◦ 공사기간 · 착공일 : '11.10.28 · 준공일 : '12.1.9 ◦ 도급자 · 회사명 : 창성종합건설(주) · 대표자 : 이현욱	▶ 시공 소홀 ◀ ○ 공사시행 구간과 접한 도로 횡배수관이 부실하게 시공되어 이용 불편 및 안전사고 우려	○ 횡배수관 L=6m를 완벽 설치하고 결과보고 할 것	건설과

일련번호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대상실과
12	2011년 두원 학곡지구 임도 개설공사	○ 위 치 : 두원면 학림리 ○ 사업량 : L=820m ○ 사업비 : 93백만원 • 도급액 : 69백만원 • 관급액 : 24백만원 ○ 공사기간 • 착공일 : '11.7.26 • 준공일 : '11.12.18 ○ 도급자 • 회사명 : 고흥군산림조합 • 대표자 : 송영현	▶ 시공 소홀 ◀ ○ 임도개설 성토부(L=60m)에 줄떼가 식재되지 않아 강우시 법면 유지가 어려움	○ 성토부에 줄떼 시공하고 결과보고 할 것	환경산림과
13	익금 해수욕장 해안 경관 조성	○ 위 치 : 금산면 어전리 ○ 사업량 : 암거 L=94m 조경공사 1식 포장 L=1,340m 건축 210㎡ ○ 사업비 : 739백만원 • 도급액 : 526백만원 • 관급액 : 213백만원 ○ 공사기간 • 착공일 : '11.6.29 • 준공일 : '11.12.20 ○ 도급자 • 회사명 : 일국종합(주) • 대표자 : 최진영	▶ 하자보수 소홀 ◀ ○ 태풍 피해 시설물(감시전망대, 하수처리장 휀스 등) 미복구 ○ 주변 환경정비 불량	○ 태풍 피해 시설물을 조기 복구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할 것	건설과
14	해창만 간척지 공원화 사업	○ 위 치 : 포두면 송산리 ○ 사업량 : 조경공사 1식 건축공사 1식 ○ 사업비 : 1,795백만원 • 도급액 : 1,186백만원 • 관급액 : 609백만원 ○ 공사기간 • 착공일 : '11.4.19 • 준공일 : '12.2.27 ○ 도급자 • 회사명 : 임광종합건설 • 대표자 : 김희림	▶ 하자보수 소홀 ◀ ○ 세면대(스테인레스)에 녹이 발생한 상태임 ○ 세면대 배관이 직관으로 설치되지 않아 막힘현상의 우려가 있음 ○ 부지내 박석의 수평이 맞지 않음 ○ 국비 지원 계획의 차질로 공사 장기화가 우려됨	○ 해안가에 위치함으로 녹이 발생하지 않는 재질로 교체할 것 ○ 세면대 배관을 직관으로 연결할 것 ○ 박석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 당초 국비 지원 계획에 따라 국비 확보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	문화관광과

일련번호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대상실과
15	선정~ 잠두간 도로포장	○ 위 치 : 남양면 월정리 ○ 사업량 : 포장 215m ○ 사업비 : 29백만원 • 도급액 : 12백만원 • 관급액 : 17백만원 ○ 공사기간 • 착공일 : '11.3.3 • 준공일 : '11.6.2 ○ 도급자 • 회사명 : 남양건설(주) • 대표자 : 박정순	▶ **하자보수 소홀** ◀ ○ 도로측구 우수가 범람하여 노면을 월류 노견 L=7m가 유실되었음	○ 즉시 하자보수 하고 보고할 것	건설과
16	오수 농로포장	○ 위 치 : 동강면 오월리 ○ 사업량 : 포장 242m ○ 사업비 : 24백만원 • 도급액 : 11백만원 • 관급액 : 13백만원 ○ 공사기간 • 착공일 : '11.10.31 • 준공일 : '11.11.23 ○ 도급자 • 회사명 : 광림개발(주) • 대표자 : 정영태	▶ **하자보수 소홀** ◀ ○ 콘크리트 포장(3개소) 도로가 부분적으로 파손 및 균열되어 하자가 발생	○ 파손 부분은 캇트하여 기존 콘크리트 제거하고 재포장 후 보고할 것	건설과
17	풍양 한동지구 유자가공 공장시설	○ 위 치 : 풍양면 한동리 ○ 사업량 : 330㎡ ○ 사업비 : 406백만원 • 도급액 : 164백만원 • 관급액 : 242백만원 ○ 공사기간 • 착공일 : '11.10.27 • 준공일 : '12.3.25 ○ 도급자 • 회사명 : (주)꿀벌토건 • 대표자 : 이혁	▶ **공사감독 소홀** ◀ ○ 공사감독 소홀로 적기 가동 지연 – 유자가 착즙기 통과시 가지부분과 꼭지부분이 정확히 통과하지 않음 – 착즙기에서 과피가 파손됨 – 제핵기(씨 제거) 기능이 떨어져 씨가 완전 제거되지 않음	○ 사업 추진경위서 제출 요구 ○ 시운전의 문제점을 즉시 보완 및 개선하여 적기에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방재과
18	국도4차로 조형간판 제작설치 공사	○ 위 치 : 점암면 ○ 사업량 : 군정홍보 조형간판 1식/2면 ○ 사업비 : 89백만원 • 도급액 : 89백만원 • 관급액 : – ○ 공사기간 • 착공일 : '11.3.24 • 준공일 : '11.5.22 ○ 도급자 • 회사명 : 티지이엔지(주) • 대표자 : 박근태	▶ **공사감독 소홀** ◀ ○ 군정 홍보물인 만큼 가시권에 잡초가 무성하여 일부분이 보이지 않음	○ 즉시 잡초 제거 하고 결과보고 할 것	문화관광과

결 과 보 고 서

2012. 10. 31(수) 14:00
제20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업건설위원장 송경양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209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한 2011년도 군 발주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확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지확인기간은 2012년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5일간이었으며, 현지확인 조사반은 의원 12명과 공무원 6명을 포함하여 18명으로 편성하여 각종 시설공사의 계획 타당성과 예산집행상황, 부실시공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대상사업장 선정은 2011년에 고흥군에서 발주 시행한 사업 중 도급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장 611개소와 민간자본보조사업 500개소 등 총 1111개소였으나, 제한된 의사일정으로 인해 전수 확인조사를 하지 못하고 대표성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과별로 해당 읍면별 2~3개 사업장을 선정 총 48개소를 추출하여 사전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한 결과 1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과 사전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부족 및 주민여론 수렴 미흡, 공사감독 및 사후관리 소홀 등이 주요 원인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번 현지 확인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 1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시 계획 수립을 소홀히 한 사례로써 풍양면 송정주차장 조성공사는 등산객 편의를 위하여 진입로와 가까운 곳에 시설하여야 하나 멀리 떨어져 있고, 주차안내 표지판이 미설치 되었으며, 오마간척지 테마공원 관광인프라 조성사업은 한센인 오마 간척의 한을 추모하기 위한 테마공원이므로 공원 내 그 내용을 담은 안내판이 미설치 된 점은 매우 아쉬웠습니다.

나무은행 조성사업은 조성단지의 진입로가 매우 협소하게 포장되어 크고 작은 나무의 반입, 반출이 원활하지 못하고 단지의 유지관리가 어려우므로 조기에 확포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정마을 안길정비, 동강 운동 농어촌도로 309호선 확포장공사, 월등 배수로 정비 등은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농로 확포장 공사 구간에 전주 4본이 미이설되어 이용이 불편하므로 즉시 설치하거나 이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소항 및 남성항 시설공사는 TTP 무게를 5~10톤으로 계획하여 시공하였으나 앞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초대형 태풍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 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공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서 농어촌도로 303호선 확포장 공사는 공사 시행구간과 접한 도로 횡배수관이 견실 시공되지 않아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즉시 시정하여야 할 것이며, 2011년 두원 학곡지구 임도개설공사는 성토부 60m에 줄떼가 시공되지 않아 강우 시 법면 유지가 어려우므로 바로 줄떼를 식재하여 사전 하자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자보수 및 감독 소홀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창만 간척지 공원사업은 세면대에 녹이 발생한 상태이고 세면대 배관이 직선으로 설치되지 않았으며, 부지 내 박석이 수평으로 설치되지 않아 강우 시 물고임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안가에 위치한 시설물이므로 녹이 발생하지 않는 재질로 교체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풍양 한동지구 유자가공시설은 1차 시운전 결과 유자가 착즙기 통과 시 가지부분과 꼭지부분이 정확히 통과되지 않아 과피가 파손되고 제핵기 기능이 떨어져 씨가 완전 제거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즉시 보완 및 개선하여 유자 수확기에 맞추어 적기에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렸던 부분은 포괄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별도의 현지확인조사 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현지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1년도 군 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보완조치 후 서면으로 결과 보고하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21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2012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가. 2012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2012년도 읍면에서 발주 시행한 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견실시공 여부 등을 확인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자 함.

1)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 고흥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2) 추진방침

○ 민원발생 사업장은 최우선하여 현지확인 실시
○ 부실시공 등 하자발생 사업장 중점적으로 확인조사
○ 모범사례는 권장하고 문제점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재발방지 대책 강구

3) 추진계획

○ 기　　간 : 2013. 3. 12. ~ 3. 18.〈5일간〉
  • 읍면별 조사일정 : 별지참조
○ 조사대상 : 16개 읍면(2012년 발주 시설공사 중 사업비 1천만 원 이상인 사업)
○ 조 사 반 : 2개 반 18명(의원 12, 수행공무원 6)
○ 주요내용
  • 2012년도 읍면 발주사업 추진현황 보고청취
○ **보 고 자** : 읍면장 – 배석 : 담당급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조사

○ 조사반 편성

구 분	의 원		수 행 공무원	대상읍면
	반장	반 원		
계		9명	5명	16읍면
1반	최설희	배기홍, 김옥래, 송경석, 송우섭, 신태균의원	나성욱 김선홍 송선종	고흥, 점암, 영남, 과역 남양, 동강, 대서, 두원
2반	송인숙	김주식, 장세선, 김의규, 송경양의원	김유철 송유석 김중일	도양, 풍양, 도덕, 금산 도화, 포두, 봉래, 동일

※ 의장님은 반별 구분없이 수시 확인

4) 협조사항

○ 보고장소 마련 : 읍면 회의실(배치도 별지 참조)

○ 2012년도 읍면 발주사업 추진현황 보고자료 비치(사업조서도 함께 비치)

○ 사업장별 관계서류(설계도서 등) 사전준비

○ 해당 읍면장은 조사일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배치하여 사업장 안내 등 현지확인에 차질 없도록 조치

5) 행정사무조사 일정

구 분 / 월 일	조 사 읍 면			
	1반		2반	
	오전	오후	오전	오후
03. 12(화)	대서면	동강면	봉래면	동일면
03. 13(수)	남양면	과역면	도화면	포두면
03. 14(목)	점암면	영남면	풍양면	도덕면
03. 15(금)	두원면	고흥읍	금산면	도양읍
03. 18(월)	자료정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위 일정은 각 반별 활동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2012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 지적사항 목록

(단위 : 천원)

일련번호	위치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지적사항	처리요구사항	구분
	읍면	리						
1	고흥	등암	신전 갓점 배수로 시설공사	개거 L=62m B=0.8 H=0.8	17,773	▶ 시공 소홀 ◀ ○ 배수로 뒷채움 되메우기 미 시공으로 인한 기존 농로 붕괴 위험 및 각종 쓰레기 산재로 미관 저해	○ 산재쓰레기 제거 및 구조물 되메우기 시공 후 결과 보고	보완
2	포두	길두	포두 봉덕 감당골 농로포장공사	L=110m B=3.5m	9,677	▶ 시공 소홀 ◀ ○ 농로포장 시 일정한 간격으로 줄눈을 넣어 온도변화에 따른 균열예방 조치가 필요함에도 이를 시공치 않아 향후 균열 발생 우려	○ 콘크리트 포장 표면 커팅하고 결과보고 할 것	보완
3	봉래	외초	봉래 염포 배수로 정비공사	전석 (L=60m)	19,645	▶ 사업계획 소홀 ◀ ○ 사업계획 수립시 당해 사업장 별로 완공 위주로 사업계획 수립하여야 하나 배수로 연접 법면은 미정비	○ 앞으로 시행지구 사업비를 사전 판단하여 잔여 사업량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완공 위주로 시행할 것	시정

(단위 : 천원)

일련번호	위치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지적사항	처리요구사항	구분
	읍면	리						
4	동강	한천	택촌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공 L=194m 포장공 L=20m	19,672	▶ 시공 소홀 ◀ ○ 배수공 말단부에 기존 구조물 연결 미흡으로 미관 저해 ○ BF관 연결줄눈 시공 미흡	○ 배수로 말단부 마무리 시공 및 BF관 줄눈시공 후 결과 보고	보완
5	대서	남정	고정 농로포장 공사	포장공 L=288m	19,579	▶ 시공 소홀 ◀ ○ 포장 완료 후 노견 되메우기 미실시	○ 노견 되메우기를 실시한 후 결과 보고	보완
6	두원	용반	금성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86m	19,654	▶ 조사설계 소홀 ◀ ○ 배수로 낙차공 측벽이 유속에 의한 붕괴 우려	○ 낙차공 말단부 측벽 보완 시공 후 결과보고	보완
7	두원	신송	동신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128m	14,860	▶ 시공 소홀 ◀ ○ BF관 연결줄눈 시공 미흡	○ 줄눈시공 후 결과보고	보완

결 과 보 고 서

2013. 3. 19(화) 10:00
제21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최설희 의원입니다.
제213회 임시회 회기 중 3월 12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던 2012년도 읍면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확인반은 의원 12명과 공무원 4명을 포함 16명을 2개 반으로 편성 운영하였으며, 총 대상사업장은 16개 읍·면 489개소였으나 의사일정이 제한된 관계로 전 사업장을 확인하지 못하고 사업규모, 공종 등을 감안하여 주민 이용도가 높은 사업장 등 39개소를 선정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확인방법으로는 계약 및 설계도서 등 사업전반에 대한 관련서류 검토와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장 선정, 공사 시행시기의 적정성,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및 조사설계의 합리성 여부, 시공상태 등을 확인한 결과 총 7건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분석결과 조사설계 소홀, 공사시공 소홀 등입니다.
그동안 부실공사 추방에 대한 인식전환과 명예감독관 운영 등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과거와는 달리 견실시공이 정착되고 있음은 매우 뜻깊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분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설계 및 사업계획 수립을 소홀히 한 사례입니다.
두원 금성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는 인접 낙차공 측벽이 부분 유실되어 조사설계 시 포함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그대로 방치하여 농로포장 밑면이 세굴되어 있으며, 두 번째로 시공을 소홀히 한 사례입니다.

동강 택촌 배수로 정비공사는 수로관을 시공한 후 배수로 말단부를 기존 개거와 연결하여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마무리에 힘써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하였고 대서 고정 농로포장공사는 콘크리트 포장이 완료되면 노견 부분에 되메우기를 하여 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하는 등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은 유형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보고드린 것으로 세부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현지확인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현지확인에서는 주민 명예감독관 운영과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매년 견실시공이 정착되고 향상되어 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공무원은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공복으로써 소명의식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된 7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제21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2012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가. 2012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2012년도 군에서 발주 시행한 시설공사 및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견실시공 및 보조금 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하여 시정 개선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과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방침

○ 부실시공 등 하자발생 사업장 중점적으로 확인조사
○ 모범사례는 권장하고 문제점은 시정 개선하여 재발방지 대책 강구

2) 추진계획

○ 조사기간 : 2013. 10. 15. ~ 10. 24.【8일간】
※ 세부 조사일정 별지 참조
○ 대상사업 : 2012년도 군 발주 시설공사 및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사업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
○ 조 사 반 : 의원 12명(수행공무원 6명)
○ 조사방법 : 서류 및 자료 사전검토, 대상사업 중 표본선정 현지확인조사

3) 조사반 편성

○ 편성인원 : 2개반 18명(의원 12, 수행공무원 6)

구 분	의 원		수 행 공무원	조사지역
	반장	반 원		
1반	**김옥래**	배기홍, 송경석, 송우섭, 신태균, 최설희	김유철 송유석 김중일	고흥, 점암, 영남, 과역 남양, 동강, 대서, 두원
2반	**김주식**	장세선, 김의규, 송경양, 송인숙	라성욱 김선홍 송선종	도양, 풍양, 도덕, 금산 도화, 포두, 봉래, 동일

※ 의장님은 반별 구분없이 수시 참여

4) 협조사항

○ 조사대상 사업조서 제출 : 2013. 10. 7.까지(실과소)
○ 해당 실과소장은 조사일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배치하여 사업장 안내 등 현지 확인에 차질없도록 조치
○ 현지확인 운행 차량 및 선박
○ 승합차량 1대(운전원 포함) : 재무과
○ 화물트럭(임차), 코아채취기(종사원 포함) : 건설과
○ 어업지도선 : 해양수산과

5) 행정사무조사 일정

월 일	반별	조사지역	대상 실과소
10. 15.(화)	1반	대서, 동강	
	2반	봉래, 동일	
10. 16.(수)	1반	남양	
	2반	포두	
10. 17.(금)	1반	과역	
	2반	도화	
10. 18.(금)	1반	점암	
	2반	풍양	
10. 21.(월)	1반	영남	
	2반	도덕	
10. 22.(화)	1반	고흥	
	2반	도양	
10. 23.(수)	1반	두원	
	2반	금산	
10. 24.(목)	자료정리		

※ 조사반별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2012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 지적사항 목록

일련번호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대상실과
1	수덕 저류지내 생활체육 야구장 조성공사	○ 위 치 : 고흥읍 수덕리 ○ 사업량 : L=3,020㎡ ○ 사업비 : 90백만원 • 도급액 : 70백만원 • 관급액 : 20백만원 ○ 공사기간 • 착공일 : 2012. 10. 24 • 준공일 : 2013. 5. 17 ○ 도급자 • 회사명 : 삼복토건(주) • 대표자 : 성계수	▶ 시설물유지관리 미흡 ◀ ○ 덕아웃(컨테이너) 쓰레기 방치 및 바닥 훼손 등 전반적인 시설 유지관리 소홀. ○ 다목적 계단식 법면에 잡초가 무성하여 경관저해 및 이용에 지장 초래.	○ 덕아웃 등 주변정리 및 다목적 계단식 법면의 잡초제거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	문화체육 시설 사업소 안전 총괄과
2	마치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 위 치 : 고흥읍 서문리 ○ 사업량 : 공원조성 1식 ○ 사업비 : 986백만원 • 도급액 : 236백만원 • 관급액 : 751백만원 ○ 공사기간 • 착공일 : 2011. 12. 9 • 준공일 : 2013. 4. 20 ○ 도급자 • 회사명 : (주)금강건설 • 대표자 : 박미경	▶ 시설물유지관리 미흡 ◀ ○ 계단 난관 조잡시공 등 전반적으로 공사감독 소홀.	○ 앞으로는 조잡시공이 없도록 공사관리감독 철저.	건설과
3	도양 비봉 소하천정비 사업	○ 위 치 : 도양읍 용정리 ○ 사업량 : 옹벽블록 693㎡, 전석쌓기 341㎡, 아스콘포장2,188㎡ ○ 사업비 : 606백만원 • 도급액 : 427백만원 • 관급액 : 179백만원 ○ 공사기간 • 착공일 : 2012. 6. 11 • 준공일 : 2012. 12. 20 ○ 도급자 • 회사명 : 시원건설(주) • 대표자 : 장순옥	▶ 시설물유지관리 미흡 ◀ ○ 녹동천 생태자연 정화시설지구에 갈대 등 각종 풀들이 무성하게 우거지고 야광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전락되어 대책강구 ○ 도로 진 · 출입로 입구에 스틸그레이팅 접속부의 콘크리트 타설 조잡시공	○ 무성한 정화갈대를 수연, 연꽃으로 대체 시공 등 대책을 강구하고 ○ 산책로 및 휴식 공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위해 보안등 설치필요 ○ 접속 콘크리트 보완시공	안전 총괄과
4	도양 장예 부잔교 시설공사	○ 위 치 : 도양읍 장계리 ○ 사업량 : 부잔교 및도교 1개소 ○ 사업비 : 91백만원 • 도급액 : 91백만원 • 관급액 : ○ 공사기간 • 착공일 : 2012. 6. 18 • 준공일 : 2012. 11. 15 ○ 도급자 • 회사명 : ㈜씨앰디 • 대표자 : 안원균	▶ 시설물유지관리 미흡 ◀ ○ 입출항시 어선 접안이 용이하고 파고가 없는 내항에 설치함에도 ○ 주민들의 요구에 외항으로 설치하여 부잔교 이용자들이 이용실적이 저조함.	○ 기설치한 시설물이 다수가 이용되도록 대책 강구	해양 수산과

일련번호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대상 실과
5	풍양 고읍천 태풍 무이파 피해복구	○ 위 치 : 풍양면 율치리 ○ 사업량 : 전석공 52m, 하상보호공 63㎡ ○ 사업비 : 51백만원 • 도급액 : 42백만원 • 관급액 : 9백만원 ○ 공사기간 • 착공일 : 2012. 2. 13 • 준공일 : 2012. 4. 12 ○ 도급자 • 회사명 : (주)대동건설 • 대표자 : 장대성	▶ 시공 소홀 ◀ ○ 고읍천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시행하면서 전석쌓기 54m에 대한 틈새 고임돌 시공되어 미관저해.	○ 앞으로는 전석 각모서리가 일치되도록 시공요함.	안전 총괄과
6	풍양 천등산 2지구 구조개량 공사	○ 위 치 : 풍양면 율치리 ○ 사업량 : 500m ○ 사업비 : 68백만원 • 도급액 : 57백만원 • 관급액 : 11백만원 ○ 공사기간 • 착공일 : 2012. 10. 16 • 준공일 : 2012. 11. 28 ○ 도급자 • 회사명 : 고흥군산림조합 • 대표자 : 송영현	▶ 시공 소홀 ◀ ○ 임도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시공하면서 노면수 처리에 대한 ㄷ형강 말단부 시공소홀	○ 노면수배수 ㄷ형강 말단부를 경사 사면과 일치토록 보강 시공.	환경 산림과
7	도덕 고흥만 물양장 접안시설 공사	○ 위 치 : 도덕면 용동리 ○ 사업량 : 접안시설 L=40m ○ 사업비 : 184백만원 • 도급액 : 164백만원 • 관급액 : 20백만원 ○ 공사기간 • 착공일 : 2012. 3. 2 • 준공일 : 2012. 5. 30 ○ 도급자 • 회사명 : 금양종합개발(주) • 대표자 : 김공진	▶ 시설물유지관리 미흡 ◀ ○ 물양장 확장구간에 포승줄로 설치되어 안전시설 미비.	○ 차막이(카스토퍼)로 시설하고 추락방지 표지판 설치.	해양 수산과
8	금산 연소항 시설공사	○ 위 치 : 금산면 어전리 ○ 사업량 : TTP 766개, 포장 L=58m ○ 사업비 : 1,090백만원 • 도급액 : 806백만원 • 관급액 : 284백만원 ○ 공사기간 • 착공일 : 2012. 04. 18 • 준공일 : 2013. 05. 25 ○ 도급자 • 회사명 : (주)태강종합건설 • 대표자 : 유용석	▶ 시설물유지관리 미흡 ◀ ○ 방파제 상치 콘크리트 높이가 3.0m 로 시공 완료하였으나 안전시설 미비로 추락위험이 있어 안전시설 보강이 필요함.	○ 차막이(카스토퍼)로 시설하고 추락방지 표지판 설치.	해양 수산과

일련번호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대상 실과
9	포두 마복산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	○ 위 치 : 포두면 옥강리 ○ 사업량 : 5.7ha ○ 사업비 : 5,470백만원 • 도급액 : 5,470백만원 • 관급액 : ○ 공사기간 • 착공일 : 2012. 3. 19 • 준공일 : 2013. 2. 2 ○ 도급자 • 회사명 : 해동건설(주) • 대표자 : 선병진	**▶ 시공 소홀 ◀** ○ 포두 마복산 목재체험장 조성사업에 본 건축물(체험장) 기둥 3기가 심한 뒤틀림으로 틈새가 발견됨.	○ 뒤틀린 부분에 대하여 원인을 파악 대책 강구한 후 결과보고	환경 산림과
10	여호 어장 진입로 및 농로확포장	○ 위 치 : 점암면 여호리 ○ 사업량 : 포장 220m 석축 15m ○ 사업비 : 25백만원 • 도급액 : 23백만원 • 관급액 : 2백만원 ○ 공사기간 • 착공일 : 2012. 4. 3 • 준공일 : 2012. 5. 22 ○ 도급자 • 회사명 : 가나건설(주) • 대표자 : 김청옥	**▶ 계획수립 소홀 ◀** ○ 공사구간 입구 도로연접부 배수로 맨홀이 설치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 상존.	○ 사업비 우선 반영하여 맨홀설치 보완 계획 수립 후 정비.	건설과
11	영남 만호천 수해복구	○ 위 치 : 영남면 만호리 ○ 사업량 : 석축 368m ○ 사업비 : 81백만원 • 도급액 : 60백만원 • 관급액 : 21백만원 ○ 공사기간 • 착공일 : 2012. 1. 31 • 준공일 : 2012. 4. 29 ○ 도급자 • 회사명 : 기림건설(주) • 대표자 : 구자형	**▶ 시공 소홀 ◀** ○ 공사잔여 쇄석자갈을 배수로에 방치하여 배수지장 우려 ○ 연접부 골망태 석축하단 일부 세굴 방치로 추가 세굴 우려.	○ 방치쇄석은 제거하고 세굴부위는 보완 계획수립 후 정비.	안전 총괄과
12	2012 하반기 숲가꾸기 사업 남양 왕주지구	○ 위 치 : 남양면 월정리 ○ 사업량 : 45㏊ ○ 사업비 : 55백만원 • 도급액 : 55백만원 • 관급액 : ○ 공사기간 • 착공일 : 2012. 11. 6 • 준공일 : 2013. 1. 4 ○ 도급자 • 회사명 : 고흥군산림조합 • 대표자 : 송영현	**▶ 시설물유지관리 미흡 ◀** ○ 사업 후 수목 부산물이 일부 등산로에 방치되어 이용객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등산로에 방치된 수목 부산물을 제거 정비.	환경 산림과

일련번호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대상 실과
13	동강 관덕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 위 치 : 동강면 관덕리 ○ 사업량 : 배수공 L=464m ○ 사업비 : 32백만원 • 도급액 : 9백만원 • 관급액 : 23백만원 ○ 공사기간 • 착공일 : 2012. 09. 10 • 준공일 : 2012. 11. 13 ○ 도급자 • 회사명 : 리치건설(주) • 대표자 : 김상현	**▶ 현장조사 설계 소홀 ◀** ○ 선농로포장 후 배수로 공사를 시공하여 연접부 배수로 법면 미포장 잔여부분이 발생 농로활용도 제고에 한계가 있음. ○ 법면 불법 경작행위 방치	○ 앞으로는 포장 및 배수로공사는 상호연계하여 우선순위 반영 등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 불법 경작지는 원상회복.	안전 총괄과
14	대서화산 지구 임도개설 공사	○ 위 치 : 대서면 화산리 ○ 사업량 : 800m ○ 사업비 : 130백만원 • 도급액 : 99백만원 • 관급액 : 31백만원 ○ 공사기간 • 착공일 : 2012. 6. 22 • 준공일 : 2012. 8. 20 ○ 도급자 • 회사명 : 고흥군산림조합 • 대표자 : 송영현	**▶ 시공 소홀 ◀** ○ 석축쌓기 시공공정 중 일부구간이 조잡시공 되었음.	○ 앞으로는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감독철저.	환경 산림과
15	자생화 분화 생산	○ 위 치 : 대서면 금마리 ○ 사업량 : 1개소 ○ 사업비 : 20백만원 • 보조 : 20백만원 • 자담 : ○ 공사기간 • 착공일 : 2012. 3. 26 • 준공일 : 2012. 12. 12 ○ 보조사업자 • 성 명 : 정형렬 • 주 소 : 대서면 금마리	**▶ 시설물유지관리 미흡 ◀** ○ 잡초 미제거 등 사후관리 부실	○ 잡초 제거하고 시설물 사후관리에 철저.	농업 기술센터
16	해양 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지원사업	○ 위 치 : 두원면 풍류리 ○ 사업량 : L=14,B=9.1 ○ 사업비 : • 보조 : 34백만원 • 자담 : 34백만원 ○ 공사기간 • 착공일 : 2012. 12. 28 • 준공일 : 2013. 2. 20 ○ 도급자 • 회사명 : 풍류어촌계 • 대표자 : 송동모	**▶ 선상집하장 위치 부적정 ◀** ○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은 다수의 어민들이 이용하기 용이한 내항에 설치해야 함에도 일부 어민들의 요구에 의해 외항에 설치하여 이용률 제고에 한계	○ 다수어민이 이용하기 쉬운 내항으로 변경 설치.	해양 수산과

결 과 보 고 서

2013. 10. 25(금) 10:00
제21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주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219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한 2012년도 군 발주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확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지확인기간은 2013년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이었으며, 현지확인 조사반은 의원 12명과 공무원 6명을 포함하여 18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각종 시설공사와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예산집행 적정사항 및 부실시공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대상사업장 선정은 2012년에 고흥군에서 발주 시행한 사업 중 도급액 2000만 원 이상 사업장 561개소와 민간자본보조사업 344개소 등 총 905개소였으나, 제한된 의사일정으로 인해 전수확인조사를 하지 못하고 대표성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과별로 해당 읍면별 3~4개 사업장을 선정 총 59개소를 추출하여 사전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한 결과 열여섯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과 사전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부족 및 공사감독 및 시설물 사후관리 소홀 등이 주요 원인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번 현지확인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 1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시 계획수립을 소홀히 한 사례로써 점암면 어장진입로 및 농로확포장 공사는 도로 연접부 배수로에 덮게 미설치로 인하여 보행자 안전사고가 우려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조사를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강 관덕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은 배수로 공사를 시공하면서 연접부 법면 잔여구간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여 경작자가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두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사업은 어업 중에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입항 때 집하장 이용 시 어민들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일부 어민들의 요구에 의해 외항에 설치하여 이용률 제고에 한계가 있어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공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양 천등산 2지구 개량공사는 콘크리트 포장 노면수 처리 시 ㄷ형강 말단부에 지면과 일치되지 않아 세굴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포두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체험장 건축물 기둥이 뒤틀림 현상으로 틈새가 발생하여 미관에 크게 저해하는 실정으로 원목을 수입하여 가공시에는 먼저 송진을 제거할 수 있는 가마건조장을 이용하거나 열처리 공법으로 송진을 제거한 후 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건축물 기둥이 뒤틀림 현상이 발생하는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남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는 피해확산 예방을 위하여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곳을 복구시공이 가능함에도 석축하단과 돌망태 인접부위에 세굴 되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방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지적 16건 중 8건의 50%가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로 지적되어 유형별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양 비봉소하천 정비사업은 녹동천 생태자연정화시설지구에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수련, 갈대 등을 식재하였으나 관리소홀로 잡초가 무성하고 야간에는 청소년 우범지대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 조성 시에는 주민들이 휴식공간 및 여가활동 영위를 위하여 조성한 것으로 많은 다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양 장예 부잔교 시설공사는 어선 입·출항 시 어선을 자유롭게 승선하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파도가 높은 외항에 설치하여 어민들의 이용이 저조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본 시설물이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토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음에도 제때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이용을 기피함으로써 시설물을 방치하는 등 도시 미관에 저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시설물을 설치할 때 시설물 유지관리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여 다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렸던 부분은 포괄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별도의 현지확인조사 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현지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2년도 군 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보완조치 후 서면으로 결과 보고하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제22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2013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가. 2013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2013년도 군에서 발주 시행한 시설공사 및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견실시공 여부 등을 확인 조사하여 시정 개선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과 군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1)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호
○ 고흥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2) 추진방침

○ 모범사례는 권장하고 문제점은 개선하도록 하여 재발방지 대책 강구
○ 부실시공 등 하자발생 사업장 중점적으로 확인조사
○ 민원발생 사업장은 최우선하여 현지확인 실시

3) 추진계획

○ 조사기간 : 2014. 3. 11. ~ 3. 18.【6일간】
○ 대상사업 : 2013년도 군 발주 시설공사 및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도급액 2천만원 이상인 사업
○ 조 사 반 : 의원 12명(수행공무원 6명)
○ 조사방법 : 서류 검토, 대상사업 중 표본선정 현지확인조사

4) 확인 조사반 편성

○ 편성인원 : 2개반 18명(의원 12, 수행공무원 6)

구 분	의 원		수 행 공무원	조사지역
	반장	반 원		
1반		배기홍, 김옥래, 송경석, 송우섭, 신태균, 최설희	신동호 송유석 김중일	고흥, 점암, 영남, 과역 남양, 동강, 대서, 두원
2반		김주식, 장세선, 박금래, 김의규, 송경양, 송인숙	나성욱 김선홍 송선종	도양, 풍양, 도덕, 금산 도화, 포두, 봉래, 동일

5) 협조사항

○ 해당 실과소장은 조사일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배치하여 사업장 안내 등 현지확인에 차질 없도록 조치
○ 현지확인 운행 차량 및 선박
- 승합차량 1대(운전원 포함) : 재무과
- 화물트럭(임차), 코아채취기(종사원 포함) : 건설과
- 어업지도선 : 해양수산과

6) 행정사무조사 일정

월 일	반별	조사지역	대상 실과소
3. 11.(화)	1반	대서, 동강	
	2반	봉래, 동일	
3. 12.(수)	1반	남양, 과역	
	2반	포두, 도화	
3. 13.(목)	1반	점암, 영남	
	2반	풍양, 도덕	
3. 14.(금)	1반	고흥, 두원	
	2반	금산, 도양	
3. 17 ~ 3. 18	자료정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의회운영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실과소별 현지확인 조사 대상사업 : 별도 선정

나. 2013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일련번호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대상실과
1	고흥 교육청옆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	○ 위 치 : 고흥읍 등암리 ○ 사업량 : 200m ○ 사업비 : 378백만원 • 도급액 : 140백만원 • 관급액 : 132백만원 ○ 공사기간 • 착공일 : '12. 6. 25 • 준공일 : '13. 10. 24 ○ 도급자 • 회사명 : 미창건설 • 대표자 : 모상준	▶ **계획수립 소홀** ◀ ○ 부속건축물 2동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개설할 시 국계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거친 후 사업 시행하고 편입 토지보상 협의 취득이 어려울 때에는 토지수용법과 행정 대집행법에 의거 사업시행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	○ 행정절차에 의해 처리하고 대책강구.	건설과
2	상유 구국도 배수로정비공사	○ 위 치 : 도양읍 용정리 ○ 사업량 : 286m ○ 사업비 : 31백만원 • 도급액 : 17백만원 • 관급액 : 14백만원 ○ 공사기간 • 착공일 : '13. 7. 12 • 준공일 : '13. 9. 10 ○ 도급자 • 회사명 : 무등포장 • 대표자 : 박갑수	▶ **현장관리 소홀** ◀ ○ 배수공 측벽에 파이프 노출로 유수흐름 방해 ○ 배수공 측벽 되메우기 미흡으로 도로 노면수 처리 곤란	○ 배수공 도출된 파이프 절단 및 되메우기 보완	건설과
3	용동 방파제 태풍피해 복구	○ 위 치 : 도덕면 용동리 ○ 사업량 : 포장 107m ○ 사업비 : 122백만원 • 도급액 : 90백만원 • 관급액 : 32백만원 ○ 공사기간 • 착공일 : '13. 2. 12 • 준공일 : '13. 5. 12 ○ 도급자 • 회사명 : 우신건설 • 대표자 : 김동준	▶ **시공 소홀** ◀ ○ 천단콘크리트 돌출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 보강처리 후 결과보고	해양수산과
4	도덕 신양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 위 치 : 도덕면 신양리 ○ 사업량 : 저수지 1개소, 양수장 1개소, 용수로 10조, 6.788㎞ ○ 사업비 : 800백만원 • 도급액 : 백만원 • 관급액 : 백만원 ○ 공사기간 • 착공일 : '10. 3. 26 • 준공일 : '15. 3. 24 ○ 도급자 • 회사명 : 광림종합건설(주) • 대표자 : 임원택	▶ **현장관리 소홀** ◀ ○ 방수로 70m 벽체 프레타이(핀) 그대로 방치	○ 핀 제거 후 결과보고	안전총괄과

일련번호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대상실과
5	거금 해양레져 친수공간 조성 사업	○ 위 치 : 금산면 신촌리 ○ 사업량 : 해상펜션 3동, 황토방 3동, 상수도관로 1㎞, 수로관설치 220m ○ 사업비 : 2338백만원 • 도급액 : 844백만원 • 관급액 : 1493백만원 ○ 공사기간 • 착공일 : '13. 3. 28 • 준공일 : '14. 12. 30 ○ 도급자 • 회사명 : 현진토건 • 대표자 : 정민교	**▶ 개선사항 ◀** ○ 인근 부지(6,600㎡)를 추가 매입하여 관광객들이 머물면서 관광을 즐기고 편익시설(그네, 미끄럼틀, 놀이기구)과 체험장(해산물, 어촌 · 농촌 등)을 설치하여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필요.	○ 레져 친수공간 사업과 연계하여 계획 수립	해양수산과
6	도화천 재해위험 지구 정비공사	○ 위 치 : 도화면 당오리 ○ 사업량 : 3.15㎞ ○ 사업비 : 3,859백만원 • 도급액 : 2,628백만원 • 관급액 : 339백만원 ○ 공사기간 • 착공일 : '13. 2. 28 • 준공일 : '14. 2. 20 ○ 도급자 • 회사명 : 한국기술개발 • 대표자 : 임형택	**▶ 개선사항 ◀** ○ 돌보를 추가로 1기 설치하여 주위 환경과 어울려진 생태하천 이미지 구축	○ 예산에 반영	안전총괄과
7	해창만 배수개선 사업	○ 위 치 : 포두면 송산리 ○ 사업량 : 1,556㏊ ○ 사업비 : 2,000백만원 • 도급액 : 1,452백만원 • 관급액 : 548백만원 ○ 공사기간 • 착공일 : '13. 3. 13 • 준공일 : '13. 12. 12 ○ 도급자 • 회사명 : 금광기업 • 대표자 : 봉명철	**▶ 시설물유지관리 미흡 ◀** ○ 자연동앞 용수로(가통)가 노후로 인해 농업용수 누수로 재기능 역할을 못하고 벽체 철근부식 등으로 붕괴우려 있음. ○ 간척지 수문 3개소에 대하여 원격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시설 보완	○ 누수가 심한 부분에 대하여 보수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 강구.	우주항공사업소
8	사동 소하천 정비공사	○ 위 치 : 동일면 백양리 ○ 사업량 : 276m ○ 사업비 : 305백만원 • 도급액 : 164백만원 • 관급액 : 141백만원 ○ 공사기간 • 착공일 : '13. 2. 5 • 준공일 : '13. 11. 21 ○ 도급자 • 회사명 : 백산건설 • 대표자 : 김경환	**▶ 안전시설 미흡 ◀** ○ 하천 끝부분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차량 또는 보행자 추락방지 표시 미흡	○ 안전시설 보완시공.	안전총괄과

일련번호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대상실과
9	영남 우미산 지구 임도개설 공사	○ 위 치 : 영남면 남열리 ○ 사업량 : 1,485m ○ 사업비 : 188백만원 • 도급액 : 175백만원 • 관급액 : 13백만원 ○ 공사기간 • 착공일 : '13. 5. 29 • 준공일 : '13. 11. 3 ○ 도급자 • 회사명 : 군산림조합 • 대표자 : 송영현	▶ **시공, 계획수립 소홀** ◀ ○ 급경사지에 배수로 구조물 미설치로 우수기시 세굴로 인한 사면 붕괴 우려 ○ 스틸그레이팅 시공 시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제품사용(5T→7.5T)	○ 배수로 200m에 대한 예산확보 후 처리 ○ 견고한 시설로 교체시공 후 결과보고	환경산림과
10	과역 시가지 가로정비 공사	○ 위 치 : 과역면 과역리 ○ 사업량 : 260m ○ 사업비 : 44백만원 • 도급액 : 30백만원 • 관급액 : 14백만원 ○ 공사기간 • 착공일 : '13. 9. 23 • 준공일 : '14. 1. 10 ○ 도급자 • 회사명 : 우신건설 • 대표자 : 김동준	▶ **개선사항** ◀ ○ 잔여구간 80m에 대한 마무리	○ 예산 반영하여 처리	건설과

결 과 보 고 서

2014. 3. 19(수) 10:00
제22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업건설위원 김옥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223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한 2013년도 군 발주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확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지확인 기간은 2014년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6일간이었으며, 현지확인 조사반은 의원 12명과 공무원 6명을 포함하여 18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각종 시설공사와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예산집행 적정사항 및 부실시공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대상사업장 선정은 2013년 고흥군에서 발주 시행한 사업 중 도급액 2000만 원 이상 사업장 730개소와 민간자본보조사업 239개소 등 총 969개소였으나, 제한된 의사일정으로 인해 전수확인조사를 하지 못하고 대표성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과별로 해당 읍면별 2~3개 사업장을 선정, 총 32개소를 추출하여 사전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한 결과, 1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과 사전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부족 및 공사감독과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등이 주요 원인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번 현지확인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시 계획수립을 소홀히 한 사례로써 영남 우미산지구 임도개설공사는 강우 시 급경사지에 세굴방지를 위하여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설계조사 누락으로 2차 피해발생이 우려되어 시급히 정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공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덕 용동 방파제 태풍피해 복구공사는 공사를 시공하면서 내항 사면에 접하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이용자의 안전에 힘써야 함에도 돌출되게 시공되어 있어 이는 바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창만 배수개선사업은 포두면 자연동 마을 앞 용수로(가통)가 노후로 인하여 누수 되고 있습니다. 영농기 이전에 보수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사항 3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금 해양레저 친수공간 조성 사업 등 3건은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체험장과 놀이시설을 연계, 관광객들이 머물면서 즐기고,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한, 모든 사업을 시행하면서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많은 예산을 들여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설계 누락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레저 조성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체험장과 놀이시설을 연계하여 머물면서 즐기는 관광으로 전환하여 지역 소득창출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렸던 부분은 포괄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별도의 현지확인 조사 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현지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3년도 군 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보완조치 후 서면으로 결과 보고하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장
군정질문 및 답변

1. 제210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





GOHEUNG COUNTY COUNCIL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 고흥군의회



의정백서 議政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1. 제21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

■ 의사일정

○ 2012. 12. 11(화) 제6차 본회의

○ 2012. 12. 12(수) 제7차 본회의

■ **질문의원** : 6명(김옥래, 송우섭, 신태균, 장세선, 송경양, 최설희 의원)

■ **질문건수** : 28건

■ **답 변 자** : 7명(투자정책과장, 경제유통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산림과장, 농업축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 **진행방법** : 본 질문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보충질문은 본 질문자만 허용함)

■ 질문요지서

의원명	질 문 요 지	소관부서(답변자)
김 옥 래 (12월11일)	해상면허 양식 품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해양수산과장
	미역, 다시마 지리적표시제 등록에 따른 기대효과는?	〃
	적조피해 현황과 지원대책?	〃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감척) 효과 분석 및 계획은?	〃
	녹동 신항 관광객, 화물수용 능력과 쾌속선 운항 및 계획은?	〃
	우리군에서 생산된 마늘 종자 갱신과 상품에 대한 브랜드 육성 가능성은 없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군 토양에 맞는 벼 생산 장려 품종과 품종 통일은 할 수 있는지?	〃
송 경 양 (12월11일)	태풍 및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대책과 제도적인 미비로 인한 사각지대 소규모 농어가의 지원 대책은?	농업축산과장
	비전 5000사업 추진중 저소득 고령 농어가에 대한 대책은?	〃
	친환경 쌀가공 업체의 관리감독 및 유통확대 방안과 고흥 흥양 RPC 합병 운영에 대한 추진 방향은?	경제유통과장
최 설 희 (12월11일)	거금 생태숲 조성사업 현황은?	환경산림과장
	봉황산 도시산림 공원 조상사업 내용은?	〃
	산림청 제5차 산림기본 계획중 5대 전략의 하나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녹색공간 및 서비스 확충에 대한 방안은?	〃
	지자체에서 많이 조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림휴양 시설은 무엇이며 우리군의 실정은?	〃
	등산객과 산림 휴양지 관광객의 증가에 대한 우리군의 대안은?	문화관광과장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우리군의 관광코스는?	〃
	고흥군의 관광 인지도는 어느 정도이며 개선방안은?	〃

의원명	질 문 요 지	소관부서(답변자)
장 세 선 (12월11일)	친환경 쌀 판매실적과 판매 대책은?	경제유통과장
	우리군 특산품인 유자 및 석류 생산현황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 계획은?	〃
	체류형 관광시설 설치 관련 현황 및 계획은?	문화관광과장
	농업 노동력 감소에 대한 대체 방안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령화된 노동력으로 가능한 농업개발 계획은?	〃
신 태 균 (12월12일)	고흥유통(주) 발전방향은?	경제유통과장 (고흥유통대표)
송 우 섭 (12월12일)	풍양농공단지와 동강 청정식품단지 운영현황 및 활성화 대책은?	투자정책과장
	화력발전소 관련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주무부서 의견은?	〃
	민선 4기 투자기업 유치성과와 민선 5기 투자유치 추진상황은?	〃
	축산업 현황과 이후 대책은?	농업축산과장
	조사료 지원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은?	〃



고흥군의회 **김옥래** 의원

■ **질문요지**

① 해상면허 양식 품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② 미역, 다시마 지리적표시제 등록에 따른 기대효과는?
③ 적조피해 현황과 지원대책?
④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감척) 효과 분석 및 계획은?
⑤ 녹동 신항 관광객, 화물수용 능력과 쾌속선 운항 및 계획은?
⑥ 우리군에서 생산된 마늘 종자 갱신과 상품에 대한 브랜드 육성 가능성은 없는지?
⑦ 우리군 토양에 맞는 벼 생산 장려 품종과 품종 통일은 할 수 있는지?

□ 질문내용

김옥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금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7만 여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병종 고흥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은 글로벌 경제 변수와 유럽의 재정 위기, 국내외 정치 이슈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업이 주류인 우리 군도 농수축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농어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태풍 · 호우 · 고온 · 적조 등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 농어민의 고통이 많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흥은 삼면이 바다로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진 청정 지역입니다.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제도적 보호에서 취약한 가운데 있으며 청정 해역과 수산자원의 위협 요인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업화에 의한 오염원이 청정해역으로 밀려오고 있으며 어업 중 발생하는 폐어구, 양식 자재 등이 무분별하게 바다에 버려져 어업인의 생활 터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관련 사업은 확대 지속 추진하여야 하며 행정, 주민 모두가 각성하여 우리의 바다를 깨끗하게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해양 관광 자원을 가꾸고 활용하여 고흥을 관광 명소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주항공 관련 관광시설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자연과 우주항공 산업을 접목한 관광 자원을 더욱 발전시키고 홍보하면 관광 고흥의 미래가 활짝 열릴 것입니다.

2012년 임진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성과를 분석하고 미래 지향적인 사고로 의정과 군정에 임하여야 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군정질문은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정질문 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해양수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수산물 양식으로 어업인들에게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면허지가 우리 군에 939건에 2만 600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허된 품종만 양식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황에 따른 생산량 변동, 그리고 수입 개방에 따른 가격 하락과 수요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양식 품종 다양화와 양식 품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흥유자, 고흥한우에 이어 미역과 다시마가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 후 브랜드화와 지역 특산물로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리적 표시제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 관리계획 그리고 패류 등에도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구 온난화에 의한 고수온 · 고염분 · 일조량에 의해 발생하는 적조로 인하여 금년에 많은 어류와 전복 등 수산피해가 발생하여 양식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피해지원 현황과 적조피해 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으로 많은 허가어선을 감척하였습니다.
감척 사업은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물의 남획을 방지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수산물 생산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감척사업 이후 수산 자원량의 변화와 실태, 어선세력, 어획량, 어업 소득 증감에 대하여 중앙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과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군의 2011년 말 어선등록 척수가 2969척으로 알고 있는데 감척사업 이후 어선세력 변동 상황, 그리고 금년의 감척추진 현황과 이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소록 거금대교 개통, 나로호 발사, 우주과학관 등 고흥 관광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찾아온 관광객으로 인하여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번 찾아온 관광객이 또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과 제주도를 연결하는 녹동 신항은 앞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광객과 화물의 원활한 수송대책을 미리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시설된 녹동 신항 규모로 앞으로 증가할 여객과 화물의 수용 능력은 가능한지, 부족하다면 앞으로 추가시설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쾌속선 운항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생산과 소득을 위하여 토질에 맞는 많은 품종 개량과 우량 품종을 선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해왔으나 품질과 소득면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씨마늘 종자를 갱신하여 상품화하여 브랜드 육성 사업은 가능성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군 토양에 맞는 벼 생산에 있어 어떠한 품종이 장려 품종인지, 그리고 고품질 고소득, 병충해에 강한 품종과 재배농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다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군민이 행복해하고 우리 고흥이 더욱 살기 좋은 고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주현중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군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옥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상면허 양식 품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양면허 양식 품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개의 어업권에 1개의 품종만 양식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6월 22일자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으로써 어업인들이 양식할 수 있는 품종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양식어업의 종류와 양식방법이 동일한 어업권에는 양식 품종이 다르더라도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품종을 선택하여 양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부류식 양식장에는 파래양식이 가능하며, 새꼬막 살포식 양식장에 꼬막, 바지락 양식이 가능하고 굴 수하식 양식장에서 홍합도 양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식방법이 다른 수하식 양식장에는 가두리 양식 시설을 할 수 없고, 새꼬막 살포식 양식장에는 굴 양식을 할 수 없으며 미역양식장에는 김 양식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미역, 다시마 지리적표시제 등록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미역, 다시마 양식 어가는 289호며 어장면적은 3200ha입니다.
이 어장에서 생산된 원초를 이용하여 염장미역, 마른미역, 건다시마 등 연간 12만 톤을 가공하여 한 해 약 100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미역과 다시마는 품질이 양호하여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특히 동일본 지진으로 인한 방사선 누출 등의 여파로 외국인 및 내국인이 우리 지역 미역과 다시마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2~3년 동안에 지원한 미역 가공공장 시설을 포함하여 관내 금산, 도양, 풍양 등 22개소에서 미역가공 공장이 운영 중에 있으며, 양질의 염장미역, 건미역, 건다시마를 생산하여 전국에 판매되고 있고 일본 등에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고흥 미역과 다시마가 우수성을 인정받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지리적표시제 등록 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고흥 미역을 전국적인 우수 브랜드로 육성시키기 위하여 상품포장 방법 등을 연구하여 고급화 및 차별화 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패류, 특히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고흥산 굴은 바다향이 강하여 김장용 굴로 전국에 널리 알려지면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굴에 대해서도 지리적표시제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적조피해 현황과 지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 금산면 일원에서 발생한 유해성 적조로 인하여 전복, 돌돔, 넙치 등 어패류 204만 마리가 폐사되어 13억 9200만 원의 적조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우리 군과 남서해수산연구소 등 유관기관 합동 적조피해 정밀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며, 지난 10월 전남도 어업재해 유관기관 협의회 심의 및 11월 농식품부 농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우리 군 적조피해 복구계획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피해어가에 복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양식어가 적조방제 위기대응 매뉴얼을 토대로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전액 국비로 확보한 사업비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수산피해가 우려될 시 황토살포 등 적조방제 태세를 구축하여 적조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 효과분석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허가어선에 대한 어선감척은 2005년부터 192억 원의 사업비로 490여 척을 감척하였습니다.
어선감척 사업은 어족자원에 비해 고기를 잡은 어선수가 너무 많아 날이 갈수록 수산자원이 고갈되어가고 어획량 감소로 이어져 경영난으로 인하여 어업을 포기하는 어업인들이 늘었기 때문에 감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척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효과 분석은 이동성이 강한 어류를 상대로 해역이 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으므로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연안어선 감척사업의 투자효과와 어족 자원 변동추이에 대하여 연안어업 8개 업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안어업의 자원량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업인 희망에 의한 감척사업을 지양하고 2014년도 이후부터는 불법어업을 일삼거나 자원남획으로 타 업종에 악영향을 미치는 업종의 어선을 정부에서 직권으로 감척을 명령하고 이에 불응한 어선은 면세류 공급량이나 수산관련 정부보조 지원을 제한하게 되는 자원관리형 정부 직권 감척으로 전환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어선 감척사업 이후 어선세력 변동상황은 감척 전인 2005년도에는 4000여 척 이었으나 현재는 2975척으로 감소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동신항 관광객, 화물 수용능력과 쾌속선 운항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녹동신항은 2002년도에 밀감, 모래 등 31만 톤의 화물이 반입되었으나 10년이 지난 현재는 약 151만 톤이 수송되어 약 5배 정도 증가했으며, 신항을 이용하는 여객도 카페리호가 취항한 첫해인 2004년에 29만 명에서 현재는 38만 명이 되어 명실상부한 연안항으로써 그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객과 화물량의 급증으로 항만시설의 확장이 필요하나 현재의 시설로써는 수용하기 어려워 일반부두 2선석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금년 말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러나 부두개발 시 발생하는 준설토 투기장이 결정되지 않아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해결해서 부두가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쾌속선 운항계획은 2004년 카페리가 취항한 이래 여객의 수는 차츰 증가하고 있으며, 운항 첫해인 2004년에는 29만 명, 2008년에는 34만 명, 그리고 작년에는 38만 명이 녹동신항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동안 카페리 1척이 녹동과 제주를 운항하여 오다가 금년 7월에 쾌속선 1척이 추가로 취항하였으나 선박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현재는 휴항을 하고 수리작업을 하고 있으며, 운항은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녹동과 서귀포를 운항할 쾌속선 1척도 현재 국내로 들여와서 기관과 선체내부를 수리 중에 있으며 이 선박도 내년 초 취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 녹동에서 제주-서귀포간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총 3척이 되며 녹동신항을 이용하는 여객도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김옥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봉환입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옥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생산된 마늘 종자 갱신과 상품에 대한 브랜드 육성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늘은 바이러스에 의해 퇴화되는 특성 때문에 수량감소 및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씨마늘 갱신이 필요합니다.

관내 마늘재배 농가들이 창녕산이나 남해산 등의 씨마늘을 막연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타 지역산 씨마늘 도입에 의한 갱신으로 많은 종구대가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마늘도 우량 씨마늘 생산이 가능하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풍양면 안동리에 시범농가 포장을 선정하여 주요 산지별 씨마늘 비교시험 전시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포장에는 고흥, 남해, 창녕, 제주, 중국 등 산지별 씨마늘과 조직배양 및 주아재배 씨마늘 등 12종을 비교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마늘재배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늘 파종부터 수확까지 기계화도 함께 시험하고 있습니다.

내년 수확기에 마늘재배 농업인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현장 평가회를 개최함으로써 고흥마늘의 우수성과 우량 씨마늘 생산 가능성 등을 검증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2011년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에서 조직배양으로 생산된 우량 씨마늘을 분양받아 시범농가 포장 5450㎡에서 증식하고 있으며, 여기서 생산 예상되는 7톤을 희망농가에 우량 씨마늘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진흥청과 연계하여 조직배양 우량 씨마늘을 지원받고, 우량 씨마늘 생산을 위한 공동연구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품에 대한 브랜드 육성 가능성입니다.
농업축산과에서 고흥군유통(주)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마늘 원예브랜드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우량 씨마늘 증식 보급과 고품질 마늘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생력기계화, 고흥마늘의 우수성 홍보 등을 통하여 고흥마늘의 브랜드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벼 장려품종 및 품종통일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벼 품종별 특성은 익는 시기, 수량, 미질, 병해충 저항성, 외관 등의 요인에 따라 결정되며, 토양 조건이 품종 특성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벼 품질은 토양 조건보다는 벼 품종특성과 질소시비량 등의 재배관리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농가에서 품종을 선택할 때 주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은 수매여부, 익는 시기, 수량성, 미질, 병해충 저항성 등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군에서 현재 재배하는 선호품종은 조생종은 운광, 조평 등이고, 중만생종은 새누리, 일미, 황금누리, 미품 등입니다.
이와 같이 농촌진흥청에서 남부 평야지에 알맞도록 육성한 벼 품종은 대부분 우리 군에서 재배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농업인들에게 품종 특성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농가에서 자신의 재배 목적과 판로에 맞는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미질과 재배상황 등을 고려하여 2개 품종을 정부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으로 사전에 선정함에 따라 장려품종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3년 공공비축미곡 선정 품종은 새누리와 황금누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품종 통일은 고흥쌀의 브랜드화와 쌀 품질 균일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안이라 판단이 됩니다.
일부 RPC에서 브랜드쌀 품질 균일을 위해 특정 품종을 지정해서 수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두 가지 품종만으로 통일할 경우 태풍 등의 기상재해나 특정 병해충이 발생할 경우 큰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이상기상 등의 요인으로 강력하고 잦은 태풍이 내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벼 재배농가들이 보다 안전하게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알맞은 조생종 벼 품종을 확대하고, 중만생종도 알맞은 품종을 선택해서 재해 위험성을 분산시키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김옥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흥군의회 **송경양** 의원

■ **질문요지**

① 태풍 및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대책과 제도적인 미비로 인한
사각지대 소규모 농어가의 지원 대책은?
② 비전 5000사업 추진중 저소득 고령 농어가에 대한 대책은?
③ 친환경 쌀가공 업체의 관리감독 및 유통확대 방안과
고흥 흥양RPC 합병 운영에 대한 추진 방향은?

□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고흥군의회 송경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금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병종 고흥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2012년 임진년에는 유난히 심하게 지속된 여름가뭄과 연이은 태풍 볼라벤과 덴버로 인해 감내하기 힘든 자연재해가 발생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농어업이 주산업인 우리 고흥군도 냉해가 휩쓸었던 1980년 이후 32년만에 최대의 흉작을 기록하여 군민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지는 한 해인 동시에 각 가정의 경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고흥군과 고흥군의회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는 더욱 막중하며, 상호 견제하고 보완하여 군정의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고흥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천혜의 수려한 경관과 기름진 땅, 청정의 바다를 지역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지역발전의 모델을 그려나가야 할 것이고, 이에 고흥군과 고흥군의회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행정과 동반자적인 견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들어서며 변화의 핵심으로 등장한 신자유주의라는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우리 사회를 지배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6천년 동안 농경생활을 시작한 이래 최근 30년 동안 농업사회의 변화는 기존의 농업생산 방식과 농촌문화,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고흥군의 근간이 되어온 농수축산업의 위기를 가져왔고 지역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많은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이은 제2의 개방이라는 FTA 자유무역협정은 실질적인 농수축산업의 종말을 고하는 선언입니다.

즉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전면 개방이 아닌 경쟁상대국과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 우리 농축산업에 관세를 도입하여 최소한의 방어막을 만들었다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FTA 협상은 그나마 있는 보호막도 완전히 제거하여 종점 없는 경쟁체제를 예고한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비준되어 시행되고 있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서 매년 우리 전남의 손실액만도 무려 1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우리 농촌이 잘 살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농촌이 잘 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농업정책의 부재로 인한 요인이 42%, 농촌의 구조적인 문제가 48%, 농어민의 잘못된 자세로 인한 요인이 10%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농업정책의 중요성을 실감케 하는 설문조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정도 그동안 나름대로 농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유치를 비롯한 선진 농업 성공모델의 벤치마킹 등 다양한 품목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 농수축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그동안 동분서주하고는 있으나 그동안 인적·물적 재원의 투자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나 하는 의문과 함께 걱정이 앞섭니다.

그나마 현재 농수축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 농정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사업이 전례의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세심한 계획을 하고 적극적인 추진으로 미래 고흥 농수축산업의 활로를 개척하기를 기대하면서 농업축산과장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은 유래를 찾기 힘든 여름가뭄과 8월 29일 볼라벤 태풍으로 인한 많은 피해와 그 피해가 복구되기도 전에 9월 17일 산바 태풍의 급습으로 반도의 전면에 위치한 우리 고흥군은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온의 상승은 더 많아져 더 강력한 자연재해를 예고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렇게 갈수록 빠르게 변화되어가는 환경변화에 따라 자연재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해대책 규정과 지원에만 의존해서는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재난에 의한 재해로 인해 공공시설물의 피해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군민의 사적인 재산피해는 군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더 세심한 행정력을 발휘하여 보상과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 우리 군의 태풍으로 인한 군민의 사유시설 및 농작물의 피해 지원은 재난지수 300이상 복구 및 보상으로 5957농가에 114억 4009만 원의 지원 및 보상이 지원되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재난대책 지원 매뉴얼 산출에 의해서 재난지수 300 미만으로 조사되어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농어가가 6236농가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난지수 300 미만으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농어가는 농경지 및 시설피해, 또 농작물 피해를 자력으로 복구해야만 하는 이중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피해 농가들 대다수가 평균연령 65세 이상의 고령화·독거화·부녀화된 우리 농촌의 현실 속에서 생계는 물론 농작업의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고흥군의 현실입니다.
다행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소규모 피해 농어가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을 주고자 군 자체사업으로 호당 평균 8만 6594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만 피해 농가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재난대책의 미비한 점을 고흥군의 입지적 조건과 사회고령화 추세에 발맞추어 농작물의 피해 보상은 특별한 계획을 세워 이제는 우리 지방정부가 보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차라리 재난지수 300 미만 농어가에 지원되는 재원을 가지고 농작물 재해 보험료에 보전해줌으로써 저조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어떤가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흥군의 인근 어느 면에 111개 농가가 2345㏊의 농작물 피해보상에 가입하여 보상금 3억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ha로 계산하면 156만 4000원씩 농작물 피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게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농작물의 자연재해 피해조사 시 객관적인 데이터나 장비도 없이 지금 조사방법이 목측에 의한 피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를 하다보니까 농가의 갈등이 유발되고 또 군정 불신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피해조사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농림수산식품 산업의 정책 목표를 구체화하고 실천하여 군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고흥을 만들겠다는 장기적 계획으로 추진 중인 농림식품산업 비전 5000 계획이 수립·추진되어 1단계가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5000만 원 이상 고소득 선도 농어가를 육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군 농어가의 63.3%에 달하는 9927가구가 1년 평균소득 2000만 원 미만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소득 농어가에 대한 지원과 대책이 먼저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남 평균 농어가의 소득이 3000만 원인데 비해 우리 군의 농어가 평균소득은 2600만 원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평균소득이 전남 평균소득을 밑돌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군 농어가의 현실이 열악하다는 것을 통계가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균소득 5000만 원 이상의 선도농가는 대다수가 젊고 농업기반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농가들이 대부분입니다.
행정적인 특별한 지원 없이도 자생력을 갖추고 있어 여러 가지 어려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다수 저소득 고령·독거화·부녀화 된 농어가는 행정적인 선도지원이 없이는 자생력을 갖추기에 매우 취약하다 할 것입니다.
고령·독거화·부녀화된 대다수 저소득 농어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심한 정책이 수립되어 빨리 시행되지 않으면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고소득 농어가와 저소득 농어가와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될 것이며 우리 고흥 지역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사회에 또 다른 갈등의 정서를 유발하여 군민화합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소득 고령·독거화·부녀화 농어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유통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의 쌀 산업에 대한 향후 발전 방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속적인 친환경농업을 확대, 생산 발전시키도록 유도하여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유통구조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립과 안정적인 판로 확충이 우리 고흥군의 친환경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군의 친환경 쌀의 가공과 유통의 주요 업체인 흥양농협 RPC, 고흥친환경 법인, 한우리친환경 법인에 대한 가공과 유통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지난해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에 질의하였는데 그동안 원활한 지도감독으로 친환경 쌀의 가공과 유통의 확대가 소기의 성과로 이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 12월 농업협동조합간의 협력을 통해 어려운 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RPC 통합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우리 고흥군과 각 농협 간 통합작업의 목적은 통합으로 자본금을 확보하고 가공시설의 규모화와 현대화를 앞당겨서 시장교섭력의 강화로 생산농가의 소득향상과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최우선의 통합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군과 농협 간 RPC 통합과정의 계획 일정과 통합 이후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임진년 한 해는 긴 가뭄과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 그리고 더욱더 빨리 찾아오는 27년만의 한파로 인해서 저나 우리 군민들이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전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고장난 자본주의 체제 산물인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앞으로 우리 농어촌의 미래는 고난의 길을 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군정질문의 짧은 시간이 군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생산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 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류효주입니다.
평소 어려운 농업·농촌·농어민에게 깊은 관심과 농정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해주신 송경양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유난히 심각했던 자연재해로 농어민의 경제적 손실과 어려움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대책 및 제도적인 미비로 인한 사각지대 소규모 농어가의 지원 대책과 비전 5000사업 추진 중 저소득 고령 농어가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대책과 제도적인 미비로 인한 사각지대 소규모 농업가의 지원 대책에 대하여는 지난 8월부터 9월 중에 사상유래 없는 3개의 강력한 태풍이 연이어 내습함에 따라 애써 가꾸어온 농작물과 시설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물에 많은 피해를 입혀 생산량 감소와 품질저하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큰 시름과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으나 자신감을 잃지 않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한 농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면적은 1만 2273㏊로 경지면적의 54%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도별 피해면적은 30% 미만이 1319㏊, 30~50% 미만은 4744㏊, 50% 이상은 6210㏊이며, 30% 이상 피해율이 89% 수준입니다.

피해농가는 1만 1703호로 농가단위 피해 정도별로는 30% 미만 농가가 2830호, 30~50% 미만이 4630호, 50% 이상이 4233호이며, 30% 이상 피해농가 점유율이 76% 수준입니다.
자연재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 특성상 피해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산정기준은 작물별 피해시기, 피해정도 등 피해상황에 따라 피해 조사요령과 지침에 의거 농업인의 입장에서 실제 피해율을 적용 산출하였으며, 벼의 경우는 피해율이 70% 이상일 경우 필지 전체 면적을 대파대로 적용하였으며, 피해율이 50% 미만일 때는 전체 면적을 농약대로 적용 산정하였고 유자, 참다래, 석류, 단감 등 과수피해는 낙과와 풍상에 의한 낙엽 등 조사를 통해 피해율을 최대한 산정하여 과수농가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농가별로 작물별 사유시설 피해 상황을 전산 입력하고 농가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은 생계비 지원 대상으로 처리 농가단위 재난지수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농작물, 농업시설물, 축사, 가축, 어업, 산림, 주택, 기타 피해로 재난지수 300이상 지급대상은 5957농가이며 사유시설물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114억 4900만 원이 확정되어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대상자 중 주 생계수단이 근로 사업소득으로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여 부적격자 21농가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농·축협 농업경영자금은 농가단위 피해율이 30~50% 미만은 1년, 50% 이상은 2년간 3907농가에 175억 2000만 원을 상환 연기와 이자감면 등 간접지원과 농어촌공사 농지구입자금은 567농가에 25억 2300만 원이 상환연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창 · 오마간척지 임대농지 임대료에 대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30~100% 감면과 고흥만 일시경작지는 평균 감면율 90%로 경작 피해농가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할 계획으로 전라남도의 감면 승인을 받아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재난지수 300 이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재난지수 300 미만인 경미한 피해농가에 대해서도 재난지수에 따라 6236농가에 군 예비비로 5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영농규모나 작물별로 피해신고 누락이 없도록 사전 계도하였으며, 전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피해양상에 대한 과소평가 없는 조사를 위해 군 전문현장지원팀을 운영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도덕오마지구 등 피해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농업인대표,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의 입회하에 피해상황을 확인 민원을 최소화하였으며, 사유시설물 피해 조사 시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매뉴얼과 피해율 산정기준, 조사요령에 대한 사전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 농업인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대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우리 군 주요 과수인 유자, 석류 등이 보험가입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도록 도나 중앙에 건의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349농가로 863ha이며, 작물재배 면적의 3.5% 수준에 불과합니다.

벼, 콩, 배, 단감, 참다래 재배 일부농가가 가입하고 있으나 앞으로 보험 가입율을 높이기 위해 자부담액의 60% 수준을 지방비로 지원하여 모든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자연재해 시 재난지원금 지원 혜택보다 유리함을 적극적으로 지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전 5000 프로젝트 추진 시 영세 고령농가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금 농어촌 현실은 젊고 능력 있는 인적자원 유치와 확보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규모가 영세하여 소외된 농업인을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농림어업 정책은 사회보장적 구호나 복지수혜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분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산업으로 농수산업을 동반 성장 발전시켜야 하는 우리 군의 근간 산업이므로 때로는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며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가와 농어촌지역 자치단체의 농어업 정책방향은 고령 영세농을 위한 특별한 대책은 없으며, 자연스러운 경영권 이양이나 은퇴로 농수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전 5000을 통해 군비에 의존하여 고령 영세농들에게 생산기반을 고루 지원하고 분배하는 등 전체를 구제하는 정책은 비효율적이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다같이 잘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책과 방안을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70세 고령 농어업인까지도 의욕만 있다면 생업 확장과 정책 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고령농 지원에 대한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고령농이 우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 마을단위 고령 및 영세농업인들이 회관을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하루하루 무료하게 지낸다는 점에 착안해 생산성 있는 활동을 도모하도록 실버 복지 농어촌산업을 발굴하여 공모신청을 통해 8개 마을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이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읍면단위 1개소 이상 목표로 공모사업을 통해 실현 가능한 사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규모가 적은 고령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있는 경운기, 관리기 등 맞춤형 소농 농기계를 금년에는 483대를 지원 공급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원을 확대해서 영세 일손 부족농가의 영농 편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연간소득 2000만 원 이하 저소득 농업인에 한하여 큰 노동력 없이 텃밭을 활용해 야채나 묘목 등 다양한 품목을 재배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다목적 소규모 비가림하우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부녀화에 따른 농촌 일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각 읍면에 사각영농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팔영농협에 육묘장 시설과 무인헬기 사업비를 지원하여 육묘, 이양, 병충해 방제 등 일손 부족 농가의 영농 대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녹동농협과 흥양농협 등으로 확대해서 고령농·부녀농 등에 일손 부족 농가가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세 고령농이 직접 채취한 나물이나 산야초 등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가칭 실버작목반을 만들고 고흥군유통을 통해 판매를 함으로써 소득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영세 고령농 문제는 어느 지역적인 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범국가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므로 비전 5000 프로젝트로 아우르지 못한 저소득 고령농에 대해서는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영세 고령 농어업인들이 다 함께 고루 잘살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지원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추진을 통해 농림수산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다 같이 잘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신념으로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소득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청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 경제유통과장

경제유통과장 윤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경양 의원님께서 우리 군 친환경 쌀 생산 및 유통 확대에 지대한 관심으로 많은 지원과 노력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쌀 가공업체의 관리 감독 및 유통확대 방안과 고흥 흥양 RPC 합병 운영에 대한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쌀 가공업체의 관리 및 지도 감독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고흥 친환경 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가공 유통에 따른 지도단속반을 편성 혁신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행정과 농업인 단체가 참여하는 지도단속반은 정기적으로 친환경 벼의 부정 매입 및 부정 유통 등을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고흥쌀의 신뢰와 이미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흥 친환경 쌀의 안정적인 유통과 확대를 위하여 수도권 친환경 쌀 무상급식제도 실시에 따른 우리 군 쌀 공급 확대를 위해서 행정과 농협이 합동으로 학교급식 지원반을 편성하여 학교급식 품평회 참가 및 학생·학부모 초청 농촌체험 실시와 사후 관리 강화로 고정 고객과 신

규 공급처 확대에 노력한 결과 금년 11월 말 현재 수도권 대도시 329개 학교에 1173톤의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고품질 고흥 친환경 쌀이 학교 급식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흥 흥양 RPC 합병 운영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RPC 시설의 현대화와 규모화를 통한 고흥쌀의 고품질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지역 농협의 RPC 통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1년 4월 농협 RPC 통합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농협간 RPC 통합을 결의하고 통합추진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통합 RPC 견학 등 사업계획안을 수립 확정하고 현재 고흥군 농협쌀 조합 공동사업 법인을 설립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협쌀 조합 공동사업 법인이 승인되면 흥양 RPC 시설을 현대화, 규모화하여 고품질 고흥쌀 브랜드화를 통한 고흥쌀의 인지도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흥군의회 **최설희** 의원

■ **질문요지**

① 거금 생태숲 조성사업 현황은?
② 봉황산 도시산림 공원 조성사업 내용은?
③ 산림청 제5차 산림기본계획중 5대 전략의 하나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녹생공간 및 서비스 확충에 대한 방안은?
④ 지자체에서 조성되고 있는 대표적인 산림휴양시설은 무엇이며 우리군 실정은?
⑤ 등산객과 산ㄹ미 휴양지 관광객의 증가에 대한 우리군의 대안은?
⑥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우리군의 관광코스는?
⑦ 고흥군의 관광 인지도는 어느 정도이며 개선 방안은?

□ 질문내용

고흥군의회 최설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는 가운데 군민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점검하고 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금년 여름엔 세 차례의 연이은 태풍이 불어 닥쳐 땀흘려 가꾼 농작물과 시설물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은 슬기롭게 극복하고 꿋꿋하게 일어섰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금융위기와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 곡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위기에 봉착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나 언론매체에 따르면 금년은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 때보다 경제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직시해 볼 때 농수산업 위주의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도시지역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민 모두가 근검절약하는 가운데 건전한 소비생활을 활성화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서 지역 경기를 부양하여 군민생활의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군의 자연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산자수려한 산림의 고장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팔영산과 적대봉을 비롯하여 마복산, 천등산, 봉래산, 운암산 등이 있어 기암괴석과 사계절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산림면적은 4만 6183㏊로써 군 전체면적의 59%이며 전남에서 순천시, 화순군 다음으로 세 번째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산림자원의 장점을 살려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산림정책과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함께 짚어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산림은 인간과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생명의 터전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를 조절하고 맑은 물을 흐르게 하여 지구의 깨끗하고 푸르른 환경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UN에서는 2011년도를 세계 산림의 해로 지정하여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 위기 극복의 해결책으로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에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중대한 과제로 이슈화 하였습니다.

더욱이 현대인의 생활 패러다임이 웰빙과 로하스 등 친환경적인 삶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가함에 휴양의 형태도 숲에서 단순히 쉬는 정도의 소극적인 활동에서 더 나아가 산림치유라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거나 조성 중인 산림휴양자원은 자연휴양림이 148개소, 산림욕장이 163개소, 수목원이 40개소, 산림박물관이 10개소, 생태숲이 44개소 등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세외수입 증대와 관광자원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186㏊의 팔영산 자연휴양림과 416㏊의 건강 편백숲, 거금도 생태숲과 31㏊인 동촌 삼림욕장, 조성중인 마복산 목재문화 체험장 등의 훌륭한 산림 휴양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팔영산 건강 편백숲은 전국 최대의 면적으로 산책로와 쉼터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빽빽이 들어선 편백나무에서 발생하는 피톤치드와 숲속의 산소 음이온은 산림욕을 통한 자연치유 기능을 갖춘 휴양처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소 음이온은 보통 가정의 실내에서 1㏄당 250~500개 음이온이 분포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우리 지역은 섬 지역 중심 산소 음이온 측정값이 공기 1㏄당 1410~3181개의 높은 측정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이러한 훌륭한 휴양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산림자원에 대하여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여 군민들이 유익하게 향유하도록 하고 관광 상품화하여 우리 군의 문화관광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군민 소득으로 창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팔영산 편백숲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관광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치유의 숲으로 관광 상품화한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관광자원으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성된 거금 생태숲과 마복산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에 대한 무한한 효용가치와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자연자원의 이점을 생각해 볼 때 장기적으로 매우 유용한 정책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고장에 펼쳐져 있는 산들은 어디에서나 다도해의 아름다운 비경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위적인 관광자원 개발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천혜의 자연자원의 장점을 환경산림과에서 기반을 다져주고, 문화관광과에서 관광 상품화하여 관광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산림과장과 문화관광과장께 질문드리고자 하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숲에 대해서 환경산림과장께 질문드립니다.
우리 군 거금 생태숲 조성과 관련하여 조성면적·조성기간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이용 프로그램 개발계획과 조성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고흥읍 봉황산은 2009년도에 산림 서비스림 매수 대상지에 선정되었으며,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좋아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도시산림공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조성사업의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산림휴양 관련 중장기 정책 중 제5차 산림 기본계획에서 산림청이 설정한 5대 전략의 하나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녹색공간 및 서비스 확충에 대한 우리 군의 기본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자체에서 많이 조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림휴양시설은 무엇이며, 우리 군의 실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주 5일 근무제와 소득향상 등으로 여가활동의 욕구가 증대되어 건강증진과 취미활동의 일환으로 산을 찾는 등산객과 산림휴양을 즐기려는 탐방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관광차원의 대응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 우리 군이 추진해 온 대응내용과 앞으로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보통 관광을 하고자 할 때에 잘 알려진 곳을 떠오르게 됩니다.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우리 군의 관광코스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과장께서는 우리 군의 관광 인지도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관광 인지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 그리고 숲나무는 우리에게 지속적인 풍요로움을 얻게 하는 경제 주체로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 인류의 가장 오래된 자연 치유기능을 가지고 태고 때부터 인간을 보살펴 왔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의존해야 할 것도 대자연의 산림치유라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환경을 훼손시키지 않고 보전하는 길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래를 위한 소명임을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 환경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이용식입니다.
평소 환경산림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최설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4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산림자원 활용과 우리 군 실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금 생태숲 조성사업 현황 및 유지관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금도에 자생하는 희귀, 멸종위기 식물을 보전 관리하기 위해 적대봉 일원 122ha에 56억 원을 투자하여 2009년에 착공 금년에 생태숲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숲환영소 1동, 숲관찰로 3.2㎞, 구름다리 34m, 캐노피하이웨이 230m, 계곡관찰로 147m, 생태숲 홍보영상 및 전시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생태숲 조성 이후 유지관리를 위해 숲해설가와 청소인부를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예산 인건비, 사무관리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총 6487만 4000원을 확보하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황산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황산 도시산림공원 조성은 도심 속에 산림공원을 조성하여 군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지역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이 2010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10억 원의 사업비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생태탐방로 정비 430m, 숲길조성 1494m, 팔각정 리모델링 1동, 파고라 2개소, 체력단련시설 7종, 치자나무 외 9종 4만 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 등산로에 생태블록을 흙길로 변동하는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휴양관련 정책 중 산림청 5대 전략의 하나인 녹색공간 및 서비스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쾌적하고 풍요로운 국민생활을 위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개년간 산림휴양 장기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수요에 맞춘 휴양문화 서비스 확대와 산림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일자리 확대 등 핵심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등산로 등 숲길조성 330㎞, 동촌 산림욕장과 마치산 산림욕장, 팔영산 자연휴양림, 거금 생태숲 등과 같이 차별화된 산림문화 및 휴양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요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에서 많이 조성하고 있는 산림휴양 시설은 무엇이며, 우리 군의 실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 대표적인 휴양시설은 산림욕장이며, 우리 군은 동촌과 마치산 2개소의 산림욕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욕장은 도심에서 가까운 산림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오솔길 등 산림욕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하여 당일에 산림휴양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 사업으로서 1개소의 면적이 5ha 이상이고 5억 원 이상 투자 시 조성 가능한 사업이므로 앞으로 관내 주요 지역의 접근성과 이용율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산림욕장을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사업은 민선 5기 공약사항으로써 산림욕장 외에 거금 생태숲, 봉황산도시산림공원,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동강초교, 금산초교 등 2개소의 학교숲과, 녹색나눔숲 등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하게 많은 산림휴양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설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조진수입니다.
항상 따뜻한 마음과 각별한 마음으로 저희 문화관광과를 아껴주신 최설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산을 찾는 등산객과 산림 휴양지 관광객의 증가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발간한 전남의 명산이라는 책자를 보면 전라남도 70개 명산 중 우리 군이 5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고흥이 그 정도 하늘과 땅과 바다가 맑다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5개 선정된 산은 팔영산, 마복산, 천등산, 적대봉, 봉래산입니다.
이 외에 봉두산, 두방산, 비봉산 이런 등산객이 찾는 10개의 산이 더 있습니다.
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선호도를 살펴보면 팔영산이 연 10만~12만 명, 적대봉이 7만~10만 명, 기타 마복산, 천등산, 봉래산이 6만~8만, 기타 이 외의 산들이 3만~5만 명, 그렇게 해서

연간 우리 군에 있는 산을 찾는 등산객은 최소 30만에서 최대 40만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찾는 등산객들은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저희 과 자체 조사 통계에 의하면 등산 관광객 중에서 체류형 관광객은 5% 미만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형 관광을 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등산객 증가에 대한 가장 우선한 답은 타 사업을 차제하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깨끗한 산, 편안한 산, 다시 찾고 싶은 산 이런 산으로 가꾸어 나가는 일이고, 살아서 숨쉬는 그런 산을 보전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환경산림과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등산객을 위한 관광 편의시설 사업으로서 현재 최근 준공된 사업으로는 조금 전에 환경산림과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금 생태숲,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천등산 편의시설 및 철쭉 보식사업,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마복산 목재문화 체험장 사업과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대봉 편의시설 사업, 또 능가사 정비사업 등이 있고, 계획 중인 사업으로는 팔영산 편백림을 활용한 치유의숲, 2013년부터 2018년 5년 동안에 걸쳐서 국비와 군비를 합쳐서 280억 원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용역비 14억 원을 들여서 그림을 그려내도록 하고, 아울러서 장계산 편백림도 우주천문과학관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캠핑장, 야영장, 일정규모 이상의 펜션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등산객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등산객뿐만 아니라 우리 군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을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기 실천이 가능한 사업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반드시 관광소득이 창출되고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고흥의 내용으로 산+바다+문화유적+관광지·볼거리·먹거리 등 놀이문화+숙박시설까지를 완벽하게 조합한 그런 관광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고 일부 프로그램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질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과 장세선 의원님의 체류형 관광객 유치방안 설명 때 구체적으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이 선호하는 우리 군의 관광코스는 저희 군에서는 거금소록권, 팔영권, 나로도권 이렇게 세 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금도권의 현재 관광거리는 소록도, 거금대교, 적대봉, 거금 해양경관, 김일 기념체육관, 해수욕장, 우주천문과학관, 고흥만, 풍양유자공원, 녹동상가 등을 들 수가 있고, 향후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사업은 금진항 관광시설, 거북선 계류장, 저희들이 내년 10월에 거북선형 유람선을 띄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상카페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 기타 편의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광특 6억, 도비 6억, 군비 2억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적대봉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적대봉 관광객 불편 해소 차원에서 등산로, 봉수대, 편의시설을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파성재, 동정, 오천 주차장과 화장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금도 관광휴게소 건립에는 10억 원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 과에서 거금관광 랜드마크 사업을 17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게 되고, 제주도 쾌속선 운항에 따른 관광상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사업으로는 금산 폐교를 활용한 숙박시설 확충과 고흥만 8품 9미 맛집, 녹동 먹거리 타운 정비, 전라남도 연극협회 도양 이전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거금도권 관광에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영권입니다.
팔영권 관광권에는 현재 팔영산, 휴양림, 편백림, 능가사, 남열해수욕장, 발사전망대, 다랭이논, 용바위 이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팔영권은 여수-고흥 간 연육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명품 관광지를 꼭 만들겠다는 기본 자세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체류형 관광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명품 해수욕장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7억 8000을 들여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남열 공원을 중심으로 다랭이논 사계절 꽃동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군부대를 이전하고 슬로우시티를 계획에 넣어 있고, 그 다음에 남열 공원은 좀 색다르게 고흥에 어떤 문화마인드를 높일 수 있도록 특색 특징 있는 음악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순천 정원박람회 개막과 맞추어서 4월 중순부터 교회음악회라든가 불가음악회라든가 이런 종교음악회를 개최하고, 산사음악회 등 고품격 음악회를 개최해서 전국에 없는 음악 공원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창만 공원이 내년에 준공이 됩니다. 해창만 공원사업이 준공이 되고 거기에서 고흥 마중길 제1코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를 거쳐서 양사까지가 6.2㎞, 전부 임도를 활용한 마중길로 대체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12월 말에 준공이 되면 만리성이라는 이 성을 저희들이 문화자원으로 활용해서 해창만에서 사도마을-만리성-양사, 거기에서 좀 더 간다면 남열해수욕장, 그다음에 발사전망대-용바위까지 이렇게 해서 1코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들이 마중길은 4개를 만들었습니다. 방금 말한 것이 1코스이고, 2코스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운대사적지 가마터-대전저수지-청운사 이렇게 되어 있고, 전부 임도를 활용한 사업입니다.
3코스는 대서 남당-개명-봉수산 체육공원 이렇게 되어 있고, 4코스는 봉래 우주센터-수원지-편백림 이렇게 왕복을 하게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업으로는 해양 레포츠 기반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투자정책과에서 남열 관광특구가 되면 더 좋은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연간 팔영권에는 약 80만 정도의 관광객이 다녀갑니다.

다음 나로도권입니다.
나로도권에 현재 관광거리는 우주센터, 해상관광유람, 스페이스 캠프, 해수욕장, 동일 갯벌, 도화 발포 역사유적지, 충무사, 왜가리 등 도래지, 그다음에 거문도 뱃길 이런 상품이 있는데 체류형 관광으로 바꾸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은 우주센터 개방을 대비해서 예내항을 정비를 해서 유람선을 띄우고, 봉래·동일을 명품 해수욕장을 만들어서 해수욕장과 해수욕장을 잇는 유람선 뱃길을 열고, 시호도 원시체험을 금년 12월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또 봉래에 있는 특정 섬을 저희들이 민간자본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아주 특색 있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4만 5000평 중에서 2만 7000평을 개인이 다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가 되면 저희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호도는 가장 고통받는 그런 체험으로 인해서 고흥을 각인시키고, 방금 봉래에 어떤 섬은 가장 편안한 관광지로 해서 특히 이 시대의 50~60대가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으로 가꾸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명소에 단편영화를 상영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고흥관광 안내소를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5대 여행사 중에 하나를 유치해서 모든 고흥에 들어오는 관광버스는 관광안내소를 거쳐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반드시 나로도를 갔다 그러면 나로도에서 바로 국도를 타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해창만 공원 관광, 발사전망대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코스 개발을 하고, 금산 소록도를 들어가는 차도 고흥만이라든가 이런 데를 경유해서 나오게끔 그런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팔영산에 오는 관광객들이 식사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과역 거점마을이 준공이 되면 패류전문점을 넣고 저희 관광안내소에도 특색 있는 식당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명품 해수욕장 조성사업이 끝나면 해수욕장과 해수욕장을 잇는 그런 뱃길사업을 해서 유람선을 띄우고, 제주-거문도 간 뱃길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있는 고흥역사문화관, 설화문학관, 분청전시관, 임정양란 역사 재현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관광종사자가 3% 수준입니다. 향후 5년 내 10% 수준이 되어야만 우리 고흥이 활기가 넘치고 젊어지고 살고 싶은 고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고흥군의 관광인지도는 어느 정도이며 개선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을 만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밖에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고흥이 어떤 곳이냐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유구한 전통과 역사, 문화유산의 보고, 천혜의 수려한 산수, 우주과학기술의 수도, 그리고 고품격 삶을 위한 군민의 열정"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고흥 관광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솔직히 제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매년 고흥 관광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관광의 그림이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하는 어떤 질타성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관광 고흥하면 현재 주로 연상되는 것이 소록도, 석류, 유자, 금탑사, 우주센터, 팔영산, 바다회, 해상경관 이 정도인데 조금 전 보고드렸듯이 이 이외에 엄청나게 많은 문화유적 같은 것이 묻혀서 드러나지를 않고 있고 자연관광지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한국관광공사에 자문을 받은 결과가 나왔는데 관광수용태세에 대해서 전국 지자체 평균 정도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미지 또한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가 고흥 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일을 손쉽게 할 수 있는가를 찾아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첫 번째 사업이 10명의 관광객 유치보다는 찾아오는 1명의 관광객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자는 그런 관광수칙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공중화장실이 불결해서 관광 고흥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일이 없도록 화장실 관리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의 특수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차원에서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수시책으로 민박 침구류 청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민박을 운영하시는 업자들이 너무 고령이 되어서 세탁물이나 청소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민박에 베갯잇 세탁비 지원사업을 지원해서 고흥 관광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향후 고흥 관광의 이미지 개선사업으로는 관광홈페이지 개편, 여행 전문가 초청 팸투어 사업, 문화관광해설사 양질의 교육사업, 관광상품 개발사업, 외식업체 및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고흥 관광 이미지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설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흥군의회 **장세선** 의원

■ **질문요지**

① 친환경 쌀 판매실적과 판매 대책은?
② 우리군 특산품인 유자 및 석류 생산현황과 안정적인 판로확보 계획은?
③ 체류형 관광시설 설치 관련 현황 및 계획은?
④ 농업 노동력 감소에 대한 대체 방안은?
⑤ 노령화된 노동력으로 가능한 농업개발 계획은?

□ 질문내용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천재지변이 몇 번이나 닥쳐와도 굴하지 않고 강한 의지로 꿋꿋이 일어서신 우리 고흥 군민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고흥관광의 중심지 금산면 출신 장세선 의원입니다.

제6대 의회가 반을 돌아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군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는 임기를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하신 박금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4, 5기를 열악한 지역여건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오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으로 후손에게 떳떳이 물려줄 고흥군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병종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고흥군의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변함없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이번 군정질문의 기회를 통해서 초선의원답게 지난 의정활동을 냉정히 돌아보며 반성하고자 합니다. 솔직히 저는 지난 2년 반의 의정활동에 만족하기 보다는 아쉬움이 더 많았음을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대체적인 군민은 군의원을 지역민원 해결사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군민이 거부감 없이 소통이 잘되는 군의원 자세로 지역민들의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원만히 처리해 드렸을까?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원을 해결하는 데 힘은 보탰을까?
초지일관 내 몫은 많은 것 같아서 늘 미안하고, 군민의 몫은 적은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으로 의사결정을 했을까?
군민을 위해 무엇을 애쓰고 희생했냐고 물으면 당당히 대답할 수 있는 아픔은 있었을까?
다 부족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초심으로 돌아가서 군민의 대변자와 감시 감독뿐만 아니라, 살기 좋고 행복한 고흥을 만드는 데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고흥군은 여러 가지 군정 성과와 더불어 군민의 삶의 질 차이가 차츰 높아지고 있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예산확보는 중앙부처에 근무한 우리 지역 공직자들과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가져왔으며, 투자유치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동안 불모지나 다름없던 우리 지역에 하나 둘 가능성의 불씨가 지펴지기 시작한 것은 실로 고무적인 상황이라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지역 거주인구의 감소와 급격한 노령화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군 인구 현황을 보면 주민등록상 인구는 7만 1600명이며 실거주 인구는 6만 3000명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65세 이상 인구는 2만 4200명이고, 독거노인은 6800명에 이릅니다.
매년 출산은 100명 정도인데 자연사 하신 분은 1000명이 넘고 있어 인구감소와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실거주 인구 중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3만 8900명으로 60%가 넘어 우리 고흥군이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임을 증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농수산업 노동력의 급격한 감소현상을 묵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농수산업 종사 인구의 50%가 65세 이상이고 10년 후에는 75세 이상에 이르므로 대부분 일손을 놓게 되어 자력 노동력을 통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는 겨우 1만여 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 예로 군내 515개 마을을 계산해 볼 때 한 마을에서 매년 두세 명만 노령화로 일손을 놓게 된다면 1년에 1000명 이상이 농업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최근 매스컴의 기대수명 발표에 의하면 현재 0세 기준 전남의 남자 평균 기대수명은 전국 최하위인 75세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황 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멀지 않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묻겠습니다.
10년 후 우리 고흥 농어촌의 미래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해 볼 때 총인구는 5만 명 이하이고 대부분 70대 이상의 노령화된 농어촌이 될 것이며, 정상적인 노동력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인구가 1만 명 정도의 열악한 군으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농업 노동력에 대한 대체 방안은 강구하고 있는지와 두 번째로, 노령화된 노동력으로 고소득이 가능한 작목 입식은 연구개발 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유통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경제 그리고 유통, 참 쉽지 않다는 것 누구나 이해하실 것입니다.
가장 힘 있는 정부에서 주도한 경제정책도 성공으로 국민에게 각광받기 보다는 실패해서 원성을 들을 때가 많음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대기업에서도 엄청난 유통비와 광고 홍보비를 쓰고도 실패해서 부도난 기업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 대도시 학교의 급식용으로 친환경 쌀 납품처를 확보하는 등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고 충분치 못한 예산으로 대기업도 하기 어려운 유통사업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판단됩니다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쌀 지금까지의 판매실적과 앞으로 적정가격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와 두 번째, 우리 군 특산품으로 장려하고 있는 유자와 석류의 생산 현황과 가공상품화 등 안정적인 판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이 자연이 아름답고 볼거리가 많지만 체류형 관광시설이 부족해서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이 대부분이라 아쉬움이 컸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에서 새롭게 준비한 체류형 관광지 현황과 보완 시설인 거북관광유람선 사업이 국도비 44억을 확보하고도 답보상태에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건조 후 운영 계획이 있으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애정을 갖고 의회를 방문하여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
방송을 통하여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보고계신 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책임지기 위해 같은 배를 탔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참고흥 새마을 실천운동, 그리고 비전 5000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지난날의 낡은 관행과 의식은 모두 털어버리고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앞으로 우량 씨마늘 생산단지 조성, 조사료 생산 특구단지 조성, 실버복지 농어촌 산업 육성, 기능성 블랙농산물 생산 및 산업화 육성 등 획기적이고 희망적인 농업분야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잘 살려 성공한 지자체로 무궁히 발전해 나가길 기원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의 힘도, 꿈만 같이 행복했던 순간도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고 아픈 상처도 변함없이 흐르는 세월 속에 다 지나가리, 다 지나가리라는 진실을 인정하면서 온 군민이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면서 후배와 후손에게 떳떳이 물려줄 꿈이 현실이 되는 고흥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군민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환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농업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장세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노동력 감소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가인구가 최근 10년 동안 급격히 감소되어 농업 농촌의 어려움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주요 통계에 따르면 국내 농가인구는 306만 3000명으로 전년보다 5만 4000여명 줄었으며, 2001년 400만명 선이 붕괴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 97만명이나 감소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흥군 농가인구도 2000년 4만 2800명에서 2010년 2만 9500명으로 약 31%인 1만 3300여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와 같이 농촌은 노령화와 함께 농가인구 감소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른 대처방안으로 첫째, 농업노동력의 감소와 노령화에 대비하여 농업기계화 정착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작규모의 영세성, 경지기반 미정비, 농기계 구입능력 저하 등에 의해 농업기계화 보급에 제약을 받고 있어 농업기계 임대사업, 밭작물 기계화, 맞춤형 농업기계 보급, 면세유류 공급기한 연장 및 대상기종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쌀 농업 중심의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으나 최근 들어 기후변화와 고령화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농업 중심의 정책을 전환하여 밭 경지정리를 통한 밭작물 기반조성과 시설농업 기반정비, 자연환경 생태경관을 고려한 친환경 농법 확대 등 효율적인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잠재 농업 인력이 농업에 종사하도록 전업농과 후계농업경영인을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젊은 인력을 농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영농규모화 사업 확대, 경영컨설팅, 그리고 기술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후계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의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4억 6000만 원으로 트랙터용 마늘파종기 등 53종 288대를 확보하여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적기 영농작업과 농업인 편의제공을 위하여 임대농업기계 현장운반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화작목연구단지를 조성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작목을 선발 보급하기 위해 지역적응성 검토 및 재배기술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프로젝트에 의한 농업기반 확충과 소득작물 발굴, 그리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과 새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노령화된 노동력으로 재배 가능한 품목개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 노동력 감소와 아울러 노령화 문제는 농촌 현장에서 큰 어려움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후계농업인이 제대로 육성되지 않을 경우 농업·농촌의 어려움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0년 현재 전국의 농가인구 고령화 현황은 전체 306만 3000명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97만 3000명으로 3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군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2년 11월 말 현재 총인구 7만 1646명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만 4180명으로 33.8 %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2020년에는 65세 이상 농가인구가 45.6%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갈수록 농업 노동력의 고령화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농업현장의 고령화 대비를 위해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재배와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분야의 대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노령화된 노동력으로 재배 가능한 작목으로는 소득과 노동생산성이 높으면서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적은 작목을 위주로 우리 지역 기후특성을 감안하여 틈새 소득작목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작목으로는 완두콩, 시금치, 부추, 취나물, 찰옥수수, 도라지 등 상대적으로 노령 농업인과 여성 농업인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작목들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작목에 대하여 좀더 체계적인 기술지도와 작부체계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증시험연구 등을 통하여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노동력의 고령화에 따른 농산물 유통분야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유통분야 대책으로 노령 농업인뿐만 아니라 모든 농가에서는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농협이나 고흥군유통(주) 또는 생산자단체 등에서 현지 수집 및 판매를 전담하여 개별농가의 판로를 책임지는 체계가 뒷받침된다면 우리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 향상과 소득증대 및 농산물 안정생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장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 경제유통과장

평소 존경하는 장세선 의원님께서 우리 군 친환경 쌀 생산 및 유통 업무에 지대한 관심으로 많은 지원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쌀 판매 실적과 판매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수도권 친환경 쌀 무상급식 제도의 실시에 따른 행정과 농협이 참여하는 학교급식 지원반을 편성하여 수도권 구청, 교육지원청을 사전에 방문하여 학교급식 실시 계획 등의 정보를 파악해서 품평회를 전략적으로 준비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학교에 329개소에 1173톤의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고흥쌀 이미지 확보와 브랜드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쌀 판매 대책으로는 고품질 친환경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밥맛이 좋은 품종 선택 친환경 재배를 확행토록 행정과 농협이 공동 친환경 쌀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친환경 쌀의 품질관리를 위해 분리 수매, 그리고 별도 저온저장으로 연중 고품질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약잔류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고흥쌀의 소비를 꾸준하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행정과 농협이 참여하는 학교급식 지원반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급 학교를 방문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하자 발생 시 즉시 교환하고 원인을 분석 신속 대응해서 고흥쌀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가치와 실속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수도권 18개 시·구 500여 학교에 우리 군 고품질 친환경 쌀이 학생들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수도권 학교급식 품평회 참가와 학생 학부모 초청 우리 군 친환경 쌀 재배단지 견학 및 체험 등을 실시하는 등 고흥쌀 브랜드화와 학교급식 납품확대는 물론 대량 소비처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군 특산품 유자와 석류 생산현황과 안정적인 판로확보 계획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유자 생산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총 431㏊를 재배하여 금년 생산량이 약 5800여 톤으로 전국 생산량 47%로 생산주산지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유자 가격은 전년도 kg당 2500원에 비해 약간 떨어진 1800~2000원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관내 수출가공업체들은 원재료와 원자재 값 인상으로 경영난이 예상되어 사전에 행정, 농협, 고흥군유자연합회, 고흥유자영농조합법인, 고흥유자친환경연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유자 수급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현재 유자차 가공업체는 약 30개소이며 수출은 11년 기준 5866톤으로 생산량의 약 80% 이상이 수출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유자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자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자는 수목갱신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GAP 인증확대와 생산자단체를 통합해서 계약재배로 우수한 생과가 관내 가공업체로 계통출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가공업체는 품질 기준을 준수하여 고품질 명품유자차를 생산해서 국내외적으로 고흥유자차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수급가격 안정 정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농가의 생산단가 및 일정 소득의 반영과 가공업체의 경영유지 보장 등 소득분배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는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가공업체는 안정된 판로개척을 확보할 수 있어 서로 상생하여 고흥유자가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흥유자는 지리적표시 제14호 및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되어서 지적재산권 확보 및 전국적인 인지도는 높은 편이지만 앞으로도 전문기관에 유자효능 입증을 통한 차별화와 유자음료, 유자소스, 유자효소 등 다양한 제품 개발로 부가가치 창출과 판로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흥 유자생산량은 2000년도를 기점으로 급속히 감소했다가 그간 지속적인 가공시설의 현대화 지원과 고품질 유자차 생산으로 수출시장 확대, 그리고 소비촉진, 판로 개척 등으로 생산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산지 가공산업의 현대화 시설 지원과 유자 및 유자차의 우수성을 다양한 네트워크를 이용 꾸준하게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석류 생산현황과 안정적인 판로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류 생산현황은 면적이 약 132ha에 510톤으로 예년에 비해 초기 작황은 좋았으나 태풍피해로 생산량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유자와 더불어서 석류 또한 전국 생산량 대비 45%를 차지하는 최고 생산 주산지입니다.
금년 가격 형성은 평균 kg당 4200원이었으며, 안정적인 판로확보 대책으로는 고흥석류를 지리적표시 및 품종 등록을 추진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도를 구축하는 한편 산지 가공산업의 현대화 시설 지원과 다양한 제품개발 즉, 목욕용품인 비누·바디샴푸, 식품재료인 소스 · 분말 · 음료 · 주스 · 초콜릿 · 꽃차 · 간장, 미용제품을 통한 품질 고급화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류 또한 유자와 더불어 우수성을 다각적인 방법과 채널 홍보로 파워 브랜드로 정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세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 문화관광과장

장세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체류형 관광시설 현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에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 추진을 하면서 드러난 문제점과 한국관광공사 관광객 수용태세 컨설팅 결과를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센티브 관광객 유치를 하면서 경험담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1박 2식 하면 1만 원씩을 드리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 사업인데 여행사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모집해서 우리 고흥에 옵니다.

그러면 계층별로 다 다르고 또 소양하고 있는 마음이 다 다르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한번에 우리 고흥에 오셔가지고 저녁에 자면서 전혀 밤 문화시설이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연유로 인해서 우리 고흥에 다시 찾아오는 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그룹별로 여행하는 방법으로 패턴을 바꾸었고 두 번째는, 가족끼리 우리 고흥에 여행을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펜션이나 한옥을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부모들은 오셔가지고 고흥에서 3박 4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문화시설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컴퓨터,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 같은 것이 없어가지고 여행을 빨리 접고 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관광공사에서 컨설팅 결과를 봐보면 1차적으로 식당의 구조, 위생, 서비스 이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구조 면에서는 의자라든가 소품, 화장실, 위생에 대해서는 주방·먹거리·보관·식대·위생복, 숟가락 젓가락의 소독시설, 또 서비스 면에서는 고령화·다문화 종사자로 인한 소통 이런 문제가 드러나고, 숙박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올리자면 저희들이 민박업소가 166개 있습니다.

저희들이 A급이라고 해서 관리하는 곳이 한 40여 곳 되는데 우리 민박업소에서 총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500명~3000명 정도 됩니다. 체험시설까지 합한 그런 숫자입니다.
그리고 숙박업소는 62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26개 정도를 A급으로 해서 관리하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1100실, 2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고흥에 와서 관광을 못한 것은 옳지 않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여기에 오는 손님들이 계층별로 또 연령별로, 유형별로 이렇게 오는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숙박업소를 저희들이 제공을 못 합니다.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것이 수도권 관광객은 호텔입니다.
그런 데서 숙박에 관한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대형 스포츠센터라든가 해수탕이라든가 규모에 맞는 찜질방이라든가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목욕시설이 안 되어 있다.
그다음에 지적하는 것이 문화시설 프로그램이 빈약하다.
그리고 제일 문제 삼는 것이 저녁에 오락, 유흥, 야관경관 등의 놀이문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이런 문제점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체류형 관광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시설 현황을 보고하라는 질문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관광시설 완료사업으로는 팔영산 관광벨트 사업을 준공했고, 남열 관광벨트 사업을 준공했고, 오마한센공원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그다음에 거금생태사업, 우주발사전망대 이런 사업을 준공했고, 다음주에 녹동 신항에 녹색디자인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 우도 가족의 섬, 마중길 사업, 해창만 공원화 사업, 금산 시비공원 보강사업, 적대봉 등산로 정비사업, 적대봉 편의시설 사업, 금진항 유람선 선착장 및 편의시설 사업, 선정머드림픽 사업, 마복산 목재문화 체험사업 이 사업을 2013년도에 준공이 되고, 계속사업은 랜드마크사업,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진지도 테마의 섬, 팔영산 편백림 치유의 숲, 분청문화관 건립 및 공원조성사업, 해변관광지 조성사업이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반드시 이 사업은 필요하다 하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 석류단지 조성사업, 항공레포츠 활성화 사업, 폐교를 활용한 숙박시설 확충 방안이라든가 전라남도 연극협회 고흥군 유치 이런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거북선 유람선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국비 22억, 도비 21억 9000만 원, 군비 1000만 원으로 44억 원의 사업입니다.
그동안 이 사업이 의원님 지적대로 표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획을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건조를 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톤수는 350톤, 승선 인원은 한 300명 규모로 해서 설계와 건조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재무과에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이상 장세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흥군의회 **신태균** 의원

■ **질문요지**

① 고흥유통(주) 발전 방향은?

□ 질문내용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집행부 견제와 감시 속에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금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고흥군의 재정자립도 10%, 이렇듯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 모든 예산을 중앙부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중앙부처로부터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개발,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군민 모두가 다함께 잘사는 고흥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역면 출신 신태균 의원입니다.

지금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불과 3~4년 전만 하더라도 국민소득 3만 불, 복지제도가 세계적으로 가장 잘 되어 있다는 나라 스페인, 그리스를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들이 리먼 사태, 즉 국가 파산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경제 성장률을 조사한 이래 2012년 올해 1%에서 1.5% 성장으로 가장 적게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답니다.
이렇듯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어렵다보니 우리나라 대표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이나 포스코 같은 곳에서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 속담에 엎친데 덮친다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기상청에서 기상을 관측한 이래 태풍이 한 달에 세 번씩이나 한반도에 엄청난 피해를 준 사실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 고흥군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발빠른 대처로 인해서 우리 고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서 공공시설물을 복구하는 데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잘못된 농수산물의 보상법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우리 농민들과 어민들의 보상은 쥐꼬리만하게 주었거나 아니면 아예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고흥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50%가 넘는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막대한 태풍피해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가 WTO에 가입을 하고 여러 나라와 FTA 자유무역협정을 함으로 인해서 수입농수산물은 밀물처럼 들어오고, 그래서 가격은 폭락하고 판로는 막히고, 하루가 멀게 농자재 값은 치솟다보니 농민들께서는 생산비마저 건지지 못한 실정에서 태풍마저 크나큰 피해를 주니 우리 농민들의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1차 산업에 종사하는 50%가 넘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군정 최대의 목표인 군민이 모두가 다함께 잘사는 고흥건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군정과 의정은 다함께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우리 농어민들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이 있다면 도대체 무엇인가?
유턴해서 찾아볼 수밖에 없다고 일찍이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 구조는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는 과정에서 두 단계, 세 단계, 심지어는 네 단계, 다섯 단계를 거치다보니 엄청난 거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품을 과감하게 걷어내는 방안, 다시 말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최소한 한 단계 유통만을 거쳐서 거기에 끼여 있는 거품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잉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저는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을 박병종 고흥군수께서도 일찍이 강조하시고 지금부터 6년 전인 2007년 4억 2000만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고흥농수산물 유통주식회사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 이후 2년이 지난 2009년에는 중앙으로부터 산지유통센터 지정을 받아 30억 원의 예산을 받아서 과역에 훌륭한 산지유통센터를 건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흥과 우리 군 관내 농축협, 그리고 생산자 단체들이 모여서 4억 2000만 원의 자본금으로 출발했던 자본금이 71억 65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렇듯 산지유통센터를 좋게 지었고 71억 6500만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고흥농수산물유통센터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슨 혜택을 주고 있는가? 많은 군민들이 의아해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제유통과장께 묻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타 시군에 비해서 못지 않는 유통센터, 못지 않는 자본금을 가지고 출발한 우리 고흥농수산물유통센터가 과연 농민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혜택을 주고 있는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렇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군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소상히 답변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 경제유통과장

경제유통과장 윤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태균 의원님께서 우리 고흥유통주식회사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흥군유통(주) 발전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흥군유통은 의원님 말씀대로 민간 중심의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 2007년도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출범한 고흥군유통은 자체 보유 산지유통시설이 전무하고 우수인력 영입의 한계, 그리고 산지유통의 경험 미흡과 생산자와 협력체계 미흡으로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의 원인이 된 전문인력 확보 한계, 외부경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체계적인 인적쇄신 및 구조조정, 이사회 기능강화를 통한 책임 경영체제 전환과 참여단체의 자발적 협력을 위한 통합마케팅협의회 구성 등 내부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2010년 정부 공모사업으로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비를 확보하여 기반시설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산지유통센터 준공 이후 공동선별, 출하사업이 농가소득과 연계되면서 11월 말 현재 자체 공선출하 실적이 26억 8800만 원으로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생산자 단체를 비롯한 농가소득 증대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입니다.

11월 30일 현재 총매출 실적을 보면 241억 5400만 원, 그중 농산물이 194억 6000만 원, 수산물이 20억 4100만 원, 학교급식 등 기타가 26억 5300만 원이며, 그중에서 원예작물 취급실적은 9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유통 활성화를 위한 그동안 지원현황으로는 2009년 정부의 시군유통회사로 선정되어 정부에서 지원한 경영안정자금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17억 5900만 원을 시설비 및 운영비로 지원하였습니다.

고흥군유통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 방향으로는 아무리 좋은 조직도 농민의 조직화 없이는 수익구조 창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지유통이 활성화되려면 고흥군유통을 중심으로 농협과 생산농가가 자율적으로 참여한 품목별 공선출하회 조직을 구성하여 생산 · 선별 · 출하의 수직계열화를 정립하고 안정적인 수급과 공급체계를 정착시켜서 유통회사의 수익구조의 여건을 마련하고 참여농가의 유통마케팅 교육을 통한 의식전환 및 품목별 조직화, 규모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 농수산물의 시장교섭력을 강화해 농가소득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오이 2000톤, 감자 1000톤, 단호박 1000톤, 참다래 500톤 등을 주요 공선출하 대상 품목으로 육성 규모화, 표준화하여 시장 경쟁력을 키워감으로써 고흥군유통의 수익구조를 마련하는 한편 동강 친환경식품 가공단지와 연계하여 농산물에 대해 고정 납품 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내 가공업체의 안정적인 원물 공급센터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체, 대량소비처 발굴, 품목별 조직화 구성 및 공선출하 시스템 정착 및 학교급식 공급센터로서의 역할과 청정마켓을 온 · 오프라인 판매구축으로 고흥군유통 기능을 분담해 업무의 효율화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산지유통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품복별 조직화, 규모화를 바탕으로 통합마케팅 가치와 수익구조의 실속을 다져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의 많은 애정과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흥군의회 **송우섭** 의원

■ **질문요지**

① 풍양농공단지와 동강 청정식품단지 운영현황 및 활성화 대책은?
② 화력발전소 관련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주무부서 의견은?
③ 민선 4기 투자기업 유치성과와 민선 5기 투자유치 추진상황은?
④ 축산업 현황과 이후 대책은?
⑤ 조사료 지원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은?

□ 질문내용

송우섭 의원입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고 섬기는 마음으로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다 해야겠다는 각오로 임진년 새해를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아쉬움 속에 올 한 해도 보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연말의 시간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항상 군민의 권익보호에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금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세계적 경기 불황속에서도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같이 행복한 고흥군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뛰고 계시는 박병종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흥군의회에 변함없는 마음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임진년 한 해도 무척 애쓰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로 다사다난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금년 여름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밭작물들이 말라 죽을 정도였고 볼라벤, 덴빈, 산바 등 연이은 세 번의 태풍으로 인해 지붕의 기왓장이 날아가고 축사의 지붕과 하우스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또한 바다의 양식장은 초토화 되다시피 하였고 피땀 흘려 가꾸어 놓은 과일들은 땅바닥에 나뒹굴고 푸르름과 황금물결로 넘쳐나야 할 들판의 벼들은 백수 피해와 도복 피해로 인해 20~30%의 수확이 줄어들어 기쁨과 행복함으로 가득 넘쳐야 할 우리 농어민들의 마음은 허전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축산농가는 소 새끼를 낳아 길러봐야 본전도 안 된다고 아우성이니 이러한 일들을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우리 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33.7%를 차지할 만큼 전국 최고수준의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해서 군민복지를 군정의 최우선으로 삼고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1일 전기세 15만 7740원을 못내 전류 제한을 받던 가정에서 촛불 화재가 발생해 할머니와 손자가 사망하는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 고흥 군민이 누구입니까?
우리나라 최남단의 지리적 여건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박병종 군수님의 뚝심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이제 고흥의 모습도 변하고 있습니다.
2년여 전부터 시작한 참고흥 새마을 운동은 이제 나 자신부터 조그마한 질서 하나라도 먼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정신이 몸에 배이기 시작했고 다함께 잘살고 행복해야 한다는 꿈과 희망의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프로젝트도 이제 서서히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수출 3000만 불 돌파라는 값진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옥에 티라고 조금 아쉬운 점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전 5000 추진에 대하여 아직도 일부 군민들의 이해 부족과 공직자들의 정책에 대한 공감과 적극적인 실천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민선 4기에는 36개의 기업유치에 투자금액 1조 7460억 원에 이어, 올 11월 현재 6건에 2633억 원의 투자실현과 17건의 4606억 원의 기업체를 유치하는 등 집행부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이러한 열정과 노력으로 대한민국 기업 환경개선부분 최우수상, 대한민국 지자체 생산성 대상, 암관리 사업평가대회 대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고, 박병종 군수님도 환경 100인 선정, 오마바 미 대통령 봉사상에 이어 지식경영인대상에 선정되는 등 상을 휩쓴 영광의 한 해였습니다. 이는 군민의 머슴이라는 마음자세로 열심히 일했던 결과라 생각해봅니다.

군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럽발 금융위기와 장기적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위기감은 전 지구촌을 미래에 대한 암울함으로 덮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유난히도 기후변화로 인해 힘든 우리 농어촌이 되었습니다.
끝을 모르는 축산가격의 하락과 세계곡물 감소로 인한 사료 값 폭등 등 축산농가들의 시름은 날로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군의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농업축산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축산업의 현황과 대책은 무었이며 둘째, 조사료 생산지원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1차 산업 비율이 50%가 넘는 우리 군으로서는 산업구조의 개편을 통한 지역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경제인구의 유입을 도모하는 문제가 어느 지역보다 시급한 현안인 만큼 투자유치가 고흥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투자의 메리트로 부각시키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개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이 우주항공 중심도시와 친환경 에코도시, 그리고 건강휴양도시 건설에 개발컨셉을 두고 분야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해 온 것은 시기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의 가장 큰 난제인 접근성 문제와 연관기업 부재라는 한계점을 오직 고흥발전을 위한 열정으로 발로 뛰며 마음으로 투자자들을 이끌어 오면서 극복해온 집행부의 모습을 보면서 그 땀과 열정에 대해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 민선 4기부터 투자유치에 대해 다양한 유치활동을 전개하면서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만 군에서 대외적인 홍보까지 해왔던 대형프로젝트는 아직까지

그 추진이 가시화 되지 않고 있으면서 너무 성급하게 홍보만을 앞세운 전시행정이 아니었는가라는 비판의 소리도 듣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설기업의 유치도 실적위주의 유치가 아니라 실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업을 유치해야 할 것이며, 도양일반산단과 미래일반산단개발 그리고 제2의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같은 산업단지 개발도 실수요 기업의 홍보 등 분양성까지 고려하는 내실 있는 추진이 돼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투자정책과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풍양농공단지 운영 현황과 청정식품단지의 분양 운영 현황은 어떠하며, 그리고 입주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어떠한 지원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정식품단지 중 MOU체결 후 입주하지 않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러한 기업은 어디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인근지역에 제2의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시기적인 면과 사업의 구체적 타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 앞으로도 화력발전소의 경우처럼 대형사업 유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경우가 재발생한다면 어떠한 개발과 발전의 논리도 군민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해 11월에 건설의향서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대한 용역이 금년 9월에서야 발주되고 10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나마 용역비도 추진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제공했다고 하니 이렇게 계획적이지 못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 주무과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일을 추진할 것인지 투자유치의 전략적 방향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타 시군의 경우 일반적으로 MOU 대비 투자 실현율은 13%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군에서도 투자유치를 활발히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4기 투자기업유치 성과와 민선 5기 투자유치 추진상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13년은 세계적인 경기불황이 예상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상황도 더욱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고흥군과 의회도 군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19일은 우리나라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셔서 소통과 통합의 정치, 우리 서민들과 농어민을 위한 정책을 진심으로 실현할 수 있는 대통령이 탄생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에게는 식지 않은 따뜻한 가슴이 있지 않습니까!
임진년 한 해 아쉬운 일들 모두 내려 놓으시고 다가오는 2013년 새해에는 군민 가정 가정마다 건강과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 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류효주입니다.
금년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 농정의 현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송우섭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국제적 곡물 생산량 감소와 폭등 등 국내 배합사료 값 상승으로 경영비가 늘어나고 산지소 값 하락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해결방안과 도우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업의 현황과 향후 축산 발전방안에 대한 대책과 조사료 안정대책, 생산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축산업 주요 축종별 사육규모는 타 시군과 비교하면 한우는 3만 7992두로 도내 4위이며, 젖소는 1914두로 5위, 돼지 2만 4300여 두로 12위, 축산농가는 3320호입니다.
이 중 한우 사육기반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물 생산액은 총 1127억 원이며 농가 소득액은 302억 원으로 농림수산산업의 전체 소득액 20% 수준이고 50두 이상 규모화 전업농가는 160호로 번식우 중심의 영세 규모입니다.
한우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혈통등록 관리제도 시행으로 현재 고등 혈통 등록이 타 시군에 비하면 높고 가임 암소비율이 높고, 또 송아지 생산 두수가 많은 반면 우리 군의 고유 브랜드 없이 대부분 도매시장으로 88% 수준 생축으로 출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우고기 1등급 이상 출현율은 85%로 전남 평균 82%, 전국 80%보다 높아 고흥 한우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친환경 축산물인증 무항생제는 330호이며 HACCP 인증은 70호로 도내 최고 수준입니다.

최근 세계적 기후 변화로 곡물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 폭등으로 국내 사료 값 상승과 한우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송아지 생산가격 하락으로 축산 농가의 경영난 가중, 사육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 향후 한우산업 발전계획으로 한우산업 및 사육환경 개선 생산기반 확대, 고흥 한우 브랜드화로 소비시장을 선점하고 축산업 경영비 절감을 통한 경영 안정도모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실천 등 4대 목표를 두고 고흥 한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산·학·관·연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혁신 클러스터 한우사업단을 육성해 나가면서 쇠고기 이력 추적제 사업을 기반으로 수입산 쇠고기와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고급육 생산, 유통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 소득등대를 위한 한우 사육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한우 검정 사업등록에 의한 생산성 향상과 유휴농지 조사료 생산자급화에 역점을 두고 축산업 경영비 절감을 통한 경영안정기반 구축과 친환경 축산물, HACCP인증 확대, 동물 복지형 친환경 축산으로 경제적· 환경적 피해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지금까지 고품질 고흥한우 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친환경 축산업육성 조사료 생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발전 근거를 마련 투·융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축협과, 고흥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고흥 한우사업단을 출범시켜 우수 암소 혈통보존 D/B구축과 고흥 한우 지리적 표시 제83호로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의 조사료 생산 특구로 선정되어 안정적 조사료 생산과 공급체계 구축으로 경영비 절감과 생산농가의 실질적 소득증대와 조사료유통센터를 설립하여 앞으로 조사료 안정적 생산과 수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품질고급화를 위해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실용화재단과 한우개량 종합지원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이전 협약을 통해 한우사육 시범 농가를 선정 사양기술을 접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흥만 간척지 등에서 생산된 양질의 조사료를 활용한 섬유질 배합 사료공장에서 생산된 비육우, 번식우 등 4종의 배합사료를 관내 축산 농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사료구입비 경감과 고급육 생산기반을 확고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한우의 생산 최적지로 지역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유자골 고흥 한우 명품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14~2017년까지 향토산업육성 사업을 신청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지원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 자급화를 위해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 목표이며, 수입산 쇠고기 안전성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면서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으로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산지 소 값이 상승, 농가의 한우 입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공급량이 늘어남에 따라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로 송아지 입식수요가 위축되면서 산지 한우 거래가격 하락과 세계 곡물 생산량 감소와 가격상승으로 국내 사료 값 대폭인상에 따른 축산 농가의 경영난 극복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한우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사료를 자급 확보하여 급여비율을 현행 배합사료와 조사료 비율을 6:4이나 4:6으로 개선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해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군에서는 비전 5000 프로젝트 소득창출과 연계하여 유휴농지 생산화 사업으로 조사료 재배면적을 5800ha까지 파종목표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료 재배 시 타 작물보다 소득이 낮아 경종농가 생산참여도가 낮고 재배면적 확대에 한계가 있고 지역별로 파종필지가 분산되어 농작업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확량 감소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료 생산경영체와 한우사업단 조사료센터 중심 조직을 재정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조사료 맞춤형 집단재배단지 7개소에 16개 법인이 참여하여 400ha 규모로 단지화하여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충하였고 농식품부로부터 고흥만 간척지 600ha을 조사료 생산 특구로 지정받아 사업 지원비 20억 원을 투자하게 되며, 조사료유통센터에서 2013~2017년까지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되고 관내 60개 경영체에서 참여하여 조사료의 안전적 생산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조사료 안정적 생산을 위해 경영체에 조사료 생산장비 13종의 기대지원과 56개 법인에 대해 수확제조 작업비와 종자대, 사일리지 비닐대 등의 사업비 89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 대책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종·축산농가와 조사료 생산경영체가 참여한 조사료생산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한우산업단내 조사료 유통센터를 설립하여 파종 단계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일원화하여 농가에서 생산한 곤포는 조사료센터에서 관내 축산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일괄 수급 처리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번식우 축산 농가를 위한 소포장 조사료 공급시스템을 도입하여 수확기 기상 여건 등에 관계없이 곤포 품질의 규격화와 수분 조절 및 소포장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농식품부에 조사료유통센터 지원 사업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보리수매제 폐지 후 2모작 지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대체 소득작물로 계약 재배하고 축산농가 조사료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맞춤형 조사료 생산단지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종자대 지원을 통해 경종·축산농가의 참여를 유도해서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유통센터에 행정, 축협, 한우협회, 경영체 등이 참여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사료 생산 수급 조절 및 실거래 유통가격을 조정 관내 축산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청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 투자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정책과장 류철주입니다.
먼저 투자유치 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송우섭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송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양농공단지와 고흥청정식품단지 운영 현황 및 활성화 계획, 그리고 제2 농공단지조성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양농공단지는 5만 ㎡의 부지로 지난 1989년에 완공되어 현재 석재가공 3개 기업, 사료제조업 2개 기업, 기타 제조업 2개 기업, 농산물가공유통 1개 기업 등 총 8개 기업이 입주해서 현재 농공단지 전체가 분양 완료된 상태로 종업원 수는 46명에 금년 11월 기준 생산액은 55억여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8개 기업 중 흙누리영농조합법인 등 현재 7개 기업은 정상 가동 중에 있으며 그린바이오텍의 경우 경영권 등으로 인해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으나 경영 정상화나 제3자 매각 등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에 준공한 고흥청정식품단지는 MOU를 체결한 기준으로 96%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죽암F&C 등 5개 기업이 입주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8월부터 투자정책과 직원 1인당 1개 기업유치 운동을 전개하여 최근에 7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여 그중 3개 기업은 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MOU를 체결하였으나 실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건강사랑과 한국GF의 경우에도 선수요 기업이 나타날 경우 해당기업에 양해를 구하고 분양 입주토록 하여 100% 입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입주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고흥유통과 협력하여 계약재배를 통한 원료수급에 안정을 기해 나가고 내년에는 입주자 협의회를 구성한 후 자율운영 체계도 구축해 나가는 가운데 청정식품단지 생산품에 대한 통합 브로셔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식품박람회 참가 등 판로 구축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2 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농공단지는 기 조성 완료한 청정식품단지와 인접한 공단으로서 금년 초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농공단지조성 동의서를 징구하였고 3월 19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신규조성 농공단지 타당성 심사까지 통과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실행 예산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금년 7월에는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민간 추진방식으로 추진하여 가능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농공단지 인허가를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전에 청정식품단지 분양을 마무리하고 제2단지 조성을 본격 추진해 나감으로써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력발전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포스코건설에서 입지 검토 과정에서 우리 군 봉래면을 후보지로 선정하면서부터 우리 군에서는 추진위원회와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었습니다.

그 이후 유치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이 양분됨에 따라 지난 2월 23일 우리 군에서는 환경, 건설의 영향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용역을 추진하여 그 결과를 군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고 대군민 공론화를 통하여 군민 여론수렴 후 유치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었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에는 포스코건설로부터 건설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요청해 왔으나 우리 군에서는 건설타당성 조사용역 실시 여부는 우리 군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회사에서 자체 판단하여 결정하라는 회신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후 포스코건설에서는 6월부터 건설타당성조사를 시작하였고 7월 25일 한국전력거래소에 신규발전설비 건설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화력발전소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연구조사를 위해 8월 중 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연구조사기관, 과업내용, 조사기간 등을 협의 결정하여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에 연구조사 용역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조사 및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토론회 등을 촉박한 일정으로 계획했다는 점과 조사내용이 부실했다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군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선택을 위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는 지난 10월 중앙지 보도자료에서 타 지역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절차임을 인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부터 읍면을 대상으로 시작한 주민설명회는 일부 주민들의 물리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설명회가 파행에 이르게 된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최종적으로 군민의 화합 없이는 어떠한 선택도 상처일 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화력발전소 유치 신청을 않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에는 고흥의 미래와 더 많은 군민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가에 대해 가치 판단의 기준을 두고 서로 대화와 타협이 성숙된 군민의식으로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민선 4기 투자기업유치 성과와 민선 5기 투자유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부터 우리 군은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진흥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크고 작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투자유치 분야에 있어서는 투자의 불모지라는 과거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많은 기업들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인정받고 있으며, 전라남도 투자유치 평가에서 2010년과 2011년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투자유치 현황을 살펴보면 총 59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 중 14건에 1202억 원의 투자를 실현하였으며, 현재 38건의 사업은 21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면서 진행되고 있으며 7건은 기업내부 사정이나 사업성 악화 등의 이유로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를 다시 세분화하면 민선 4기에는 총 36개 기업과 1조 7640억 원의 투자유치를 통하여 7건에 839억 원의 투자를 실현시키고 22건의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7건은 포기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선 5기에는 금년 12월 현재 총 23개 기업에 4869억 원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져 이 중 푸른터와 죽암F&C 등 청정식품단지 입주 기업 그리고 포스코패밀리 연수원 등 7건은 투자를 실현하였으며, 광주교육청 임해수련원 등 16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기존 MOU 체결기업의 조속한 투자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를 위해 기업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실행력 높은 신규 수요기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송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GOHEUNG COUNTY COUNCIL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 고흥군의회

의정백서 議政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제5장
부 록

제1절 의회에서 하는 일
제2절 역대 의회구성 현황
제3절 회의규칙
제4절 의회용어





GOHEUNG COUNTY COUNCIL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 고흥군의회



의정백서 議政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GOHEUNG COUNTY COUNCIL 의정백서



의정백서

議政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議

제5장

제1절 의회에서 하는 일



GOHEUNG COUNTY COUNCIL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 고흥군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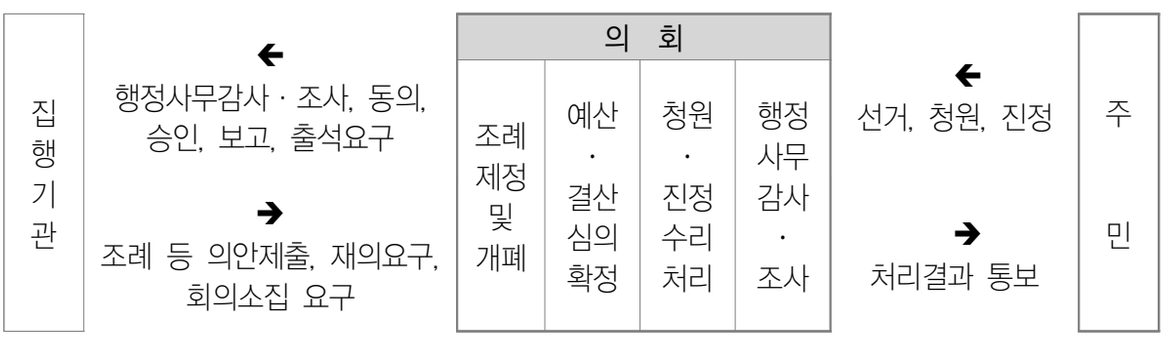
의정백서 議政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제1절 의회에서 하는일

1. 의회의 역할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결산안의 승인과 청원·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 · 개정 · 폐지하며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 동의, 승인을 하고 보고와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주민대표 기능, 행정감시 기능의 역할을 한다.



2. 의회의 권한

○ 의결권

지방의회의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은 자치입법에 관한 권한으로서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폐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재정에 관한 권한으로는 예산을 심의·확정하고 결산을 승인하며,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또한, 기금의 설치 · 운용, 중요재산의 취득 ·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조기관의 증언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회기중 9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는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청원처리권**

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청원을 수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청원의 내용이 재판을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며,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1인 이상의 소개 의원이 있어야 한다.

○ **자율권**

의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법령 및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인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 임시회의 소집, 개회, 휴회, 폐회, 회기의 결정
- 회의규칙 등 의회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 의원의 징계, 자격에 관한 심사
- 의장, 부의장 불신임권

3. 의회의 운영

의회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개회하여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 10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의결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임시회는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15일이내에 소집하며,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기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90일이내이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의 총일수를 추가할 수 있다.

○ **본회의**

군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군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내에 설치되는 기관으로서 회기중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개회하여 안건 등을 심사할 수 있다.

○ **의회운영위원회**

- 구성 : 의회운영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소관부서 : 의회운영과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 **총무위원회**

- 구성 : 총무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소관부서 : 기획실, 주민복지과, 행정과, 재무과, 투자정책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보건소, 평생학습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 **산업건설위원회**

- 구성 : 산업건설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소관부서 : 경제유통과, 환경산림과,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우주항공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거나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되는 경우 회부된 안건이 철회되거나 그 안건이 실현되는 등 심사의 대상이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자동 소멸된다. 대표적인 예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다.

4. 의안처리 절차

○ **일반의안**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 발의는 군수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 소관 위원회에서 발의하며, 의안에는 근거 법규, 발의자와 찬성자의 서명,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조문의 대비(조례의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한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토론을 통해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의결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한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발 의	▶	본회의 보고	▶	회 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적의원 1/5 또는 10인이상, 소관위원회		제출의안 보고 (폐회, 휴회중은 생략가능)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가능

▼

상임(특별) 위원회

설 명·질 의·토 론·의 결
제안자의 취지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토론을 통해 종합적인 심사후 의결하여 본회의에 심사 보고

▼

본 회 의

위원장 보고	토 론	의 결	이 송
심사경과와 심사결과 보고	질의, 답변, 찬성 및 반대의견 발언 (생략가능)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일로부터 조례안은 5일이내 예산안은 3일이내 집행기관으로 이송

○ 예산안과 결산안

의회에 예산안 및 결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군수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비심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예산안 및 결산안에 대해 종합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다.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예산안 처리절차

승인요구(군수)

▼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예비심사(상임위원회)

▼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회는 군수의 동의없이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중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군수는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 예산안을작성하여 제출한다.

심의 의결(본회의)

▼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송

확 정

결산안 승인과정

승인 요구(군수)

▼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 군의회에 승인요구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심의의결 · 승인(본회의)

▼ 결산승인은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군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 행정사무감사 및 청원처리

행정사무감사 절차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본회의)

▼ 정례회 회기중 9일 이내

감사계획서 작성(상임위원회)

▼ 감사일정 및 감사요령 포함

감사계획서 승인(본회의)

▼ 지체없이 군수에게 승인사항 통보

감사실시(본회의,상임위원회)

▼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 필요시 현지조사 사생활 침해, 재판간섭, 수사중인 사건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서는 안됨

감사실시 보고 및 채택(상임위원회)

▼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 본회의 의결로 감사결과 처리

시정요구↑ ↓ 처리결과 보고

집행기관

청원처리 절차

청원서 제출(주민)

▼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 소개의원 의견서를 첨부

청원서 수리

▼ 재판에 간섭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청원은 불수리

청원서 심사(소관 위원회)

▼ 소개의원은 위원회 또는 본회의 요구시 청원의 취지 설명 불수리시 청원인에게 결과 통보

청원서 채택(본회의)

▼ 본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채택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 첨부 집행부에 이송 군수는 의회에 처리결과 보고

심의·의결 승인(본회의)

▼ 청원인에게 처리결과 통지



의정백서

議政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제5장

제2절 역대 의회구성 현황

1. 의장단
2. 위원회
3.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GOHEUNG COUNTY COUNCIL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 고흥군의회

의정백서 議政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제2절 역대의회 구성 현황

1. 의 장 단

1) 의 장

연번	기 간	성 명	취임당시 연령	의원 선수
1	1991. 4. 15 ~ 1993. 4. 14	박채주	51	초선
2	1993. 4. 15 ~ 1995. 6. 30	박동래	57	〃
3	1995. 7. 1 ~ 1997. 1. 6	송복조	51	2선
4	1997. 1. 7 ~ 1998. 6. 30	김동인	51	〃
5	1998. 7. 1 ~ 2000. 7. 9	김동인	52	3선
6	2000. 7. 10 ~ 2000. 12. 10	장귀석	58	2선
7	2000. 12. 11 ~ 2002. 6. 30	류준상	48	3선
8	2002. 7. 10 ~ 2004. 6. 30	김성철	50	2선
9	2004. 7. 19 ~ 2006. 1. 11	신광주	57	2선
10	2006. 1. 19 ~ 2006. 6. 30	송경양	53	초선
11	2006. 7. 5 ~ 2008. 6. 30	송경석	52	2선
12	2008. 7. 1 ~ 2010. 4. 16	함채규	63	2선
13	2010. 7. 7 ~ 2012. 6. 30	신태균	56	3선
14	2012. 7. 1 ~ 2014. 6. 30	박금래	61	3선

2) 부 의 장

연번	기 간	성 명	취임당시 연령	의원 선수
1	1991. 4. 15 ~ 1993. 4. 14	유택근	44	초선
2	1993. 4. 15 ~ 1995. 6. 30	김동인	47	〃
3	1995. 7. 1 ~ 1997. 1. 6	〃	49	2선
4	1997. 1. 7 ~ 1998. 6. 30	고임준	53	〃
5	1998. 7. 1 ~ 2000. 7. 9	류준상	46	3선
6	2000. 7. 10 ~ 2002. 6. 30	송대석	64	초선
7	2002. 7. 10 ~ 2004. 6. 30	신광주	55	2선
8	2004. 7. 19 ~ 2006. 1. 11	곽상률	52	2선
9	2006. 1. 19 ~ 2006. 6. 30	송재효	59	2선
10	2009. 7. 5 ~ 2008. 6. 30	이재후	52	2선
11	2008. 7. 1 ~ 2010. 6. 30	김옥래	61	2선
12	2010. 7. 7 ~ 2012. 6. 30	박금래	61	3선
13	2012. 7. 1 ~ 2014. 6. 30	배기홍	63	3선

2. 위 원 회

1) 상임위원회

구성시기	상임위원회 수	상임위원회 명칭
1992년 4월	3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1993년 4월	3	〃
1995년 7월	3	〃
1997년 1월	3	〃
1998년 7월	3	〃
2000년 7월	3	〃
2002년 7월	3	〃
2003년 12월	3	〃
2004년 7월	3	〃
2006년 7월	3	〃
2008년 7월	3	〃
2010년 7월	3	〃
2012년 7월	3	〃
2014년 7월	3	〃

2) 상임위원장

성 명	상임위원회명	재 임 기 간	취임당시연령	의원 선수
김동인	의회운영위원회	1992. 4. 27~1993. 4. 14	45	초 선
송기복	총 무 위 원 회	〃	61	〃
김남규	산업건설위원회	〃	63	〃
송기복	의회운영위원회	1993. 4. 15~1995. 6. 30	63	〃
고임준	총 무 위 원 회	〃	49	〃
신윤식	산업건설위원회	〃	47	〃
박채주	의회운영위원회	1995. 7. 1~1997. 6. 30	55	2 선
류준상	총 무 위 원 회	〃	45	〃
장귀석	산업건설위원회	〃	53	초 선
신광주	의회운영위원회	1997. 7. 1~1998. 6. 30	50	〃
박창규	총 무 위 원 회	〃	64	〃
김성철	산업건설위원회	〃	45	〃
장귀석	의회운영위원회	1998. 7. 1~2000. 7. 9	56	2 선
박동래	총 무 위 원 회	〃	62	〃
박채주	산업건설위원회	〃	58	3 선
윤경식	의회운영위원회	2000. 7. 10~2002. 6. 30	53	초 선
박채주	총 무 위 원 회	〃	60	3 선
박동래	산업건설위원회	〃	64	2 선
신태균	의회운영위원회	2002. 7. 10~2004. 6. 30	48	초 선
배기홍	총 무 위 원 회	〃	50	〃
송경량	산업건설위원회	〃	49	〃
김옥래	의회운영위원회	2004. 7. 19~2006. 6. 30	56	〃
박금래	총 무 위 원 회	〃	55	〃
송경석	산업건설위원회	〃	52	〃
김영길	의회운영위원회	2006. 7. 6~2008. 6. 30	51	2 선
신태균	총무위원회	〃	52	〃
김주식	산업건설위원회	〃	52	초 선
김영길	의회운영위원회	2008. 7. 1~2010. 6. 30	53	2 선
김주식	총무위원회	〃	54	초 선
김의규	산업건설위원회	〃	49	〃
김주식	의회운영위원회	2010. 7. 7~2012. 6. 30	56	2선
송경양	총무위원회	〃	58	〃
김의규	산업건설위원회	〃	51	〃
송우섭	의회운영위원회	2012. 7. 1~2014. 6. 30	53	
장세선	총무위원회	〃	60	
송경양	산업건설위원회	〃	58	

3.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1) 초대 의회

○ 임　기 : 1991. 4. 15 ~ 1995. 6. 30(4년)
○ 전반기 : 1991. 4. 15 ~ 1993. 4. 14
- 의　장 : 박 채 주
- 부의장 : 유 택 근
- 상임위원회 (별첨2)

○ 후반기 : 1993. 4. 15 ~ 1995. 6. 30
- 의　장 : 박 동 래
- 부의장 : 김 동 인
- 상임위원회 (별첨2)

※ 의원현황(별첨1)

2) 제2대 의회

○ 임　기 : 1995. 7. 1 ~ 1998. 6. 30(3년)
○ 전반기 : 1995. 7. 1 ~ 1997. 1. 6
- 의　장 : 송 복 조
- 부의장 : 김 동 인
- 상임위원회 (별첨4)

○ 후반기 : 1997. 1. 7 ~ 1998. 6. 30
- 의　장 : 김 동 인
- 부의장 : 고 임 준
- 상임위원회 (별첨4)

※ 의원현황(별첨3)

3) 제3대 의회

○ 임　기 : 1998. 7. 1 ~ 2002. 6. 30(4년)
○ 전반기 : 1998. 7. 1 ~ 2000. 7. 9
- 의　장 : 김 동 인
- 부의장 : 류 준 상
- 상임위원회 (별첨6)

○ 후반기 : 2000. 7. 1 ~ 2002. 6. 30

〈1기〉 2000. 7. 10 ~ 12. 10
- 의　장 : 장 귀 석
- 부의장 : 송 대 석
- 상임위원회 (별첨6)

〈2기〉 2000. 12. 11 ~ 2002. 6. 30
- 의　장 : 류 준 상
- 부의장 : 송 대 석
- 상임위원회 (별첨6)

※ 의원현황(별첨5)

4) 제4대 의회

○ 임　기 : 2002. 7. 1 ~ 2006. 6. 30(4년)
○ 전반기 : 2002. 7. 10 ~ 2004. 6. 30
- 의　장 : 김성철
- 부의장 : 신광주
- 상임위원회(별첨8)

○ 후반기 : 2004. 7. 19 ~ 2006. 6. 30

〈1기〉 2004. 7. 19 ~ 2006. 1. 11
- 의　장 : 신광주
- 부의장 : 곽상률
- 상임위원회(별첨8)

〈2기〉 2006. 1. 19 ~ 2006. 6. 30
- 의　장 : 송경량
- 부의장 : 송재효
- 상임위원회(별첨8)

※ 의원현황(별첨7)

5) 제5대 의회

○ 임　기 : 2006. 7. 1 ~ 2010. 6. 30(4년)
○ 전반기 : 2006. 7. 1 ~ 2008. 6. 30
- 의　장 : 송경석
- 부의장 : 이재후
- 상임위원회(별첨10)

○ 후반기 : 2008. 7. 1 ~ 2010. 6. 30
- 의　장 : 함채규
- 부의장 : 김옥래
- 상임위원회(별첨10)

※ 의원현황(별첨 9)

6) 제6대 의회

○ 임　기 : 2010. 7. 1 ~ 2014. 6. 30(4년)
○ 전반기 : 2010. 7. 1 ~ 2012. 6. 30
- 의　장 : 신태균
- 부의장 : 박금래
- 상임위원회(별첨12)

○ 후반기 : 2012. 7. 1 ~ 2014. 6. 30
- 의　장 : 박금래
- 부의장 : 배기홍
- 상임위원회(별첨12)

※ 의원현황(별첨 11)

〈별첨 1〉

■ 초대의원 현황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직 업	주요경력
			자택	H.P		
고흥읍	이경수	38. 8. 2			상업	•중학교 교사(5년) •반핵자문위원
도양읍	유택근	47. 7. 3			상업	•도양 청년회의소 회장 •전남지구청년회의소 상무위원 •전반기 부의장
풍양면	박동래	36. 4. 6			토건업	•풍양중 육성회장 •고흥군체육회 이사 •화성건설 이사
도덕면	신윤식	46. 10. 23	843-0765	010-3604-9090	농업	•흥진기업 이사 •고흥군 체육회 이사 •향토예비군 중대장
금산면	김남규	28. 11. 26			농업	•경찰공무원(경위)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고흥군 경우회장
도화면	김동인	46. 4. 23	833-0123	019-619-0123	자영업	•도화중 육성회장 •도화교회 장로(현) •전반기 운영위원장
포두면	류준상	52. 10. 27	835-8708	010-2665-2089	토건업	•고흥군 체육회 이사 •동창건설 이사(현)
봉래면	고임준	44. 12. 12			수산물 중개업	•봉래중 육성회장 •봉래국교 후원회장
동일면	최형문	42. 10. 8	835-0387	010-6397-2115	농업	•백양국교 후원회장 •봉래종합고교 이사
점암면	박채주	40. 12. 10	833-9400	010-3636-9401	농업	•점암면자율방법협의회장 •점암면체육회상임부회장 •전반기 의장
영남면	김선규	27. 5. 30	832-8852	019-9181-8852	농업	•고흥군 향토사 연구위원 •고흥군수협 총대 6년
과역면	송복조	44. 1. 3	833-5226	010-3623-5226	운수업	•고흥군번영회 부회장 •과역면 번영회장 •과역택시(유한) 대표이사
남양면	박용호	28. 5. 28			농업	•고흥군 산림조합장(8년) •고흥군 교육위원회 위원 •남양면의회 의장 2년
동강면	송기복	30. 1. 12			농업	•초등학교 교사 4년 •동강면 총무계장 •전반기 총무위원장
대서면	송용현	39. 5. 15	833-3577	010-7622-3577	농업	•대서중 육성회 부회장 •대서중 이사 및 감사
두원면	정영표	38. 1. 6	835-4010	010-3632-4010	농업	•육군 대위(전상) 퇴역 •고흥군 보훈회장(10년) •두원면 번영회장

〈별첨 2〉

■ 초대 전반기 의회구성

의 장 단

· 의장 박 채 주 · 부의장 유 택 근

상 임 위 원 회

위원회별	위원장	간 사	위 원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인	류준상	박동래, 최형문, 송복조
총 무 위 원 회	송기복	박동래	신윤식, 고임준, 박용호, 송용현, 정영표
산업건설위원회	김남규	송복조	이경수, 유택근, 류준상, 최형문, 김선규

■ 초대 후반기 의회구성

의 장 단

· 의장 박 동 래 · 부의장 김 동 인

상 임 위 원 회

위원회별	위원장	간 사	위 원
의회운영위원회	송기복	정영표	김선규, 최형문, 송용현
총 무 위 원 회	고임준	김선규	김남규, 김동인, 박채주, 박용호, 송기복
산업건설위원회	신윤식	최형문	이경수, 유택근, 류준상, 송복조, 송용현

〈별첨 3〉

■ 제2대 의원 현황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직 업	주요경력
			자택	H.P		
고흥읍	김복수	31. 3. 29	835-2728	010-6222-8090	수산업	•고흥군 수협조합장 •고흥군 번영회장
도양읍	김성철	52. 2. 16		010-3576-9106	토건업	•도양읍 체육회 부회장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고흥군재향군인회부회장
풍양면	이규홍	37.10. 30			농업	•풍양농협 이사 •고흥군농지개량조합이사 •스트롱케미칼(주)회장
도덕면	신윤식	46. 10. 23	843-0765	010-3604-9090	농업	•흥진기업 이사 •고흥군 체육회 이사 •향토예비군 중대장
금산면	신광주	47. 8. 18	844-8700	010-2107-2023	석산업	•고흥군 체육회 이사 •금산면 금의회장 •청송석재사업 대표
도화면	김동인	46. 7. 23	833-0123	019-619-0123	자영업	•도화중 육성회장 •도화교회 장로(현) •제2대 후반기 의장
포두면	류준상	52. 10. 27	835-8708	010-2665-2089	토건업	•포두중 육성회장 •제2대전반기총무위원장 •고흥군 체육회 이사
봉래면	고임준	44. 12. 12			수산물 중개업	•봉래JC회장 •봉래국교 후원회장
동일면	정종열	52. 5. 28	833-7454	010-4933-0741	토목업	•자유총연맹동일면위원장 •고흥군 체육회 이사 •백양중학교 육성회장
점암면	박채주	40. 12. 10	833-9400	010-3636-9401	농업	•점암면자율방법협의회장 •점암면체육회상임부회장 •초대 전반기 의장
영남면	장귀석	42. 4. 20	834-7755	010-9320-0965	한약업	•제2대전반기산업건설위원장 •새마을운동고흥지회장 •전라남도한약협회부회장
과역면	송복조	44. 1. 3	833-5226	010-3623-5226	운수업	•고흥군번영회부회장 •과역면 번영회장 •제2대 전반기 의장
남양면	송진수	44. 9. 17	833-1349	010-4464-7799	농업	•남양면느타리버섯작목회장 •고흥군민주발전협의회장
동강면	송재효	47. 12. 24	833-2248	010-3638-2248	농업	•동강 새마을금고 이사 •동강국교 후원회장 •동강면지방자치위원장
대서면	송용현	39. 5. 15	833-3577	010-7622-3577	농업	•대서중 육성회 부회장 •대서중 이사 및 감사
두원면	박창규	33. 1. 20	835-4028		농업	•두원면 부면장 •두원면지방자치위원장

〈별첨 4〉

■ 제2대 전반기 의회구성

의 장 단

· 의장 송 복 조 · 부의장 김 동 인

상 임 위 원 회

위원회별	위원장	간 사	위 원
의회운영위원회	박채주	송재효	박창규, 이규홍, 김성철
총 무 위 원 회	류준상	박창규	박채주, 김동인, 송용현, 송재효, 송진수, 정종렬
산업건설위원회	장귀석	김성철	김복수, 이규홍, 고임준, 신윤식, 신광주

■ 제2대 후반기 의회구성

의 장 단

· 의장 김 동 인 · 부의장 고 임 준

상 임 위 원 회

위원회별	위원장	간 사	위 원
의회운영위원회	신광주	장귀석	이규홍, 신윤식, 송용현
총 무 위 원 회	박창규	이규홍	신윤식, 고임준, 정종렬, 장귀석, 송복조, 송재효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철	신광주	김복수, 류준상, 박채주, 송진수, 송용현

〈별첨 5〉

■ 제3대 의원 현황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직 업	주 요 경 력
			자 택	H.P		
고흥읍	김복수	31. 3. 29	835-2728	010-6222-8090	수산업	•고흥군 수협조합장 •고흥군 번영회장
도양읍	유택근	47. 7. 3			상 업	•초대 전반기 부의장 •녹동초등학교 총동문회장
풍양면	박동래	36. 4. 6			토목업	•초대 후반기 의장 •제3대 전반기 총무위원장, 후반기 산건위원장
도덕면	정순열	52. 5. 26	842-1213	010-3607-3090	건설업	•순천 제일대학 기성회 이사 •전문건설협회 전남장학회 이사
금산면	김수경	46. 6. 27	843-6969	010-3626-0888	농 업	•금산면사무소 근무(23년) •금산면 번영회장
도화면	김동인	46. 7. 23	833-0123	019-619-0123	자영업	•도화교회 장로 •제2대 후반기 의장 •제3대 전반기 의장,
포두면	류준상	52. 10. 27	833-8708	010-2665-2089	토건업	•제2대 전반기 총무위원장 •제3대 전반기 부의장, 후반기 의장(2기)
봉래면	윤경식	47. 3. 15	833-6497	010-7123-6497	수산업	•지방공무원 근무(10년) •봉래면 번영회장 •제3대 의회운영위원장
동일면	곽상율	52. 5. 8	835-7236	010-3666-7056	자영업	•백양초등학교 후원회장 •면 체육회 이사
점암면	박채주	40. 12. 10	833-9400	010-3636-9401	농 업	•초대 전반기 의장 •제3대 전반기 산건위원장, 후반기 총무위원장
영남면	장귀석	42. 4. 20	834-7755	010-9320-0965	한약업	•전남 한약협회 전남도지부장 •제2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제3대 후반기 의장(1기)
과역면	송복조	44. 1. 3	833-5226	010-3623-5226	운수업	•제2대 전반기 의장 •면 번영회장
남양면	송진수	44. 9. 17	833-1349	010-4464-7799	농 업	•남양면 느타리버섯 작목회장 •제2대 의원
동강면	송충섭	48. 1. 16	835-4842	011-616-2744	회사원	•동강면사무소근무(20년) •현대산업(주)관리이사
대서면	송대석	36. 1. 21			농 업	•대서면 의용소방대장(10년) •대서면새마을금고 이사장(10년) •제3대 후반기 부의장
두원면	송기웅	58. 5. 10	835-5544	010-9448-0106	농 업	•두원우체국업무계장(12년) •두원중학교 후원회장

〈별첨 6〉

■ 제3대 전반기 의회구성

의 장 단

· 의장 김 동 인 · 부의장 류 준 상

상 임 위 원 회

위원회별	위원장	간 사	위 원
의회운영위원회	장귀석	송기웅	정순열, 윤경식, 송충섭
총 무 위 원 회	박동래	정순열	류준상, 곽상율, 장귀석, 송진수, 송대석, 송기웅
산업건설위원회	박채주	윤경식	김복수, 유택근, 김수경, 송복조, 송충섭

■ 제3대 후반기 의회구성 (제1기)

의 장 단

· 의장 장 귀 석 · 부의장 송 대 석

상 임 위 원 회

위원회별	위원장	간 사	위 원
의회운영위원회	윤경식	정순열	유택근, 곽상율, 송진수
총 무 위 원 회	박채주	유택근	김복수, 윤경식, 송복조, 송진수, 송충섭, 송대석
산업건설위원회	박동래	곽상율	정순열, 김수경, 김동인, 류준상, 송기웅

■ 제3대 후반기 의회구성 (제2기)

의 장 단

· 의장 류 준 상 · 부의장 송 대 석

상 임 위 원 회

위원회별	위원장	간 사	위 원
의회운영위원회	윤경식	정순열	유택근, 곽상율, 송진수
총 무 위 원 회	박채주	유택근	김복수, 윤경식, 송복조, 송진수, 송충섭, 송대석
산업건설위원회	박동래	곽상율	정순열, 김수경, 김동인, 장귀석, 송기웅

〈별첨 7〉

■ 제4대 의원 현황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직 업	주 요 경 력
			자 택	H.P		
고흥읍	배기홍	52. 2. 4	834-7000	010-4615-4040	자영업	•고흥군생활체육협의회장 •고흥군의용소방대연합회장
도양읍	김성철	52. 2. 16		010-3576-9106	자영업	•고흥항운노동조합위원장(18년) •제2대 고흥군의회 의원
풍양면	김영길	55. 4. 23	832-5151	010-9924-9930	농 업	•풍양농협 감사(4년) •풍양중학교 운영위원장
도덕면	박금래	49. 9. 26	843-3636	010-3636-2328	자영업	•도덕중앙초등학교교사재직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범죄예방 위원
금산면	신광주	47. 8. 18	844-8700	010-2107-2023	광산업	•금산면 번영회장 •제2대 고흥군의회 의원
도화면	함채규	45. 9. 15	832-6968	010-3627-4968	자영업	•고흥군 태권도 협회장 •재향군인회 고흥군회장
포두면	송경양	53. 7. 3	834-6449	010-3897-6449	축산업	•포두면 농업경영인 회장 •포두 한위회 작목회장
봉래면	명재탁	60. 7. 21	832-4060	010-3626-0800	건설업	•법무부 범죄예방 선도위원 •고흥체육회 이사
	고철웅	60. 5. 10	833-6532	011-628-6532	상 업	•나로도청년회의소제20대회장 •삼영수산 대표
동일면	곽상률	52. 5. 8	833-7056	010-3666-7056	자영업	•동일면 체육회 이사 •제3대 고흥군의회 의원
점암면	송경석	54. 1. 24	834-1074	010-3604-3746	건설업	•점암초등학교운영위원장(1,2,3대) •고흥군 축구협회회장
영남면	김옥래	48. 9. 27	832-8887	010-3608-8878	농어업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범죄예방 위원 •협동영어법인 대표
과역면	신태균	54. 2. 08	832-2494	010-3622-6005	건설업	•과역중학교 운영위원장 •고흥군 배구협회 회장
남양면	이재후	54. 7. 22	832-1580	010-3633-1580	농 업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범죄예방 위원 •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동강면	박용주	39. 1. 20	833-3678	011-635-3662	농 업	•농촌지도직공무원재직(33년) •새천년민주당 21세기 국정자문위원
	송재효	47. 12. 24	833-2248	010-3638-2248	농 업	•동강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제2대 고흥군의회 의원
대서면	송영수	57. 1. 6	833-3239	010-3624-3239	자영업	•대서라이온스 회장 •대서면 농업경영인회 회장
두원면	류중재	40. 2. 12	835-4290	010-3616-4290	농 업	•지방공무원 재직(27년) •제19대 두원면장

〈별첨 8〉

■ 제4대 전반기 의회구성

의 장 단

· 의장 김 성 철 · 부의장 신 광 주

상 임 위 원 회(1기)

위원회별	위원장	간 사	위 원
의회운영위원회	신 태 균	박 금 래	명재탁, 송경석, 박용주
총 무 위 원 회	배 기 홍	송경석	김영길, 박금래, 신광주, 함채규, 신태균, 류중재
산업건설위원회	송 경 양	명 재 탁	곽상률, 김옥래, 이재후, 박용주, 송영수

상 임 위 원 회(2기)

위원회별	위원장	간 사	위 원
의회운영위원회	신 태 균	박 금 래	송경석, 이재후, 송영수
총 무 위 원 회	배 기 홍	송 경 석	김영길, 박금래, 신광주, 함채규, 신태균, 류중재
산업건설위원회	송 경 양	이 재 후	고철웅, 곽상률, 김옥래, 송재효, 송영수

■ 제4대 후반기 의회구성 (제1기)

의 장 단

· 의장 신 광 주 · 부의장 곽 상 률

상 임 위 원 회

위원회별	위원장	간 사	위 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옥래	이재후	김영길, 송영수, 류중재
총 무 위 원 회	박금래	송영수	김성철, 송경양, 곽상률, 고철웅, 김옥래, 이재후
산업건설위원회	송경석	김영길	배기홍, 함채규, 신태균, 송재효, 류중재

■ 제4대 후반기 의회구성 (제2기)

의 장 단

· 의장 송 경 양 · 부의장 송 재 효

상 임 위 원 회

위원회별	위원장	간 사	위 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옥래	이재후	김영길, 송영수, 류중재
총 무 위 원 회	박금래	송영수	김성철, 고철웅, 김옥래, 이재후
산업건설위원회	송경석	김영길	배기홍, 함채규, 신태균, 송재효, 류중재

〈별첨 9〉

■ 제5대 의원 현황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요 경 력
			자 택	H·P	
고흥가	배기홍	52. 2. 4	834-7000	010-4615-4040	•고흥군생활체육협의회장 •고흥군의용소방대연합회장 ■ 4대의회전반기총무위원장
"	송경석	54. 1. 24	834-1074	010-3604-3746	•전남축구협회부회장 •고흥군축구협회장 •5대의회전반기의장
"	김옥래	48. 9. 27	832-8887	011-608-8878	•고흥군수협이사 •4대의회후반기운영위원장 •5대의회후반기부의장
고흥나	이재후	54. 7. 22	832-1580	010-3633-1580	•고흥군재향군인회부회장 •팔영농협,산림조합감사 •5대의회전반기부의장
"	신태균	54. 2. 08	832-2494	010-3622-6005	•과역면체육회상임부회장 •4대의회전반기운영위원장 •5대의회전반기총무위원장
고흥다	김영길	55. 4. 23	832-5131	010-9924-9930	•풍양면체육회상임부회장 •풍양중학교 운영위원장 •5대의회전후반기운영위원장
"	김주식	54. 10. 09	844-2918	010-3611-3435	•고흥항운노동조합위원장 •5대의회전반기산업건설위원장 •5대의회후반기총무위원장
"	박금래	49. 9. 26	843-3636	010-3636-2328	•도양읍번영회부회장 •4대의회후반기총무위원장 •5대의회전반기예결위원장
고흥라	함채규	45. 9. 15	832-6968	010-3627-4968	•대한태권도협회고흥군회장 •재향군인회 고흥군회장 •5대의회후반기의장
"	김의규	59. 7. 17	832-7458	010-3645-7458	•고흥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도화면체육회상임부회장 •5대의회후반기산업건설위원장
비례대표	차성자	42. 6. 14	833-4363	010-3688-3205	•국제로타리도화클럽회원
"	서향자	46. 3. 21	833-4993	011-621-2068	•전국주부교실고흥군지회장 •고흥군여성단체협의회장

〈별첨 10〉

■ 제5대 전반기 의회구성

의 장 단

· 의장 송 경 석 · 부의장 이 재 후

상 임 위 원 회

위원회별	위원장	간 사	위 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서향자	박금래, 김의규, 차성자
총 무 위 원 회	신태균	김의규	배기홍, 이재후, 김영길, 서향자
산업건설위원회	김주식	차성자	김옥래, 박금래, 함채규

■ 제5대 후반기 의회구성

의 장 단

· 의장 함 채 규 · 부의장 김 옥 래

상 임 위 원 회

위원회별	위원장	간 사	위 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박금래	이재후, 차성자, 서향자
총 무 위 원 회	김주식	차성자	송경석, 김옥래, 이재후, 박금래
산업건설위원회	김의규	서향자	배기홍, 신태균, 김영길

〈별첨 11〉

■ 제6대 의원 현황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요 경 력
			자 택	H·P	
고흥가	배기홍	52. 2. 4	834-7000	010-4615-4040	•고흥군생활체육협의회장 •고흥군의용소방대연합회장 •4대의회전반기총무위원장
"	김옥래	48. 9. 27	832-8887	010-36087-8878	•고흥군수협이사 •4대의회후반기운영위원장 •5대의회후반기부의장
"	송경석	54. 1. 24	834-1074	010-3604-3746	•전남축구협회부회장 •고흥군축구협회장 •5대의회전반기의장
고흥나	송우섭	60. 7. 7.	833-2228	010-2626-7789	•고흥군체육회이사 •민주통합당고흥보성지역 위원회사무국장 •6대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신태균	54. 2. 08	832-2494	010-3622-6005	•과역면체육회상임부회장 •4대의회전반기운영위원장 •5대의회전반기총무위원장
고흥다	박금래	49. 9. 26	843-3636	010-3636-2328	•도양읍번영회부회장 •4대의회후반기총무위원장 •5대의회전반기예결위원장
"	김주식	54. 10. 09	844-2918	010-3611-3435	•고흥항운노동조합위원장 •5대의회전반기산업건설위원장 •5대의회후반기총무위원장
"	장세선	53. 12. 1.	843-9128	010-5347-5288	•거금도농협장(3선) •농협중앙회경제사업발전위원 •고흥군2011회계연도결산검사 대표위원
고흥라	김의규	59. 7. 17	832-7458	010-3645-7458	•고흥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도화면체육회상임부회장 •5대의회후반기산업건설위원장
"	송경양	53. 7. 3.	835-6449	010-3897-6449	•해양경찰청근무 •4대의회전반기산업건설위원장 •4대의회후반기의장
비례대표	송인숙	49. 5. 2.	833-2075	010-5359-1128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고흥군새마을부녀회장 •전남여성신지식인회장
"	최설희	54. 11. 21.	835-2356	010-9154-5966	•고흥군여성단체협의회장 •한국걸스카웃고흥지회장 •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이사

〈별첨 12〉

■ 제6대 전반기 의회구성

의 장 단

· 의장 신 태 균 · 부의장 박 금 래

상 임 위 원 회

위원회별	위원장	간 사	위 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주식	송우섭	김의규, 송경양, 장세선
총 무 위 원 회	송경양	장세선	배기홍, 박금래, 김주식, 최설희
산업건설위원회	김의규	송우섭	김옥래, 송경석, 송인숙

■ 제6대 후반기 의회구성

의 장 단

· 의장 박 금 래 · 부의장 배 기 홍

상 임 위 원 회

위원회별	위원장	간 사	위 원
의회운영위원회	송우섭	최설희	장세선, 송경양, 송인숙
총 무 위 원 회	장세선	송인숙	배기홍, 송경석, 김의규, 송우섭
산업건설위원회	송경양	최설희	김옥래, 신태균, 김주식

GOHEUNG COUNTY COUNCIL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 고흥군의회



의정백서 議政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GOHEUNG COUNTY COUNCIL 의정백서



의정백서

議政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제5장

제3절 회의규칙



GOHEUNG COUNTY COUNCIL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 고흥군의회

의정백서 議政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제3절 회의규칙

■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제정	1991.04.13	규칙	제713호
개정	1992.04.10	의회규칙	제 3호
	1999.03.08	의회규칙	제 7호
	2004.05.24	의회규칙	제 8호
	2006.09.29	의회규칙	제10호
	2007.06.08	의회규칙	제11호
(일부개정)	2007.12.26	의회규칙	제12호
(일부개정)	2009.07.10	의회규칙	제13호
(일부개정)	2010.02.04	의회규칙	제16호
(일부개정)	2011.02.18	의회규칙	제1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6, 2010.2.4.)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개정 2007.6.8)
②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하며, 정례회와 매년 최초 집회되는 임시회를 제외한 기타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4.5.24.)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원의 청가는 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장 의장과 부의장

제8조(의장 · 부의장의 선거) ①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 5일전까지 실시한다.(신설 2006.9.29)
③제1항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9조(의장 · 부의장의 임기) ①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 한다.(신설 2006.9.29)
②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 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③(삭제 2006.9.29.)

제10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본조 신설 2011.2.18.)

제11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기존 제10조에서 이동 2011.2.18.)

제12조(의장 · 부의장의 사임) ①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기존 제11조에서 이동 2011.2.18)

제3장 회 의

제1절 회의의 개폐

제13조(회기) ①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의회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회기별 횟수 부여방법은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산하여 연번으로 부여한다.(신설 2010.2.4)
(기존 제12조에서 이동 2011.2.18.)

제14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개정 2007.6.8)
(기존 제13조에서 이동 2011.2.18.)

제1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개의 · 정회 ·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의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63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개정 2007.12.26, 2009.4.10, 2011.2.18)
③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기존 제14조에서 이동 2011.2.18)

제16조(휴회) ①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휴회중이라도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기존 제15조에서 이동 2011.2.18.)

제2절 의사일정

제17조(의사일정의 작성) ①의장은 개의일시 ·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기존 제16조에서 이동 2011.2.18.)

제18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개정 2007.6.8)
(기존 제17조에서 이동 2011.2.18.)

제19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상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기존 제18조에서 이동 2011.2.18.)

제3절 의안 및 동의

제20조(의안의 제출 · 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기존 제19조에서 이동 2011.2.18.)

제21조(의안의 제출시기) 고흥군수는 당해 임시회 또는 정례회에 처리할 의안을 본회의 개의 5일전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의안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07.6.8)
(기존 제19조의2에서 이동 2011.2.18.)

제22조(상임위원회 회부) ①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나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기존 제20조에서 이동 2011.2.18.)

제23조(특별위원회 회부) ①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기존 제20조의2에서 이동 2011.2.18.)

제24조(심사기간) ①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기존 제20조의3에서 이동 2011.2.18)

제25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기존 제20조의4에서 이동 2011.2.18)

제26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의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기존 제21조에서 이동 2011.2.18)

제27조(수정동의) ①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위원회은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기존 제22조에서 이동 2011.2.18.)

제28조(의안 · 동의의 철회) ①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군수가 본회의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군수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존 제23조에서 이동 2011.2.18.)

제29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기존 제24조에서 이동 2011.2.18.)

제30조(안건심의) ①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 ·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의장은 삼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때에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단,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수 있다.(신설 2006.9.29)
③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기존 제25조에서 이동 2011.2.18.)

제31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기존 제25조의2에서 이동 2011.2.18.)

제32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 문구 ·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기존 제26조에서 이동 2011.2.18.)

제33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기존 제27조에서 이동 2011.2.18)

제34조(규칙 등의 제출 등) ①군수는 법령 이나 조례가 위임한 사항이나 법령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정한 규칙, 규정 등이 제 · 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이내에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에는 그 사유를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2.18.)

제4절 발 언

제35조(발언의 허가) ①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기존 제28조에서 이동 2011.2.18.)

제36조(발언의 장소) ①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기존 제29조에서 이동 2011.2.18)

제37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기존 제30조에서 이동 2011.2.18.)

제38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기존 제31조에서 이동 2011.2.18.)

제39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존 제32조에서 이동 2011.2.18.)

제40조(발언시간의 제한) ①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 ·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보충발언은 일문일답 형식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4.5.24)
②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기존 제33조에서 이동 2011.2.18.)

제41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기존 제34조에서 이동 2011.2.18.)

제42조(토론의 통지) ①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기존 제35조에서 이동 2011.2.18.)

제43조(의장의 토론참가) ①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기존 제36조에서 이동 2011.2.18.)

제44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질의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의원2인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기존 제37조에서 이동 2011.2.18.)

제45조(5분 자유발언) 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안건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개의직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의장은 발언취지의 원고를 접수후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의장은 발언신청 순서에 의해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 다만, 발언자가 발언시간을 초과하거나 즉석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는 등 회의의 질서를 위반할 때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0.2.4)
⑤5분 자유발언 의원 수는 매 본회의 시마다 3인 이내로 하며, 의원 1인이 1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신설 1999.3.8, 개정 2010.2.4)
(기존 제37조의2에서 이동 2011.2.18.)

제5절 표　　결

제46조(표결의 선포)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지정된 회의장소의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개정 2009.7.10)
②의장이 표결할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기존 제38조에서 이동 2011.2.18.)

제47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기존 제39조에서 이동 2011.2.18.)

제48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기존 제40조에서 이동 2011.2.18)

제49조(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기존 제41조에서 이동 2011.2.18.)

제50조(투표절차) ①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 · 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감표위원은 다른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기존 제42조에서 이동 2011.2.18.)

제51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 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이를 원안으로 간주하여 당초의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2.4)
(기존 제43조에서 이동 2011.2.18)

제52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지정된 회의장소의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개정 2009.7.10)
(기존 제44조에서 이동 2011.2.18.)

제6절 회 의 록

제53조(회의록의 작성) ①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개정 2010.2.4)

1. 개회 ·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 회의중지 · 산회의 일시
3. 의사 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 변동
7. 제반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 · 제출 · 회부 · 환부 · 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기존 제45조에서 이동 2011.2.18.)

제54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회의록에는 의장 ·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②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기존 제46조에서 이동 2011.2.18.)

제55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0.2.4)
(기존 제47조에서 이동 2011.2.18.)

제56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수 있다.(개정 2007.6.8)
②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개·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기존 제48조에서 이동 2011.2.18)

제4장 위 원 회

제57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07.6.8)
(기존 제49조에서 이동 2011.2.18.)

제58조(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6.8)
(기존 제50조에서 이동 2011.2.18.)

제59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원원회에서 동의는 특별한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는 동의자외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기존 제51조에서 이동 2011.2.18.)

제60조(위원회의 제안) ①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기존 제51조의2에서 이동 2011.2.18.)

제61조(위원회의 심사) ①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 토론 ·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7.6.8)
②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기존 제52조에서 이동 2011.2.18.)

제62조(위원의 발언) ①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기존 제53조에서 이동 2011.2.18.)

제63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기존 제54조에서 이동 2011.2.18.)

제64조(위원회의 의사 · 의결정족수)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기존 제55조에서 이동 2011.2.18.)

제65조(연석회의) ①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기존 제55조의2에서 이동 2011.2.18)

제66조(공청회) ①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 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 이라 한다)으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때에는 안건 · 일시 · 장소 · 진술인 ·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에게는 소정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지급 기준은 「고흥군의회에서의 증인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07.6.8, 개정 2010.2.4)
(기존 제56조에서 이동 2011.2.18)

제67조(심사보고서 제출) ①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기존 제57조에서 이동 2011.2.18.)

제68조(위원장의 보고) ①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위원장은 다른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④위원장은 사안에 따라서 그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신설 2007.6.8)
(기존 제58조에서 이동 2011.2.18.)

제69조(위원회 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 ·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 ·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에서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③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 · 날인한다.(개정 2007.6.8)

(기존 제59조에서 이동 2011.2.18.)

제70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 ·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기존 제60조에서 이동 2011.2.18)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71조(예산안 심의) ①의회에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출되는 때에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0.2.4)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 예결위원회 " 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의장은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을 다시 증액하고자 할때에는 소관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06.9.29)

(기존 제61조에서 이동 2011.2.18.)

제72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기존 제62조에서 이동 2011.2.18)

제73조(예산안의 의결) ①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기존 제63조에서 이동 2011.2.18.)

제74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기존 제64조에서 이동 2011.2.18)

제75조(결산의 심사) ①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케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의장이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71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1.2.18)
(기존 제65조에서 이동 2011.2.18)

제6장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제76조(군수 등의 출석요구) ①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 답변하여야 하며,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개정 2004.5.24, 삭제 2011.2.18)
(기존 제66조에서 이동 2011.2.18.)

제77조(군정에 대한 질문) ①본회의는 회의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군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의원별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제목과 요지 및 답변자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질문 48시간 전까지(질문 첫날을

기준으로 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집행기관에 송달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답변서 또는 답변 요지서를 질문 개시일 24시간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군정질문의 진행은 의원별로 제3항의 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라 실시하되, 의장은 질문순서를 질문 전날까지 질문 의원과 집행기관에 통지하고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진행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2.18.)

제78조(군수 등에 대한 서면 질문) (조이름 개정 2011.2.18)
①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②군수는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기존 제67조에서 이동 2011.2.18.)

제79조(군수 등의 발언)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발언과 관련하여 의원 또는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보충발언을 할 수 있다.
(기존 제68조에서 이동, 본조 전문개정 2011.2.18)

제80조(군수의 본회의 초청 연설) 국내 및 외국의 지방차지단체장이나 이에 상응하는 주요 인사가 의회에 내방한 때에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연설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2.18)

제7장 사직과 자격심사

제81조(사직) ①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기존 제69조에서 이동 2011.2.18)

제82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의장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개정 2006.9.29, 2007.12.26)
②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기존 제70조에서 이동 2011.2.18.)

제83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9.29)
②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06.9.29)
③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06.9.29)
④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기존 제71조에서 이동 2011.2.18.)

제84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6.9.29)
②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9.29)
③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기존 제72조에서 이동 2011.2.18)

제8장 질 서

제85조(경호) ①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기존 제73조에서 이동 2011.2.18.)

제86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0.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 잡지 · 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 · 녹화 · 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끽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기존 제74조에서 이동 2011.2.18)

제87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안에는 의원 ·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기존 제75조에서 이동 2011.2.18.)

제88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기존 제76조에서 이동 2011.2.18.)

제89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방청권은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기존 제77조에서 이동 2011.2.18.)

제90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 할 수 있다.
④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 성명 ·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기존 제78조에서 이동 2011.2.18.)

제91조(방청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0.2.4)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②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 할 수 있다.

(기존 제79조에서 이동 2011.2.18.)

제92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10.2.4)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 ·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 녹화 · 촬영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기존 제80조에서 이동 2011.2.18.)

제93조(녹음 · 녹화등) ①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 한다)에서의 녹음 · 녹화 ·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할는 자는 매회기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 · 녹화 · 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기존 제81조에서 이동 2011.2.18)

제9장 징　　계

제94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법 제87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09.29, 2007.12.26)

②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09.29)

③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0.2.4)

④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09.29)

⑤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 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 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기존 제82조에서 이동 2011.2.18.)

제95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제94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

②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기존 제83조에서 이동 2011.2.18.)

제96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기존 제84조에서 이동 2011.2.18.)

제97조(심문 및 변경) ①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개정 2007.6.8)
(기존 제85조에서 이동 2011.2.18.)

제98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6.09.29)
②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기존 제86조에서 이동 2011.2.18)

부 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4.10 규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3.08 규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5.24 규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9.29 규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6.08 규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26 규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7.10 규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02.04 규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02.18 규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GOHEUNG COUNTY COUNCIL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 고흥군의회



의정백서 議政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GOHEUNG COUNTY COUNCIL 의정백서



의정백서

議政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제5장

제4절 의회용어



GOHEUNG COUNTY COUNCIL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 고흥군의회

의정백서 議政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제4절 의회용어

■ 의회용어

○ 가결과 부결

「可決」은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否決」은 안건이 통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안건의 경우 적극적으로 찬성이 과반수를 넘어서 가결되는 이외에는 부결이 되게 된다. 즉, 반대가 과반수를 넘는다든다 찬성이 과반수가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되게 된다. 위원회에서도 실제 회의진행상에는「否決」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의장에게 보고하는 공문에는「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 하기로 議決」하였음을 표시하게 된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의결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부결된 경우에도 본회의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간사

지방자치단체에서는「幹事」라는 명칭을 기초의회의 사무책임자를 지칭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위원회 소속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협의하고 유사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기 위해 선임한 위원을「幹事」라고 하고 있다.

○ 간사의 직무

①간사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함에 있어 협의에 응하며,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지정한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③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위원수가 많은 교섭 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④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②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소속의 간사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통상적으로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협의하는 사실상의 기능을 가진다.

○ 감사

감독하고 검사함.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정감사권을 가지며 이에 따라 국정감사의 구체적인 절차등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등이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권을 가지며, 이의 구체적인 절차등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 감표위원

무기명투표시에 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되는가를 감시·감독하는 의원으로서 의장이 2~3인 정도를 지명한다. 그리고 잘못 표시 된 투표의 유효·무효판정 투표한 의원 수와 투표용지 수를 확인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 개의(開議)

당일의 회의를 시작하는 것

○ 개정안

현행 법률이나 조례등을 입법정책의 변화, 관련법령이나 조례 등의 개폐, 업무 개선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체계·형식 및 자구를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입법기준과 약속에 따라 입안하여 제출한 안을 말한다.

○ 개회

「開會」란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제O회 OO의회(임시회 또는 정기회)가 개회」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서는 위원회의 당일 회의를 여는 것을 「개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開議와 開會」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 결의안(決議案)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대·내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의안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OOO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과 같이 의회내부와 관련된 결의안과 쌀수입개방저지결의안 등과 같이 의견을 외부에 나타내기 위한 것이 있다.

○ 경호원

회기중 의회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내부 경찰권이다. 즉 의원이나 방청인 그밖의 원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사항을 명하고 이를 직접 실력으로 강재하는 권한을 말한다. 지방의회에서는 실력 강제를 하기 위해서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호권은 의장만 행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필요시에 의장에게 경호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본다.

○ 계류

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서 제안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논의 중이거나 논의할 대상으로 놓여 있는 상태를 「繫留」라고 한다. 계류는 상정된 것과 상정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 상정여부에 따라 안건의 철회 절차가 다르게 된다.

○ 계수조정

계수조정이라 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부별심사(部別審査)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부처간 예산과목의 계수를 증감하는 실질적, 최종적인 예산안 심사단계이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는 예산을 증액시키나 계수조정단계에서는 그것을 삭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수조정단계에서는 국가정책 위주로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여야간의 합의된 액수의 삭감을 위하여 특정항목을 선정하고 일률적으로 일정비율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다.

○ 공전

「流會」의 용어와 유사한 것으로 「空轉」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개념은 회의를 열도록 예정은 되었으나 의원간의 이견으로 의사일정 회의 운영방법 등을 결정하지 못하고 장기간 회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용어는 의회행정 용어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流會」또는「空轉」은 당일 회의를 위한 의사일정이 작성되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의사일정은 작성되었으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못하는 경우는 流會, 의사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회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空轉이라 한다.

○ 공청회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직접 안건과 관련이 있는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이다. 공청회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개최되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참고하기 위한 회의이므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없다. 더구나 단순히 의견을 듣기위한 회의이므로 결정, 즉 의결을 할 수 없고 이를 위한 토론이나 표결도 할 수 없다.

○ 공포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을 일반국민에게 주지시키는 행위 또는 그 절차를 의미한다. 헌법은 헌법개정안과 법률안의 공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률, 명령의 공포는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령은 공포하여야 시행할 수 있다. 즉, 공포는 법령의 효력발생요건의 하나이다. 그러나 공포된다고 반드시 곧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 과반수

過半數는 의사일정의 방법으로 다수 결의한 형태이다. 과반수는 구체적으로 반수를 넘는 수로서 2분의 1이상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2분의 1이상은 2분의 1상태도 포함되지만 과반수는 2분의 1상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9명에 대한 과반수는 5명이고 10명에 대한 과반수는 6명이다. 과반수를 결정할 때 2분의 1이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절상한 수가 과반수가 된 다. 주의할 것은 출석의원(재적의원) 3분의 1 또는 3분의 2이 상이라고 할 때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절상한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룰 수가 없기 때문이다.

○ 광역의회(廣域議會)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 광역시 · 도의 의회를 말한다. 이를 간단하게 시 · 도의회라고도 한다.

○ 군의원

군의원은 군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군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군의원은 임기 4년 동안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소집 요구권, 의안제출권, 발언권, 표결권, 청원소개권 등의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회의에 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공익우선의 의무, 청렴과 품위유지의 의무, 겸직금지의 의무등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의원은 보수를 지급받으며, 해당 직무에 전념하여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일정한 직에의 겸직을 금지하고 당해 지방단체와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군의원의 신분은 당선인의 공고가 있을때 또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발생하는데 임기중이라도 사직, 겸직금지에 위반한 때의 퇴직, 징계에 의한 제명, 자격상실 결의에 의해 신분이 상실된다.

○ 기관위임사무(機關委任事務)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인 시 · 도가 처리해야 할 사무를 지방 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처리하도록 위임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그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의 하급기관의 위치에서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위임한 기관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비도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기초의회(基礎議會)

기초자치단체인 시 · 군 · 자치구(특별시 · 광역시의 구)의 의회를 말하는데 보통 시 · 군 · 구의회라고 표현한다.

○ 규칙(規則)

규칙이란 법률과 대통령령, 조례의 범위내에서 행정기관의 내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범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 · 군수 등 단체장이 법률과 대통령령,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제정하는 자치법률의 일종이다. 그런데 지방의회도 회의진행이나 의회운영, 내부조직 등을 위해서 법령, 조례의 범위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날인

서명은 본인의 자필로 이름을 써넣는 것이고 날인은 본인의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한다. 서명, 날인은 문서, 회의록 등의 공적 신뢰도를 보장하는 상징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국회법상 의안의 발의시에는 서명만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의록의 보존이나 청원서의 제출시에는 의장, 위원장 또는 청원인의 서명, 날인을 요하도록 하고 있다. 회의록의 서명과 함께 날인은 회의록 작성의 완료를 뜻한다.

○ 대안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발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수정안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代案은 1개 명칭의 조례안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안이 심사·회부되는 경우에 이를 통합하여 단일안인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회부된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즉 폐기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 대표연설

정기국회 또는 임시국회의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의 대표 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 국정에 관한 연설을 말한다. 국회법 제104조 제2항에서는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발언을 할 때에는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동의

「動議」라 함은 회의체에서 의원(위원)이 통상적으로 안을 갖출 필요없이 발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회의체의 의사결정을 위해 안을 맨처음 제안하는 과정이 된다. 동의는 회의진행 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는 의제와는 독립한 의제로서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통상 구두로 발의(서면동의 가능)하게 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동의자외 1인 이상이 찬성하면 그 동의는 성립되었다고 하고 성립된 동의는 회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는 대상 즉 의제가 되는 것이다. 동의는 간단한 내용의 의사형성을 위한 제의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구두 동의로 어떤 종류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이라도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법·조례·의회규칙 등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의 찬성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동의안

도지사 · 시장 · 군수등 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을 집행하기 전에 미리 지방의회 동의(同意) 또는 의결을 얻기 위해서 제출하는 의안의 한 종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이렇게 의결을 얻기 위해 사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종류를 동의안이라고 한다.

○ 만장일치(滿場一致)

어떤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 회의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반대없이 모두 찬성.

○ 명패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 판을 「名牌」 라고 한다. 명패는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의 의석 앞에 부착하는 「議席用 名牌」 와 본회의장에 출석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성명을 기재한 「出缺用 名牌」 그리고 무기명 투표시 투표할 의원임을 표시하는 「投票用 名牌」 3가지가 있다. 의석용 명패는 三角形(검정 플라스틱)에 앞뒤를 가로로 흰 글씨로 성명(한자)을 쓰며, 출결명패는 한쪽에는 흰색 반대쪽에는 초록색인 두께 1㎜정도의 플라스틱(3㎝×7㎝)에 세로로 각 성명을 기재한 후 본회의장에 비치하고 당해 의원이 출석하게 되면 초록색에서 흰색으로 뒤집어 놓아 출석여부를 확인한다. 투표용 명패는 두께 1㎜의 흰색 플라스틱(3㎝×7㎝) 한쪽에 세로로 의원성명을 기재한 것으로서 투표시 투표하는 의원에게 각각 배부하고 명패를 가진 의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데 투표시 명패수는 투표한 의원 수를 나타낸다.

○ 무소속의원

정치학에서의 무소속 의원이란 정당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의원을 지칭하나,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무소속 의원이란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을 말한다.

○ 미결

「未決」 은 가부 어느 편에도 다 과반수가 못될 때 의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과거 국회에서는 5대까지 미결된 안건은 다시 표결하고 재의결에서도 미결된 때에는 폐기시켰다. 그러나 현재에는 의결 유형으로 가결, 부결 두가지만 사용하고 있다.

○ 미료안건(未了案件)

특정 회기 내에 또는 회의가 열리고 있는 당일에 심의 · 결정하려고 의사일정에 올렸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 즉 의결을 끝내지 못한 안건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심의를 시작하였으나 의결까지 끝내지 못한 안건을 「미료안건」이라 하는데, 이것은 다음번 회의에서 다시 의사일정에 올려서 논의하여 처리하게 된다. 그리고, 그 회기내에 처리하지 못한 미료안건은 폐기, 즉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회기에서 다시 심의 ·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 발안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제안을 말하며, 의회의 모든 의사가 되는 사항은 이를 시발점으로 한다. 발안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안건이라 하며, 그중 원안(原案)을 구비한 것을 의안이라 한다.

○ 발언권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언통지를 하고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는 의사를 정리하고 의원의 발언준비와 발언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것이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위원장)은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의장(위원장)은 신청된 순서에 의해 발언할 의원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리 발언신청을 하지 아니한 의원의 발언은 발언신청을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후에 발언을 허가 할 수 있다.

○ 발언신청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언통지를 하고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한다. 이는 의사를 정리하고 의원의 발언 준비와 발언기회 균등의 보장을 위한 것이다. 발언신청은 사전에 하여야 하는데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과 관련된 의제에 대한 발언통지는 당일회의 개의직전 또는 개의후 당해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전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질의 · 토론을 종결한 경우에는 질의 · 토론 신청을 할 수 없으며 표결을 선포한 후에도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다.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의사진행발언 등은 회의가 산회되기 직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발언통지는 서면으로 하게 되나 의석에서 발언을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발언을 허가하기도 한다.

○ 발언의 종류

발언의 종류는 크게 나누어 안건과 관련하여 발언하는 「의제 관련발언」과 그 외의 「의제 관련외의 발언」으로 나눌 수 있다. 의제관련 발언으로는 안건의 제안설명, 심사보고, 심사보고에 대한 보충보고 및 자격심사에 대한 피심의원(被審議員)의 변명 등이 있으며 의제관련외의 발언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구두동의의 발의를 위한 발언 등이 있다.

○ 발의권

조례안, 건의안, 예산안, 결의안, 동의(動議)등 각종 안건을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발의권은 그 지방의회의 의원과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찬성의원이 필요한 데 그 숫자는 매우 다양하다. 조례안 등 일반적인 의안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발의와 제출

의원이 제안을 낼 때에는 「發議」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낼 때에는 「提出」이라 한다. 「발의」란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원이 논의할 대상, 즉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동의 등 각종 안건을 내놓는 것을 통털어서 말한다. 그런데 발의란 통상적으로 의원이 안건을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건을 내는 것은 「제출」이라 한다.

○ 발의자

안건을 발의하는 의원을 말한다. 발의자는 1인이 될 수 있고 2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발의자가 제출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원을 찬성자 또는 찬성의원이라 한다.

○ 방청

일반인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를 직접 시청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대해서는 국회방청규칙, 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방청을 하려는 자는 방청권을 교부받은 후, 입장시 제시하여야 하며, 방청석에서 일정한 행위를 제한받게 된다.

○ 번안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일단 의결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객관적 사정이 전의 의사결정 당시와 현저히 달라졌거나 전의 의사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의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飜案의 내용은 전에 의결했던 내용에 구애됨이 없이 수정하거나 부결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하겠다.

○ 보충보고

위원회의 심사 경과 및 결과를 좀 더 철저히 하고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심의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서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정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補充報告를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소수의견자가 소수 의견을 보고하게 되는데 보충보고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제기가 있을 시에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보고를 하기도 한다.

○ 본안(本案)

민사소송법상 부수적 내지 파생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요 또는 중심적인 사항을 표시하는 개념. 따라서 그 의미는 각 경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인 용법으로는, 원고의 청구의 실체에 관한 변론 재판을, 그 요건 절차에 대하여 본안이라고도 한다.

○ 본예산(本豫算)

예산은 실질적 의미로는 회계년도의 세입세출의 예정계획서를 말하며, 형식적 의미로는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행정부에서 작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그 의결로써 성립하는 법의 또 하나의 형식으로서 한시법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예산은 그 형식에 있어서는 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국가기관만을 구속하고 있다는 점, 그 제안 및 편성권이 행정부에만 있다는 점, 효력이 당해 회계연도에만 국한된다는 점, 행정부의 재정행위를 구속하지만 지출의 권한과 의무가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법률과는 다르다.

○ 본회의(本會議)

의회의 회의는 위원회와 본회의로 구분되는데, 본회의란 의원 전체가 참여하여 시정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현행 국회법에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출석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고, 헌법이나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정식 의회의 의사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례안의 심의는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나 최종 결정은 본회의의 의결로써 확정된다.

○ 부결(否決)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의결정족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을 뜻하며 가결의 반대이다. 때때로 폐기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나, 폐기는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는 경우의 부결확정이나 임기만료로 인한 처리 불능시에 사용된다.

○ 부대의결

의안을 의결할 때 어떤 조건 또는 건의등 의사표시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附帶議決」 또는「附帶條件」이라 한다. 부대의결은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서와 외부기관 등에 희망, 권고, 경고 등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수단이며 구속력은 없다. 다만 의회의 의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다.

○ 부의

「附議」란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에 놓는다 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용어는 본회의에만 사용하고 있다. 즉,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것은 본회의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하는 상태에 놓는 것을 말하는데「부의」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회의에 상정시키는 행위가 필요하다.

○ 부의장

부의장(副議長)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위를 말한다. 지방의회는 의원중에서 시, 도의 경우 부의장 2인을, 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 부의장 1인을 두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 부칙(附則)

법률이나 규칙을 보충하기 위하여 끝에 덧붙이는 규정이나 규칙 내용으로서 여기에 규정할 사항으로는 일반적으로 본칙규정에 부수되거나 보충적,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부칙에 규정할 주요사항을 들면 법령의 시행기일에 관한 규정, 기존법령의 폐지에 관한 규정,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기타 용어의 정리, 다른 법률과의 관계등에 관한 규정이며 배열도 위의 열거한 순서에 의한다.

○ 비공개 회의록

비공개회의록이라 함은 본회의(위원회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내용과 비밀을 요한다고 결의한 부분은 배부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작성하여 영구 보존한다.

○ 사회권(社會權)

회의를 맡아서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본회의의 사회권은 의장이, 위원회의 사회권은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사회권은 소위원장에게 있다. 다만, 사회권을 가진 자가 질병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회를 보지 못할 때에는 본회의는 부의장이, 위원회는 간사가, 소위원회는 소위원중 한 위원이 사회권을 행사한다.

○ 산회(散會)

산회는 개회나 개의의 반대의 개념으로 그날의 회의를 마치는 것, 즉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때 산회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의중 출석의원이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의장은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산회란 그날의 회의 즉 당일에 선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자정이 넘어갈 경우 일단 회의를 산회하고 익일 0시 이후에 다음 회의를 개의하게 된다. 산회는 그날의 회의가 끝났음을 의원 모두에게 고지함과 동시에 산회선포 이후에는 그날 회의가 없음을 알리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한 이후 당일에는 회의를 열 수 없게 된다.

○ 상정

「上程」이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나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당일 회의에서 심의를 시작한다 는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에 대해 「OOO을 상정합니다」 선포함으로써 비로소 당해 안건이 상정되었다고 하고 당해 안건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안건이 한번 상정하여 당일 회의에서 처리되는 경우에는 한번만 상정되게 되지만 당일 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게 되는 경우 한 개 안건이 몇번 상정되게 된다.

○ 서면답변

[광의]의원의 질의, 질문(서면질문포함)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서면을 통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함. 의원의 안건에 대한 질의나 대정부 질문시 또는 청문회, 공청회등에서 의원의 질문(신문)에 대하여는 회의석상에서 구두답변을 하는 것이 통례이나, 회의운영과 정상 구두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례적으로 용인되고 있다.

[협의]의원이 정부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한 경우 정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는 국회법상 답변의 형식을 뜻함. 구두질문에 대하여 관례상 용인되는 서면답변과는 달리, 서면질문에 대하여 정부는 질문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서면질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거나 소견을 듣기 위하여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는 「서면질문」 제도를 두고 있다. 서면질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 전반 또는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 선결문제(선결동의)

동의의 내용상 그 동의를 먼저 의제로 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든지 심의중인 의제에 대하여 의결할 수 없다든가 또는 처리하지 않으면 성립된 동의가 무의미해지는 동의가 있다. 이러한 동의를 「선결문제」, 또는 「선결동의」라 하여 동의가 성립되면 의제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의사일정 변경없이 진행중인 의제보다 먼저 처리하게 된다.

○ 세목(稅目)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종목을 줄여서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세목은 법률로 정한다. 국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각 세목마다 그 세목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법률에서 이를 정하고 있으나 (예외: 증여세는 상속세법에서 상속세와 함께 규정) 지방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에서 전 세목을 망라하여 그 세목을 정하고 있다.

○ 세세항(細細項)

행정과목은 입법과목의 하위체계로서 세입예산은 목으로 세출예산은 세항, 세세항, 목으로 분류된다. 세세항은 예산회계법상의 법정과목은 아니나 단위사업의 예산과 집행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세항의 하위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세입세출결산보고서는 그 내용이 세입세출결산과 동일하나 입법과목 이외에 행정과목과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게 된 사유 등이 표시되고 있다. 세입결산보고서는 관, 항, 목까지 구분하여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세입예산액과 수납된 세입액과의 차를 표시하고 세출결산보고서는 장, 관, 항, 세항, 목별로 구분하여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사용액, 전용 등 증감액, 예산현액 익년도이월액, 불용액을 표시한다.

○ 소수의견

다수의견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어떤 의견이 다수 의원(위원)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하여 폐기(부결)된 의견을 일반적으로 소수의견이라고 한다. 이 용어는 주로 위원회의 심사단계에서 이용되는데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폐기된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위원회가 안건을 가결시켰을 때에는 부결된 내용이나 채택되지 않은 수정내용, 안건을 부결시켰을 때에는 가결시키자는 내용이나 채택되지 않은 수정내용이 소수의견이 되는데 소수의견이 수정인 경우에는 수정의견을 진술하는 것 이외에 수정동의를 제출하여 부결된 것이라야 한다.

○ 소위원회(小委員會)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더욱 전문적이고 자세하게 심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 그 위원회 위원중 소수의 위원(전체 위원수의약1/3~1/4정도)으로 구성하는 회의체를 소위원회라 한다. 소위원회는 전체 위원회로부터 심사하라고 맡겨진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전체 위원회에 보고한다.

○ 속개(續開)

속개란 중지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도 개의되는 때와 같이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한다.

○ 속기

일반인이 사람의 말을 모두 받아 적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정한 부호를 사용하여 사람의 말을 모두 빠짐없이 적는 것을 속기라 한다

○ 속기록

속기에 의해서 기록한 것을 일반 글자로 전환시켜 일정기간의 회의내용을 모아 논 기록을 말한다. 속기록은 회의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이라 하여 회의록이라고 한다.

○ 속기사(速記士)

속기된 내용은 다시 우리 일반인이 사용하는 글자로 전환시킬때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속기업무를 담당하여 하는 사람을 속기사라 부른다.

○ 수정동의(修正動議)

국회법 또는 각 지방의회회의규칙상 수정동의는 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으로서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30인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또는 13인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한 동의이다.

일반적으로 동의에는 안을 갖출 필요가 없는 것이 많으나 수정동의는 안을 갖추고 동의와 같이 의제가 되는 것이다. 수정동의는 그 성격이 동의인 점에서 의안과 구별된다. 또, 안을 갖추어 사전에 제출된다는 점에서 의안이나 안건과 그 성격이 같다.

○ 수정안

제안된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서 새로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은 모든 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의안의 성질상 수정안을 발의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결산,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의 건등이 그 예이다. 수정안은 일정한 형식과 일정수 이상의 의원찬성을 얻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정안은 소속의원(위원)이 아니면 발의할 수 없다. 즉 본회의 심의 단계에서는 모든 의원이 소속되는 것이므로 모든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는 당해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만 수정동의 제출이 가능하다.

○ 승인안(承認案)

국회에서 다루어지는 의안(안건)의 한 형태로서 승인 안이 있다. 헌법, 국회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승인 안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행정부가 국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정부가 제출하는 승인 안으로서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긴급명령 또는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승인의 건이 있고 의장이 본회의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의장이 제의하는 승인 안으로서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의 선이 있으며, 위원회가 본회의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위원장이 제안하는 승인 안으로는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등이 있다.

○ 시행규칙(施行規則)

법령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명령, 대통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총리령 또는 부령등을 보통 시행규칙이라고 하나, 반드시 통일적으로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기타 각종의 용어를 사용한다. 시행규칙의 내용은 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절차를 규정함이 보통이나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하게 되는 사항도 있다.

○ 심사보고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완료하고 당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심사경과 및 결과를 위원장이나 간사가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을 「심사보고」라 한다.

○ 심의와 심사

「심의」와 「심사」는 의회에서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즉 의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심의는 본회의 논의 단계를 말하고 심사는 위원회 논의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구별한다.

○ 안건

「안건」이라 함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 처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하는데 앞에 설명한 의안과 기타 사안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안건은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과 의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안건중에는 의결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질문·연설 보고 등이 있다.

○ 연석회의(連席會議)

지방의회의 특정 위원회가 어떤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와 관련이 있다면 관련된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2개 이상의 위원회가 한 회의장에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연석회의」라 한다. 연석회의는 단순히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회의이지 결정을 위한 회의가 아니므로 토론이나 표결은 할 수 없다.

○ 예규(例規)

상급행정이 하급행정청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행정규칙의 한 형식이다. 법규의 집행적 성질을 가지는 것과 실질적으로 법규의 보충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다. 행정조직 내부 또는 기타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 예산안의 재심사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에 다시 심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다시 심의토록 하는 것을 「예산안의 재심사」라 한다. 이 재심사는 예산안의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다시 심의토록 하는 것이지만 「재회부」는 모든 의안을 대상으로 안 전체를 다시 심사하도록 회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 예산일년주의

예산회계법 제3조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예산은 회계연도별로 독립하여 편성하여야 함(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1회 회계연도인 일년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는 원칙을 예산일년주의라 하며 단년도 예산주의라고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재정의 연속성을 생각할 때, 이 원칙안을 고수할 수 없으므로 계속비, 국고재무부담행위, 세출예산의 이월, 과년도 수입 및 지출등 약간의 예의가 법률상 인정되고 있다.

○ 요구

동의와 유사한 내용으로서 「요구」가 있는데 이 「요구」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피요구자는 당연히 그 요구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구 그 자체에 대해서 일정한 구속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반드시 의결을 기다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 「요구」라는 용어는 본래의 요구로 사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집회요구는 당연히 집회를 하도록 구속되지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나 청원의 철회 요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요구의 효과가 나타난다.

○ 원구성(院構成)

지방의원 총선거후 처음 모여서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지방의회가 정상적인 활동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구성」이라 한다. 그리고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의 임기(2년)가 끝난 후에는 새로운 의장 등을 뽑게 된다. 이 경우에도 원구성이라 하는데 이는 「후반기의 원구성」이라 한다.

○ 원안(原案), 원안의결(原案議決)

의원·자치단체의 장·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면서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의 대상이 되는 본래의 안건을 「원안」이라 한다. 따라서, 의원등이 제출한 안건이 내용변경, 즉 수정없이 그대로 의결되는 것을 「원안의결」이라 한다. 반대로 수정되어 의결된 것을 수정의결 되었다고 한다.

○ 유회

예정된 당일 회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정수 이상의 의원(위원)이 출석(의사정족수 충족)하여야 하므로 회의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기를 기다려 개의하게 된다. 그러나, 의사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 없으므로 개의 예정 시간으로부터 일정시간이 지나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당일 회의를 열지 못하게 되는에 이 경우를 유회라 한다. 지방의회에서는 개의시간이 1시간이 지나도록 의사정족수에 미달될 경우에 의장은 유회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 위원(委員), 위원장(委員長)

위원이라 함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그리고 소위원회의 구성원인 의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다같이 의원이라도 본회의의 구성원일 경우에는 의원이라 하고, 위원회의 구성일 때에는 위원이라 부른다. 어느 의원이 어떤 위원회의 위원이 되느냐는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리고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진행, 즉 사회를 보는 위원을 「위원장」이라 한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하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위원회(委員會),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 특별위원회

지방의회가 안건을 심사하여 결정하는데 있어서 일을 분담하여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위원회이다. 위원회 중에는 담당하는 업무가 정해져 있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상설된 상임위원회와 필요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구성하고 없애는 특별위원회가 있다.

○ 의결과 결의

「의결」과 「결의」는 회의체의 의사형성 행위라는 점에서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구별한다면 결의는 합의체의 전체 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의사형성 행위인데 대하여 의결은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법률적 의사형성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서의 의결은 가결의 개념으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 의결정족수

「의결정족수」는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한다.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정족수를 정하는 이유는 회의체의 구성원 모두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일정한 의원수가 출석하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의원수 이상이 출석하여 의결한 사항은 회의체 의사결정으로 보자는 것이다.

○ 의사

의사란 회의를 진행하는데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총칭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회의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즉 의사정족수, 의사일정, 의장의 정리권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 의사봉 삼타

의회는 의사봉으로 상징되고 개의시, 의결 선포시 등 각 단계마다 의사봉을 세차례 치고 있다. 의사봉을 삼타하는 이유는 의사진행시 각 단계마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진 외국의회 민주주의의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의사봉 삼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결이나 회의진행의 법적효력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의회관습인 이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의사봉 삼타하는 시점은 주로 개의·산회 선포시, 정회·속개선포시 의사일정 상정시, 질의·토론종결 선포시, 표결 선포시, 의결내용 선포시 등이다.

○ 의사일정

「의사일정」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예정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회기전체 동안의 의사일정」과 「당일 회의의 의사일정」 두가지가 있다. 회기 전체의 의사일정은 본회의 개의일시, 처리할 안건, 휴회기간, 위원회 활동기간등과 기타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그리고, 당일 의사일정에는 당일 회의차수 개의(개회)일시 처리할 의제와 순서를 기재하는데 의원수가 많은 본회의에는 당일의 의사일정을 유인하여 회의장에 배부하고 규모가 작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는 회의장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이유는 미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에 알림으로써 회의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고 질서있고 능률있는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 의석(議席)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의 회의장에 있는 의원(위원)이 앉는 자리를 말한다. 의석 앞에는 앉는 의원(위원)의 이름표, 즉 명패가 있다. 어느 의원을 어느 의석에 앉히느냐를「의석배정」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의원(위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로 정하는 방법과 의원들이 선출된「선거구의 순서」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

○ 의안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항 즉, 안건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것을 「의안」이라 한다. 의안은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안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하고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위원회에서 제출하여야 하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을 말하나 모든 의안이 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조례안, 회의규칙, 예산안 및 예산 각종 건의안 및 결의안 동의안(승인안)등을 의안이라고 한다.

○ 의사정족수

「정족수」란 회의를 개의(개회)하거나 어떤 사항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한다. 「의사정족수」는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를 개의 또는 개회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를 말한다. 본회의와 위원회 모두 재적의원(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개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의원가택권

경호권과 성질이 다른것으로서 청사관리에 따르는 부수적 권리로 회기 여부를 떠나 항상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의회의 의사에 반하여 의회안에 출입을 금지시키고 필요시에는 퇴장시킬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여기서 의회라 함은 회의장이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부속건물까지 포함한다. 즉, 회의장이 있는 건물의 울타리 안이라 할 수 있다.

○ 의원간담회(議員懇談會)

공식적인 회의형식이 아닌 회합으로서 의원상호간에 격의없이 의견을 교환하는 모임을 뜻한다. 어떠한 현안이 있을 때에 의원총회와 같이 동일한 교섭단체 또는 정당 소속 의원들간에 간담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따라서는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의사정족수 미달등의 사유로 공식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간담회로 대체되기도 한다.

○ 의원(議員)

일반적으로 합의체 조직의 구성원을 말하나 특히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회의 구성원 즉,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통칭하는 말이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그 임기가 4년으로 같으나 그 지위와 특권등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 의장(議長)

일반적으로 회의체를 대표하고 그 의사를 주재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특히 회의에서 그러한 직책을 수행하는 의원을 말한다. 의장은 어떠한 회의체에 있어서도 그 회의체가 스스로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대법관이 상원인 귀족원의 의장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장과 지방의회 의장을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각각 선거하고 있으며,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하고 있다. 의장은 외부에 대한 대표권과 질서유지권, 의사정리권, 사무감독권등을 갖고 있다.

○ 의정보고서(議政報告書)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원내활동 기타 의정활동을 당해 지역구민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인쇄물 또는 녹화물을 말한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전에 의정보고서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당해지역구민에게 보고하는 것은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의제(議題)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심사중인 안건의 제목을 강조하여 부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당일 의사일정에 올라있어 심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상정되어 심사중에 있는 안건을 말할 때 사용한다. 그러나 〈오늘 심사할 안건이 무엇이냐〉, 〈오늘의 의제가 무엇이냐〉 할 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 의　회(議會)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고, 입법기타 중요한 국가작용의 결정에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 합의체이다. 의회는 일반적으로 입법작용을 담당하는 것이 본래의 임무이므로 이를 입법부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기관인 의회를 국회라고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의회를 지방의회라 한다.

○ 이송

의회에서 의결한 또는 채택한 안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는 행위를 이송이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의결한 후에 보내는 것은 물론 청원을 채택한 후 정부가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사항, 그리고 행정조사 및 감사후 채택한 결과보고 가운데 지방자치 단체가 처리됨이 타당하거나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것을 보내는 것도 이송이라 한다.

○ 일괄상정

안건을 상정함에 있어서는 한 개씩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안건은 2개 이상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여 심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일괄상정」이라 한다.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의했다고 하더라도 결정, 즉 의결은 하나씩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 일괄질의(一括質疑)

개별질의에 대응하는 말이다. 질의, 답변방식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질의를 다 마친 후에 답변을 듣는 방식을 말한다. 답변해야 할 사람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 따로 따로 질의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다수의 답변자를 상대로 질의하거나 또는 일문일답식 질의와는 달리 질의할 내용이 여러 항목으로 나위어져 있는 경우 이를 한데 묶어서 질의하는 경우를 의미할 때도 있다.

○ 일반회계(一般會計)

국가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처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일반회계는 특별회계와 구별되어 일반적 국가활동에 관한 세입·세출을 포함하는 회계이며, 정부회계의 근간이 된다. 일반회계 예산은 국가고유의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 까닭에 그 세입은 주로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로 지출된다. 국가 활동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정부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에 국가의 모든 세입·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하는 것은 재정수지를 복잡하게 할 수 있고,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책을 불명하게 하므로,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많은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었다.

○ 임시회(臨時會)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개회하고 그 기간동안에는 매일 본회의를 열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개회되는 정기회와 부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개회하는「임시회」가 있다. 임시회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와 자치단체의 장 요구로 개회된다. 일단, 개회된 임시회의 회의기간은 15일을 넘을 수 없다.

○ 입법과목(立法科目)

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되는 예산과목으로 세입예산의 관·항과 세출예산의 장·관·항이 이에 해당한다. 즉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지만 예산의 집행을 고치거나 바꿀 수 있는 예산과목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제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음.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는 이용할 수 있음. 입법과목은 과목의 상호 유용은 물론 신설 또는 변경에 제한을 받는다. 입법과목의 변경이나 신설은 세입과목의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행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이나 예산회계법에 따른 이체 그리고 예산총칙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다.

○ 재개

「재개」는 본회의 휴회기간중에 긴급한 안건의 처리등 필요에 따라 휴회를 해제하고 본회의를 다시 여는 것을 말한다.

○ 재의요구(再議要求)

지방의회가 결정, 즉 의결하여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낸 조례안이나 예산안등이 법령에 위반되고 있거나 이의가 있거나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공공의 이익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될 때 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다시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를 「거부권」이라고도 하고 되돌려 보낸다는 의미로 「환부」라고도 한다.

○ 재적의원수와 재석의원수

「재적의원수」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의원수를 말하며 「재석의원수」는 당일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의원 수를 말한다. 의원이 의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상 구속 또는 해외여행등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더라도 재적의원수에 산입한다. 그러나, 의원자격의 상실등으로 결원된 경우에는 재적의원수에서 제외시킨다.

○ 재청(再請)

일반적으로 동의는 발의하는 의원 이외에 1인이상의 찬성으로 논의할 수 있는 대상, 즉 의제가 된다. 그런데 「재청」이란 발의된 동의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동의가 발의되면 의장은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서 찬성의원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한다.

○ 재회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본회의의 심의과정에서 의안전체를 심사한 위원회나 또는 다른 위원회에 다시 심사보고 하도록 재차 송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회부 받은 위원회에서는 그 안건 전체를 다시 위원회의 심사에 부친다. 그리고 전에 심사한 결과에 구속됨이 없이 자유롭게 새로운 결정이나 전과 동일한 결정을 할 수 있다.

○ 전문위원(專門委員)

지방의원들의 의회활동과 회의진행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도와주는 공무원을 말한다. 전문위원은 시 · 도의회는 4급 지방공무원으로서, 시·군·구는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다

○ 정례회(定例期)

매년 정례적으로 두번 개회되는 회의를 말한다. 우리군 의회는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0일 개회하며 1,2차 합하여 최고 50일동안 회의를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필요할 때마다 개회하는 회의를 「임시회」라 한다.

○ 정회

「정회」란 일단 개의된 회의를 진행하다가 회의를 중단하는 것으로서 법규정 사항으로는 「회의 진행중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곤란한 경우」이나 일반적으로 안건에 대한 이견조정 휴식 질의(질문)에 대한 답변준비, 중식 또는 석식시간의 확보등 필요한 경우에 정회한다. 회의규칙에서는 정회를 「회의중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관용적으로 정회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회의 여부와 시점 결정은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하게 되나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위원)의 동의와 본회의(위원회) 의결로 정회하기도 한다. 정회를 한 후 이 건으로 회의를 속개하지 못하고 산회도 의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일 24:00가 됨으로써 「자동산회」되었다고 한다. 「정회」시에는 회의시작 시간 즉, 속개시간을 고지하기도 하지만 속개시간 약속없이 정회하는 경우에는 의장(위원장)은 속개 시간을 정하여 의원(위원)에게 통지한다.

○ 제안

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낼 때에는 「제안」이라고 하는데 제안은 발의와 제출을 포함한 개념이다.

○ 제안설명(취지설명)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한 자가 심사(심의)의 맨처음 단계에서 의안의 발의(제출) 배경등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을 설명하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이는 취지설명이라고도 한다.

○ 제의(提議)

의장이 안을 낼 때에는「提議」라 한다. 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조례·회의규칙에서 일정한 의원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 이외에는 의원의 동의와 찬성자 1인이 있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의회 관행상 간단한 사항은 의장(위원장)이 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위원회)의 의결을 얻기도 한다. 의장이 제의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진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안건의「특위회부」,「휴회결의」,「위문금 갹출의 건」등을 예로 들수 있으며 기타 경미한 사안등에 대해서는 관행상 의장(위원장)이 제의하고 본회의(위원회)의 의결을 얻는다. 그러나, 의원이 정식으로 동의를 발의하여 처리할 사항도 필요에 따라서는 의장의 제의로 처리하게 되는데 총선후 최초 집회에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회기결정의 건」도 의장제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으로서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중 간단한 내용은 의사일정에 기재없이 의장 제의로 처리하기도 한다.

○ 주민자치(住民自治)

지방자치의 개념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와 “지방자치단체안의 집행기관과 주민과의 관계”라는 2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때 후자의 측면을 강조한 것인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주민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 증인(證人)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시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답해 달라고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선택한 사람을 말한다. 주로 증인은 행정기관의 기관장이나 간부공무원, 필요에 따라서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일반인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증인은 일반적으로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기 전에 숨김없이 대답하겠다는 뜻을 선서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대답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할 수도 있다.

○ 지방의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자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지방자치의 운영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다. 지방의회의 지위는 유형에 따라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집행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일정한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아래 그 지역의 공공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지방자치 개념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자치권을 중심으로 이해할 때에는 단체자치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집행기관과 주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주민이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에 중점을 두고 이해할 때 주민자치라고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라는 측면이 별개로 분리되어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두 측면의 경합위에 성립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개념에는 국가의 감독, 지역주민, 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의 참여, 자주재원이라는 기본적인 요소가 포함되게 된다.

○ 지방자치권(地方自治權)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지배하고 그 소관업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지방자치권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방자치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지는 일정한 범위와 권능을 말한다. 지방자치권의 본질에 대하여는 “고유권설”, “전래권설”, “제도적보장권설” 등 다양하나 지방자치권을 국가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된 일정한 범위의 자율적 통치권능이라고 보는 제도적 보장권설이 통설이다. 지방자치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으로 이루어진다.

○ 지방자치단체

일정한 국가영토나 지역의 일부분에서 제한된 공동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공공단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실체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그 주민이 그들의 공통적 이해관계 사항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법인격을 부여한 공법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다른점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영토의 일부를 구역으로 한다는 점과 그 지배권이 국가로부터 전래한다는 점에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보통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눈다. 우리나라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법에서는 보통 지방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와 시·군, 자치구의 두종류로 나누고, 특별지방자치단체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있다.

○ 진정서(陳情書)

주민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지방의회나 단체장에게 피해를 구제하여 달라고 호소한다든가 또는 어떻게 해달라고 희망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진정서에는 일정한 형식이 없다.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는 이를 심사하여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사무직원이 전후 사정을 파악하고 조사한 후 답변을 해주게 된다. 그런데 진정서도 당해 지방의회 1인이상의 소개를 받아서 「청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질문

「질문」은 독립적인 의사로서 심의대상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 또는 특정 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소견을 듣는 것이다. 지방의회에서는 도(시·군·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 또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형태로 상정하여 의원이 질문하고 답변을 듣게 된다. 질문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전에 답변자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질문 요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질의

「질의」는 의제가 된 안건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심의(심사)하는 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문제점 등 필요한 사항을 제안자에게 물어 답변을 구하는 안건심사 절차로서의 한단계를 의미한다.

○ 집회

「집회」란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일정한 일시에 일정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즉, 의회가 활동을 하기 위한 전제행위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집회하기 위해서는 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회요구가 있어야 한다.

○ 참고인(參考人)

지방의회가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나 감사대상 사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일반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이때 의회의 요구에 따라 의회에 나와서 자기 의견을 밝히는 사항을 「참고인」이라 한다. 참고인은 선서의무가 없으며 답변이나 설명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거부해도 이를 강제하거나 벌을 줄 수가 없다.

○ 청원(請願)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시정, 법률 명령의 제정, 개정 그리고 공공의 제도 또는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희망을 개진함을 말함

○ 청원불수리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와 내용이 청원법과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된 불수리사항에 해당하는 때에 이를 접수 수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 축조심사

의안심사 방법의 한 형태로서 의안의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축조심사는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구분이 가능한 조례안 또는 규칙안의 심사 형태이지 만은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소관부서나 부문별로 하나씩 의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수정안의 경우에는 원안의 각조를 축조심사할 때 축조심사중인 조항에 해당되는 수정 부분도 축조 심사한다.

○ 폐기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 의결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없애는 행위를 말한다. 의회에 제출된 안건이 폐기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 부의된 안건이 위원회에서 부결된 후 휴·폐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본회의에 부의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의 임기만료로 계류된 안건의 폐기등 두가지 경우가 있다.

○ 폐회

「폐회」란 개회의 반대 개념으로서 의회의 활동기간 즉 회기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국회에서는 개회의 반대 개념으로 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회기가 끝나는 날 회의도 산회를 선포하게 되므로 폐회선포 없이 사실상 폐회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는 「의장의 폐회선포」「회기중 폐회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서 명문화하였다. 의장이 폐회를 선포할 시는 당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한 후에 한 회기의 폐회를 선포하여야 할 것이다.

○ 표결

표결은 안건에 대한 심의(심사)를 마친후 최종적으로 회의 제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장(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단순히 행동으로 찬성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을 말한다. 표결도 안건심의의 한 과정으로 찬성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자발적으로 발언기회를 얻어 자기의사를 찬반으로 표현하는 표결의 전단계 과정이다.

○ 호명명부

호명명부는 의석 앞에서부터 차례로 의원성명을 기재한 것이다. 이는 무기명 투표시 사용되는데 명부에 기재된 순서에 의해 성명을 부르면 호명된 의원은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호명”이라 한다. 호명명부를 작성하여 호명하는 이유는 질서있는 무기명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휴회

본회의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다. 의회가 집회되어 본회의 의결로 회기가 결정되는데 그 회기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을 휴회라 한다. 휴회는 일반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또는 중요한 행사등을 위하여 하게 된다. 휴회는 본회의 의결로 하되 일정기간을 정하여 휴회하게 되는데 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은 휴회 의결없이 당연히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는다. 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에 본회의를 개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 회기

의회는 언제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한다. 따라서, 의회가 집회되면 반드시 활동기간 즉, 회기를 결정해야 한다. 본회의는 회기중에만 회의를 하고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그러나 위원회는 회기중은 물론 본회의 의결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로 폐회중에도 개회할 수 있다.

○ 회부

제출된 의안을 의장이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위원회에서 소관위원회에 심사토록 송부하는 행위도 회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GOHEUNG COUNTY COUNCIL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 고흥군의회

의정백서 議政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GOHEUNG COUNTY COUNCIL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 고흥군의회

제6대 후반기

의정백서 議政白書

GOHEUNG COUNTY COUNCIL

발행일 : 2015년 5월
발행처 : 고흥군의회
벌행인 : 고흥군의회의장 장세선
편집인 : 의회사무과장 조철호
편 집 : 의회사무과